발 간 등 록 번 호
11-1760040-000001-10

소청결정사례집

Appeals Commission, Government of Korea

제 53 집 | 2016

인 사 혁 신 처
소청심사위원회

발 간 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1963년 설립된 이래,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청사건은 점차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며 그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이후 매년 900여 건 내외의 소청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권리구제 의식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소청심사는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역할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깨끗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소청심사 청구 경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품수수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와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를 신속히 구제해줌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해마다 심사 결정한 소청사건들 중 분야별·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청결정사례집'을 발간한 지 올해로 벌써 53회째가 되었습니다. 부디 이 책자가 많은 분들에게 널리 읽히고 업무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더욱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 1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 승 호

일 러 두 기

○ 이 사례집에 수록된 소청결정례 90건은 2016년도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860건 중에서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유형별로 선별한 것입니다.

○ 사건 배열은 크게 제1편 징계 처분,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제3편 형식 요건으로 나누고, 이를 비위유형에 따라 세분하였습니다.

○ 사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결정례별로 요지를 앞부분에 실었고, 제목과 처분종류 및 결정내용을 모두 게재하여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록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연혁, 관계법령 및 최근 5년간 소청심사 통계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이 사례집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정과 〈☎ 044)201-8647, 8648 FAX 044)201-868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소청심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 사항과 더 많은 소청결정사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sochung.mpm.go.kr, 자료실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제1편 징계 처분

Ⅰ. 복무규율 위반 ····· 3

1. 초과근무 허위 대리 입력(감봉1월→견책) ····· 5
2.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견책→기각) ····· 9
3. 상습지각 및 무단결근(정직1월→기각) ····· 13
4.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 18
5. 겸직(임대사업) 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 24
6. 근무지 이탈 및 절도행위(해임→기각) ····· 29
7. 근무시간 중 승진공부 등 근무지 이탈(감봉1월→기각) ····· 34
8. 당직근무 태만(감봉1월→기각) ····· 38
9.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위반(견책→기각) ····· 45
10.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 50
11. 근무결략 및 총기관리 소홀(정직3월→정직2월) ····· 54
12. 근무시간 중 헬스클럽 이용(견책→불문경고) ····· 59
13.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감봉1월→불문경고) ····· 64
14. 불법 유사석유 판매(파면→기각) ····· 70

Ⅱ.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 77

15. 선행사례 대상자 허위보고(견책→불문경고) ····· 79
16.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 88
17. 피의자 관리 소홀(감봉1월→견책) ····· 97
18. 수사서류 미작성 등 부적절 사건 처리(감봉2월→견책) ····· 105
19. 운전면허 결격기간 입력 누락(견책→불문경고) ····· 112
20. 교통단속 중 직무상 권한 남용(정직3월→정직1월) ····· 119
21. 출입국 심사 업무 태만(정직2월→감봉2월) ····· 129
22. 음주단속 소홀 및 업무 태만(정직1월→기각) ····· 139
23. 변사사건 업무 처리 소홀(감봉1월→기각) ····· 147
24. 물품구매 업무처리 부적정(견책→기각) ····· 156
25. 순찰근무 중 도박행위 방조(정직1월→감봉2월) ····· 169
26. 세무조사 대상업체 과세 매출 허위보고(감봉1월→기각) ····· 179
27. 미성년자 범죄 노출 사건 처리 태만(견책→기각) ····· 188
28. 검거실적을 위해 허위 보고서 작성(감봉1월→기각) ····· 202
29. 동료 경찰관에 대한 음주측정 미실시(정직3월→기각) ····· 212
3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업무 소홀(견책→기각) ····· 218
31. 담당 과제 처리업무 소홀(감봉1월→기각) ····· 230
32. 수배차량 관련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 238

Ⅲ. 품위손상 ····· 247

33. 직장내 성희롱(정직3월→기각) ····· 249
34. 음주 후 여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해임→강등) ····· 258
35. 부하 직원으로부터 상품권 수령 및 부적절한 처신
(견책→기각) ····· 276
36. 경계강화 근무기간 중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 284
37. 음주 후 택시기사 욕설 및 폭행(감봉1월→기각) ····· 292
38. 음란문자 전송(감봉1월→기각) ····· 304
39. 카지노 출입 위해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행사
(정직3월→기각) ····· 309
40. 직무관련자와 불건전한 이성관계(정직2월→기각) ····· 314
41. 오토바이 절취(정직1월→기각) ····· 323
42.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 성추행(해임→기각) ····· 331
43. 휴대폰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견책→기각, 전보→기각) ····· 339
44. 민원인에게 욕설 등 부적절 처신(견책→불문경고) ····· 347
45. 가정폭력(견책→기각) ····· 354
46. 상급자와 상호간 욕설(견책→불문경고) ····· 361
47.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감봉1월→기각) ····· 368
48.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문자 전송(파면→정직2월) ····· 373
49.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주취 소란 행위(파면→해임) ····· 381
50. 민간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처신(감봉1월→기각) ····· 389
5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임→기각) ····· 394
52. 음주측정 불응(강등→기각) ····· 401

Ⅳ. 금품·향응 수수 ····· 409

53. 승진인사 관련 금품 요구 및 향응 수수
(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 411

54.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정직3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 420

55.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해임→기각) ····· 435

56. 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해임→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 444

57.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비용 및 금품수수(해임→기각) ····· 462

58. 단속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 473

59.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향응 제공
(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 484

60. 인사청탁 및 사건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 496

61. 승진 축하 명목으로 금품수수
(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 504

62. 세무서 감사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및 전달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각하) ····· 514

63. 자녀 면접시험 관련 청탁 및 금품 제공
(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 522

64.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금전차용(정직1월→기각) ···· 530

65. 세무사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 537

Ⅴ. 공금횡령 ····· 545

66.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 547
67. 출장여비 부당수령(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 554
68. 초과근무수당 및 교통급식비 부당수령(정직1월→기각) ····· 564
69. 특근매식비 부당 집행 및 횡령(정직2월→기각) ····· 572
70. 물품구입비 횡령 및 유용
(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 578
71. 허위 영수증으로 출장비 부당수령(정직1월→기각) ····· 585

Ⅵ. 감독책임 ····· 595

72.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사고 감독 소홀(견책→기각) ····· 597
73. 조기퇴근 묵인 및 음주운전사고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 602
74. 부하직원의 성비위 사건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 608
75. 부하직원의 음주단속 업무 감독 소홀(견책→기각) ····· 616
76. 안전사고 감독 소홀(견책→기각) ····· 623
77. 소속 대원의 가혹행위 감독 소홀(견책→취소) ····· 632

제2편 |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78. 종합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소홀(경고→기각) ····· 641
79. 수사과정 중 부적절 언행(경고→취소) ····· 647
80. 구매계약 장비 납품 검수 소홀(불문경고→취소) ····· 657

81. 보고업무 소홀 및 지시명령 위반(주의→기각) ····· 672
82.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 680
83. 시보임용기간 중 성희롱(직권면직→취소) ····· 690
84. 징계처분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 698
85. 법인세 조사업무 처리 소홀(경고→기각) ····· 712
86.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 724

제3편 형식 요건

87.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성과상여금 등급부여→각하) ··· 733
88. 징계절차 하자(감봉1월→취소) ····· 738
89. 징계절차 하자(감봉1월→취소) ····· 744
90. 특별승진 이행 청구(부작위→각하) ····· 753

부 록

761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 관계법령
- 소청심사 현황분석
- 소청심사 통계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 역대 소청심사위원장

제 1 편

징 계 처 분

Ⅰ. 복무규율 위반

1 초과근무 허위 대리 입력(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동료직원으로부터 8시 이전에 출근한 것처럼 'e-사람 시스템'에 등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0회에 걸쳐 허위 등록해 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동료직원은 집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9개월 넘게 요양치료를 받는 재해자로서, 사고 후유증으로 아침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던 사정을 아는 동료로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10여분 앞당겨 등록해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허위 등록 적발 횟수가 1회이고 이에 따른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당수령 금액이 전액 환수되고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징수 된 점,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중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3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1. 5.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우정청 ○○우체국에 근무하는 자로, 동료직원으로부터 08:00 이전에 출근한 것처럼 'e-사람 시스템'에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0회에 걸쳐 출근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준 결과 41,98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동료가 집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9개월 넘게 요양치료를 받는 재해자로 후유증으로 인해 아침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던 사정을 아는 동료로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10여분 앞당겨 등록해 주었을 뿐이지 악의적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5. 1. 23. 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초과근무승인권자에게 관련 금액을 환수 내지 일정기간 초과근무명령 금지를 규정하여 놓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초과근무를 대신하여 등록해 준 자에 대한 징계규정은 찾아 볼 수 없는 바, 동료의 부탁을 받고 출근 기록을 앞당겨 등록해 준 행위를 들어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징계사유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소청인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 언론이 여러 차례 홍보한 사실, 2차례에 걸쳐 우정사업본부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앞으로 공직생활에 반면교사로 삼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15. 1. 23.)에서는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기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정하고 있다.

소청인이 서로 의사연락 하에 약 1개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허위의 초과근무 입력을 하여 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이건 경위에 비추어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고 초과근무 부정 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 건 처분의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의 허위 등록 적발 횟수가 1회이고 이에 따른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총 5시간 41,980원)인 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미 부당수령 금액 전액 환수 및 그 외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당한 점,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중지 처분을 받아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기존 유사한 사례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그 비행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할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견책→기각)

처분요지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헬기 운항이 가능한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에서 ○○대장 및 대원들과 막걸리 5병을 나누어 마신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당일 행사가 ○○대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져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 조직의 단합을 위한 자리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7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로서 근무

시간 중 언제든지 헬기 운항이 가능한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군 제○○비행단 내 위치한 ○○대 구내식당에서 ○○대장 및 대원들과 막걸리 5명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며,

임용 이후 ○○청장 2회, 지방청장 1회, ○○청장 1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근무 중 음주한 비위가 인정되고 경찰관으로서 품위 손상한 비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당일 ○○도 관재 주요 지형 정찰 비행업무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10:00~ 12:00까지 대통령 주요행사로 비행금지가 발효되고, 오후에는 기상이 좋지 않아 15:00에 임무가 취소되어 16:30~17:30까지 ○○대장 주관으로 직원 및 의경대원과 족구를 실시한 후 ○○대 간이식당에서 인화단결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여 ○○대장이 주는 막걸리 한 잔을 받아 마신 것으로, ○○지방경찰청 ○○대에 전입한 후 불과 2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이 주는 술을 처음에는 당직근무 중이라며 거절하였으나 재차 권하여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음주하게 된 것으로,

학군장교(ROTC) 소위로 임관한 이후 군 생활을 포함하여 ○○년 간 공직생활 기간 중 징계처벌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군에서는 ○○총장 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

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청장 표창 2회 등 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살아온 이력이 비추어 볼 때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견책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단 1회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향후 소청인이 승진하여 경찰조직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근무시간 중 음주 사실을 인정하나 당일 행사가 ○○대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조직의 단합을 위한 자리였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과 ○○대 소속 조종사로서 당직-일근-비번의 3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취지가 긴급임무 수행을 위해 주간 2대, 야간 1의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음주가 ○○대장이 주관하는 행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당시 당직근무 중으로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여야 하고, 이후 일근 근무까지 장시간 긴급 출동 등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음주하였고, ○○지방경찰청 ○○대에 전입 후 20일여 밖에 되지 않아 ○○대장이 주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8년 이상 경찰조직에서 근무해 왔고, 이전 근무지인 ○○지방경찰청 ○○대에서는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 만큼

음주행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상습지각 및 무단결근(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주간근무자로 지정되면 07:30부터 순찰근무를 시작해야 하나 2시간 가량 지각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지각 출근하고 1회 무단결근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척추 수술 등 건강이 악화되어 처의 도움을 받느라 출근 준비가 다소 늦어진 점, 갑자기 병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가를 내지 못하고 결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13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역 주간근무자로 지정되어 07:30분부터 순찰근무를

시작해야 하나, 09:12분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09:30경 도착, 2시간 가량 지각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지각 출근하고, ○○역 주간근무로 지정되어 07:30~20:00간 순찰근무를 실시해야 하나 승인 없이 병원 진료 후 무단결근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 출근 및 무단결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처분 사유와 관련한 감찰의 적발에 불만을 갖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서 정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평소 경찰 지휘부에서 '출근시간 준수 및 무단결근은 주변 경찰관들의 기본 근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음주운전을 한 행위보다 더 나쁜 고의범이며 이에 대해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으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년 경 ○○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 중증장애 판정을 받고 계속해서 ○○암에 대한 추적치료 중에 있고, 2015년 ○○암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병간호와 2015년 말경에 ○○암 말기 판정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청구인의 허리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2015년 말경에 척추수술을 받는

등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매일 아침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출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몇 시간 늦어졌고 갑자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병가를 내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수술 후 3개월 안정이 요구되었으나 직장과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지각 출근 및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

본 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2016. 1월에 좌천성 전보인사 조치를 받았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 준비가 다소 늦어져 지각을 한 것과 병가를 내지 못하고 1회 결근을 한 사유가 경찰 순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다른 직장 동료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정도라 볼 수도 없으며, 30년 공직생활 동안 매우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통령 표창 등 수차례 수상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척추 수술 등 건강이 악화되어 처의 도움을 받아 출근 준비가 다소 늦어졌고 갑자기 병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가를 내지 못하고 결근한 것이며, 직장과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출근을 한 것으로, 좌천성 전보 인사조치를 받았음에도 본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건강상의 이유로 처의 도움을 받아 출근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업무

수행에 고충이 있다면 병가, 휴직 또는 인사 고충 상담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전화 한통이면 병가나 휴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함에도 병가 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등을 한 점, 소청인이 출근할 때 버스를 타는 정류장까지 이동하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쉬는 모습 없이 정상인과 다름없이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보행하는 것을 감찰공무원이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척추 수술로 인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에 '특별한 합병증의 병발이나 증상의 악화가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하며 이 기간 동안은 무리한 운동이나 허리를 이용한 과도한 작업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 의견으로 기재되어 출근 준비가 무리한 운동이나 허리를 이용한 과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순찰근무는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안 활동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주간근무 지정일에 상습적인 지각으로 상관의 근무명령은 물론 지시사항인 '출·퇴근 시간대 성폭력 절도 등 예방 검거 활동 등'의 치안 활동에 공백을 초래한 점, 2인 1조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근무체계임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지각과 무단결근이 팀원의 업무과중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출근시간 준수 등 매월 2회 실시되는 직장교육을 받았고 비위행위 중 소속 상관으로부터 1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더욱 복무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총 12회(총 23시간 30분)의 지각 출근과 무단결근 1일을 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 출근 및 무단결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지각과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병가 신청 등 의무 위반 행위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의무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지각과 무단결근이 첩보를 통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근무결략이 확인된 것 이전에도 근무 태만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의 확립 등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처분요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이용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6명을 8회에 걸쳐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수배자 검거 및 피고소인 등의 소재 수사 등 업무 목적으로 조회한 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 및 차량에 대해 조회했다는 이유로 사적 조회로 판단하여 구체적 소명기회 없이 내린 처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13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서 근무 당시, 이전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부여받았던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권한을 이용하여, ○○ 명의의 차량 1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6명에 대해 8회에 걸쳐 사적 조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사유 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으로 조회한 대부분의 건이 업무 목적이었던 점, 소청인에 대한 주변 평가가 양호한 점, 그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처리하는 것 외에 수배자 검거를 위해 수배자, 수배자와 관련된 자들 및 차량에 대한 조회를 ○○계에 근무할 당시 교부받았던 권한으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사실이 있으나, 수배자 검거 및 피고소인 등의 소재 수사 등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지 사적 조회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에도 단순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 및 차량에 대해 조회를 하였으므로 사적 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소명기회 없이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실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 건의 수배자 및 피고소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 및 출석요구를 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으로 사적 조회를 한 사실은 없으며,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사적 조회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례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만약 위 시스템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징계 처분을 받을 일이라면 그 전에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박탈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소청인에게만 사후에 사적 조회의 과오를 물어 견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본건 외에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약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 등 모두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조회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배자 검거 및 피고소인 등의 소재 수사 등 업무 목적임에도 피소청인이 사적 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체적 소명 없이 징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면서 소속 부서 업무시스템이 아닌 이전 교통기능 부서 근무 시 부여받았던 TCS 권한을 사용하여 2015. 3. 13.~2015. 6. 22. 사이에 전산자료 88건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경찰의 전산자료 조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지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조회 목적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그것이 소관 경찰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조회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지방경찰청 '2015년 경찰행정 종합감사'에서 위 사실이 확인되었고, 소청인이 이중 78건에 대해 '수사 사건 관련 혹은 수배자 검거 목적'임을 소명하고 나머지 10건(13회)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자 미소명 자료 10건(13회)에 대해서 징계조치 의견으로 감사결과 보고된 점, ④ 이후 ○○지방경찰청 감찰계는 3회에 걸쳐 소청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위 미소명 자료 10건(13회)에 대한 소청인의 추가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추가로 4건(5회)에 대한 업무 목적 조회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관련 등 조회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6건(8회)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⑤ 2015. 8. 24.~2015. 8. 28. 감사기간 중 1차적으로 소청인에게 TCS 조회의 업무 목적 여부에 대한 소명기회가 있었고, 2015. 9. 30. 감사결과 통보되어 2016. 1. 5. ○○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추가 소명자료 제출, 3차례 진술 기회 등 소청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6건(8회)에 대해서는 조회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부당하게 해명의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침해당했다고도 볼 수 없어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부여된 TCS 권한을 박탈하는 간단한 조치로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에게만 사후적으로 과오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비위 당시 TCS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소관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온라인조회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교통기능이 아닌 수사기능으로 인사 이동하여 업무상 TCS에 접속할 수 없음에도 알 수 없는 오류로 권한이 잔존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행위를 두고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경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경찰 전산정보의 조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근무부서에서 부여받았던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6건에 대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의무위반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의 행위로 인한 정보의 유출이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취급과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겸직(임대사업) 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사전 겸직허가 없이 지상 8층 건물을 인수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하였고, 전 건물주에게 잔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고 급여압류를 당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사기 전과자였던 전 건물주가 계획적으로 대출을 방해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점, 부동산을 처분하여 압류부분을 해결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14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 근무 당시 지상 8층

건물을 인수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누락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 건물주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고, 채권자 2명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급여압류 결정을 당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두 가지 의무위반이 경합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오고 있는 점, 장관 표창 3회,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여 상훈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노모 봉양 및 두 자녀 예능 교육을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투자도 전 건물주의 간절한 요청으로 도와주고자 매매한 것으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쉽게 정리될 거라 생각했으나, 사기 전과자였던 전 건물주가 계획적으로 대출을 방해하고, 사기죄로 소청인을 고소하여 건물이 정상화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압류부분을 해결할 것이나, 임대규모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되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오를 인정하며 20년을 경찰봉사자로 최선을 다해왔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임대규모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되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서는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서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속이 없으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택·상가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성이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등을 말하고,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지상 8층 건물을 매입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일시적인 임대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허가를 신청하여 금지여부를 판단 받았어야 할 사항임이 명백한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건물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고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케 한 점, ② 일련의 비행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이 사전준비가 미비한 채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시작한 것이 본건의 단초가 되었고,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토를 받지 않음으로써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소멸시킨 점, ③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소청인 스스로 인정하듯 성실한 근무자세보다 노모

봉양, 자녀교육에 전념하겠다는 태도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목적·동기로 본건 비위를 일으킨 점, ④ 처분청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봉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두 가지 의무위반이 경합될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되어 가중처분이 가능하나, 소청인의 표창수상 공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훈감경 등을 통해 감봉1월 처분 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처분 징계의결 당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근무지 이탈 및 절도행위(해임→기각)

처분요지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마트에서 무선자동차 1종 등 총 10점, 52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순간의 실수로 절도에 이르게 된 점, 세일 상품이었음에도 정상가격으로 책정하여 절취금액이 증가한 점, 마트 측 직원과 만나기가 어려워 합의가 늦어진 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2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서　　9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사적 목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마트에서 무선 조정 자동차 1점과 타이즈 5점, 운동복 4점 등 총 528천원 상당의 물품의 도난방지 태그를 강제로 제거하고, ○○마트 보안 요원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물품을 숨겨 놓았다가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마트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청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성실답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출근하여 대기실에 있다가 2주 전 ○○축구장에 축구화를 두고 왔던 일이 생각나, 배차순서를 고려했을 때 갑작스러운 업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축구화를 찾으러 간 사실이 있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식사를 해결하고자 평소 자주 가던 ○○마트에 들려 아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 마음에 장난감을 피팅룸으로 가지고 가서 포장을 제거한 채 가방에 넣었으며, 다시 잘못된 욕심으로 ○○매장에서 타이즈 5점, 운동복 4점을 절취하게 되었다.

사건이 있은 후 원만하게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마트 측 담당직원과 연결이 되지 않았고, 지원팀장의 사정으로 만날 수 없었으며, 결국 25일 지나고서야 지원팀장에게 물품대금을 계산하고 합의서를 받게 되었다.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해임으로 처분한 것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절도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둘째를 임신 중이던 아내가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유산하기에 이른 점,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에 이르게 된 점, 세일 상품이었음에도 정상가격으로 책정하여 절취금액이 증가한 점, ○○마트 측 직원과 만나기가 어려워 합의가 늦어진 점, 본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물건을 절취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가액의 과다는 단순 참작사항에 불과하여 본 건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라 볼 수 없으며,

물품을 절취하는 과정도 장난감 및 의류를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행위를 반복한 점, 절도행위를 의심하는 보안요원과 ○○매장 직원에게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왜 도둑놈 취급을 하느냐'고 발언하고 소지품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일련의 행동에서

소청인의 절취행위를 순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실수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트 측에서는 결제만 하면 상황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일주일 정도 기다렸음에도 추후 연락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마트 측과 합의를 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감으로 빨리 사건을 수습하려 했지만 ○○마트 직원과 소통이 어려워 합의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절취 사건 당일에도 근무시간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10:10~16:47 간 사적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고, 당초 목적대로 ○○청에서 ○○축구장으로 이동하여 축구화를 찾았다면 바로 사무실로 복귀함이 마땅함에도 다시 친구를 만나고 ○○마트까지 들른 행적으로 미루어 평소 불량한 근무행태가 상당히 의심되고,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듯하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들의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몇 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근무형태는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각 비위는 1. 성실의 의무 위반, 2. 복종 의무 위반, 3. 직장 이탈 금지 의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각 비위의 유형을 불문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가 적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안으로, 더욱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해당됨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근무시간 중 승진공부 등 근무지 이탈(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근무시간에 당직실에서 승진공부를 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 경찰관들과 내부적 갈등을 빚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승진공부를 위하여 가끔 근무 시간 중 당직실에서 시험공부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동료 B의 배려로 B와 같이 근무할 때에 한하여 자리를 이석한 것이며,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전가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3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자로서,

승진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과 근무 시간 중, 퇴근 전까지 사무실 앞 당직실에서 총 15회에 걸쳐 승진공부를 하는 등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주무 계장은 물론 동료 경찰관들과 내부적 갈등을 빚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상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일근 근무 중 승진공부를 위하여 가끔 근무 시간 중 자리를 이탈한 점에 대하여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번 근무하는 경사 B와 일근 근무를 함께 할 때 시험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B도 진급시험 준비 당시 같은 사무실 직원들의 배려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하며 '특별한 일이 생기면 부를테니 사무실 옆 당직실에서 시험공부를 하라'고 배려해준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이며, 당직실에서 시험공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와 같이 근무할 때에 한하여 자리를 이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인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전가한 적은 없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주무계장 및 동료 경찰관과 내부적 갈등을 빚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닌, C가 소청인과 있었던 갈등을 마치 전 직원들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C의 거짓 투서로 인하여 조직의 갈등 유발자로 낙인찍혔으나,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의무위반이나 징계전력 없이

근무한 점,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발생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심기일전 하여 경찰조직 발전에 이바지할 각오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당직실에서 시험공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와 같이 근무할 때에 한하여 자리를 이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인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전가한 적은 없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주무계장 및 동료 경찰관과 내부적 갈등을 빚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의 승진시험 공부와 관련,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경사 B는 업무가 각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소청인이 당직실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B와 달리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C와 소청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은 명확하며, C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계장 D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간혹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면 소청인이 당직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승진시험 공부를 위한 무단 자리이석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주해』(2006, 법제처, P.250~251)에 따르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서 말하는 '직장'의 범위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간개념이므로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소속 근무 장소를 떠났다면 그 곳이 동일건물 내이든 밖의 다른 장소이든 간에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바, 근무하는 사무실과 불과 1m가량 떨어진 곳에 당직실이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직장을 이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속한 ○○지방경찰청에서도 특별히 '연말연시 승진시험공부를 빙자한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석'을 금하는 공문으로 무단 자리이석에 대한 경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확인한 선임자 및 계장이 당직실에서 더 이상 공부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직실에서 틈틈이 공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 주변동료들에게 다소라도 불편함을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한 내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 소청인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승진공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며, 이를 계기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당직근무 태만(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공휴일 당직 근무를 하면서 112신고를 통보받고도 현장 수색을 결략하는 등 실종사건 처리 업무 및 당직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당직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사건은 비긴급 사안으로 수색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5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로서, 당직근무는 경찰서 방범, 화재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며, 비상

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휴일 24시간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1일, 평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에 휴무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의심 신고사건을 112상황실로부터 통보받고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요구조자의 인상착의 및 타고 간 차량번호 등만 112상황실에 통보 한 후 같은 날 02:30경 다시 숙직실에 들어가 휴게를 취함으로 인하여 현장수색 결략 등 실종 사건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평소 솔선수범하며 가출 및 실종사건의 대부분을 접수받아 처리해 왔던 점, 2016년도 승진후보자로서 경찰 입문 이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초동조치 등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타부서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균형이 맞지가 아니하고, 특히 같은 팀원들에 대한 견책 처분에 비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112지령실과 협조하여 지령사항을 확인 통보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음에도 소청인 대한 감봉 처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경찰에 입문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고, ○○지방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당직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건은 비긴급사안으로 수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팀은 성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관련 수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로 소청인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당직근무를 지정 받아 근무를 하였는데, 같은 날 23:00~00:00경 사이에 팀원 모두 숙직실 또는 휴게실에 들어가 각자 취침을 하던 중,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부터 ○○팀 사무실로 전화가 와, 이를 받은 소청인은 관내에 자살의심 실종 사건이 112신고로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112상황실로 가서 112신고처리 내역서 출력하여 사무실로 돌아와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자살 의심이 드는 요구조자의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들었고, 요구조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요구조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요구조자의 차량 및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다시 112상황실에 통보한 후 다시 숙직실로 돌아와 계속해서 취침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직근무 및 실종 사건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7조가 정하는 복종의 의무를 어기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03호) 제2조에 의하면 '상시근무'는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라고 규정하고, '대기'라 함은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소청인 주장과 같이 당직근무가 위에서 정하는 '대기'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휴게'와 구분되는 것이며, 이 사건 ○○팀 근무 지정이나 근무계획서 기재에 의하면 당직 근무 시 휴게 부여 시간을 식사시간(중식 1시간, 조·석식 30분)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직근무 시간에 숙직실, 휴게실 등에서 수면을 취한 행위는 '휴게'에 해당되는 것이지,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기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소청인은 이 사건 당직근무 당시 보안관리 등 일반적 당직 업무 외에 ○○팀 소속으로 실종 사건처리 등 그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상, 같은 분직 인원이 2인 이상으로 교대가 가능하여 당직(분직)근무 중 교대를 취하며 근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찾을 수 없으나, 당직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팀원들 내부적으로 교대에 기한 휴게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팀원 전원이 사무실도 아닌 휴게실 등에서 취침한 행위를 두고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내부 지침인 「가정폭력, 실종사건 현장 출동 지침」이나 「○○수사팀 개선 운영지침」등에 의하면 '자살이 의심되는 실종(가출인) 등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실종(가출)자의 생명, 신체 위험 요인이 증가되는 경우'에 주무부서인 ○○팀으로서는 1순위 혹은 필수적으로 현장

출동 및 수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112신고자는 자신의 부친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전송한 채, 연락두절 되어 부친의 자살이 염려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기재를 살펴보아도 요구조자의 구조대상 구분란에 '자살기도'라고 적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 역시 위 신고자와 전화통화로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 요구조자와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요구조자의 행방과 소재가 불명확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비록 112신고가 비교적 긴급성이 덜한 code2로 하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종 사건을 처리를 고유의 업무로 수행하는 ○○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요구조자의 자살이 의심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즉시 현장을 출동하여 수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어떠한 조치 없이 취침 등 휴게를 취하였고, 소청인이 비록 112상황실에서 요구조자의 정보를 알려주었으나 그 외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팀 소속으로 부여된 공동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가 정하는 복종의 의무를 어기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구체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그 재산의 보호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된다. 그러함에도 소청인은 ○○경찰서 ○○팀 직원으로서 실종 수사를 고유의 직무로 하고 있음에도 자살의심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출동하여 실종자를 수색하는 등 피해발생을 막아야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특히 소청인은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위 사건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상급자 내지 같은 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독자적 판단으로 현장출동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이는 다른 팀원들과 정상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② 소청인의 안이한 대응으로 실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색 등 현장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국 실종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여러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이 이미 참작되어 이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지연처리·보고, 보고결략)의 경우 '의무위반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라고 본다면 '감봉-견책' 징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형평과 징계양정기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위반(견책→기각)

처분요지

경위 B를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 담당자인 경위 C에게 안내하여, B가 C를 상대로 부정한 사건청탁을 하여 두 사람 모두 파면조치 및 사법처리 결과가 발생하게 하는 등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단순히 사건 담당자를 알려주었을 뿐인 점, B와 C가 서로 알게 되어 부정한 청탁으로 연결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33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직원 간 사건관련 문의 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문의하여야 한다'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찰대 경위 B로부터 '○○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건'의 담당자 소개를 부탁 받고 경찰서를 방문한 B를 사건담당인 ○○과 경위 C에게 안내하여 결과적으로 B가 C를 상대로 한 부정한 사건청탁을 함으로써 B와 C가 모두 파면조치 및 사법처리 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에 따른 상훈 감경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를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청 ○○대 B 경위가 부정유류 공급 내사사건 담당자가 소청인이 맞는지 질문하여, 함께 근무하는 경위 C가 담당자라고 말하였을 뿐 더 이상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문의를 받은 바 없고,

경위 B가 ○○경찰서로 찾아 와 경위 C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몇 층이냐고 전화로 물어보고 사무실로 찾아 와서, 직접 명패를 확인한 후 경위 C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하자, 경위 C도 경위 B에게 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경위 B로부터 경위 C의 소개 및 사무실 방문에 대한 안내를 부탁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경위 B에게 사건 담당자를 알려주었을 뿐인데도 경위 B와 경위 C가 서로 알게 되어 사건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연결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위 B에게 부정유류 공급 내사사건 담당자가 경위 C라고 이야기 해 주었을 뿐, 그 이상의 사건 관련문의를 받은 바 없고, 다음 날 경위 B가 직접 경위 C를 찾아 와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인들 간 소개 내지 사무실 방문 등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소청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 시달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에 따르면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 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 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바,

위 지침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경위 B는 피의자 신문조서(○○지검) 작성 시, "A를 만나서 경위 C를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했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위 C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경위 B는 소청인과 헤어진 직후 소청인에게 'A야, 미안하다. 갑자기 만나자 해서 부담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친척 일이라 모른 척 할 수 없는 내 맘 좀만 이해해 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③ 단순히 사건 담당자를 확인한 사안에 대하여 사과 내지

양해의 취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경위 B가 소청인에게 불리할 만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경위 B가 사건담당자인 경위 C를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포함하여 소청인과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후 소청인이 부담감을 느낄 것을 우려하여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 ④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경위 C에게 경위 B가 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방문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경위 C에게 경위 B가 찾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언질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고, 바로 다음날 등 2회에 걸쳐 그간 일면식도 없던 경위 C와 경위 B가 소청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이 둘의 만남 내지 관계형성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⑤ 소청인은 갑자기 경위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관련 사건의 담당자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경위 B는 사건 담당자가 경위 C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날, 직접 사무실로 찾아 와서 경위 C와 명함을 교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이후 위 두 사람과 저녁 식사 2회에 동석한 사실에 비추어 소청인이 경위 B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내부직원 간 사건관련 문의 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문의하여야 한다.'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청문감사관실로 사건청탁 신고를 해야 마땅하나 이를 간과하여 누락하였고, 그러하지 못한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내부 지침이 특별히 불합리 하거나 이를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사정을 찾을 수가 없다면,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위 지침에 비추어 보건 대,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위 B가 경위 C의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온 일련의 과정과 당시 경위 B는 ○○경찰대 소속으로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년간 수사경력이 있는 소청인이라면 경위 B가 석유사업법 관련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하였으리라 예상 됨에도 경위 B의 요청을 단순히 수사관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수준 정도의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설사, 수사관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관행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규정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고 근절해야 할 대상일 뿐 이를 이유로 소청인의 잘못을 합리화 하거나 면책 시킬 수는 없는 점, ③ 피소청인 측에서도 소청인과 경위 B 간 메신저로 송수신한 내용이 이미 삭제되어 그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경위 B가 외부로 유출한 내용 또한 소청인이 전송한 것인지 경위 C가 전송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사실 즉,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경위 B에게 사건 자료를 임의로 전송한 비위에 대한 책임만을 묻게 된 과정을 종합할 때,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처분요지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본인 명의 금융채무 4건, 자동차 1건 등 총 5건(114,480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시 실수로 '변동액'에 일부금액(총액의 3.9%)의 입력을 누락한 점, 변동보완 시 이를 정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38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직자 윤리법 제12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번 신고가 소청인의 10번째 재산신고인 점, 재산을 실수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난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시 채무에 대하여 '변동사유'에는 변동사항과 변동금액까지 자세히 명기하였으나, 실수로 '변동액'에 일부금액(총액의 3.9%)의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변동보완 시 이를 정정하였으며, 또한 소유차량의 번호판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차량번호가 바뀌었으나 전산처리되어 동일한 차량으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다소 조심스럽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나, 단 한 번의 단순실수에 의한 누락이므로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되고,

○○교도소는 신설기관으로 개청 등 업무과중으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했던 점, 10년 이상 교정시설에 근무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교정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채무에 대하여 '변동사유'에는 변동사항과 변동금액까지 자세히 명기하였으나, 실수로 '변동액'에 일부금액의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변동보완 신고 시 이를 정정하였으며, 또한 차량의 번호판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전산 처리되어 동일한 차량으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단 한 번의 단순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금융채무 등 총 5건, 114,480천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이미 재산신고를 10회 실시한 경험이 있고, 직전년도 기준 신고서 심사 시에도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2014.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에서 소청인이 '변동사유'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였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그 주장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가중 처분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후 오류 사항을 정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심사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 된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후속 절차이므로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살필 수 있는 비위 후 정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10회에 걸친 재산등록 경험이 있고, 이 건 이전에도 동일한 비위를 저질러 경고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중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과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원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근무결략 및 총기관리 소홀(정직3월→정직2월)

처분요지

교통거점 및 112순찰 근무를 지정받고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파출소 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며 근무를 결략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38권총을 착용하지 않고 간이 무기고에 입고해 두는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CCTV 영상을 증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인 점, 기본근무 등을 결략한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의도적으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점, 허리 장애로 인해 38권총을 휴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추간판 장애로 인해 38권총을 착용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해 민원 등 파생적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402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6. 24.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면 소재 ○○교차로 교통거점 및 순○○호 112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정된 근무를 결략하고 파출소 내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112종합상황실로부터 ○○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 출동지령(6회)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는 등 총 6회에 걸쳐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파출소 야간 합동근무의 경우, 상황근무자 부재 시 소내 38권총 보관 금지 원칙에 따라 근무자는 38권총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6회에 걸쳐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38권총을 착용하지 않고 ○○파출소 간이 무기고에 입고해 두는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자신의 안일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저장장치인 ○○파출소 내 CCTV설치 목적은 '시설의 안전'임에도,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 목적인 '시설의 안전'과 무관하게 근태 확인 및 징계 사유 적발을 위해서 CCTV 영상을 징계처분의 사유로 사용한 바, 이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함께 근무한 동료 B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불가피하게 변사사건 현장출동을 하지 못한 것이며, 특히 소청인의 허리 추간판 장애로 인하여 허리에 지나친 하중이 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38권총을 휴대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서와 같은 시골에서는 치안수요가 거의 없어 권총 발포 등의 강력 대처가 필요한 사건이 없어 다소 안일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기본근무 등을 결략한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의도적으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며, 허리 장애로 인해 38권총을 휴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로부터 'CCTV를 보유목적 외 직원 근태 감독 등으로 사용금지 지시' 공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기본 근무를 결략한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 없고, 본건 CCTV 영상 증거

자료와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지방검찰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문감사관이 감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를 할 수 있으며, CCTV 영상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로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차로 교통거점 및 순○○호 112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파출소 내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근무를 결략하였고,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 B의 행동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과, 야간근무를 하면서 접수된 112신고사건 2건에 대해 출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결략한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적·습관적인 근무태만이 행해져 온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상습적으로 기본근무를 결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야간근무 시 38권총 착용 지시를 무시하고 총 6회의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38권총을 한 번도 착용하지 않고 ○○파출소 간이 무기고에 입고해 두는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나, 허리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추간판 장애로 인해 착용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기본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원활한 치안수요 대응을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성실히 근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약 1개월간 의무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직무 태만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며,

과거 근무결략 등으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또 다시 근무결략뿐만 아니라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까지 저지른 바,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야간근무 시 38권총을 착용하지 못한 사유가 소청인의 허리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추간판 장애로 인해 38권총을 착용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해 민원 등 파생적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함께 근무한 B의 징계처분 정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2 근무시간 중 헬스클럽 이용(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근무시간 중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월 1~2회씩 약 10회 가량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근무 중에 헬스클럽을 이용 회수가 감찰 조사 당시 진술한 10회 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밤샘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특히 남파간첩들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51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7. 2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지방경찰청 ○○수사대 근무 당시 ○○헬스장에서 운동 후 귀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월경부터 2016. 6. 15.까지 근무시간 중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월 1~2회씩 약 10회 가량 위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2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오면서 ○○청장 표창 ○회 등 총 21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방경찰청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총 8명을 검거하여 2016년 ○○봉사상 忠常에 추천되는 등 2014년 및 2015년 공안사범 검거실적 우수로 경찰청에 특진을 상신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보안수사 업무 특성상 잠복·미행 등 보안활동과 잦은 지방출장 등 야간 심야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시에 출근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오후가 되면 피곤함을 느껴 누적된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 가끔 월 1회 정도 헬스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는 정도였고, 이는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 보안수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그 정확한 횟수를 알 수 없어 약 10회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헬스클럽을 이용한 것은 이보다 적을 것이며,

자기관리가 국가에 충성하고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서 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운동시설과 열악한 샤워시설을 만회하고자 ○○수사대 사무실 부근 '○○헬스'에 등록하여 주로 업무를 마친 후 주 1~2회 정도 운동을 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닌 누적된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하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치안서비스로 보답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음에도 인사조치 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지방출장은 물론 밤샘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였고 지금까지 보안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특히 남파 간첩들을 검거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그동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2회, ○○총장 표창 1회 등 모두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근무 중에 헬스클럽을 이용 회수가 감찰 조사 당시 진술한 10회 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총 6회에 걸쳐 ○○헬스클럽이 소재하는 건물에 근무시간 중에 출입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는 점,

③ 감찰 조사 당시에 ○○수사대에 근무하면서 2015. 8.경 ○○헬스클럽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근무시간 중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월 1~2회 총 10회 가량 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2015. 1.부터 최근까지 주 1~2회씩 오후 시간대에 ○○헬스클럽을 찾아와 약 2시간씩 운동을 했다고 진술하는 헬스클럽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횟수가 10회 이하라는 주장을 인정하여 비위사실을 일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완전히 면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보안수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무시간에 헬스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평소 공직자로서 자신의 관리를 엄중히 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견책 정도의 책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지금까지 보안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특히 남파간첩들을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2회, ○○총장 표창 1회 등 모두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로 전보 조치되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감봉1월→불문경고)

처분요지

약 11개월 동안 ㅇㅇ게임랜드 업주와 139회 통화, 10여 차례 접촉하고, 관련자가 게임장 업주임을 알았음에도 대상업소 관계자 접촉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관련자가 불법게임장 업주임을 몰랐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처사가 전혀 없었던 점, 구체적인 사후 신고기한을 몰라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이 관련자를 당초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대상업소와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비위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68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9. 1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침에 따라 대상업소 업주와 접촉 시 사전 또는 사후에 접촉 사실을 신고대장 또는 풍속업무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함에도 ○○게임랜드 실업주를 2013년 말경 지인(건설업자)으로부터 체육관 운영자로 소개받아 알게 되어 약 11개월 동안 관련자와 139회 통화 및 10여 차례 접촉하였고, 관련자가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대상업소 관계자 접촉 사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년 말경 소청인의 지인(건설업자)으로부터 관련자를 같은 동네에서 헬스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후 선·후배 관계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인간관계로 만난 것으로, 2015년부터 관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약 10차례 만난 사실이 있었으나 관련자가 오락실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소청인이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처사가 전혀 없었다.

2016년 3월 말경 관련자가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후 구체적인 사후 신고기한을 몰라 사후에 접촉 사실을 신고대장 또는 풍속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징계처분이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36),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침(경찰청, 2010.12.20.)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공무원에게 과거에 수사대상 업소의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구체적인 유착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위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유착 비위로 간주해 처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찰관으로서 대상업소 접촉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경정 C는 소청인과 비위양상이 유사함에도 소청인이 '감봉1월' 처분 받은 것과 달리 ○○청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평성을 잃은 처분인 점, 경찰에 입직 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21회의 표창을 받고 마약사범 검거실적 등으로 다수 언론 보도된 점, 2016년에는 ○○상 특진대상자까지 선정되었다가 금번 징계 건으로 특진 대상에서 탈락되고 징계처분 이후 문책성 인사로 외딴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동료직원과 소청인 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① 2013. 말경부터 2016. 3. 말까지 관련자가 불법게임장 업주임을 몰랐고, ②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③ 2016. 3. 말경에야 관련자가 불법게임장 업주임을 알았으나 구체적인 사후 신고기한을 몰라 사후에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④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소청인과 동일한 비위로 '견책' 처분 받은 경정 C와 비교할 때, 소청인의 '감봉1월'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인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관련자와 약 11개월 간 총 139회, 즉 평균 주 3회 통화한 것으로 볼 때 관련자와 상당히 두터운 친분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관련자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우나, 관련자가 미 검거된 상황에서 통화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② 소청인의 부서인 ○○대에서 관련자 관련하여 취급한 사건이 없고, ○○게임랜드 불법영업 관련 112신고 미 단속 건은 총 13회로 해당 기간에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이 경찰전산망을 통해 관련자에 대해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게임장 단속을 하는 단속 경찰관들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③ 2016. 3월 말경에야 관련자가 대상업소 업주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감찰조사 개시일인 2016. 5월까지 대상업소 관계자 접촉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1구합4336)은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는 부당하다고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 승소한 것으로, 이후 항소로 서울고등법원(2011누34278)에서 경찰단속대상 업주와 통화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는 등 최종 판결이 뒤집힌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관련자와 139회 통화한 것을 사후 신고하지 않아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봉1월' 처분 받은 이후, 경정 C는 관련자와 130회 통화한 것을 사후 신고하지 않아 ○○청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의결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한 비위임을 고려할 때,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경찰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 대상업소와는 그 경위와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접촉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이 사건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대상업소 실업주인 관련자와 총 139회 통화 및 10여 차례 접촉한 점, 관련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관련자가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라도 대상업소 접촉 신고를 해야 함에도 감찰조사가 시작되는 40여 일 동안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경찰 단속대상 업소 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유착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위 지시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관련자를 당초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대상업소와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과 유사한 비위로 '견책' 처분 받은 경정 C와 비교할 때 소청인의 '감봉1월' 처분은 다소 과한 점, 그동안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21회의 표창을 받고 마약사범 검거실적 등, 특히 2016년에는 ○○상 특진대상자까지 확정되었다가 금번 건으로 특진 대상에서 탈락되고 징계처분 이후 문책성 인사로 외딴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동료직원과 소청인 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징계위원회 및 심사 시 소청인이 관련자가 게임장 업소임을 알고 난 후에 접촉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4 불법 유사석유 판매(파면→기각)

처분요지

동생들과 함께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5억2천5백만원 상당(총 455회, 679,005.8리터)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며, 판매원이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청탁전화를 하고 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유사석유 판매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부인하고 있는 점,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4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 중인 자로서,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소청인은 둘째 동생 B와 함께 ○○구 ○○동에서 셋째 동생 C, 바지사장 D 등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에 경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E를 위 ○○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내세워 가짜석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유의 재고 관리, 장부 작성 등 주유소 영업 전반을 담당하게 하고 여동생 F는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일지 작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2014. 봄에서 여름경 ○○경찰서 형사계 근무 시 경사 K 등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어 G를 가짜석유 판매원으로 둘째 동생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G, H, I, J에게 가짜석유 판매를 하게 한 후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총 455회에 걸쳐 시가 5억 25,054,260원 상당의 가짜석유 679,005.8리터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나. 공무상 비밀 누설

소청인은 ○○시 ○○구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G가 25톤 덤프트럭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동생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속경찰관에게 단속무마 전화 청탁을 하였고, 같은 날 야간근무 출근 후 ○○지구대 내 책상 위에 비치된 참고철을 확인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B에게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사진을 알려주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친동생들과 공모하여 수년에 걸쳐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방조, 동조한 뒤 가짜석유 판매상이 단속되자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준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로 중징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행위가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유사석유 판매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부인하였음에도 이 부분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에 투신하여 파출소와 형사·수사부서에 주로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를 많이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그 공로로 ○○청장 표창 1회 등 28회의 표창을 받았고, 이 건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팔순의 부모님과 처자식 등 6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파면으로 실직될 경우 생계가 막막한 점, 타 기관이나 다른 직원들의 비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며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징계사유 중 유사석유 판매 부분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은 본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되는 비위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공소사실, 즉 '소청인이 동생 B 등과 가짜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으며, 단속되는 경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차종 및 색깔을 확인하여 B에게 알려줌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수사 및 향후에 추가로 있을 수 있는 제보자의 신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G 등 판매책들이 B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5억 25,054,260원 상당의 가짜석유 679,005.8리터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B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고,

○○지방법원은 소청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각각 인정하여 소청인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3억 30,169,330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소청인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는 바,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의 공소제기의 바탕이 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법원에서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증거에 따라 소청인의 위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서 인정된 사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청인이 동생 B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인 만류나 제지 없이 주유소 운영에 약 4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한 점, 소청인이 G를 ○○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생에게 소개시켰고 G가 가짜석유판매로 단속되었을 때 단속경찰관에게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 전화를 했던 점, 이후 수사서류를 확인하여 위 G 단속 시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동생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 검찰 수사과정에 소청인의 휴대전화 기록 중 '장부를 없애라, 컴퓨터 자료를 지워라' 등의 기록과 소청인이 형제들과 모여 유사석유 판매 대금 중 미수금에 대해 회의한 정황이나 종업원 퇴근 여부 확인 및 주유소 수익금을 현금으로 가져간 적이 있다는 사실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이 사건 유사석유 판매 행위의 공동정범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도 확인된 것만 시가 5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그 과정에 가짜석유 판매책이 단속되자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법원에서 소청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추징금이 각 확정되었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에 비난 보도됨으로써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Ⅱ.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15 선행사례 대상자 허위보고(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순경 D가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예방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후배 직원을 위하는 선의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보고 후 즉시 삭제 조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관련자 C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소청인이 실제로 기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개인적 이득이나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다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을 이루고자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13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3.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1. 14. 10:15경 ○○도 ○○시 ○○동 소재 ○○은행 앞 노상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지방경찰청 ○○의경대 상경 B 외 3명이 관련자 C(80세, 남)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송금하려던 다액(4천9백만원)을 송금하지 못하게 우선 조치한 것을 당시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순경 D(31세, 여)가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예방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보고하는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소청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은행에서 관련자 C를 만나 송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치안센터에서 C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귀가 조치한 사실 및 발신지 전화번호를 경찰서 ○○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구대 복귀 후 당시 상황근무자 순경 D가 팀 막내로서 다른 팀원들을 위해 고생하고 표창점수도 부족한 사실을 알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순경 D가 민원인과 전화통화 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인근 순찰차량을 현장으로 출동조치하여 피해를 예방했다는 내용으로 ‘○○서,

책임을 다한 믿음직한 경찰관 발굴 보고' 제하의 선행사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등 비위가 명백하고 중하여 징계의결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복무에 전념하였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2005년도 경찰의 날 ○○청장 정기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를 감안하여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 14. 당시 ○○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경위 E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10:14경 ○○시 ○○동 소재 ○○은행 교차로에서 교통관리 중이던 ○○의경대 대원 상경 B가 ○○지구대를 무전 호출하여 'F'라는 사람이 경찰관이 맞는지를 묻자 10:15경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그런 직원이 없다"라고 답변하며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 출동을 지시함에 따라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도착 후 관련자 C가 아직 계좌이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0:22경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역전치안센터로 피해자를 임의 동행하여 진술내용을 들은 후 C가 후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화를 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귀가 조치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였다.

같은 날 11:45경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로 복귀

하였고, 소청인이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예방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선행을 작성하려니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였고, 당시 무전을 통해 신임직원인 순경 D의 목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순경 D를 선행 경찰관으로 하는 '○○서, 책임을 다한 믿음직한 경찰관 발굴 보고'를 작성하였다. 당시 D와 식사시간이 엇갈려 피해자와의 통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실, ○○과 ○○계, ○○과 ○○계 등의 부서에 경찰청 통합포털시스템 메신저로 발송하였고, 이후 순찰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보고서가 의경 대원의 진술과 다소 다르다는 경찰서 ○○계장의 전화를 받은 ○○지구대장 경감 G가 순경 D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인지하였고, 관리요원 경사 H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소청인 역시 ○○실에 보고서 삭제를 요청하고 파쇄하였으며, 소청인이 보고서를 발송한 후 16분 후 회수 조치하였기 때문에 부서장인 해당 과장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일보에 보도된 경위는, ○○ 경찰서 ○○계 경위 I가 소청인이 보낸 보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계에서 수정한 보고서와 함께 ○○신문 기자에 의해 보도된 것이다.

소청인은 당시 시보 순경 D의 멘토로서 신임 직원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D의 이름으로 선행미담 사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며, 표창을 챙겨주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며,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고한 것은, 경찰홍보 매뉴얼에 따라 범죄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주거나 선행미담사례를 통해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메신저로 발송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선행미담보고서는 경찰관 개개인이 해당기능에 보고한 후 사후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재 없이 메신저로 발송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순경 D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해자와 D가 전화통화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보고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왔던 관행으로 말미암아 순경 D의 이름으로 선행미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점, 이 사건 보고서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발송한 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발송된 자료를 즉시 삭제 요청하여 해당 부서장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도록 한 점, 기존의 소청결정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이유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여 다툼은 없으나 사건 경위 즉, 후배 직원을 위하는 선의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보고 후 즉시 삭제 조치를 한 것 등을 참작할 때 처분이 과중하며, 기타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2016. 1. 14. 순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하던 중 10:14경 ○○시 ○○동 소재 ○○은행 교차로에서 교통관리 중이던 의경대 대원 상경 B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현장에 대하여 조치하고 이를 제보한 것을 기화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부터 현장 출동 지시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후 위 보이스피싱 관련자 C가 아직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전화사기 피해를 당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 한 후, 10:22경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역전치안센터로 피해자를 임의 동행하여 진술내용을 들은 후 C가 후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화를 받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예방 교육을 하였다.

나) 소청인은 같은 날 11:45경 위 ○○지구대 사무실로 복귀하여, '○○서, 책임을 다한 믿음직한 경찰관 발굴 보고'라는 표제 하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위 관련자 C와 전화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것을 만류하며 보이스피싱을 의심, 순찰차를 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청인은 같은 날 위 보고서를 경찰청 통합포털메신저를 통해 ○○경찰서 ○○실, ○○과 ○○계, ○○과 ○○계에 발송하였는바, ○○과는 위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순경 D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였다가 공적이 사실이 아님이 문제가 되자 취소하였다. 한편 ○○경찰서 ○○과는 위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여 ○○지구대에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보고서가 유출되어 ○○일보에 보도가 되었다. 또한 ○○경찰서 ○○실은 위 보고 내용과 달리 사실 확인을 통하여 상경 B 외 3명을 선행 경찰관으로 ○○지방경찰청에

보고 하였다.

라) 소청인은 위와 같은 소위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건 징계에 이르렀고, 그 감찰 과정에서 비위를 범한 동기에 대해 '어떨 땐 표창이나 장려장 등이 내려와 이번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경찰청에서는 특별승진과 더불어 표창 등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표창 등 포상은 경찰공무원 개인의 공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인의 공적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행위를 두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에 따라 거짓 보고 등을 금지한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위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후배 직원을 위하는 선의라 할지라도 허위의 문건 작성 및 보고 행위를 하여야 할 현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자신의 선행을 순경 D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112종합상황실의 지령에 따라 출동한 후 관련자 C를 설득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초기 대응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바가 없고, 위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과정에서도 소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순경 D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상당 부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지도 않은 상황을 적극적

으로 구성하여 작성한 데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메신저를 통해 타 과에 보고한 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서 ○○지구대장 및 소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소청인은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보고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후 경찰청 통합포털시스템을 통해 타 부서에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공적이 없는 순경 D가 표창을 받고 외부로 유출되어 비난성 기사가 언론 보도되는 등의 상황의 원인이 된 만큼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허위보고의 비위가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청인이 관련자 C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실제로 기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개인적 이득이나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다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을 이루고자 이건 비행에 이르

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허위 문서 작성 비위로 소청인의 일반적 직무인 수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였다던가, 부여된 구체적 직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비위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타 부서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것이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고서를 보고하는 등 치밀하지 못한 이 사건 비행의 소위를 볼 때, 후배 경찰공무원을 챙기려는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경청할 여지가 있는 점, 소청심사 시 진술 및 태도로 보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은 다소 무거워 그 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6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실제 뉴스레터 발송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신문사에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교부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그간의 인상요인을 감안하고 서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단가인상을 승인한 점, 사업자가 실적을 부풀리고 보조금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19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2. 6. 11.~2015. 7. 10.까지 ○○청 ○○국 ○○과의

‘○○정보콘텐츠 제공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에 2013년~2014년 간 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이미 뉴스레터 발송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가. 신문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3년 ○○정보제공 사업계획에 뉴스레터 발송을 과업에 포함하여 15백만 원이 부당하게 교부되도록 하였고,

나. 2014년 ‘○○정보콘텐츠 업로드 업무’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적용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존 적용단가로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1억 원을 교부하여 4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교부되게 하였고,

다. 2013년도 사업을 정산하면서 신문사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콘텐츠 업로드 건수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 없이 국고보조금을 확정하여 실적 미달 2,398만 원에 대한 정산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할 때,지난 6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표창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국고보조금 부당 교부

2013년 소청인이 ○○정보콘텐츠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메일링 서비스를 과업에 포함한 이유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발송하는 뉴스레터가 있었지만 현 정부 출범 시 중소기업 수출확대가 공약과제 및 국정목표로 설정되고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중소기업들이 무역에 대한 정보부족을 수출애로로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참여기업의 애로 해소 및 양질의 정보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보를 ○○사업 참여기업에 개별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정보 전달력이 높아지고 수출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며 감사원이 지적한 ○○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와 2013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한 ○○정보 메일링 서비스는 동일하지 않다. 전자는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 웹페이지로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며, 후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만 발송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인데 감사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국고보조금 과다 산정 교부

소청인이 2014년 ○○정보콘텐츠 제공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량을 3,000건 이상으로 하고 사업비를 1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동 사업이 2009년 시작될 당시에는 단가가 2만원이었는데 그간 과업 양 초과달성, 임금 및 물가상승, ○○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에 따른 보이지 않는 과업 양의 증가 등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2013년까지 단가

인상이 없었다. 그런데 2014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 제공으로 1억 원이 책정되었기에 비록 적용단가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인상요인을 감안하고 한중FTA 등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정보, 한중 교역확대에 따른 중국정보 확대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암묵적으로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승인한 것이다.

3) 국고보조금 정산업무 태만

소청인이 2013사업연도 국고보조금에 대해 정산을 부주의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소청인은 2012년 사업을 처음 담당하였는데 보조사업자가 개설한 통장 계좌가 기존 계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2013년 사업을 승인하면서 별도 개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이 교부되자 예전처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 2013년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과업실적을 부풀려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감사원이 계좌를 추적하기 전까지는 담당자로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2013년 사업과 2014년 사업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공무원재직 기간 중 징계사유가 된 ○○과에서 3년을 열심히 일했고 업무유공자로 ○○청장 표창(2012. 12.), 국정과제 유공자로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에서 ○○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금 번을 계기로 새롭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국고보조금 교부업무 부당처리 관련

소청인은 2013년 ○○정보콘텐츠 제공사업에 메일링 서비스를 과업에 포함한 사유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센터 뉴스레터와 신문사의 ○○정보 메일링 서비스는 차이가 있으며, 신문사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년 7월 7일 감사원 감사결과 문답 시, 2014. 4. 22. 기안한 「중소기업 ○○정보 제공 2013년 결과 및 2014년 계획 검토」를 보면 뉴스레터 발송 항목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신문사가 제출한 2013년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뉴스레터 항목이 없었고 2014년 사업계획서에도 없어 별도 검토 없이 제외하였다고 답변하였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 메일링 서비스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면 2013년 사업결과물에 대해 정산을 할 때, 당연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201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어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부주의 했거나 두 뉴스레터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정책적 판단을 통해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센터 뉴스레터와 신문사의 ○○정보 메일링 서비스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소청인은 감사원 감사결과 문답 시, 2013사업연도에 뉴스레터 발송업무 명목으로 1,500만원을 산정하였는데 보조사업자인 신문사가 수행하는 과업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신문사가 뉴스레터 발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과업이 없다고 하고, 소청인이 근무

부서인 ○○과 소속의 ○○센터에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비롯한 각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홈페이지 회원사에 제공하는 발송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소청인이 ○○센터 홈페이지의 자동발송 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위 신문사가 개별기업에 메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센터 뉴스레터와 신문사의 ○○정보 메일링 서비스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센터의 예산편성 및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관으로서 ○○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대통령공약과제이며 국정과제인 위 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담당 사무관과 과장에게 구두보고를 통해 검토하지 않고 ‘온나라’에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려 시행한 것은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국고보조금 과다 산정 교부 관련

소청인은 2014년 ○○사업 추진계획에 무역관련 정보제공으로 1억 원이 책정되었고 2009년에 책정된 단가(20,000원)가 그동안 단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2014년은 한중 교역확대 등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암묵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년 7월 7일 감사원 감사결과 문답 시, 2014사업연도에 무역콘텐츠를 3,000건 이상으로 업로드 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교부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보조금을 전년도와 달리 산정할

근거나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건당 20,000원으로 책정한 근거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4,000만원을 과다 교부한 경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상요인을 명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특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 기초에 대해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를 조사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국고보조금 정산업무 태만 등

소청인은 공약사항 조치, 국정과제 등 바쁜 업무로 인해 보조금 보조사업자가 통장 사본을 위조하고 실적을 허위보고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 기간 중 업무유공자 표창, 대한민국공무원 대상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년 7월 7일 감사원 감사결과 문답 시, 2013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정산업무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사업기간 종료 후 신문사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집행내역 등을 제출받아 무역콘텐츠 업로드 실적이 교부조건(최소 업로드 건수)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실적이 교부조건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고 답변하였는 바,

보조사업자(신문사)가 통장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2013사업연도에 신문사가 계약한 최소 건수가 4,250건 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1,199건이 부족한 업로드 실적(3,051건)에 대해 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자에게 통장 사본 외 거래내역 및 개별 입금증이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받아, 입금증 일련번호 등을 조회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조여부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가장 중요한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업무태만에도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이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이와 부합하게 판단한 사실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편, 소청인이 많은 양의 자료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설령 고의성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소청인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 발생된 사실이 명확하며, 이는 국가보조금 사업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고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수준에 해당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의 징계양정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국고보조금 사업 주무 담당자로서 '○○정보콘텐츠 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인 신문사에 2013년~2014년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2013년 사업에 소청인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확인하지 않고 신문사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실제 뉴스레터 발송업무를 하지 않는 신문사에 15백만 원을 교부한 점, 2014년 무역콘텐츠 업로드 업무에 대한 1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적용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아 기준보다 4천만 원이 더 교부되게 한 점, 2013년 사업 후 보조사업자인 신문사가 제출한 실적보고서가 허위임에도 이를 확인이나 검토 없이 확정하고 실적 미달 2,398만 원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감봉'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뒤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7 피의자 관리 소홀(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동승하여야 함에도 조수석에 앉아 임의동행하여 피의자가 제초제를 음독하게 방치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피의자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임의동행한 것이며,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와 뒷좌석 동승 의무 규정은 없는 점, 응급조치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사건 발생시 동행한 경위 B와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음독사실을 알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위세척에 노력한 점,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23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3. 3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

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2. 8. 09:00~19:00간 112순찰 승무 근무자로서 2015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순찰차량으로 연행 시에는 피의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의자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4:05경 ○○시 ○○읍 ○○리 부근 도로상에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가 "내가 술 먹고 운전했다, 잡아넣어라."라며 소란 피우는 것을 음주측정을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도 소청인은 조수석에 앉아 약 1.5km 떨어진 ○○파출소로 임의 동행 중에 관련자가 약 4회에 걸쳐 제초제를 음독하도록 방치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주취자를 상대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의

직업특성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처리하다 생긴 중과실로 이와 같은 업무태만과 피의자 관리 소홀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관련자 유족이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낸 점 및 그간 수상한 표창, 상훈 등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단순음주 운전자를 피의자로 취급하여 동승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피소청인은 '2015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피의자를 연행할 때에는 경찰관이 피의자 옆에 앉아야 함에도 소청인이 조수석에 앉음으로 피의자가 음독하도록 방치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변사자의 신분이 피의자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임의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음주 운전자에게 순찰차 근무자가 뒷좌석에 동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파출소를 찾아오는 일반 민원인들에게 목적지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뒷좌석에 동승치 않았다 하여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위 지침을 확대 유추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최선을 다한 점을 고려해야 함

사건 당일인 2016. 2. 8.은 설 명절이라 평상시보다 신고도 많은데다가 다른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순찰차 1대에 2명이 업무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 심적 부담감이 컸다. 그런데

14:05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사건(성명 불상의 남성, 119통보함) 지령을 받고 선임자 B 팀장이 운전하는 112순찰차를 타고 당일 14:23경 현장에 도착해 보니,

관련자(변사자 C)가 사건 당일에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정체로 교통이 혼잡하여 ○○소방서 119구조대원이 출동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가 출동한 소청인등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경찰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하여 신병을 인계받았는데, 변사자는 흥분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주가 의심되어 B 팀장이 대화로 안정시킨 다음에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음주경위를 확인하고자 파출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처음엔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지만 진정되어 순순히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된 것이며,

사건 현장과 ○○파출소와의 거리는 1.5km로 2~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변사자도 자해 우려가 없어 보여 당일 14:25경 변사자를 태우고 14:27경 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시키려고 문을 여는 순간, 손에 제초제인 농약병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독한 것으로 추정되어 14:32경 112지령실에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하였지만 사안이 급박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 바로 ○○IC를 통과하여 정체된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하여 14:44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변사자에 대한 위세척을 설득하였는데 듣지 않았다. B 팀장이 변사자 아들과 통화를 하여 가족이 도착하여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변사자의 소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음독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변사자가 나이에 비해 건장한 편이고 인적 등 신분을 묻자 “너 거가 알 것 없다. 모른다.”라고 하고 갓 길 안쪽으로 변사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는 호주머니에 휴대폰만 있었고 잠바 차림으로 인해 외관 상 볼록하게 보이지 않아 의심점이 없어 소지품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상 신체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처분이므로 법률 근거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상위 호주머니까지는 강제적으로 상세히 신체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변사자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징계 등으로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단순음주 운전자를 피의자로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하는지에 관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 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 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0조 제1항에서는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하나,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경찰청 「2015 지역경찰운영지침(경찰청)」에서 112순찰근무자는 범인 연행 시 피의자는 뒷좌석 좌측, 승무자는 우측에 승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 등이 먼저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경찰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여 신병을 인계받을 시, 관련자가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포박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관련자가 흥분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주가 의심되어 B 팀장이 대화로 안정시킨 다음에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음주 경위를 확인하고자 파출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순순히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 등은 관련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었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 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고자 한 것이므로 관련자를 음주운전 피의자로 보고 피의자 옆 좌석에서 동승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소청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가 대상자의 목을 치고 밀고 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뒷좌석에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자가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면서 순순히 순찰차에 탔고, 연세도 많은 분이고,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였고, 동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도 관련자를 음주운전 피의자로 본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스스로 찾아와 교통편의를 부탁하는 일반인과 본 건을 비교하여 동일하므로 동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최선을 다한 점을 고려한지에 관해

○○파출소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고, 일일평균 신고가 2~3건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으로 당시는 설 명절로 다소 신고와 교통량이 많았다고는 하나 시기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격무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으며,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해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임의 동행 하였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피소청기관도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승무자의 업무 역할은 뒷좌석에 동승하여 임의 동행자에 대한 밀착감시로 돌발사황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지 임의동행 피의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소청인은 조수석에 앉아 전방 주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관련자가 순찰차량 내에서 4회에 걸쳐 농약(제초제)을 음독하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청인이 피의자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관련자의 유서 및 유족의 호의적인 편지, 상훈 감경, 평소 소행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지만, 피소청기관의 징계의결 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시항을 받았고 피의자 호송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옆에 동승하지 않고, 피의자 호송 관련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의자가 감시소홀로 호송 도중 제초제를 마셔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호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과 같이 동행한 경위 B와 연대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할 것인데, 경징계인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소청인과 다르게 경위 B는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특히 관련인을 태우고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음독사실을 알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위세척에 노력한 점,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혈액을 채취하도록 한 점, 관련자가 평소 지병과 우울증이 있고 가족과의 불화로 순간적으로 자살을 하려 한 점,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8 수사서류 미작성 등 부적절 사건 처리(감봉2월→견책)

처분요지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죄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압수물건을 임의로 돌려주고 석방시킨 후,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은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고의가 아닌 업무실수에 불과한 점, 지구대 동행 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당연히 훈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직한 후 적극적인 직무수행 의욕을 보이다가 발생한 과실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5-252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4. 15.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 3. 25. 13:38경 ○○시 ○○구 ○○로 앞 노상에서 112 신고상대자(B)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여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관련 물건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현행범 체포 관련 죄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민사관계로 고소하라 설명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B에게 압수한 물건을 임의로 돌려준 후 현행범인 체포서 등 관련 사건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귀가시키는 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 즉시 현행범인 체포서 등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압수물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인으로 인한 체포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처리를 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며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범죄수사규칙 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 지역경찰 운영지침(수사서류의 작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제9조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1) 사건서류 미작성 등 부적절 사건 처리에 대하여

현장출동 시 10여 분간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있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지도 모를 다급한 상황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으며, 지구대 동행 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당연히 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체포된 B에게 사과한 후 화해시키고 고소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또한 당시 물건(쇠파이프)은 압수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요식행위로 가져간 것으로, 결코 고의가 아니고 사건처리 중 업무실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2) 임의동행 거부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하여

징계의결 이유에는 소청인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명시되었으나, 현장출동 후 상호 화해를 시키는 와중에 수십 명의 행인과 상인이 이를 지켜보고 있어 지구대에서 상호 대화를 나누도록 권유한 것이지 특정죄명으로 호칭하며 지구대 동행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나. 참작사항

현행범으로 체포된 B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청인이 징계까지 받게 된 것은 너무하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은 처의 오랜 병으로 채무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한 급여압류로 정직 및 해임처분을 받고 14개월만에 복직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죄가 되지 않는 사건도 사건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랐고, 훈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였으며, 복직을 통해 누구보다 직장의 소중함을 알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당연히 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사건처리 없이 귀가시켰고, 당시 물건(쇠파이프)은 압수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요식행위로 가져간 것이며, 관련자들에게 지구대에서 상호 대화를 나누도록 권유한 것이지 특정죄명으로 호칭하며 지구대 동행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해임처분 후 14개월만에 복직하여 관련내용을 잘 몰랐으며, 복직을 통해 누구보다 직장의 소중함을 알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B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규정 등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 바, 범죄수사규칙 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에서는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에서는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현행범 체포요건에 맞지 않은 잘못된 체포는 상기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 집행하였을 경우에도 철저히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엄중히 보고절차를 밟아 명확히 사실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겨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소청인이 사건을 고의로 묵살할 의도가 아니었고 업무 중 실수라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행위를 이행하였음에도 자의적이고 안일한 판단에 의존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등에 현행범인 체포사실 등에 대해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현행범인체포서 등 아무런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를 임의 석방하는 등 사건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못한 비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식하여 물건(쇠파이프)을 제출받았고,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즉시 돌려주지 않은 채 지구대까지 함께 가져오며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권리행사방해죄' 성립과 관련한 증거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 단순히 확인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청인은 관련자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① 감찰조사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은 '동행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B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체포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경위 B도 감찰조사 진술조서에서 체포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청인의 감찰조사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③ 지구대에서 대화하도록 '권유'했다는 표현은 결국 현장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소청인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행위에 대해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처리했다는 객관적 위법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행위 대상자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엄격히 이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 바, 현행범 체포요건 미비에 따른 잘못된 체포일 지라도 철저히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엄중히 보고절차를 밟아 명확히 사실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겨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현행범인 체포서 등 아무런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를 임의 석방하는 등 고의는 없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 수행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각종 규칙과 지시사항의 실효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인정되나,

당시 당사자들이 격하게 대립하여 폭력행위가 야기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소청인이 이를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2인 1조로 현장에 출동하여 본건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고, 상위직급자로서 사건 처리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경위 B의 경우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유사 징계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본건 비위는 해임처분 후 14개월 만에 복직한 소청인이 보다 적극적인 직무수행 의욕을 보이다가 발생한 과실로 보이고 본건 비위에 대해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 운전면허 결격기간 입력 누락(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피의자 3명에 대해 TCS(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운전면허 결격기간 입력을 누락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단속 경찰관이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오인한 점, 해당 비위로 무면허자의 행정처분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입력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나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누락 사실을 통보 받고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알려 취소 조치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29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4. 2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및 운전면허 행정처리 지침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 기록 자료를 작성하되 법규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단속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TCS(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1) 2014. 8. 23. 10:20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한 피의자 B 사건(접수번호 ○○)을 인수하고도 TCS에 운전면허 결격기간(2014. 8. 23.~2015. 8. 22.) 입력을 누락하여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인 2015. 6. 17.자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2016. 3. 15. 취소), 2) 2014. 8. 15. 09:08경 ○○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한 피의자 C 사건(접수번호 ○○)을 인수하고도 TCS에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입력 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였고,3) 2015. 3. 6. 10:00경 ○○파출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한 피의자 D의 사건(접수번호 ○○)을 인수하고도 TCS에 운전면허 결격기간 입력을 누락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혐의자의 조사내용, 관련 행정처분 자료, 징계위원회 위원의 의견 및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소청인이 직무 태만 확인 소홀이 인정되어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기준), 제8조의2(징계사유의 경합), 제9조(상훈 감경등)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TCS 입력은 단속한 지구대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판단 함

무면허 운전 단속을 지구대 등에서 하는 경우에는 단속한 경찰관이 TCS에 입력을 한 후에 인계하기 때문에 누락된 사건도 TCS 메인 창에 무면허 운전으로 체크되어 당연히 단속경찰관이 입력하여 사건을 인계하였다고 판단하고 소청인은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조사자가 입력한다는 규정은 없다.

나. 무면허 기간 중 재취득한 운전면허증은 취소하여 실제 행정처분상 이익이 발생되지 않음

소청인인 교통조사 담당자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입력이 누락되어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감사결과에 따라 취소처분 하고 피의자는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4. 면허를 재취득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상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

다. 소청인의 성실의무 및 업무태만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임

소청인은 소청인과 같이 행정처분 통보를 누락한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은 데에 비해 소청인은 TCS 입력 누락은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성실 및 업무태만으로 '견책' 처분은 과중한 것이며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TCS 입력 주체에 대하여

소청인은 무면허 운전 단속을 지구대 등에서 하는 경우에는 단속한 경찰관이 TCS에 입력을 한 후에 인계하기 때문에 누락된 사건도 TCS 메인 창에 무면허 운전으로 체크되어 당연히 단속경찰관이 입력하여 사건을 인계하였다고 판단하고 소청인은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조사자가 입력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법규위반(무면허운전 포함) 입력은 단속지 경찰서장등이 단속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의 '단순 무면허 행정처분 전산입력 철저 지시'에서 '교통조사규칙(경찰청 훈령)에는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 및 무면허 결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입력하는 단서가 있지만 단순 무면허 결격입력에 대해서는 부서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결격누락으로 인한 민원야기 사례 늘고 있으므로 단속 부서는 입력을 자주 하지 않고 전담 요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무면허 운전자의 결격 행정처분 전산입력은 처리

부서인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확인하도록'하고 있다.

2) 사실 관계 및 판단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은 본래 다양한 사건에 대해 초동 조치임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부서이고 수시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사건을 최종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반면, 교통조사계는 지구대로부터 받은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주관부서로 본연의 전담 업무인 무면허 운전 사건에 대한 최종적으로 입력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평소 지구대 경찰관이 무면허 단속을 하고 TCS에 결격기간을 입력하여 교통조사부서로 통보한다 하더라도 소청인 소속 교통조사계에서 이를 최종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바, 소청인이 최종 교통조사 담당으로서 무면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입력을 누락시킨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면허 기간 중 재취득한 운전면허증은 취소하여 실제 행정처분상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데 대하여

소청인은 소청인이 교통조사 담당자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입력이 누락되어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감사결과에 따라 취소처분 하고 B가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4. 면허를 재취득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상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결격기간 행정처분 누락 3건 중 2건의 운전자는 스스로 결격기간 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감사적발 시 입력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운전면허 결격기간(2014. 8. 23.~2015. 8. 22.)이 만료되지 않은 B의 경우에는 소청인이 입력을 누락함으로써 결격기간 중인 2015. 6. 17.자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행정상 이익(혜택)을 본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행정에 불신을 초래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B가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4. 면허를 재취득한 것은 결격기간이 지나서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견책처분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는 데 대하여

소청인은 소청인과 같이 행정처분 통보를 누락한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은 데에 비해 소청인의 TCS 입력 누락은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성실 및 업무태만으로 견책 처분은 과중한 것이며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 [별표 1]1. 성실의무위반 '라' 직무태만 의무위반행위에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비행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이 입력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나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누락 사실을 통보 받고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알려 취소절차에 따라

취소 조치를 하는 등 비위 후 정황 또한 나쁘지 아니한 점, TCS시스템 운영상 보완할 부분이 있는 점, 나아가 약 ○○년간 재직하면서 본 건 외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 정

따라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교통단속 중 직무상 권한 남용(정직3월→정직1월)

처분요지

교통단속 중 출발하려는 관련자에 대해 권한을 넘어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교통단속 근무 중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진행방향에서 저지한 점, 당시 관련자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판단 착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에 대한 판단 오인이나 치상 여부에 대한 착오에 관한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당시 상황을 확인한 후 비위를 인정하고 관련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3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1. 13.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11. 4. 09:54경 ○○군 ○○읍 ○○리 소재 ○○ 3거리 노상에서 소청인은 교통단속 근무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한 단말기 서명란에 날인토록 하였으나, 선처를 부탁하던 관련자가 항의하면서 날인을 거부한 채 차량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자가 날인 및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됨에도 소청인은 권한을 넘어 관련자의 차량을 제지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잡고 2~3m 가량을 따라가다 정차한 차량 전면을 가로막았다.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의 차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과 엉덩이 부위 등을 차량으로 충격당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의 흙먼지가 충격한 흔적이라고 착각하고 신중한 확인도 없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로 관련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석방할 때까지 약 5시간 50분가량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아울러, 소청인은 위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관련자가 순순히 지구대까지 동행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행사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경찰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동안 26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권한을 넘어 정차한 차량 정면을 가로막았다는 부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관련자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가져오지 않은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이에 대해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가 이를 거부하여 '날인거부'라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관련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사실은 즉결심판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를 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관련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2~3m 끌려가 정지시킨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전면을 막은 것이다.

2) 권한을 남용하여 관련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은 갑자기 출발한 관련자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2~3m 잡고 끌려가다가 허리가 재껴지며 삐끗하여 허리에 통증이 와서 다리를

절며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 범퍼 부위를 엉덩이 부위로 막았으나 차량이 공회전을 하며 소리를 크게 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차량에 받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의 차량이 후진한 후 다시 소청인이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여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른 발로 위 차량 범퍼 부위를 차며 양손으로 차량 본넷트 부위를 잡고 정지토록 하는 등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 소청인은 정당한 교통단속근무 중 죽음을 생각하는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껴 관련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죄사실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 지구대 사무실까지 연행하여 현행범인체포보고서 작성 시까지 약 20분 가량 머문 후 바로 ○○경찰서 ○○팀에게 인계하였다.

3)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경찰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한편, 소청인은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관련자가 순수히 지구대까지 동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순찰차량에 타지 않고 계속 항거하여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경사 B가 관련자를 강제로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계속 완강히 버텨 도주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오른 손에 채운 후 왼손에 채우려는 순간에 관련자가 순찰차량에 탑승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하여 바로 오른 손에 채웠던 수갑을 풀어 주었던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관련자가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팀에서 채증한 동영상을 보고 자신의 착각임을 알게 되어 관련자에게 피해 없도록 바로 진술을 번복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 관련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사례도 하여 합의한 점,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출석하여 자신의 착오로 관련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여 담당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였고, 소청인도 다음부터는 업무 처리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경고만 받았을 뿐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업무 미숙과 반성하는 글을 ○○경찰서 전 직원에게 전자 메일로 보내는 등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관련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일부러 현행범인 체포가 아닌 당시 상황 판단 잘못으로 과실에 의해 체포한 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2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현재 구순이 넘는 조모와 노부, 처 및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이 사건 비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기 바라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던 중 관련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갑자기 도주하려 한 상태에서 관련자의 인적 사항이 의심스러워 이는 즉결심판 대상이라고 고지하려고 차량 전면을 막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서 위 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경찰관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호위반자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단속경찰관으로서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위한 출석의 일시와 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전까지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여 관련자의 차량 전면을 가로막은 소청인의 행위는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관련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자신의 신분을 밝힘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나 차량운행의 제지 등 경찰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껴 관련자가 자신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고 착각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

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가 ○○경찰서 ○○과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교통단속을 함께 근무한 동료경찰관들은 관련자가 소청인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왜 차로 들이받냐고 말하며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하여 함께 도와서 체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제출된 기록 중 ○○경찰서 ○○과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는 '블랙박스 및 현장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소청인의 진술대로 관련자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소청인의 다리와 엉덩이를 충격하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이 착각하였다고 시인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착각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5시간 50분이 지나서야 석방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관련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약 22년간 경찰관으로서 대부분 파출소 등에서 외근업무 위주로 담당한 근무경력과 유흥업소 단속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2014. 7. 25. 경위로 특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죽을 수도 있다고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관련자가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순순히 동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항거하며 계속 완강히 버텨 도주 및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및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는「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도 같은 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당시 관련자는 소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후 순찰차까지 동행하여 도주할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소청인이 차량에 충격을 받았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인신구속의 일종인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보여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자신의 직권을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에 위배되었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출발하려는 관련자의 차량을 가로 막아 서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신구속에 관한 사안은 인권과 직결되어 경찰관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관련자의 차량에 부딪친 것으로 착각한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관련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는 등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5시간 50분 가량을 불법 체포·구금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책임에 대해서 면피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의 [별표1] 행위자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비위로서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한 비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수준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비록 소청인의 현행범인 체포 행위가 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관련자 역시 소청인과 대립하던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유발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에 대한 판단 오인이나 치상 여부에 대한 착오에 관한 주장을 일견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이 사건 경위로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또한, 소청인이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비위를 인정하고, 관련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거듭 감안한다면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1 출입국 심사 업무 태만(정직2월→감봉2월)

처분요지

출국심사대를 무단통과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항공권, 여권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장을 날인해 주어 무단입국하게 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당시 보안검색요원은 이 사건 ○○인을 일반적인 역이동 승객이라며 인계한 점,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였고 해당 행위가 전례가 없었던 밀입국 방식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밀입국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출국심사대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었던 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직후 해당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359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5. 25.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 ○○과에서 출국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8. 15. ○○출입국관리소 출국장 ○○구역 재심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 날 07:02경 출국 ○○구역 ○○번 출국심사대를 역으로 진입하여 무단 통과하다가 보안요원 B에게 적발된 ○○인을 인계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인의 항공권, 여권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출국 수속 중 사정이 있어 공항 대합실로 나가려고 하는 이른바 '역(逆)이동 승객'으로 생각하고 항공권에 '○○필' 인장을 날인해 주어 위 ○○인이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무단입국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출입국 심사 업무 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할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은 ○○실 직원의 기본 업무인 여권·항공권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송환지시 되었어야 할 이 사건 ○○인이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무단 입국하게 된 점 등을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여권 또는 항공권을 확인하기만 하였으면 이 사건 ○○인이 '역이동 승객'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이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입국한 ○○인이 검거된 점, 2014년 출입국 심사업무 유공으로 ○○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인은 2015. 8. 14. ○○을 출발하고 ○○공항을 경유하는 ○○행 항공권을 구매한 후 사건 전날인 2015. 8. 14. 환승객으로 ○○공항 2층 입국심사장에 도착하였으나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은 후 당초 2016. 8. 16. 09:45 출발 ○○행 탑승권을 2015. 8. 15. 09:00출발 ○○행 탑승권으로 바꿨다.

이후 이 사건 ○○인은 환승구역 3층 ○○구역 ○○번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심사관을 눈을 피해 출국심사대를 역으로 통과하여 출국심사 전 대기공간인 출국장으로 들어왔고, 보안요원에게 대합실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보안요원은 출국을 위해 출국장으로 들어왔다가 대합실로 되돌아가려는 일반적인 역이동 외국인으로 생각하여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로 인계한 것이다.

소청인은 평상시 업무처리 방식대로 이 사건 ○○인의 여권과 탑승권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조회하였으나 출국심사를 받은 기록 및 출국심사대 등에서 재심으로 인계한 재심인계대장 상 등재 사실이 없었으므로 보안검색 단계에서 대합실로 되돌아가려는 '출국심사 전 역이동'의 경우로 생각하고 '○○필'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이 사건 ○○인이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의 부당성

1) 이 사건 ○○인은 출국심사대를 역(逆)통과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인계되었다.

피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서 '이 사건 ○○인이 심사대를 역으로 진입하여 출국심사대를 무단 통과하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인은 출국심사대를 무단 통과할 당시 적발되지 않았으며 무단 통과한 이후 출국장에서 대합실로 이어지는 통로에 있는 보안심사대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며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자 보안검색요원이 ○○사무실로 데려온 것이다.

당시 보안검색요원은 이 사건 ○○인을 일반적인 역이동 승객이라며 ○○사무실에 있던 소청인에게 인계하였고, 소청인은 보안검색요원의 말을 듣고 일반적인 역이동 승객이라는 전제 하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만약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같이 출국심사대를 무단 역이동하던 중 적발되어 보안검색요원이 소청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면 소청인은 입국기록까지 확인하는 등 보다 엄밀한 심사를 하였을 것이다.

2) 소청인은 ○○인의 인적사항과 항공권을 확인하였다.

피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서 소청인이 항공권, 여권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당시 이 사건 ○○인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여권 상 인적사항과 항공권은 확인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 ○○인이 당초 구입한

2015. 8. 16. 출발 ○○행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다음 날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장에 들어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여 소청인이 항공권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인의 밀입국 방식은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당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 ○○인의 밀입국 방식은 지금까지 ○○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형태의 밀입국 방식으로 재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출국장 역이동 승객 관리절차 일부 변경 알림(업무연락, 2007. 2. 28.)' 공문에서는 '여권, 탑승권 확인 의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역이동 승객에 대해 재심인계자 여부, 출국취소 등의 조치 없이 무단 통과한 자인지 여부 등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담당자로서 출국심사와 취소 여부에 관한 로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인에 대해 소청인이 실시한 내용이나 이 사건 ○○인의 경우 출국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로그 기록이 남지 않아 출국심사 전 역이동 승객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업무처리기준과 관행을 충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이 사건 ○○인과 같은 경우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9. 1. '출국장 역이동 승객 처리지침'을 제정, 2016. 3. 31. 개정하여 입국기록을 반드시 확인토록 개선하였다.

다. 징계양정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은 2015. 12. 17. 동일한 사안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2016. 1월 발생한 '출국장 출입문 손괴 후 불법입국사건'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무단 통과 사건'을 계기로 ○○부에서 실시한 ○○공항 출입국 업무에 대한 감찰 결과 다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위 '자동출입국심사대 무단 통과 사건'의 경우 2016. 1. 29. 이미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 통과한 사실이 있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인이 무단으로 역(逆)통과한 출국심사대 담당직원은 큰 과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업무지시나 지침 상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출국심사 로그기록 검색 및 재심인계대장 확인을 통해 '출국심사 전 역이동 승객'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중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에서는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 발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인의 밀입국 방식은 기존에 발생한 적이 없었던 사건이므로 이를 예견하는 것은 근소한 주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비위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이 적용되어야 하며, 정직2월의 처분은 징계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한 후 ○○시스템과 ○○대장은 확인하였으나 입국기록은 조회하지 않음으로서 환승구역에서 무단 입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12. 31. 출입국심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인이 사건 발생 15일 만에 검거되어 강제 퇴거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인이 소청인에게 인계될 당시 출국심사대를 역통과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인의 항공권, 여권을 확인하였는데도 징계위원회에서 항공권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판단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담당자로서 출국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어 재심 대상자로 통보된 승객의 출국 적부에 대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역이동 승객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시 이 사건 ○○인이 출국심사대를 역통과한 사실이 소청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소청인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대상자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역이동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청인 자신도 진술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인의 여권과 항공권을 받아 여권 상 출국 심사 도장 날인을 확인하고 입국심사인이 없는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출입국 심사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출국 재심과정에서 항공권, 여권을 확인한다는 의미는 이 사건 ○○인의 역이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항공권, 여권을 통해 확인했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 ○○인의 여권 상 입국 심사인 등 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인을 역이동 승객으로 임의 판단한 만큼 충분한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인의 항공권에 '○○필'을 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이 사건 ○○인의 밀입국 방식은 전례가 없어 예측할 수 없었던 점과 당시 시행되고 있던 업무처리기준과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관리소에서는 2007. 2. 28.「출국장 역이동 승객 관리절차 일부 변경 알림」업무연락에서 '출국장 ○○담당은 보안요원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인계자 여부, 출국취소 등의 조치 없이 무단 통과한 자인지 여부 등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 후 재심확인인 날인'하도록 업무 연락을 통해 지시한 바 있다. 상기 업무연락에 이 사건 ○○인과 같이 환승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역진입한 경우가 예시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연히 고려하여 검토해야할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여권 상 입국기록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로 이 사건 ○○인이 환승승객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했던 만큼 소청인이 상기 출국장 역이동 승객 관리절차에 따라 ○○정보 시스템 상 ○○대장과 출국심사 취소 여부를 조회하였다고 해도 업무 처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인에 대한 출국 재심과정에서 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역이동 승객으로 오판하여 '○○ 필' 인장을 날인함에 따라 이 사건 ○○인이 밀입국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소청인은 본 사건으로 이미 2015. 12. 17.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기관장의 경고조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소청인은 사건 당시 ○○실 담당자로서 이 사건 ○○인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 인장을 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인이 밀입국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인이 밀입국한 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출국심사대 담당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출입국관리소에서 이 사건 직후 '출국장 역이동 승객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출국장 역이동 승객에 대해 재심 처리 및 기록을 저장하도록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 소청인이 약 18년 간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고 ○○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2 음주단속 소홀 및 업무 태만(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음주의심 운전자를 음주측정 없이 훈방하고, 현장출동 시 후배에게만 사건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술 냄새가 조금 나는 정도로는 음주측정 기계에 반응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훈방한 점, 관행으로 후배에게 일을 부탁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427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5. 18. 03:51경 B와 00호 순찰차 근무 중 ○○구 ○○동 ○○사거리 신호등 앞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정차 중에 있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술 냄새가 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안 하셨죠.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라며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훈방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당일 05:06경 C와 00호 순찰차 근무를 지정받아 거점근무를 할 때 절도사건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후배만 사건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동료 간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2016. 5. 21. 21:00~22:00까지 탄력 근무자인 D, E와 함께 합동근무를 지정받았으면서도 근무변경 없이 자기 혼자 개인 활동을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는 바, 함께 근무하였던 관련자의 진술과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조서 내용에 비추어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의심자 훈방 등 직무태만 관련

소청인이 사건당일 음주의심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후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음주의심자를 깨워서 술을 마셨는지 계속 묻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여 냄새를 맡아보니 약간의 술냄새가 났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이 정도로는 음주 감지기로 불어도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토록 하였던 것으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판단 하에 처리를 하였는데, 물론 그 판단이 잘못일 수는 있을지라도 직무유기로 정직1월 징계를 가한다면 '거리의 판사'라고 불리는 경찰관들이 기계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바, 당시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나. 동료 간 결속 저해 관련

소청인이 사건당일 05:06경 순찰차 근무 중 확인만 요하는 절도사건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갑자기 같이 근무 중이던 C가 혼자 가서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였고, 이 정도는 혼자 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금방 갔다 오라고 한 것으로, 관행으로 가끔 있는 일인데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 합동근무 시 단독행동 등 지시명령 위반 관련

소청인은 2016. 5. 21. 21:00~22:00까지 탄력근무자 2명과 합동근무를 지정받았는데 혼자 조용히 순찰을 돌고 싶어 조장에게 허락을 받고 1시간동안 혼자서 순찰을 돌았던 것으로,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며,

이를 종합할 때, 결국 청문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소청인의 사건을 너무 과장하여 징계를 가한 게 아닌지 생각이 되고, 소청인은 현재 조직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어 근무의욕도 많이 없어진 상태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음주의심자 훈방 등 직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당시 운전자가 많이 취하지 않았고 음주감지기로 불어도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훈방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판단이 옳았다고 소청인이 생각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특성상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1차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으나, 이는 무제한·무조건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으려면 업무절차에 대한 숙지와 관련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그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살피면,

(1) 소청인 역시 '편도 7차선이고 야간이라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운 상태로 술 냄새가 조금 났으며 장소가 어딘지 잘 몰랐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차량 뒷좌석에 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소청인 스스로 진술한 당시 정황만을 살펴보아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음주측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운전자를 귀가시키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가도록 말했고 이에 대해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음주에 적발될 수도 있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도록 했다'라고 진술하였

는데, 이는 결국 소청인이 음주운전임을 의심했다는 것이며, 소청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으로 의심은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과 동행한 B는 이에 더하여 운전석 문을 열 때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운전자가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렸으며 대화를 나눌 때 어눌하고 눈도 풀린 상태여서 음주운전을 확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 소청인의 판단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참작의 사유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B가 '소청인이 운전자를 알거나 금품을 받아서 훈방한 것은 아니고 일처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보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B가 '소청인이 운전자를 깨운 후 "음주운전 안 하셨죠, 친구가 여기까지 운전한 거죠, 졸려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라고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순찰차량에 음주감지기가 없어 다른 차량에 가져오라고 할 예정이었던 점,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소청인은 현장 도착 후 3분만에 현장을 마무리하였는데 이를 보면 소청인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음주감지기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일을 처리하기 귀찮아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왜 그냥 가시냐고 묻는 B에게 '음주운전 같지 않으니 그냥 가자'며 지령실에도 '음주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순찰 근무태만 및 동료간 결속 저해 관련

소청인은 사건당일 C가 혼자 가서 해결하고 오겠다 하였고, 이 정도는 혼자 가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금방 갔다오라고 한 것으로 관행으로 가끔 있는 일인데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동행한 C는 무전지령을 받기 전부터 소청인이 잠을 자고 있었고 현장에 도착하여 깨웠으나 C에게 “일단 혼자 가서 보고 와”라고 말하여 혼자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당일 04:00~06:00 거점근무 중 04:20부터 무전 지령을 받은 05:06경까지 소청인이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장에 도착해서도 소청인이 먼저 C를 혼자 보내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C가 스스로 혼자 가겠다고 했더라도 동행근무를 명받은 자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이 업무를 처리했어야 할 것인데, 순찰차에 남아 잠을 잔 것은 명백한 근무태만인 점,

더구나 동행자 C는 아직 숙련되지 못한 신임 순경인 만큼 오히려 함께 동행하여 선배로서 업무처리에 대한 모범을 보였어야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C가 1시간 20분가량 혼자 일처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순찰차에 남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 소청인이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관행적인 일인데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합동근무 시 단독행동 등 지시명령 위반 관련

소청인은 당시 혼자 조용히 순찰을 돌고 싶어 조장에게 허락을 받고 혼자 순찰을 돌았던 것으로, 경찰생활 중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결국 ○○감사실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너무 과장하여 징계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의 근무지정은 관내 현황과 근무자 개개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팀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당시 소청인은 ○○에서 근무하다 ○○에 온 지 6일밖에 지나지 않아 지리와 치안수요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함께 근무하도록 지정한 것이었던 점, 또한 소청인은 동행순찰자인 D에게 '다른 방향으로 혼자 돌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이동하였으나, D는 소청인과 다른 팀에서 근무하는 탄력근무자로 D에게 소청인의 근무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새로운 근무처로 발령난 지 6일밖에 되지 않은 소청인이 이를 팀장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대로 변경한 행위는 명백히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로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 단속과 예방을 통해 이를 방지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는바,

소청인은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당시 정황상 상식적으로 충분히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었으며, 또 당연히 음주측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훈방한 것은 중대한 직무태만 행위로 판단되는 점,

또한 같은 날 절도사건 신고에 대해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동행한 신임 순경이 혼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여 새로운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동료 사이

에서 불만을 야기한 점,

아울러 새로운 근무처로 발령난지 얼마 되지 않은 소청인이 현지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동행도보순찰을 지시한 것인데도 이를 팀장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소청인이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보다는 관행적인 일인데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억울하다며 처분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의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3 변사사건 업무 처리 소홀(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지정된 형사업무를 태만히 하고 변사사건 임장과 관련 허위보고 및 관련사건 업무지시를 소홀히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외근형사로서 이 사건 당일은 외근활동을 한 점, 피의자도 이미 검거한 상태에서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변사사건 현장에 임장한 것으로 허위보고 한 점, 현장출동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48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3.부터 현재까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5. 21. 09:00~13:00간 형사근무 지정되어 있음에도 10:44경 출근하였다가 11:01경 퇴근하여 약 17여분간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1. 당직자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를 받지 못하여 사건 현장에 임장하지 못하였음에도 CCTV 영상을 확인한 유족으로부터 같은 달 23. 15:22경 112신고 된 후 '○○ 변사사건 처리관련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작성·보고하면서 현장에 직접 임장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였으며, 2016. 5. 21. 19:30경 당직자로부터 변사사건 종결 후 유선보고를 받으면서도 특별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건 수사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변사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약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1회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일 19:30경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B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오후 근무시간에 ○○군 ○○리 마을에서 변사사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 보니 80대 노파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방안에 누워 사망하였으며, 변사자 아들도 ○○공무원으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사체 특이손상 보이지 않았고, ○○병원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았는데 자연사(병사)로 발급되어 변사처리를 하지 않고 18:00 병사 종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소청인은 현장 출동하였던 경사 B 등의 보고내용 중 병원의사의 병사라는 사체검안소견과 ○○공무원인 아들의 진술, 현장조사 의견 등을 참작하여 자연사 또는 병사로 판단되어 잘 처리하도록 말하고,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않았으며, ○○과장에게도 병사 종결된 사안으로 유선보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부터 3일이 경과된 후 2016. 5. 23. 15:22경 유족이 집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누군가 집 내부에 침입하여 변사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유족의 112신고가 있어 ○○과장 등에게 유선보고 후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 후 소청인과 팀원들이 주변 탐문 수사를 실시하여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과 인상착의가 흡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출동하여 신고 접수 2시간 30여분 만에 살인범을 신속하게 검거하였다.

이후 검거된 피의자 상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던 중 유족인 아들이 그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방송사 및 통신사에 제공하며 경찰에 대한 비난성 인터뷰를 진행하여 변사사건 초동조치 미흡 등 비난성 방송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에 착수하여 처분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팀 사무실 내에 ○○과정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를 감찰에서 확인하며, 소청인이 ○○팀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만을 인정하여 17분간 근무한 것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처분하였으나, 이는 외근형사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청인은 당일 외근활동 근무 지정으로 ○○읍 등 일원 관내 절도범 및 기소중지자 검거 첩보수집 등 성실히 외근활동을 하였음에도 외근

활동 준비를 위해 잠시 사무실에 머무른 17분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외근형사활동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외근형사가 외근활동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었다면 이것이 오히려 근무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언론에서 살인사건에 대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이후 시점으로 각 언론사 응대 및 ○○지방경찰청 ○○과 ○○계의 신속한 보고요구에 따라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고하였던 것인 바, 당일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보고했어야 마땅하나 단순 병사 종결된 사안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피의자도 이미 검거한 상태에서 비난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던 것이며, 이와 같은 결정은 ○○팀장 개인에 대한 비난을 막으려는 의도보다는 경찰 전체에 대한 비난여론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더 컸음을 헤아려 주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소청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청인이 당직근무자인 경사 B 등이 현장 출동 전 미리 연락하여 함께 사건 현장에 임장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에 대해 지시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모두 종결한 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보고하여 소청인은 현장 출동한 경사 B의 보고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당직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사건관련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외부 침입이 없고 유족의 진술 등으로 보아 병사 또는 자연사로 잘못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성실히 근무할 것인 점,

또한 소청인은 ○○년 8월간 경찰생활을 하며 남들이 힘들다며 꺼려

하는 수사 형사생활을 하며 그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동료들과 화합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소청인의 순간 잘못 판단한 과오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며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점, 소청인은 약 ○○여 년간을 경찰공무원으로서 단 한 번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소청인은 외근형사로서 사무실에 있는 것이 오히려 업무 태만이며, 이 사건 당일은 외근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5. 21.자 ○○경찰서 ○○과 형사근무 지정표를 보게 되면 소청인은 09:00부터 13:00까지 형사근무지정을 감독하고, 4대 사회악, 절도범 및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군 법원 및 ○○ 사거리 주변을 중점 순찰하도록 근무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같은 날 10:44부터 11:01까지 약 17분간 소청인은 사무실에 복귀하여 머무르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이 오전 잔무 처리를 하다가 점심시간 전에 개인적 볼일을 본다며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경사 C의 진술 자체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다소 어려워 이 사건 당일 외근활동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변사사건 현장에 임장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5. 23. 이 사건 변사자의 유족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일부 기사 내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경찰을 비난하는 언론이 보도되고, 그 주요 내용은 경찰들의 초동 조치 부실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게다가 ○○팀장으로서 소청인은 사건 발생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여 현장에 임장하지 않은 사실까지도 알려지게 되었다면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의 허위보고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면피되거나 참작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현장에 임장하였다면 적절한 절차에 대해 지시할 수 있었겠지만 종결하여 현장 출동한 담당 형사의 보고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출근하자마자 검토하였으나 외부 침입이 없고 유족의 진술 등에 미루어 병사 또는 자연사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당직자로부터 변사사건이 있었는데 병사로 잘 마무리됐다는 전화보고를 받았고, 통화 시 특별한 업무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2014년 '○○ 변사사건' 이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는 지속적

으로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지시가 하달되었고, 특히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의 병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타살혐의점이 없는 지 확인하고 적당히 사건 종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공문도 하달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과 ○○팀장으로서 모든 변사현장에 대한 수사지휘 책임이 있고, 「변사사건 처리지침」 제3조에서는 변사사건 책임자는 현장출동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참여하거나 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직자가 보고를 누락하여 현장 임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적절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 변사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부하직원들인 담당 형사들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상관인 ○○과장과 경찰서장 등도 경고를 받았으며, 변사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되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변사사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변사사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여 「변사사건 처리지침」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재량의 적정 여부

2014년 '○○ 변사사건' 이후 상급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하달되었고, 특히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의 병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당히 사건 종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공문이 하달된 점,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사체가 부패되어 있고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사건 담당 형사로서는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마땅함에도 CCTV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 병사처리로 하였고, 감찰 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만 없었다면 완벽한 자연사인데 일이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보면 타성에 젖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업무를 안일하게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당시 오판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결정적 증거물인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유족에게 반환하는 등 수사에서는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이며, 당시 범인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추가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잘못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수준으로 징계의결 가능하고,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4 물품구매 업무처리 부적정(견책→기각)

처분요지

불용될 예산 사용을 위해 물품 구매를 무리하게 진행하던 중 납품기한이 도과하여 계약변경 요청을 하고, 사고이월된 구매 요구건에 대해 원인행위 요청을 하지 않고,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로 기재하는 등 물품구매 업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변경된 규격을 착오하여 입력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점, 지출원인행위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임무임에도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52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병원　　7급　A

피소청인 : ○○병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병원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직무태만

소청인은 2015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불용될 것을 우려하여 2015. 12. 31.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물품 구매를 무리하게 진행하던 중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있던 중 납품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결국 납품기한이 도과한 2016. 3. 5. 계약반에 계약 변경 요청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2015. 12. 31. 물품 구매 요구 건이 2016년으로 사고 이월 되어 전산으로 원인행위 요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물품이 납품되었으나 납품 기한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전산 상 검사·검수 입력이 불가하였으며 납품기한까지 도과되어 물품 구매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2016. 3. 8. ○○과 계약반을 방문하여 'D-Brain 시스템 상에 검사·검수일자가 지났기 때문에 원인행위 일자를 2016. 2. 12.로 소급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검수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원인행위 일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소청인은 사고 이월된 물품 구매건에 대해 주문 식별번호 기재 착오로 인해 물품계약을 변경하면서 2015년 시설비 예산 1,091만 6천

원이 불용되었고, 이를 2016년도 시설비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서 통상 물품을 구매하면 일정액의 조달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납입기한이 2016. 3. 7. 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 업무가 마감된 같은 날 16:15경 D-Brain시스템 승인처리를 하여 수수료 연체금 1,810원을 발생시켜 시설비 예산으로 납부하게 하는 등 ○○병원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

나. 복무규율 위반

소청인은 2016. 1. 19. 14:00경 신임 ○○과장 첫 방문 중에 원내 체력단련장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적발되었으나 현지 시정되었고, 다음날 복무부서인 서무반에서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 21. 오후 일과시간에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재차 적발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다만 예산 불용이 불순한 의도가 아닌 업무상 단순 착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병원 예산 운용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직무태만과 관련

소청인은 ○○과내 ○○팀 발주부서(소요 제기) 실무자로서 임의로 물품구매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15. 12. 30. 노후장비(전기히트

펌프) 교체계획을 결재선상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병원장의 최종 결재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전국이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감염 예방을 위해 대부분 주요사업이 순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회계 연도가 종료되는 연말에 검토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같은 해 11월에 사무분장을 조정하면서 소청인은 새로 추가업무를 부여받아 야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성실히 책무를 다해 왔는데 업무처리 태만이라고 지적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또한 ○○병원은 인명을 다루는 주요 의료기관이지만 냉난방기인 전기히트펌프가 노후화되어 최근 4년간 총 84건 20,769,700원의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어 비효율적이었기에 소청인은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병원장에게 최종보고를 드린 후 추진하였다.

위 보고내용은 ○○병원 내 냉난방기의 총 보유현황(실내기 162대, 실외기 32대)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사용 가능 연한 경과장비와 중환자실 등 우선 교체대상(실내기 92대, 실외기 16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결재선상의 관계관과 최종결재권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조달청(나라장터) 구매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나라장터 물품 식별번호 입력착오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이 새로운 제품 계약으로 변경된 규격을 착오하여 입력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주문 식별번호 착오기재 및 납품기한 도과 후 계약 변경 요청하는 등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나, 정부조달물품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 규격품이 출시되고 있어 유사 조달품목일지라도 새 규격품이면 주문 식별번호가 별도로 생성되어 규격이 조금만 달라도 입력이 되지 않는바, 이 과정에서 주문 식별번호가 착오

기재됨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고 납품기한이 도과되어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변경 및 기간연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는 2009. 3월에 국가회계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국가회계전산 시스템(D-Brain)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과도기를 거치고 있으므로 나라장터와 연동과정에서 시스템적 오류나 실무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 업무인 물품구매과정상의 일부 전산입력 의견을 제시한 것을 크게 부각시켰다고 보이고,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재무관의 임무이므로 이를 보좌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아닌 ○○팀 실무자인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소청인은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D-Brain상 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승인' 버튼을 눌러야 완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15분 늦게 처리하여 소액의 연체료 1,810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병원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다고 함은 침소봉대하여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하겠으며, 참고로 이러한 각 부처의 수수료와 연체료 등은 국고에 반영되어 조달청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은 당초 편성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월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당초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교체 총 37건 59,191,720원 중 34건 49,274,200원을 집행하여 당초 편성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안타깝지만 규격 변경된 3건 10,916,000원은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소청인이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정부재정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원의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는 좁은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복무규율 위반과 관련

소청인은 수년전부터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해 왔고, 과거에 MRI 촬영, 물리치료 등을 해 왔으나, 장기적으로 허리의 인대와 코어근육을 강화해야 회복된다는 의사 진료소견을 듣고 점심시간 무렵에 수시로 체력단련장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허리근력을 키우며 치료해 왔다.

그런데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긴급업무를 처리하느라 2016. 1. 19. 12:40경 뒤늦게 점심시간에 체력단련장에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던 중 같은 날 12:50경 사전에 연락도 없이 보일러 교체공사 계약업체인 ㈜○○ 관계자가 자재를 납품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납품현장에 나가서 자재 등 확인을 마치고 나서 옷을 갈아입기 전 잠시 운동기구에 매달려 있다가 같은 날 14:00경 마침 첫 방문 중인 ○○과장에게 적발, 지적을 받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2016. 1. 21. 오후 소청인은 냉반방기 업체 관계자와 전기히트 펌프 설치 위치 선정협의를 위해 같은 13:30분경 체력단련장 앞 현장에서 만나려고 기다리던 시간에 잠시 운동기구에 매달렸던 것을 일부 직원이 목격하고 전해져 복무규율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복무규율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았으나 2016. 1. 19. 현지 복무지도를 받았던 과거사항 등을 새삼 거론하며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모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병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에 대해서 조직원간 책임소재 갈등 유발 및 상호 반목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는 점,

소청인은 물품 발주부서 공업직 공무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의 책임이 있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원인행위 요청을 D-Brain상 입력하였으나, 시스템 운용 미숙 등으로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지연 입력하였으나 최선을 다했던 점,

소청인은 복무규정 등에 따른 복장을 준수하고자 하겠으나, ○○팀은 특성상 다른 부서와 달리 업체 관계자와 장비이동 등을 육체적으로 같이 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활동하기 편한 복장이 필요한 점,

소청인은 약 12년 동안 공무원 재직 이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2011. 11. ○○시에서 ○○병원으로 전보된 이후에 약 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병원장 표창을 2회나 수상하였으며, 2015. 11.부터 사무분장 변경 시행으로 2건의 추가업무가 부여되어 통상적으로 21:00~23:00경까지 야근을 해 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직무태만

먼저 소청인은 나라장터 물품 식별번호 입력착오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이 새로운 제품 계약으로 변경된 규격을 착오하여 입력한 것이

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2015년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5. 12. 31. 물품 구매를 진행하던 중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부터 시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와 같이 소청인이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자신이 정확한 식별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업무추진 도중에 물품주문 식별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납품업체에서 보내온 위 식별번호가 정확한 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또한 소청인은 조달물품 구매 등과 관련 업무를 담당한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정부 조달물품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규격품이 출시되어 유사 조달품목일지라도 새로운 규격이면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새로 생성하여 입력되므로 규격이 조금만 달라도 새로운 물품으로 인식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담당자로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후에도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소청인은 납품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정확한 절차를 파악하지 않고 이를 처리하다가 결국 납품기한이 도과한

상태에서 계약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나라장터와 연동과정에서 시스템적 오류나 실무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 업무인 물품구매과정상의 일부 전산 입력 의견을 제시한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지출원인행위는 재무관의 임무이므로 이를 보좌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임무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 실무자인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 구매 요구 5건이 2016년으로 사고이월되어 그 중 3건의 물품이 납품되었으나 이에 대해 검수·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없었던 사유는 소청인이 전산으로 원인행위 요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② 그로 인해 물품이 납품되었으나 납품 기한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전산 상 검사·검수 입력이 불가하였으며 납품기한까지 도과되어 물품 구매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2016. 3. 8. 계약반을 방문하여 'D-Brain 시스템 상에 검사·검수일자가 지났기 때문에 원인행위 일자를 2016. 2. 12.로 소급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검수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원인행위 일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상황을 야기한 점,

③ 2016. 1. 15. 사고 이월된 예산이 배정된 이후 소청인에게 원인행위 요청을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계약담당자 B가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 직접 듣지 않았으나

시설반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발주부서에서 물품 구매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기한 내에 하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부서에서 요청받은 업무를 접수하는 순간 처리시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발주부서의 잘못이라고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의 업무 불성실로 비롯된 것으로서 전산상 또는 실무적 오류 등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며, 소청인의 잘못으로 실제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결과를 입력하지 못한 사실을 전산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계약담당자가 원인행위 일자를 2. 12.자로 정정 입력해 주어야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D-Brain상 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승인' 버튼을 눌러야 완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15분 늦게 처리하여 소액의 연체료 1,810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병원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다고 함은 침소봉대하여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그간 경력에 비추어 발주부서 실무자로서 조달수수료 납입을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 시스템 상으로 '승인'을 눌러야 완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은 주의를 소홀히 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며,

설령 소액의 연체료 등은 국고에 반영되어 조달청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이를 낭비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자체를 면피하기 어려워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복무규율 위반

소청인은 2016. 1. 19. 현지 복무지도를 받았던 과거사항 등을 새삼 거론하며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모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은 소청인이 2016. 1. 19. 일과시간 중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날인 1. 20. ○○과에서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공문을 시행하게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인 1. 21.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적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주의를 소홀히 하여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행위 요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한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계약 변경한 품목에 대하여 2015년 예산 10,916,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2016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계획된 다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차후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기히트펌프 관급자재구매 계약 변경과 관련한 공문에 첨부된 '계약변경 사유서'에서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언급하는 대신에 '2016. 2. 26.~2. 29. 총무팀 계약담당 D-Brain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간 데이터 연계오류로 납품요구 변경 처리'라고 적시하여 마치 위 납품요구 변경처리가 지연된 것이 계약담당자의 책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계약담당자인 B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게다가 전산입력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계약담당자에게 소청인이 원하는 날짜로 원인행위 일자를 입력하도록 종용하였을 뿐 아니라 전산상으로도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결과를 입력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입력한 점,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일시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종종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볼 때 평소 소청인의 근무태도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도 최소 '견책' 수준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 태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5 순찰근무 중 도박행위 방조(정직1월→감봉2월)

처분요지

순찰근무 중 도박을 하는 관련자들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구대에 조기 귀대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관련자들의 고스톱을 식대값 마련을 위한 오락행위로 판단한 점, 평소 교양받은 대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복귀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도박행위 방조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실제 도박 정도가 경미하고 상습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55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8. 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무유기

소청인은 2016. 6. 24. 19:00부터 22:00까지 112순찰(순○○호) 근무를 지정받고 순찰근무 중 같은 날 20:25경 ○○시 ○○동 ○○-○○에 있는 관련자 B 소유의 농장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관련자 B, C, D 등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박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도박의 횟수, 판돈의 규모 등을 확인하여 일시적인 오락행위인지 도박인지를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도박방조

소청인은 같은 날 20:25부터 20:40까지 약 15분 동안 위 장소에서 관련자들의 도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커피를 타서 나누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다. 근무태만

또한 소청인은 같은 날 19:00부터 22:00까지 순○○호 순찰차 운전 근무를 명 받고 순경 E(승무)와 함께 112순찰차 근무 중 22:00시 근무 교대 시간전인 같은 날 21:25경 특별한 사유 없이 지구대에 조기 귀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서 모 지구대 팀장, 경찰복 차림으로 도박장 출입' 등 제목으로 ○○일보 등 2회에 걸쳐 언론 보도케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6. 24. 20:25경 순경 E와 같이 112순찰근무를 하던 중 관내인 ○○시 ○○동 ○○-○○번지 소재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심어 놓은 농작물을 누군가가 훔쳐간다는 첩보가 있어 그 쪽으로 순찰을 돌면서 소청인이 경작하던 주말농장을 둘러보던 중 그 곳에서 20m 정도 거리에 놓여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갔는데 주말농장 토지 소유자 B가 고향 친구 C와 D 등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이들 중에 B는 소청인과 평소 잘 아는 사이이고, C와 D도 B의 고향 친구이고 동창들로서 몇 번 얼굴을 봤기에 서로 얼굴을 알 만한 사람이었던 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 테이블 위에 판돈을 합쳐 15만 원 정도를 놓고서 식대 마련을 위해 고스톱을 쳤다고 한 것이다.

또한 위 B는 주말농장 토지소유이고 ○○동 ○○통장으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자선단체 기부도 많이 하는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도 친구사이로 고향에 땅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C는 개인택시 사업자, D는 보일러설비 사업자인 관계로 이들 경제적 능력과 고향친구 관계 등으로 봐서 그 당시 식대 값 마련을 위한 오락행위로 판단하였기에 인적사항, 도박횟수, 판돈의 규모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를 강력히 제지하지 않았다.

또한 소청인은 위 고스톱을 하는 관련자들에게 그 당시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고향친구들끼리 식대마련을 위해 삼오칠구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박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만하고 가시라고 하였더니 저녁 값만 되면 그만할 것인데 몇 판만 치면 끝난다고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그 장소에서 커피를 타서 마시려고 하다가 관련자들에게도 한 잔씩 타서 주면서 다시 빨리 끝내라고 하였고, 그 후 소청인은 허리가 아파서 컨테이너 출입문 안쪽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책상에서 허리를 기대고 커피를 마신 후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15분 정도 위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상의 남자가 당시 열려 있던 컨테이너 문 입구에 서서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며 휴대전화로 컨테이너 사무실과 순찰차량 경광등이 켜져 있는 곳을 촬영한 후 경찰관이 근무 중 민간인들과 도박을 하였다면 언론사에 제보를 하였고, 언론사에서는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6. 6. 28. ○○일보에서 '○○서 모지구대 팀장 경찰복 차림 도박장 출입'이라는 내용을 보도가 되었으며, 그 후 같은 해 7. 7. ○○신문에서 조사도 않고 문책인사를 서둘렀던 ○○경찰서 과잉조치 논란이라고 보도되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서 적시한 내용과 같이 당시 관련자

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친 사실은 없다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제복을 입고 순찰차량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울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지구대 앞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같은 날 21:25경 조기 귀대한 것이며, 이는 순찰차량 근무 중에 피곤하면 숨어서 쉬지 말고 지구대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 흡연자 역시 주민들이 보는 장소에서 흡연하지 말고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흡연하라고 지휘관으로부터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이와 같은 행위가 불성실 비위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유형 중 확인소홀, 사건 묵살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정도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 또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어 '견책' 정도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의 비위보다 중한 도박행위를 한 경찰관들은 감봉1월을 받았고, 소청인과 같이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찰관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2010년부터 약 5년간 연속으로 근무성적을 A등급 이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면서 상훈감

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19○○년도 ○○경찰서에서 외근형사로 근무하면서 범죄 혐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석방하여 위 혐의자가 진정을 하면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당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전력인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서 적시한 내용처럼 관련자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친 사실은 없으며, 제복을 입고 순찰차량 근무를 하던 중에 담배를 피울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지구대 앞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조기 귀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관련자들과 어울려 고스톱 즉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박 현장에서 적극 제지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커피를 타서 주는 등 자신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도박을 방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징계의결서에서 명확히 적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직무유기 및 도박 방조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소청인이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제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일반시민들이 목격하는 것을 염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찰근무 중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순찰을 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찍 지구대로 귀대하였다는 사실은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도박현장을 발견하고도 단속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커피를 타서 나누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청에서는 도박전과자는 반드시 입건조치하고 도박전과가 없더라도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판돈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경미할 경우이라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단속하는 것이 통상적 업무처리 방식인 점,

관련자들이 각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앞에 놓고 고스톱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여기서 뭐하냐 그만해라고 말하며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 등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도박 행위가 불법적 행위로 인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관련자들이 같은 학교 동창들로 평소 친분이 있으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하고,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소청인이 도박 현장에서 약 15분간 머물면서 관련자들의 도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소청인도 관련자들과 평소 친분관계 등으로 내기 오락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설령 관련자 B가 통장의 지위를 가져 신분이 확실하고 재산이 있다고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하더라도 관련자 B는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받음을 볼 때 경찰관인 소청인은 도박의 종류, 동종전과 유무,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등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박 현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적극 제지하거나 단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커피를 타서 나누어 주는 등 도박 현장

에서 관련자들의 도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도박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도박, 절도 등 파렴치하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품위손상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및 도박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관련자 B는 약식 기소되어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박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한 점,

이 사건 징계의결 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소행, 표창수상 공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피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소청인은 지역유지인 B 등 관련자들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 친구끼리 저녁내기 오락으로서 고스톱을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 고의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자들은 컨테이너 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박을 하였고, 당시 도박 규모도 20만 원 이하로 그 정도가 다소 경미하여 상습적인 도박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6 세무조사 대상업체 과세 매출 허위보고(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세무조사 대상업체 조사수임 대리인 선정에 관여하고, 조사대상업체가 과세매출을 면세 대상으로 위장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허위 보고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세무사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을 뿐 소개를 해 준 것이 아니며, 대상업체의 소명자료가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거래처별 원장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점, 실제 세무대리인과 결탁하여 허위 보고한 D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55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국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2. 18.~2016. 3. 18.까지 ○○도 ○○시 ○○읍 ○○리 소재 ○○식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공무원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 건 조사수임의 대리인 선정에 관여하였고, 조사 대상자 업체로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세무대리인의 소명 내용을 임의로 수용하여 관리자에게 허위로 보고를 함으로써 조세채권 일실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제26조(허위보고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 업체 조사수임 대리인 선정에 관여하고 동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 소명 내용의 임의 수용 및 관리자에게 허위 보고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조사대상업체인 ○○식품의 세무조사 대리인이었던 B 세무사가 예치조사 진행 중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식품이 영세업체라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수임 수수료를 받기가 힘들어 대행할 수 없게 되었다. 혹시 세무사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왔고, B 세무사는 소청인이 20년 전 국세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었을 때의 소속팀장으로서 퇴근 중에 전화를 받게 되었던 소청인은 초임 공무원 시절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 물어 보길래 별다른 생각이나 의도는 전혀 없이 그냥 머리에 떠올랐던 세무사 두어 명의 이름을 얘기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의 대답을 한 것이 전부이고, B 세무사 내지는 ○○식품이 C 세무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준 것도 전혀 아니며,

조사대상업체가 소청인에게 직접 세무사 소개를 부탁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B 세무사가 소청인에게 "○○식품으로부터 다른 세무사 소개를 부탁받아서 대신 물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소청인은 B 세무사와 대화한 이후 C 세무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C 세무사가 ○○식품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것은 수임계가 제출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이 C 세무사를 소개하고, C 세무사가 조사수임 하기로 결정되자 위임장을 접수한 점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위임장 접수는 조사반장인 소청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따로 있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수임계가 제출될 때까지는 어떤 세무사가 대리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다만, ○○식품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언행이 부적절하고 경솔했었던 점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인정하며, 이 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세무사를 알선하였다는 징계 위원회의 판단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나. 허위보고 금지 위반 관련

○○식품에 대하여 비정기 예치조사는 구체적인 매출 자료를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와 TV프로그램의 회사 소개 내용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막연한 혐의로 시작되었고,

예치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3개 연도 매출 누락이 많은 매우 불완전한 자료로서 거래처별 원장으로는 과·면세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소청인이 거래처별 원장이 아닌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징계위원회는 '조사팀이 거래처별 원장을 분석하여 과세품목의 비율이 60% 정도임을 인지하였다' 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60%라는 수치는 과·면세 품목 비율을 확인한 후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했고, 오히려 조사팀원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액을 정하게 되면 향후 ○○식품이 불복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며, 추정액에 근거 한 과세처분은 국세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담당자는 문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래처별 원장을 근거로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협의한 상황이었으며,

거래처별 원장이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

식품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2014년 한 개 연도의 매출 자료이기는 하나 누락된 월이 없이 완전한 자료여서 이를 근거로 3개 연도의 과·면세 비율을 추정할 수 있었고, 무엇 보다 품목별 매출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데다가, 품목별 출하단가 및 수량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각 품목별로 사진까지 부착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어 소명자료가 거래처별 원장자료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식품은 ○○지방국세청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식품이 제출한 2012~2014년 거래처별원장이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장부인지, 거래처별 원장에 기재된 순대 품목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인지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재조사 결정은 사실상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무리한 과세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하기로 한 것이며,

본건 관련하여 세무대리인과 결탁하여 허위보고한 사람은 소청인이 아니라 D 팀장인데 오히려 소청인보다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고, 본건 소청인에 감찰이 시작된 경위도 국장에게 허위의 보고를 한 D 팀장이 국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소청인이 세무대리인과 유착하여 ○○식품의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알고서도 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허위 사실로 변명하여 소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간 20년 동안 ○○청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1)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이 조사대상 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를 소개해 준 것은 결코 아니었고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몇 명의 세무사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던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업체 사장에게 2008년경 ○○세무서 ○○과에서 1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고 업무상 가끔 통화하던 세무사인 C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자신 또는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C 세무사를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건 ○○식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청인이 조사하는 업체의 수임 세무사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인 바, 그 자체가 공정한 국세 조사를 해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소청인도 심사 시 이를 인정한 점, 결과적으로도 본건 조사 과정에서 예치 시 확보한 전산 자료보다는 C 세무사가 소명한 자료를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허위로 조사종결(예정) 보고서를 작성·보고함으로서 소청인과 C 세무사간의 유착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직속 상관인 D 팀장도 소청인이 ○○산업의 수임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고 이후 세무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본건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허위 보고 금지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위원회가 '거래처별 원장으로 과·면세 매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 소청인의 허위보고를 인정한 것은 틀린 사실관계를 전제한 판단으로서 부당하며, 소명 자료가 허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거래처별 원장으로는 세액의 추정조차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당시 갑작스러운 교육일정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보고예정일에 맞추기 위해 더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일단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에 따르면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예치 시 확보한 72억 전산자료에 대하여 2016. 2. 23. 당시 반원인 7급 E가 과세비율을 검토하였고, 그 과세비율이 61%라는 것을 소청인에게 이야기해 주어 알고 있었다는 점, E는 확인된 매출액이 총 124억원인데 품목별로 나온 금액은 72억 밖에 안 돼서 불완전한 자료로 활용실익이 없다고 보고 검토자체를 생략하였고, 이는 D 팀장 및 소청인 모두 조사 초기부터 인지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예치 시 확보한 품목별로 구분된 거래처별 원장 등 전산자료가 총매출 124억원이 아닌 72억원만 확보되어 과세근거로 적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낮고, 다른 업체와 중복하여 조사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하였고,

조사경험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C 세무사가 제출한 ○○식품의 과세 비율이 21%, 면세 비율이 79%라는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인정한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업체에서 백업하여 가져온 자료가 전체 매출의 일부 자료로서 이를 토대로 과세하면 과세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세무대리인의 소명자료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16. 3. 15. 전술한 이유 등으로 C 세무사의 소명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135백만원 추징 예상의 허위의 조사종결(예정)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면서 D 팀장이 21%로 과세 비율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고가인 ○○(면세) 비율이 높아 그런 것이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72억원의 자료가 과세 근거로 신뢰성이 낮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6. 3. 15. 종결(예정) 보고 시 조사과장이 품목별 과·면세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여 예치한 전산 자료를 다시 검토한 후에야 72억원의 매출 자료는 중간에 잘린 자료로서 착오로 전체 자료를 예치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바, 이는 조사 착수 후 3주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서 조사 종결일(2016. 3. 18.)이 임박할 때까지 예치자료의 분석 및 검토 등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예치 조사는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하여 긴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임에도 소청인이 C 세무사의 소명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예치 자료의 부실이나 교육 이수 등으로 조사 시간이 부족하기 보다는 ○○산업의 과·면세 비율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사실 판단 등에 자문을 구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닌 단순한 사건으로서 조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치 조사 후 바로 자료 분석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더욱이 ○○국장의 결재

반려 조치가 없었다면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10억원 넘는 거액의 국세를 부과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 ○○산업에서 본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의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하고 조사하며 제출을 명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조사반장으로서 과·면세 매출의 구분이 되는 전산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세무대리인의 소명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관리자에게 허위 보고 및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점, 국세공무원으로서 본건 조사 세무사 수임의 대리인 선정에 관여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친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7 미성년자 범죄 노출 사건 처리 태만(견책→기각)

처분요지

미성년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상황관리관으로부터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상황관리관을 찾아가 업무조정을 요청한 점, 상황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을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여 딸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57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10. 21:49경 '딸이 오빠들에게 이끌려 성폭행,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지금 딸 친구에게 들었다. 어제 ○○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이하 '여청수사팀'이라 한다.)에 가출 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나갔다. 지금 ○○동 ○○모텔 성폭행 현장에 와 있다'며 '딸이 오늘 또 나간 상태'라고 112신고 접수사건을 지역경찰로부터 인수받았고,

소청인은 ○○경찰서 상황관리관 경정 B에게 찾아가 사건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건의하였으나, 위 상황관리관은 '일단 지능범죄수사팀(이하 '지능팀'이라 한다.)에서 수사를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담당수사부서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자가 미성년자로 범죄에 노출(신고 후 2차 피해 발생)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즉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먼저 민원인 C 부부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딸인 피해자 D(13세)가 가출을 하여 딸을 찾기 위하여 수소문 하던 중 딸의 선배

E로부터 딸이 2~3살 많은 오빠, 언니들에게 감금으로 인한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 본드 흡입 등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출한 딸을 조속히 찾고자 2016. 6. 8. 22:00경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수사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의 진술을 청취한 여청수사팀 경위 F는 피해자가 금년 4월과 5월초에 가출한 전력이 있어 단순가출로 접수(이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안됨)하겠다고 하면서 감금의 내용이 있으면 형사과 강력수사팀(이하 '강력팀'이라 한다.)에서 수사해야 하고 조건만남이 있다면 지능팀에서 수사해야 하니까 해당 부서에 가서 면담을 하라고 권유하고 민원인들을 강력팀으로 안내하였다.

위 민원인들을 안내받은 강력팀 경위 G는 범죄로 인한 약취유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청수사팀 소관이라며 재차 민원인들을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였고, 여청수사팀으로 돌아온 민원인들은 피의자 H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경위 F에게 위치추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위 F는 퇴근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교대근무자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조치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퇴근하였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다음날 14:00경 재차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피의자 H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자 당시 당직자인 여청수사팀 직원은 전임자로부터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해 인계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성매매이면 지능팀에서 수사하여야 한다고 지능팀으로 안내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당직근무가 아니었으나, 당직자인 경사 I와 경장 J가 조사를 하고 있어 대신 상담을 하게 되었고, 단순 성매매가 아닌 범죄에 의한 성매매이고, 또한 단순 성매매일지라도 청소년범죄에 해당하므로 강력 및 여청계에서 수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후 각 강력팀과 여청

수사팀에 전화를 한 후 최초 신고접수를 하였던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였다.

여청수사팀에 재차 방문한 민원인들은 다시 딸과 같이 있는 피의자 H의 휴대전화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여 딸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청수사팀은 피해자가 단순 가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위치추적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민원인들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청취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여청수사팀에 위 민원제기 내용을 통보하면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민원인들을 돌려보냈다.

또한 민원인들은 2016. 6. 10. 21:00경 딸의 선배 E로부터 ○○동에 있는 ○○모텔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조건만남을 강요받고 있을 것이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49경 위 모텔로 가서 112신고를 하였던 바, 이에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같이 위 모텔의 CCTV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여청수사팀의 무전에 따라 위 출동 경찰관은 민원인들을 ○○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 인계 조치하였다.

2016. 6. 10. 22:00경 여청수사팀으로 온 민원인들은 112신고내용과 같이 딸의 선배로부터 딸의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하면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당직근무자가 조건만남은 단순 성매매이기 때문에 지능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능팀으로 안내해 주었다.

당시 당직근무 중이었던 소청인이 민원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단순 성매매가 아닌 범죄에 의한 성매매이고, 또한 단순 성매매일지라도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므로 여청수사팀이나 강력팀에서 수사함이 마땅하지만 민원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부서간 업무분장 다툼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을 장시간 대기시키면서 또 다른 민원발생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어 소청인은 당직 상황관리관에게 지침을 받아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상황실로 올라갔으며, 단순 성매매가 아닌 범죄에 의한 성매매이고, 또한 단순 성매매일지라도 청소년범죄에 해당하므로 여청수사팀이나 강력팀 소관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소청인의 보고를 받은 당직 상황관리관은 업무분장표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때 피의자 입감 문제로 상황실에 온 지능팀 경사 I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로 의율하면 된다고 하자 상황관리관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본 법률을 검색하여 확인한 후 '맞다. 이 법으로 의율할 수 있겠다. 그럼 가출한 딸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딸의 피해 진술을 들어본 후 업무분장대로 사건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 다음에 여청수사팀에 전화하여 민원인들의 신고접수에 대해 지시하였다.

소청인은 상황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지금은 딸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여청수사팀에서 다시 실시간위치 추적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 줄 것이고, 딸을 찾게 되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기능에서 법적 조치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같은 청소년의 강요에 의한 강간 및 조건만남 등 청소년범죄이므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나 여청수사팀에서는 감금부분을 강조하여 합심한 결과 강력팀에서 수사하게 되었으며, 이후 강력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C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2016. 6. 13.~15. 피의자 K와 피의자 H를 순차적으로 체포하여 아청법 위반(강간 및 강요행위 등)으로 구속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최초로 신고한 여청수사팀은 이 사건을 단순가출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원인들을 귀가시켰고, 이후에는 감금부분을 강조하면서 합심을 요청하여 강력팀에서 수사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은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안내하여 준 민원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부서간 업무분장 다툼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할 것이 우려되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황관리관을 찾아가 지시를 받고 민원인들을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여 딸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즉시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가출로 인한 범죄노출사건으로 보호자의 입장과 아동청소년의 피해발생(2차)을 고려하여 수사해야 함이 마땅하다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여청수사팀이나 2번째로 민원을 상담하였던 강력팀에서 수사함이 마땅하다고 보임에도 소청인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더욱이 보호자의 입장과 아동청소년의 피해발생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청수사팀에서 실시간위치추적을 하여 최대한 빨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권고함이 마땅함에도 유독 소청인만 떠넘기식으로 사건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 역시 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보호자의 하소연을 청취하고 형사당직팀장 및 관리팀장, 지능팀장, 여청수사팀장 등을 소집하여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즉시 책임수사를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각 부서의 팀장들은 자신들의 부서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기 발언을 계속하며 책임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문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수사팀을 지정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소홀한 후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경찰은 주·야간 상관없이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야간이라 할지라도 폭력 및 절도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형사과 당직형사팀 및 강력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청소년 사건은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하며,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처리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야간에 112신고되어 즉시 책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 야간업무를 총괄하는 상황관리관이 지시한 사항이므로 경찰내부의 기본적인 업무분장과 별도인 예외적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억지주장이라고 보인다.

또한 민원인이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을 처리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청문감사관실에서 여청수사팀에 민원제기 및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여청수사팀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민원인을 귀가시킨 사실이 있었음에도 여청수사팀과 강력팀 직원에게는 단순히 경고조치하고 유독 소청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27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2015. 2. 13.부터 2016. 4. 22.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중국 연길, 훈춘, 흑룡강성, 내몽고, 위해시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70명 중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통장 모집 총책 등 44명을 검거 구속 송치하였고, 도피중인 총책 4명을 실시간 추적 수사 중에 있는 등 수사업무에 대한 열정적 의지와 노력을 하여 범인 검거에 월등한 성적으로 특진까지 상신되기도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처리해야 할 담당부서에 관하여 경찰청(수사1과 경위 L)에게 질의한 바,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보내온 점,

민원인(피해자의 부 C)도 소청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며, 자신은 지능팀의 어느 누구에게도 징계나 민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데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해 준 점,

소청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장동료들이 소청인의 징계 사실에 대해 안타깝이 생각하며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여청수사팀에 사건을 접수한 민원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상황관리관을 찾아가 업무조정을 요청한 후 상황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을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여 딸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경찰서 상황관리관은 야간이나 휴일에 경찰서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과장 경정 B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소청인의 상관으로서 그 사건수사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 또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범죄수사규칙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해 업무조정을 상황관리관이 하게 되면 그 업무지시를 받은 팀에서 죄명에 상관없이 우선 수사를 하고 그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황관리관에게 말을 하여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 점,

2016. 6. 10. 중2 딸이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지역경찰관이 민원인을 소청인의 근무부서인 지능팀으로 인계하였고, 위 민원인이 전날에 지능팀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기에 가출한 민원인의 딸이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경찰내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사부서 업무

분장을 이유로 민원인을 사무실에 대기시킨 후 당직 상황관리관에게 찾아가 업무분장을 요구하였던 점,

위 상황관리관 ○○과장 경정 B는 소청인이 찾아와 사건설명을 하면서 사건부서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가 전일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고 귀가한 후 다시 가출하여 성매매 의심내용의 사건으로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신고내용으로 형사부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가출청소년의 행위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소청인에게 지능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조정을 하였으며, 소청인이 업무분장을 거론하며 반론을 하여 그럼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고 하자 그냥 돌아갔고 그 이후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여청수사팀장에게도 보호자가 일단 가출청소년을 찾아 달라는 취지가 있으니 가출수사를 하라고 업무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M 등도 소청인이 찾아와 전체적인 신고내용 설명 후 지능팀이 아닌 여청수사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업무조정을 요청하여 상황관리관이 여청수사3팀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청취 후 일단 성매매 관련 사항이 있으면 지능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고 일단 지능팀에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업무분장표를 가져와 자신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소청인이 알았다고 답변을 하고 상황실을 나간 후 다시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소청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경사 I는 상황관리관이 가출청소년이 귀가와 가출을 반복한 점으로 보아 현 상황을 감금으로 보기 어렵고 일단 민원인의 요구는 딸을 찾아 달라는 것이니 여청수사팀에서 먼저 민원처리와 절차를 설명한 뒤 가출청소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사안을 살펴 관련부처에서 고소를 받던 신고를 받던 사건접수를 받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상황실에서 나올 때 상황관리관이 아청법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지 업무분장을 찾아보고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하여 각 부서간 논쟁이 많았던 사안으로 근거를 찾으면 알려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수사요구를 받아 업무조정을 의뢰했고, 명확히 수사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차후라도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상황관리관이 여청수사팀에서 위치추적 등 관리하여 다시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민원인을 안내하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민원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안내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상황관리관이 여청수사팀장에게는 가출수사를 지시하고 지능팀 직원에게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지능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업무조정을 지능팀으로 한 것으로 보이냐는 감찰조사 당시 조사관의 질문에 소청인은 상황관리관이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면 자신의 팀인 지능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 등 관련자들이 사건 미루기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민원인이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경찰의 늦장수사에 대해 항의함에 따라 청문감사관실에서 사건을 형사과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권고하여 형사과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당일 야간에 사건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당일 상황관리관과의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성매매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능팀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시를 놓친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피되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수사를 하라는 상황관리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한 성매매사건 수사가 즉시 착수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원인이 신고한 날로부터 피의자들이 체포되기까지 미성년자가 범죄에 노출되어 강제성을 띤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 역시 부인하기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담당수사부서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자가 미성년자로 범죄에 노출되어 112신고 후 2차 피해가 발생된 사건임에도 즉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이 사건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 야기 등을 우려하여 상황관리관에게 조정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청수사팀 및 강력팀 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한 사실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되어 각 부서간 사건 미루기를 한 대상자들 즉 여청수사팀 경위 F, 강력3팀장 경위 G는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고, 부하직원들이 상담한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즉시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부서 팀장들은

주의조치를 받은 점,

이 사건 당일 당직 상황관리관으로서 소청인에게 성매매사건 수사를 지시한 경정 B도 그 지시에 대해 진행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경고 조치된 점 등을 비교해 볼 때,

소청인이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범죄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112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인을 여청수사팀에게 인계하는 등 사건 미루기를 한 부분은 위 관련자들과 책임이 같다고 할 것이나 야간 또는 휴일에 경찰서장을 대신할 권한이 있는 당직 상황관리자의 수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품위유지 위반(바.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최소 '견책' 수준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형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범죄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수사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나, 당시 상황관리관에게 업무조정을 요청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범죄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가출청소년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 태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8 검거실적을 위해 허위 보고서 작성(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식당 주인에게 허위로 112신고를 하라고 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절도범을 검거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개인적인 사욕 보다는 소속 기관의 검거실적을 위한 행동이었던 점,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과중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60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통카드를 절취한 미검 피의자 C(18세, ○○고 2년)를 여청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것을 발생사건 대장을 보고 알게 되어 동료 B와 함께 검거계획을 세운 다음, 2016. 4. 26. 16:00경 피의자 C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된 C를 ○○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불러내 검거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절도범 검거 실적 및 112신고사건 현장 검거지수를 올리기 위하여 동료 B와 함께 근처 ○○식당 주인에게 '경찰관이 신고해 달라는 절도범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라고 시켜 마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 검거한 것처럼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임의동행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여청수사팀에 제출하고 C를 귀가시켰다.

또한 소청인은 2016. 6. 27. 야간 자원근무를 하면서 순찰2팀에서 ○○동 소재 ○○PC방 팔찌(35만 원 상당) 절도 발생사건 수사 중 피의자 D(15세, ○○중 3년)의 친구 이름을 알고서 검거하여 피해품만 회수되면 훈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 담당자 경위 E로부터 그 친구 이름 F(○○중 2~3학년)를 입수하여 B와 검거계획을 세우고, 같은 달 29. 16:40경 위 D와 연락이 되어 ○○파출소로 출석하라고 해서 나오라고 한 후 위 D를 검거하고, B는 계획대로 ○○식당 주인에게 '며칠 전 경찰관이 찾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도록 하여 마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한 것처럼 112신고 처리표와 임의동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여청수사팀에 보고하고 D를 돌려보냄으로써 절도범 검거실적 및 112신고사건 현장 검거지수를 올린 사실이 있다.

한편 소청인은 피의자 D가 가지고 온 피해품인 팔찌를 2016. 6. 28. 19:30경 4팀장 경위 G가 임의제출 받아 사물함에 보관중인 것을 다음날인 6. 29. 112신고를 받고 검거하면서 임의제출 받은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약 ○년 9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비단 업무평가 우수 및 연말정기 ○○청장 표창 2회 등 총 34회 표창을 수여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경위

소청인은 ○○파출소 각 순찰팀별 2016. 1월~6월간 형사범 검거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형사범 검거실적을 거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범죄첩보 수집을 위해 ○○파출소 범죄발생현황대장(이하 '범죄발생대장'이라 한다.)을 수시로 확인하며 범인 검거를 위해 발생사건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먼저 소청인은 위 범죄발생대장을 검토하던 중 10여일이 지난 절도사건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자는 같은 반 학생인 피의자가 자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교통카드 1매를 절취하여 편의점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사건에 착수하여 검거 2~3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피의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개인일정으로 만나지 못하다가 2016. 4. 26. 16:00경 ○○고교 정문에서 만나 검거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위 절도피의자를 검거한 후 ○○경찰서 수사팀으로 인계 조치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학생이므로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시간으로 배려하였고, 또한 1주일 후 시험기간이라고 하여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위 여청수사팀과 조율하여 시험이 끝난 후 조사를 받도록 일단 귀가 조치하였으며, 그 후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조사 후 검찰 송치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피의자가 지방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드나들었고 그 후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서울로 전학을 왔다고 하여 아직 피의자가 학생이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학업에 열중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부여해 주며 소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을 시 전화하라고 하여 그 후 피의자가 소청인에게 수 회 전화를 하여 통화하며 상담을 해 주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검사(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는 바, 경찰관은 수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순찰근무를 하든 상관없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누구나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소청인이 순찰경찰관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사건을 수사할 수 없음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를 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사건수사 중이라도 순찰경찰관은 누구나 파출소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범죄발생대장을 보고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도 평소

범죄발생대장을 보고 ○○파출소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의 발생시간과 장소 및 범죄유형 등을 검토한 후 순찰근무 시 이를 참고하여 범죄가 빈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집중순찰을 하였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순찰3팀 소속이나 2016. 6. 27. 당일 순찰2팀의 야간근무를 순찰3팀장과 함께 지원을 하던 중 도보순찰근무를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파출소에 들어갔을 때 절도피해자가 피해품인 팔찌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건접수자인 순찰2팀 경위 H에게 피의자가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본 건을 달라고 하여 '그럼 너가 잘 잡으니까 사건을 가져가서 하고 순찰2팀 순경 I에게 CCTV녹화자료를 받으라'고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8일 07:00경 CCTV 영상자료를 카톡(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받아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다.

소청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평소 관리하고 있던 비행청소년 3~4명에게 전화하였고, 본 건 절도사건에 대해 ○○중학교 3학년인 ○○과 통화를 하던 중 사건 당일 피의자와 같이 PC방에 있었던 친구와 같이 있다고 하여 피의자의 친구와 통화하면서 다음날인 같은 달 29. 피의자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을 마치고 파출소 앞으로 나올 것을 전달하도록 하여 검거하였다.

소청인은 피의자를 검거한 후 피의자 부모에게 연락을 한 다음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고 그 후 피해자가 부모의 유품을 찾았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서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불기소 처리되었다.

본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의자가 학생이므로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시간으로 배려하였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여청수사팀에 인계하여 추가조사를 하여야 하나, 위 피의자의 학원 등 교육일정을 여청수사팀과 협조하여 일단 귀가하게 하였으며, 피의자와 상담 시 상습 비행청소년이 아닌 것을 직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의자가 선량한 학생 같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인 피의자의 장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의자를 검거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피의자 부친이 자신의 아들이 절도범이 아니라며 파출소를 방문하였으나 절도범죄가 성립됨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해하였으며, 피의자 부친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알려줄 수는 없으나 사전에 피해자와 연락하여 처벌불원서의사를 타진하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하자 피의자 부친이 도와주어 고맙다고 하였다.

게다가 소청인은 순찰2팀원은 물론 다른 순찰팀원 누구에게도 본 건 절도피의자를 훈방한다는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들은 바 없으며, 만약 순찰2팀에서 훈방하려고 했던 사건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소청인이 비번 일까지 반납하며 휴식을 취하지 않고 수사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통상 비행청소년들은 물건을 훔치면 바로 팔거나 버리는 경향이 많아 피해자가 부모의 귀중한 유품이라고 호소하여 즉시 수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위 팔찌 절도사건 관련 피의자 D가 검거 전일인 2016. 6. 28. 19:30경 순찰4팀장 경정 G에게 피해품인 팔찌를 임의제출하여 사물함에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청인은 순찰4팀장은 물론 어느 경찰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

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위 D를 검거한 후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압수조서 서류를 작성하던 중에 알게 되어 위 압수조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또한 본 사건 조사담당자가 사건발생보고가 없고 압수조서 일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 수사보고서를 대체해야겠다고 하여 바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조사담당자가 일단 피의자 조사 후에 재차 필요하다면 작성요청을 할 것이니까 그때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요청하여 근무 때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추호도 없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율이 매우 낮은 상태였음에도 소청인은 2016. 1월~6월간 ○○파출소에 근무하며 형사범을 총 29건, 37명(절도 6건 10명, 폭행 등 6건 10명, 음주 등 기타 17건 17명)을 검거하였고, 끈질긴 추적수사로 소속 순찰 3팀이 나머지 순찰팀에 비해 최저 2배~최고 8배의 검거실적을 거양하도록 기여한 점,

소청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식당 업주에게 112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를 부탁한 이유는 소청인 개인에게 포상이 주어진다거나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개인의 일신영달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한 것도 아니라 ○○경찰서 및 ○○파출소 전체의 범인 검거실적 거양을 하였던 것인 점,

소청인은 과거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과 같이 일부 절차상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한 번도 없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과중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상훈감경대상인 ○○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다수의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성실성에 대해 진술이 있으며, ○○구 주민 등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며,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처분의 재량의 일탈·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뿐,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개인의 일신영달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한 것도 아니라 파출소 전체의 범인 검거실적 거양을 위해 하였던 것이었으며, 과거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일부 절차상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한 번도 없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은 치안종합성과평가 생활안전업무 종합평가 112-생안 공통지표에 112신고 중요범죄 현장검거지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검거지수를 높이기 위해 일부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요구하고 있어 언론에서 비난하는 보도함에 따라 2016. 3. 18.자로 112신고 중요범죄 현장검거지수 허위입력을 엄중히 금한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하여 검거한 피의자를 112신고로 현장 검거하였다고 그 검거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보고를 하였고, 이와 같이 검거경위를 조작한 행위는 평가제도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저해하며,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행태가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허위로 검거경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에게 허위로 112신고하도록 한 행위도 경찰관이 민간인에게 범법행위를 하게끔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한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1조 및 제212조 등에 따르면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하고,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청인이 먼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다가 수업이 끝난 시점에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복을 입은 채로 학교 정문에서 고등학생 C를 임의

동행한 사실과 중학생 D를 혼자 파출소로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미루어 그 비위의 행태가 극히 불량하게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허위·축소보고, 사건은폐)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감봉-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 태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9 동료 경찰관에 대한 음주측정 미실시(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동료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 없이 관련자를 보내는 등 단속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과거에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에 시달린 점, 당일 자진하여 청문감사실에 음주 미측정 사실을 보고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64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다가 ○○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6. 17. 21:30경 ○○시 ○○읍 ○○로터리에서 음주단속 중, 같은 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 B 경위가 2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적발되었으면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 경위에게 "음주운전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 후, 음주측정 없이 그냥 보냄으로써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 4. 경 동료직원이 일으킨 음주운전교통사고를 112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들의 비난 및 소청인을 둘러싼 소문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함은 부정할 수 없으며, 만약 소청인이 트라우마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당일 음주 단속을 마무리하고 경찰서에 돌아와 청문감사관실 직원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상당하고 경찰의 신뢰 확보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동료나 감독자까지도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상훈감경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계 소속의 교통외근 경찰관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의 과실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다음과 같이 소청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소청인은 20○○. 4.경,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C는 사고로 인한 책임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동료 경찰관들은 어떻게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비난은 물론 무시와 멸시까지 하기에 이르면서 소청인은 동료경찰관을 신고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매일 출근은 하지만 엄청난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있었다. 실제로 소청인은 현재 ○○·○○ 트라우마센터 치료기관에 연락하여 ○○색채 심리연구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 소청인은 20○○. 6. 17.(금) 21:30경 B 경위의 음주운전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단속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등 속에 결국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 후 소청인은 같은 날 23:00경 경찰서에 복귀하여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란 결론을 짓고 112타격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경사 D와 동행하여 청문감사관실로 가서 근무 중이었던 E 경사에게 음주미측정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청문감사관실에서 B 경위에 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소속 교통관리계장에게 보고는 휴무일이 종료된 6. 20.

월요일에 출근과 동시에 08:30경 구두로 보고한 바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음주단속 근무 중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동료경찰에 대하여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심적 갈등과 판단력이 흐려져서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가슴 뼈저리게 깊은 반성과 함께 뉘우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금품 수수 등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소청인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소청인은 당일 경찰서에 복귀하여 스스로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보고를 한 점, 지난 ○○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 5. 31. ○○청장 상을 비롯하여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총 144명이 소청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처분은 형평의 원칙과 이익교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청인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교통외근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미측정을 하고 B가 도주에 이르게 되었던 이유는 20○○. 4.에 있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의 신고자로서 동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비난과 무시, 멸시를 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어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4. 당시 사고 주변에서 교통근무를 하고 있던 차에 교통사고 발생(자차사고였음)한 것을 확인하여 112를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사고처리과정에서 운전자가 같은 경찰서 C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고 처리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소청인에 대한 비난이 많아 힘들어 한 것은 사실이다.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교통관리계장인 B 또한 소청인이 오해성 이야기로 인하여 교통관리 근무를 힘들어 했고,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교통관리계에서 빠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두어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류로 남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관련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정황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사건발생일 21시 경 누군가가 음주운전 감지가 되었음을 알고 다가가던 중 관련자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임을 인지하고 함께 근무 중이던 F 순경에게는 다른 차량을 단속하게끔 지시한 후 관련자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을 해결하러 간 사실이 있고 그 사이에 관련자는 도주하였으며 이후 약 30분이 경과하여 관련자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소청인은 관련자를 향하여 고함만 질렀을 뿐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비록 소청인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F 순경에게 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오히려 F 순경에게는 다른 차량을 처리하게 지시한 만큼 궁극적으로 소청인은 관련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를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

유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소청인은 자신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차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관련자가 두 차례나 음주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가하도록 방치한 것을 보았을 때 소청인은 관련자에 대한 이 사건 음주미측정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이 비록 20○○. 4. 음주교통사고 신고 건으로 인하여 동료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이후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음주 미측정이 발생한 당일 경찰서로 복귀한 후 자진하여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관련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채 관련자가 도주해버렸고 관련자가 ○○경찰서 소속 B 경위임을 밝힌 점, 여타의 음주운전 묵살 사건과는 달리 사건 청탁이나 금품 수수에서 비롯된 비위사실이 아닌 점은 분명 참작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관련자에 대한 이 사건 음주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겠다고 한 이후 관련자를 사실상 도주하게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은 이 사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업무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특정 홈쇼핑 측이 제출한 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임직원 범죄행위 내용을 유관기관에 검증하지 않고 정량평가하여 부적격 업체를 재승인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임직원 범죄행위와 관련 심사자료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기로 하였고, 자료누락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점, 부실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 점, 언론 보도 자료나 법원 홈페이지 등의 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65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5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관리소 ○○센터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국에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 업체'라 한다)에 대한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2014. 11. 24.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안내'(2014. 11. 24. 이하 '신청 안내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번 재승인 심사 시 홈쇼핑 업체의 납품비리 및 불공정행위(이하 '비리행위'라 한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 홈쇼핑 업체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한 평가 요건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항목을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이하 '2번 대항목'이라 한다) 등 9개의 심사항목(이하 '대항목'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면서 홈쇼핑 업체의 비리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2번 대항목의 배점을 종전의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50점)함과 동시에 과락제를 도입함으로써 배정된 점수의 50%(배점 200점 중 100점) 미만을 획득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위 관서에서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에 포함된 세부심사기준(안)에 따르면 위 9개의 대항목을 19개의 세부심사항목(이하 '중항목'이라 한다)으로, 19개의

중항목을 다시 48개의 심사단위(이하 '소항목'이라 한다)로 각각 분류하되, 2번 대항목 내 소항목(12개) 중 2-1-4.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정량평가 항목으로 배점 30점, 이하 '2-1-4번 소항목'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재승인 심사 대상 홈쇼핑 업체의 임직원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1심 선고 기준)받은 경우 임원 이상은 4점, 직원은 2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되어 있다.

소청인은 기본계획(2014. 11. 24.) 및 세부계획(2015. 3. 23.)을 작성하는 등 재승인 심사 업무를 추진한 실무자로서 2-1-4번 소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각각의 홈쇼핑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전·현직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배임수재 내역 포함)을 유관기관에 검증하여 확인한 후 세부심사기준(안)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배정된 점수(30점)에서 형사처벌 받은 임직원의 수대로 감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소청인은 2014. 11. 27. ○○홈쇼핑에서 신청 안내문(같은 해 11. 24. 공고)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1차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접수한 후 2015. 1. 23. 1차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자료(이하 '2차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이하 '보완 요청'이라 한다)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당시 ○○팀장인 B의 결재를 받아 3개 홈쇼핑 업체에 발송하였다.

그러고 나서 2015. 2. 2. 3개 홈쇼핑 업체에 별도로 요청하여 ○○홈쇼핑의 경우 전 대표이사 C 등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았으며 이를 내부 관리용 문서(이하 '재판결과 문서'라 한다)로 정리하여 같은 해 2. 3.

B에게 보고까지 하였고, 같은 해 3. 6. ○○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차 사업계획서(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및 재판결과 문서와 2차 사업계획서(협력사와 갑을 관계 비위에 관한 건)의 배임수재 내역만 보더라도 1차 사업계획서에는 7명, 재판결과 문서에는 8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2차 사업계획서의 경우 6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1차 사업계획서와는 1명, 그리고 재판결과 문서와는 2명(C, D)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홈쇼핑의 1차 사업계획서 및 재판결과 문서와 2차 사업계획서의 배임수재 내역 간에 발생한 차이에 대하여 즉시 ○○홈쇼핑에 소명을 요구하여 C와 D가 반영된 정량평가 자료가 심사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유관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 ○○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2차 사업계획서의 내용(배임수재)을 검증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2차 사업계획서 접수일(2015. 3. 6.)로부터 한 달이 넘은 4월 초순경(날짜 모름)에 당시 ○○팀장인 E에게 C가 배임수재 내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5. 4. 17. E로부터 C의 배임수재 누락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야 ○○홈쇼핑의 직원인 F에게 C의 배임수재 누락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는가 하면 이때에도 D의 누락경위에 대하여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소청인은 ○○홈쇼핑에서 2015. 4. 20. 위 확인요청(2015. 4. 17.)에 대한 회신공문(이하 '4월 20일자 공문'이라 한다)을 제출하면서 2차 사업계획서 중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에 C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배임수재 내역)에 C 등을 누락하여 기재한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C의 배임수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E에게 ○○홈쇼핑에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보고하였다.

더욱이 7개의 정량평가 항목 중에서 2-1-4번 소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정량평가 항목(2-1-3.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6개 평가항목)의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신 자료와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사하는 등 사전 검토를 한 반면,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유관부서(○○담당관실)나 유관기관(법원 및 검찰청)의 의견은 구하지도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의 답변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 뒤 소청인은 2015. 4. 20.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정량평가 자료(2-1-4번 소항목 포함)를 작성하면서 ○○홈쇼핑이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대로 C와 D를 제외한 채 ○○홈쇼핑의 전·현직 임직원 6명(임원 1명, 직원 5명)만으로 2-1-4번 소항목의 평가점수(16점, 배점 30점에서 14점 감점)를 작성, E에게 보고한 후 2015. 4. 28.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 결과 ○○홈쇼핑의 2-1-4번 소항목에 대한 정당평가 점수 94.78점이 아닌 102.78점이 되어 과락을 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홈쇼핑은 심사위원회에서 총점 672.12점을 획득하여 2015. 5. 26. 재승인(유효기간 3년)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홈쇼핑 업체에 대한 재승인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적격 업체가 재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이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까지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표적인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서 관련 재판 결과를 심사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재승인 거부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도 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심사 지원 업무에 임하였고, 적극행정과 심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가. 배임수재 관련자 8명 중 2명에 대한 소명 미흡 관련

임직원 개인비리를 계량화하여 TV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난제였고 수차례 정성평가로 바꿀 것을 검토하였으나 ○○반 차원에서는 정량평가로 자료를 작성하되 최종적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정성·정량평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임직원 범죄행위' 관련 심사 자료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기로 하였고, 사업계획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소명 요청, 심사위원회에 경과보고, 대표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누락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였으며, ○○홈쇼핑이 제출한 1, 2차 사업계획서가 심사의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자료이고, 2015년 2월에 3개 홈쇼핑 업체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임직원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 관련 자료는 당시 전문가회의 대비 참고용 자료로서 공식적인 심사 자료는 아니었으며,

○○홈쇼핑 임원 1명(D) 누락 건은 사업계획서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비리 임직원 포함 여부 판단은 ○○홈쇼핑 측이 하여야 하고 ○○반에서 언론보도나 법원 홈페이지 등의 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으며, 2015년 4월 정량평가 작성 시에는 사업계획서와 관계기관 제출 자료만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2015년 2월 ○○홈쇼핑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메일 참고자료 등은 확인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당시로서는 임직원비리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 외에는 크로스체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업계획서 상으로 인지 가능한 ○○홈쇼핑 대표 1명의 누락 여부만을 확인하였던 것이고,

나. 판결문 입수 가능여부 관련 유관기관 확인 미흡

TV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이전의 두 차례 행정소송 수행경험 및 변호사 문의 등을 통해 당사자의 사건번호는 본인 및 소송 대리인 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며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공식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감사원은 당시 보도 자료나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재판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자를 추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심사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자료를 그와 같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수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임직원 비리

항목 반영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선례가 전혀 없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재판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케이블TV ○○방송 재허가 거부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시청자 의견 청취 절차 생략)로 정부가 패소한 선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전력하였던 것이며, 2015년 1월의 공영 홈쇼핑 선정심사에서도 ○○반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심사 자료의 진위여부 판단은 심사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하였고, 심사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도 2인이 포함되어 있어 임직원 비리 관련 자료의 부실한 제출에 대해서는 그 경과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3~4월에는 6개 홈쇼핑사 1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현장 실사 등으로 업무가 폭주한 상황이었고, 심사를 한 달여 남기고 당시 팀장의 승진 발령으로 팀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상황이었고 본부 경험 없는 주무관 배치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료를 소청인이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했으며, 3개사 총 3,000점 중 1개사 1개 항목 30점(임직원 비리 관련 항목)에만 전력을 쏟을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사업계획서 이외의 자료까지 확인하고 점검하기는 어려웠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라는 중요업무를 담당하면서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에 대해 여러 논란을 낳은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 장관 등 2차례 장관급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관련 소청인만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부 재직시절 4급 서기관 승진서열 명부상 1번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승진탈락하였고, 지방 관서 전출을 자원하여 사실상 승진기회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임직원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기로 하고 자료누락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였으며,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였고, D의 누락 건은 사업계획서 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확인 가능한 C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이며, 사건 번호는 본인 및 소송 대리인 외에는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언론 보도 자료나 법원 홈페이지 등의 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홈쇼핑 업체에 대한 재승인 심사 관련하여 기본 계획 및 세부 심사 계획을 작성하는 등 재승인 심사업무를 추진한 실무자로서, 본건 재승인 심사 시부터 홈쇼핑 업체의 납품비리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 홈쇼핑 업체에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및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하여 평가 요건을 신설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본건 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014. 11. 21.과 같은 해 7. 11. C와 D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이미 관련기사가 다수 보도되어 있어 배임수재 내역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2015. 2. 2. ○○홈쇼핑의 직원 G로부터 C 등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내부관리용 문서로 정리하여, 2015. 2. 3. 당시 ○○팀장인 B에게 보고하였고, ○○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차 사업계획서(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및 재판결과 문서와 2차

사업계획서의 배임수재 내역만 보더라도 1차 사업계획서에는 7명, 재판결과 문서에는 8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2차 사업계획서의 경우 6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1차 사업계획서와는 1명, 그리고 재판결과 문서와는 2명(C, D)의 차이에 대하여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특히 임직원의 범죄행위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정 감사,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소청인의 부서에서 이를 반영하여 본건 재승인 과정에서 처음 신설되는 심사 항목이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어야 했다는 점, 7개의 정량평가 항목 중에서 2-1-4번 소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정량평가 항목(2-1-3.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6개 평가항목)의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신 자료와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사하는 등 사전 검토를 한 반면,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담당관실 등 유관부서나 법원 및 검찰청 등의 유관기관의 의견은 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의 답변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입수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2차 사업계획서 접수일(2015. 3. 6.)로부터 한 달이 넘은 4월 초순경에 당시 ○○팀장인 E에게 C가 배임수재 내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5. 4. 17. E로부터 C의 배임수재 누락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야 ○○홈쇼핑의 직원인 F에게 C의 배임수재 누락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면서도 D의 누락경위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은 점, 2015. 4. 17. ○○홈쇼핑에 대한 계량평가 내역을 정리하면서 배임수재 항목에 C를 포함하여 18점을 감점하여 12점을 부여한 문서를 작성하여 E에게 보고하였음에도, 3일 뒤 ○○홈쇼핑

에서 2015. 4. 20. 위 확인요청(2015. 4. 17.)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C의 배임수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추가확인을 하지 않은 채 E에게 ○○홈쇼핑에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보고한 점,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홈쇼핑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라는 점, C의 사건 번호 경우 법률 신문 등에 언론 보도된 사실이 있고, 심사위원회 1차 회의 속기록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판단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사건번호만 확인하더라도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판결문 확보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는 점, ○○홈쇼핑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임직원 범죄행위' 기재 내역을 달리 제출하였다면 ○○홈쇼핑 입장에서는 재승인 여부가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더욱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고, ○○홈쇼핑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 검증의 책임은 소청인 등 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있다는 점, 또한 ○○홈쇼핑에서도 전직 대표이사와 임원의 재판 기록은 법무담당 부서 등에서는 중요 사안으로 인지하고 관리하였을 것인바, 유관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홈쇼핑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담당자로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업무 처리 절차로 보인다는 점, 결국 소청인이 단순한 확인 절차 및 검증 과정을 소홀히 하여 부적격 업체인 ○○홈쇼핑이 재승인 받은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 평가 항목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여 부적격 업체가 재승인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대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1 담당 과제 처리업무 소홀(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과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오다가, 개선 사항이 없음에도 담당 과제가 해소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담당 과제에 대해 허위로 종결처리하지 않은 점, 추진단의 지연과제 점검 업무연락 내용에 대해 판단 착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74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원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이다.

소청인은 2013. 8.부터 2014. 6. 까지 ○○부 ○○국 ○○실 ○○과에서 ○○ 소속 ○○추진단의 과제인 ○○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 ○○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완료한 것처럼 종결 처리 지시

○○ 과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등을 마련하거나 매입업체가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회비 부담이 완화되었을 때 위 추진단에 종결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4. 3. 중순경 소속 직원인 B 주무관으로부터 ○○추진단의 ○○ 과제에 대한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공개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추진단에 지연과제로 보고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B 주무관이 지연사유에 해당 없음, 완료일에 2013년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추진단에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나. ○○ 과제에 대한 소극적 업무 추진

소청인은 ○○ 과제에 대해 대부분의 매입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과제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고, 협회가 적정 위탁수수료에 대한 산정 없이 수수료 성격의 회비를 업체에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3. 2. 수립한 계획과 다르게 민원을 제기한 소수 업체만을 위해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위 과제 내용을 해석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오다가 전혀 개선 사항이 없음에도 ○○ 과제가 해소된 것으로 종결 처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완료한 것처럼 종결처리 지시 관련

소청인이 과제를 종결처리 했다고 지적하는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과제를 추진한 점, 지연과제 추진을 위해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도 굳이 마다하고 이미 3개월 전에 완료되었다고 한 점, 과제 추진기간이 짧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굳이 완료되었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허위로 종결처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청인은 위 과제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과제가 완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과제지연 추진에 따른 지연사유 및 추가 소요기간 파악이 아닌 2013년도에 완료되어야 할 과제로 잘못 이해하여 추진이 지연된 과제의 완료 예정일을 묻고 있음에도 완료일이 2013년이라고 작성한 점 등 판단 착오에 따른 오류 작성 가능성이 있다.

나. ○○ 과제에 대한 소극적 업무 추진 관련

소청인이 이 과제를 추진한 기간은 총 4개월 18일로 소청인의 후임자는 20개월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과제의 성격과 추진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직무태만을 지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개 입찰방식은 소청인이 발령받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방식 자체의 여러 문제로 도입되지 못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 관세화 도입에 따른 ○○ 산업 종합대책 수립 주무과장으로 매우 분주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담당 사무관이 발령 받은 지 17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담당 주무관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점, 소청인은 ○○여 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20○○년에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이 건으로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헤아려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함을 의미하고,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여,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 과제인 가공용 ○○ 배정 비용부담 완화 과제에 대해 허위로 종결처리하지 않았음과 위 추진단의 업무연락 내용에 대한 판단착오에 따른 오류 작성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소속 ○○추진단이 2014. 3. ○○ 규제개선 지연과제 점검 협조 요청 업무연락을 통해 위 과제의 지연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은 같은 과 B 주무관이 작성한 자료를 보고 받으면서 공개입찰 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위 추진단에 지연과제로 보고를 하지 않고 2013년도에 위 과제가 완료된 것처럼 작성한 보고서를 위 추진단에 제출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점,

위 추진단의 업무연락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불편을 주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4. 3.

중에 ○○회의를 앞두고 ○○ 지연과제를 점검하고자 보낸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더욱 더 신중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위 과제 추진을 위해 공개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과제가 완료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B 주무관이 위 업무연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 개선 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B 주무관에게 지연과제로 보고하라는 업무 지시를 별도로 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같은 과 직원인 B 주무관, C 사무관이 소청인이 가공용 ○○ 공급 및 관리지침을 개정(2013. 10. 2.)했고, 가공용 ○○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청인이 종결처리를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2013년까지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종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업무연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낮아 보이는 점,

가공용 ○○ 매입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회비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핵심 사안으로 하고 있는 본 건 ○○ 과제에 대해 소청인은 대부분의 매입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위 협회가 정부로부터 가공용 ○○ 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적정 위탁수수료에 대한 산정 없이 수수료 성격의 회비를 업체에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공용 ○○ 매입업체의 수수료 성격의 회비 부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 분석이나

검토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위 과제의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건 징계 처분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과제인 가공용 ○○ 배정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공개입찰 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추진단에 지연과제로 보고하지 않고 2013년에 완료된 과제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기타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비록 판단착오에 의한 것으로 허위로 종결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과제에 대한 개선 없이 과제가 해소된 것으로 종결 처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2 수배차량 관련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사건 관련 용의차량 수배입력 과정에서 오류 기재 등으로 다른 사람을 검문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민원인에게 수배입력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일단락된 점, 범죄차량으로 전산 입력한 차량은 수배차량 조회, 범인검거에 활동에 이용할 뿐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단순 과실로 일어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수배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절차가 개선된 점, 민원인에게 자세한 설명과 사과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85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11. 2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수배 차량번호 오류기재 및 수사서류 편철 소홀

2016. ○. 16. 23:20경 ○○시 ○○읍에 있는 ㈜○○산업 근로자 숙소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용의차량 수배를 위해 수배차량전산신청서 작성 시,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작성 전산입력 하여야 함에도 오류기재·입력하였고, 행정관 B로부터 신청 당일(2016. ○. 16.) 수배 입력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수배차량전산신청서 등 수사서류 편철을 게을리 하였고,

나. 수배차량을 민원야기 후 해제로 품위 손상

용의차량(2016. ○. 17.)과 변사체가 발견(2016. ○. 23.)되어 차량 수배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신속히 수배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 ○. 16. 13:16경 ○○경찰서 ○○치안센터 경찰관이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이던 용의차량이 아닌 차량을 검문하자 차량주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검문을 당하였으니 경찰의 잘못을 언론에 공표해서 잘잘못을 따지겠다.” 라며 항의 민원이 야기된 후에야 차량수배를 해제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2016. ○. 22. 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수배차량 오류입력 및 수배 미 해제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근무하겠다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차량을 수배함에 있어 차량번호를 오류로 입력하고 지연, 해제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 약 ○○년간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제반 사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징계감경 공적(표창)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용의자 차량번호를 오류로 입력한 것과 인권침해는 연관성이 적음

소청인은 2016. ○. 12. 23:20경 ○○ 사건이 발생하자 당직근무 중인 ○○경찰서 ○○팀으로 배당되어 초동수사가 진행되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장의 지시에 따라 ○○1·2팀 및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개팀이 지원하였고 소청인도 ○○2팀 소속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사건용의 차량에 대한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 전산수배를 하는 과정에서 용의차량 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지침(2013. 2.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차량으로 전산 입력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에 활용, 범인검거에 활동에 이용할 뿐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과실에 대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계사유를 적시한 것은 위 업무지침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소청인은 수사서류 편철 및 수배차량 전산 해제 업무 담당이 아님

소청인은 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서 ○○과장의 지시로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며 사건 담당은 ○○3팀 경사 C이다. 따라서,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지침(2013. 2. 경찰청)'에 따라 사건수사 담당자가 범죄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 당일 ○○과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서 양식이 없어 부득이 소청인이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것이다. 또한 전산수배 해제도 수배차량을 발견한 경찰서나 사건담당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와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한 위법 처분이다.

한편, 차량수배신청서에는 차량번호 등 총 17개 항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8개 항목은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소청인은 당시 차량번호만 오류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하였는데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리고 차주를 직접 만나본 바로는 검문 과정에서 불친절함에 불만은 있었지만 어떠한 신체의 자유 침해는 없었고 수배입력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일단락 되었다.

다. 기타 근무 상황, 징계수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함

소청인이 위 사건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는 ○○과 ○○을 오가며 수사를 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전 구속한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사건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바쁜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청인보다 과실이 경하다고 할 수 없는 전산입력 담당자는 '특별교양처분'이란 경한 처분을 받은 점, 그동안 소청인은 강·절도 등 단속실적이 우수하여 전국 3배수 안에 들어 특진에 상신되었고 ○○년 2개월의 짧은 경력임에도 지방청장 2회, 경찰서장 5회 등 표창을 받은 점, 동료 직원 2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중에 단순한 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용의자 차량 오류 입력과 인권침해의 연관성 관련

소청인은 2016. ○. 12. 사건용의 차량에 대한 전산수배를 하는 과정에서 용의차량 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지만, 차주에게 수배입력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일단락되었고 범죄차량으로 전산 입력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 범인검거에 활동에 이용할 뿐,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체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청이 하달한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지침(2013. 2.)'에 따르면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의 목적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범인검거 활동에 기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사건용의자의 차량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2016. ○. 13:21경 ○○경찰서 ○○치안센터를 통과 시,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에 의해 감지되어 ○○청 ○○치안센터에서 수배차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차량을 검문하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방화치사사건 용의자로 오해를 받아 항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배차량을 신속히 검거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과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신원 확인 과정에서 운전자의 시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민원인에게 수배입력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점과 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점은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2) 수사서류 편철 및 수배차량 전산 해제 업무 담당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의 ○○경찰서 ○○과장의 지시로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며 사건 당일 담당자인 ○○3팀 C 경사가 범죄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서 양식이 없어 함께 있던 소청인이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것이며, 전산수배 해제도 수배차량 발견 경찰서 또는 사건담당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한 위법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은 방화로 사망자 2명과 가설건축물 2동 전소(재산피해 ○억여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가 중요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소청인 등이 지원팀으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비록, 소청인이 이 사건의 직접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과장의 지시를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산수배 신청, 해제 등에 있어서 동일한 업무수행자로 보아야 하며, 차량 수배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소청인이 자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청서를 오류작성하고 입력결과 서류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확인 절차 없이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서류에 편철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에서 '수배차량 발견관서는 즉시 해제 후 수배관서에 통보하고 수배관서는 그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6. ○. 17. ○○시 카센터에서 실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서 ○○과장이 단체 카톡방에 수배해제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발견된 차량번호는 전산 입력 수배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오류작성과 입력결과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차량 수배·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전산입력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의 확인책임 여부

소청인은 차량수배신청서에는 차량번호 등 총 17개 항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 중 8개 항목은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소청인은 차량번호만 오류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하였는데 종합조회처리실 전산입력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지침'에 따르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를 위해 전산입력시스템에 입력·해제하는 절차에서, 사건담당 수사관이 차량수배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에게 입력 요청을 하게 되면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는 차량수배신청서를 확인

하여 입력하고 입력결과를 다시 사건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산입력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가 수배신청서를 보면 수기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명칭, 연식, 색상, 차량특징, 차대번호가 자동으로 모니터 상에 보여지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소청인이 수배자의 차량번호를 오류로 기재하여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에게 전산입력을 요청하였는바, 종합조회처리실 ○○주사보 B가 빨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수배신청서 상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동일 차종이 뜰 것으로만 생각하고 차량명칭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입력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담당자의 업무 소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력 결과를 출력한 '수배상세내역서' 1부를 다시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로 볼 때, 1차적인 책임은 최초 입력신청서를 오류로 작성하고, 입력결과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소청인에 있다 할 것이며 중요한 사건대상 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처리과정을 아무런 확인 과정이 없이 실무자에게만 맡겨두도록 한 결재라인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방화치사사건 관련 용의차량 수배를 위해 수배차량전산신청서 작성 시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작성 전산입력 하여야 함에도 오류 기재·입력하고, 수배차량전산신청서 등 수사서류 편철을 게을리 하고 차량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수배차량을 신속히 검거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과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임용된 지 ○○년여의 짧은 기간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과 ○○을 오가며 수사를 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전 구속한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사건 송치업무와 관련한 바쁜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수배신청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려 하던 과정에서 단순 과실로 일어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수배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처리 과정의 절차가 개선된 점, 민원인에게 수배입력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과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 피소청인 및 동료의 평가가 우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무거운 측면이 있어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Ⅲ. 품위손상

33 직장내 성희롱(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지구대 사무실에서 여순경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 바닥으로 탁 소리 나게 1회 치는 등 3회에 걸쳐 성희롱하고 4회 가량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툭툭치는 신체적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허벅지 안쪽을 친 적이 없고, 성희롱 의도가 없었던 점,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7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6. 29. ~2015. 11. 19.의 기간 중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3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구대 ○○2팀 소속 순경 B(여, 24세)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1) 2015. 11. 17. 18:05경 ○○지구대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자로 출근한 ○○2팀 순경 B를 팀장 자리로 불러 "요즘 얼굴보기 왜 그렇게 힘드냐?" 라고 하며 커피와 떡을 건네주면서 순경 B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바닥으로 탁 소리가 나게 1회 쳤고, 같은 날 18:25경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순경 B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어깨를 B의 어깨에 대고 "누구꺼 타는거야?" 라고 물었으며, 잠시 후 18:40경 근무 후 사복을 갈아입은 상태로 사무실에 들어와 ○○2팀장 경위 C와 무기고 대장을 확인하고 있는 B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책상을 짚고 있는 왼쪽 팔을 1회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성희롱을 하였다.

2) 2015. 9월 중순경부터 10월 말까지 4회 가량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준비하는 순경 B에게 다가가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2~3회 툭툭 치면서 "수고해, 열심히 해라."라며 신체적 접촉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3) 2015. 11. 17. 8:10경 근무교대를 위해 ○○2팀 및 ○○3팀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니 남자친구 합격했냐?"라고 물어 떨어졌다고 대답하는 순경 B에게 "그럼 안 되지, 여기 있는 직원들 중 잘생긴 남자 친구 골라봐라."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순경 B에게 망신을 주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5. 11. 17. 발생한 징계이유1) 및 3)의 경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5. 11. 17. 야간근무 교대를 위해 책상에서 결재를 하던 중 책상 건너편에 있는 순경 B를 보고 불러 절편 2개와 커피를 주었는데, 순경 B가 받으면서 "팀장님, 제가 절편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말하고 머뭇거리고 있었고, 당시 업무로 바빴으므로 왼쪽 손으로 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잠시 후 8:10경에는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경 B에게 남자친구가 경찰 시험에 합격했는지 묻자 떨어졌다고 하였고, 순간 딸처럼 생각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직원들 중에 골라봐라'라고 말실수를 하게 된 것이며,

18:25경에는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뒷문 정수기에서 순경 B가 커피를 타고 있어 허리를 숙이면서 말을 건 것이다. 당시 순경 B가 대답을 하지 않고 기분이 몹시 상한 표정이었으나 어깨에 닿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같은 날 18:40경 퇴근을 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순경 B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순경 B가 ○○2팀장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 순경 B의 왼쪽 소매를 살짝 잡으면서 '수고하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2015. 9. 중순부터 10. 말까지 발생한 징계이유 2)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2015. 9. 중순부터 10. 말까지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평소에 가볍게 직원들의 어깨를 다독다독 하였고, 4회

가량 B의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2~3회 톡톡 치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나 순경 B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소청인은 순경 B가 소청인이 팀장으로 있던 ○○지구대 ○○3팀에서 3주간 실습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소청인의 큰딸과 나이가 같아 딸처럼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싶었던 것이며, 업무교대 시간에 직원들이 30명 정도가 있고 CCTV도 있는 사무실 내 공간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순경 B가 이번 일로 기분 나빴다고 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27년 6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이건 외에는 징계처분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20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과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비위사실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가)순경 B에게 간식을 주면서 왼쪽 손으로 가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기억하나 허벅지 안쪽을 친 적이 없고, 나)커피를 타고 있는 순경 B에게 말을 걸면서 어깨가 닿은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다)퇴근 전 ○○2팀장과 대화하고 있는 B의 왼쪽 팔꿈치 안쪽을 만졌다는 것은 왼쪽 소매를 살짝 잡으면서 '수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고, 라)9월 중순~10월의 기간 중 순경 B의 어깨를 툭툭 친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순경 B의 진술인데, 순경 B에 대한 1차 및 2차 진술조사에서 소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 순경 B가 피해사실을 알린 순경 D, 경장 E 등의 진술로 볼 때 순경 B의 진술이 일관된 점, 시보 경찰공무원인 B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상관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순경 B가 소청인을 음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인 순경 B가 진술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각각 살펴보면,

가) 순경 B에게 간식을 주면서 왼쪽 손으로 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억하나 허벅지 안쪽을 친 적이 없거나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청심사 시 '손이 닿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여 비위사실을 일부 인정하였고, 상식적으로 서 있는 여성의 허벅지 안쪽 무릎 위 10cm 부분은 우연히 손으로 치거나 손이 닿기는 어려운 신체부위인 점, B가 이 일로 '기분이 더럽고 짜증나고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커피를 타고 있는 순경 B에게 말을 걸면서 어깨가 닿은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서도 진술조사 시 '옆에 간 사실도 없으며 목격자 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 순경 D에 의하면 공간이 충분한데도 몸이 닿는 위치에서 B에게 말을

건 점, 소청인은 직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사과를 하려 하였다고 하나 몸을 밀착시킨 것은 하급자에게 사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목격자 순경 D의 진술조사 시 'A팀장이 B에게 이야기 하면서 B 오른쪽 상체에 자기 왼쪽 어깨를 밀착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퇴근 전 ○○2팀장과 대화하고 있는 B의 왼쪽 팔꿈치 안쪽을 만졌다는 것은 툭 치면서 '수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이 제출한 CCTV 사진으로 순경 B의 좌측에 가깝게 서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순경 B가 소청인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보아 통상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5. 11. 17. 당일 이미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순경 B를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한 점, 이 일로 순경 B가 불쾌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책임이 더욱 무거운 것으로 보여진다.

라) 2015. 9월 중순 ~ 10월의 기간 중 순경 B의 어깨를 툭툭 친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진술조사 당시에는 순경 B와 전혀 친밀한 사이가 아니며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딸같이 여겨졌다고 진술하였고, 순경 B가 '소청인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남·여를 불문하고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순경 D도 '○○3팀에 있는 순경 F에게는 말도 잘 하지 않고 짜증만 내는데 유독 순경 B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가깝게 하는 것을 지구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실제로 순경 B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또한 이 일로 순경 B가 11월 부터는 소청인을 피해다녔

다고 진술할 정도의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나.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순경 B에 대한 행동에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리된다.

피해자 순경 B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팀장님이시니까 말은 못했고, 그냥 받아들이다가 계속 횟수도 많아지고 심해졌는데, 신임 순경으로 발령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고 여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내면 혹시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직위가 B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고,

진술 전반에서 '기분이 더럽고, 짜증나고, 수치스러웠다'라는 진술을 수차례 하고 있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낀 점이 분명해 보이며, 소청인은 동료 경찰관들이 B에게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평소 순경 B에게 관심을 보여 왔고, B는 극도의 불안감과 누군가의 손이 자신을 더듬는

꿈을 꾼다든지 하는 악몽을 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당초 진술조사에서 성희롱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 순경 B와 목격자 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이후 CCTV자료 등이 제시된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평소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조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근절 지시공문, 특별교양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물의야기로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히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소청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순경 B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벅지 안쪽을 치는 행위, 어깨를 밀착시키는 행위, 팔꿈치 안쪽을 만진 행위, 수시로 어깨를 툭툭 치는 행위 등을 하여 성희롱을 한 점이 명백하고, 순경 B에게 '남자친구를 골라보라'는 말을 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또한 책임이 인정되는 바, 직장 내 이성(異性)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심이 결여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지방경찰청은 2015. 8. 11. '2차 성관련 비위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직 이상의 문책을 하도록 방침을 지시한 점,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4 음주 후 여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해임→강등)

처분요지

회식 후 2차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수회 신체 접촉을 하고 부하직원 3명에게 성희롱 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일부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으며 성희롱 의도는 없었던 점, 성적 함의로 한 행동이 아닌 점, 정년이 약 5년 정도 남은 점, 부주의나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성희롱의 정도, 수위, 피해의 경중에 상응한 징계양정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의 악성이 배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22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3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12. 3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가. B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2015. 4. 10. 자신이 남자 수용동을 순시할 당시 교위 B가 남자 수용동을 순시 중인 자신을 보고도 ○○과장이 곧 여자수용동을 순시할 것임을 여사감독인 교감 C에게 보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위 C를 질책한 것을 계기로 위 C가 2015. 4. 13. ○○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여직원 회식을 개최하고 자신에게 참석을 건의하자 교감 D, 교위 E와 함께 그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고,

소청인은 위 ○○식당에서 여직원들과 서로의 팔을 걸고 술을 마시는 소위 '러브샷'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위 폭탄주를 마시고, 특히 B에게는 ○○교도소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을 거론하면서 B를 '이쁜이'라고 부르는 등 친밀감을 들어내며 다른 여직원들에 비해 수 회 더 러브샷을 하였고,

이어 같은 날 21:00경 회식 참석자들과 함께 위 식당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참석자들과 어울려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뛰면서 춤을 추고 몇몇 여직원들과 소위 '블루스'를 추는 등으로 흥을 돋우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B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리고, B를 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B가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거나 C가 수회 소청인을 만류

하여 B로부터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위 노래방에 있던 약 1시간 30분 동안 수회 반복하여 B를 껴안고 블루스를 추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B에게 다음에 또 만나자고 속삭이는 등 언동을 하였고,

한편, 다음 날인 2015. 4. 14. 09:00경 아침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른 과장들과 함께 ○○교도소 소장 부속실 옆에서 대기하면서 "어제 여직원 회식이 있었는데 잘 놀았다, 광란의 밤이었다, B가 잘 놀더라, 언제 시간되면 다른 과장들도 함께 갑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부하 직원 B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C에 대한 성희롱

1) C 관사에서의 소란행위

소청인은 2015. 7. 중순경 ○○교도소 소장의 관사에서 소장과 둘이 술을 마시다가, 소장이 여사 감독인 교감 C를 위 술자리로 부르기 위해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C의 관사에 직접 찾아가 약 5~10분간 "C,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위 관사의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음날 16:00경 ○○교도소 과장실에 업무 보고를 하러 온 C에게 화를 내며 "내가 너의 집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는데 안 열어줄 수가 있느냐, 다른 직원들이 봤으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하고, 이에 대해 C가 소청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소청인은 "너네 집은 철옹성이냐, 그래 알았다 이제 너한테 다시는 전화 안 할게, 너는 이제 아웃이다"고 말하였다.

2) 회식 참여 강요

소청인은 2015. 5월~6월경 ○○교도소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외부인인 위원 및 F 계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C에게 전화하여 위 저녁 자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2015. 7.경 ○○교도소 관사 앞에 있는 ○○식당에서 소장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당일 야간 당직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G에게 C를 위 식사 자리에 참석시키라고 지시하여 G는 C에게 전화하여 "○○과장이 비상소집했다, 직무의 연장이니 꼭 참석하라고 하셨다"고 말하도록 하는 등 수회에 걸쳐 C에게 각종 회식 참석을 강권해 오던 중, 2015. 7.경 ○○교도소 소장 관사에서 6급 이상 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고 나서 2차로 회식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계장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몸이 좋지 않아 1차 회식 도중 먼저 귀가하여 병원 진료 후 자신의 관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C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계장이 되어서 혼자 빠지고 그러냐, 홍일점인데 니가 빠지면 어쩌느냐, 홍일점이 분위기를 살려야 하지 않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소청인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부하 직원 C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H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2015. 7. 27. 10:30경 여사감독인 C를 ○○과장실로 불러 자신의 여자 수용동 순시 당시 H가 출입문을 늦게 연것에 대해 "여자 수용동 근무를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과장이 순시를 갔는데 문 밖에 세워둘 수가 있느냐, 여자수용동 일근 근무자의 배치를 빼겠다"고 질책

한데에 따라 C로부터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은 H가 2015. 7. 31. 08:00경 ○○과장실로 와서 경위서를 소청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울먹이자, “야~ H야! 뭐 이런 거 같고 우노, 내가 너를 위로해 주기 위해 밥을 사야겠다”고 말하여, H와 저녁식사 자리를 갖기로 한 다음 2015. 8. 6. 업무보고를 위해 ○○과장실에 온 B에게 소청인은 2015. 8. 10. B, H 3명이서 저녁을 먹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같은 날 교도소 인근 ○○식당에서 G, B, H와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B, H가 거절함에 따라 각자 귀가하기로 하고, B와 H가 ○○교도소 외정문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관사로 가다말고 G과 함께 급하게 B와 H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H를 자취방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여 B가 귀가한 다음 H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자취방까지 바래다주기로 한 후 G와 함께 H의 자취방으로 향하던 도중 G가 먼저 관사로 가버려 H와 둘만 남게 되자, 수회에 걸쳐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가자고 제의를 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H가 마침 근처에 있던 ○○카페로 가서 커피나 한 잔할 것을 제의하자, 이에 동의하여 위 커피숍에 간 후 “나의 노래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면서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말하고, H가 “음치여서 노래방에 가는 게 싫습니다”고 완곡히 거절하자, 음치교정 및 기타레슨을 해주겠다면서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하니 나중에 따로 둘이 만나자”, “늙은 것들을 빼고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자”고 하였고,

계속하여 자정 무렵 위 커피숍에서 나와 H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취방까지 바래다주겠다고 고집하여 동행하면서, H에게 “내가 너의 근평을 잘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자취방 인근에서 다시 나중에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말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2015. 8. 11. 10:53경 H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잘 맞는 거 같다, 나중에 둘이 또 만나자”고 말하고, 같은 날 14:06경에는 H의 메일로 ‘어제 너에게 목련 같다고 했지, 목련의 꽃말을 찾아보니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 자연애, 숭고한 정신, 우애라고 하네, 고귀함과 너의 이미지와는 매치가 되는 듯 ㅎㅎ, 커피 한 잔과 즐거운 대화... 그것도 아가씨와 ㅋㅋ 어제는 내가 복 받은 듯 하네 H야 고마버 ㅋ 기쁨 그리고 기다림... 널 보면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 나에게 활력을 주는 예쁜 H 복 받을 거여 혼자만 보셈.. 여직원들 알면 내가 편지를 모두 써줘야 할 듯 ㅋㅋ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브라보 점뺀 4.5’ 라는 내용으로 이메일로 보내고, 같은 달 12.에도 08:57, 09:20, 17:11 등 3회에 걸쳐 H에게 전화하였으나, H가 받지를 않자, 같은 날 17:32경 H에게 ‘마음 고생이 심했나 보네? 저녁 먹은 거는 ○○이 알고 있더라, 커피는 모르는 듯 하고... 다음 주 계획도 취소합시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2015. 8. 12. 16:55경 C가 ○○과장실로 찾아와 소청인에게 더 이상 H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이후 같은 달 13. 13:30경 H를 ○○과장실로 불러 “너하고 나하고 밥 먹은 게 무슨 문제가 돼?”, “비상연락망으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라고 말하고, 2015. 8. 17. H가 ○○교도소 총무과장 I에게 성희롱 고충상담을 신청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과장실에서 C 입회하에 H에게 사과하면서 “니가 오해한 거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니가 원하는 것 하나는 꼭 해줄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소장님 힘을 빌려서라도 해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소청인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부하직원 H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지난 22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과 음주 후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하고, 부하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일부 사실관계 오인(적극적인 성희롱 의도는 없었음)

1) C 성희롱 비위 관련

가) 관사 소란 비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교도소장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소장이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소청인이 직접 C의 거주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심야 시간이라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으나, 답이 없어 노크를 2~3차례 한 것이 전부이다. 징계사유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

소청인이 제출하는 녹취록 기재와 같이 관사에 거주하는 동료들 모두 이 사건 당시 문을 크게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듯한 소란을 피운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다음 날 C에게 '너는 아웃이다'고 말한 경위도 앞으로 교도소장이 C를 찾더라도 호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 회식 강요 비위에 관하여

C는 소청인이 과다한 회식 자리를 만들어 자신의 참석을 종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과장으로 재직한 8개월 동안 10차례 미만으로 회식을 실시하였고, C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회식 참여를 독려하였던 것이지, C와 단둘이 식사한 적이 없다.

'비상소집'이라는 말 역시 업무 관련성을 강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용적으로 쓴 특별한 의미 없는 단어 선택이다.

2) B 성희롱 비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회식 당시 직원들과 폭탄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교정 조직에서는 폭탄주를 마시게 되면 항상 러브샷을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그러나 B에게 특별히 술을 많이 권하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해 B와 러브샷을 많이 한 사실은 없고, 단 1회 러브샷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다른 여직원들과도 블루스를

추었는데, 특히 B가 술에 많이 취하여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잡아 올려 허리춤을 두 손으로 가볍게 잡아 블루스를 춘 것이지, 원처분과 같이 B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추근대거나 가슴 부위 등 은밀한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의 큰 소음 때문에 말이 안 들려 얼굴을 가까이 댄 사실은 있으나 B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위 회식 다음날 타 과장들에게 '광란의 밤'이라고 표현한 것은 흔히 회식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며, 'B가 잘 놀더라'는 표현 역시 B를 욕보일 의도가 아니라, 재주도 많고 일도 잘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3) H 성희롱 비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저녁 자리 파한 후 여직원들이 술을 먹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 여직원들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고, H를 남자 직원 G 계장과 같이 데려다 주던 중 G가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가게 되어 소청인이 결국 H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H에게 '혹시 술이 부족하냐'는 취지로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원처분과 같이 수차례 술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자고 강권한 사실은 없고, 소청인이 원처분과 같이 '너의 근평을 잘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요즘 승진 공부 하냐, 혹시 점수가 필요하면 얘기해라'고 한 사실은 있다.

H를 집에 데려다 주는 도중 H의 권유로 인해 커피숍에 들리게 되었고, 커피숍에서 단순히 서로 담소를 나누었을 뿐인데, 원처분과 같은 말을 한 것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농담조로 말을 하였던 것이지, H의 환심을 사거나 유혹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위 다음 날 H에게 보낸 메일은 직장에 적응을 못하는 H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보냈을 뿐, 사심을 담은 내용은 아니었으며, 평소 소청인은 동료 직원들에게 메일 등을 보낼 때 아기자기하거나 아름다운 말들을 자주 인용하는 편이었다.

4) 소결

평소 소청인은 성격이 낙천적이고 부하직원들에게 유머를 자주 사용하는 편으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언동이 성적인 함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나,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던 점은 반성하고 있다. 초임 과장으로서 부족한 면이 많았고, 이번 기회에 성희롱의 명확한 의미를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나. 징계 양정 참작사항 등

소청인은 30년 가까이 교정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제 정년이 약 5년 정도 남은 상황으로 본 건 처분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입었다.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소청인의 부주의나 실수가 있었던 면은 분명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성희롱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이 사건 증거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서는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등인 바,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기재를 보면 피해자들은 피해 일시·장소,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들에게 소청인을 굳이 음해할 이유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여성 직원이 자신의 상관에 대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혹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고 진술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신빙하여 원처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받아들이는 바, 소청인의 주장과 상위함을 이유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어 그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는 소청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징계사유 1 : B에 대한 성희롱 비위 관련하여서는,

① 관련 당사자인 B는 이건 감찰 조사(2015. 9. 2.)에서 비위 당시 상황에 대해 '2차 노래방에서 과장이 자꾸 저에 달려들 듯이 다가와 저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리는데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 제발 그만 하라고 하면서 도망 다녔으나, 저를 쫓아다니면서 밖에서 가끔 만나자고

말하였다', '당시에는 너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으나, 후에 너무나 치욕스럽고 직장 생활을 관둘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현장을 목격한 C는 '보안 과장이 노래방에 있던 1시간 30분 내내 B를 껴안고 블루스를 추는 등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당시 B는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소청인은 비위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여직원들과 블루스를 춘 것은 맞고, B를 안아서 돌린 사실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징계사유 2 : C에 대한 성희롱 비위 관련하여서는

① 이 건 비위 관련 당사자인 C는 감찰 조사(2015. 9. 2.)에서 '소청인이 밤 11~12시에 자신의 관사 출입문까지 와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문을 세게 두드리며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는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횟수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소청인은 ○○과 회식이 있는 날이면 1차가 끝난 후 2차가 개시될 때 마다 자신을 불렀다, 아가씨를 부르고 나를 부르지 말아 달라고 까지 말하는 등 수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소청인은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C는 위 감찰 조사 이후에도 2015. 9. 7. 동일한 취지로 피해 사실을 소상히 진술한 진술서를 감찰에 제출하였다.

③ 소청인은 이에 대해 'C가 사는 관사에 간 것은 맞으나 단순히 출입문을 노크만 하였을 뿐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발로 찬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C가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불렀을 뿐이고,

2015. 7.경부터는 회식 참여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징계사유 3 : H에 대한 성희롱 비위 관련하여서는,

① H는 2015. 8. 17. 총무과장 I에게 이건 관련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한 성희롱 고충상담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1. 피해 사실을 소상히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한 바, 이를 계기로 본건에 대한 감찰 조사가 개시되었다.

② H는 감찰 조사 당시(2012. 9. 3.) 징계사유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및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유부남인 과장이 연애편지 형식의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을 데리고 놀려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H는 2015. 9. 21. 소청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꽃뱀 취급한다는 취지를 적시한 경위서를 감찰에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

① ○○과장의 지위로서 교정관 계급의 53세의 소청인과 해당 과 소속 부하직원들인 30대의 피해자들 간의 직급, 지위, 나이 등에 따른 상하 관계 비추어, 편한 직장 동료로서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양해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②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소속과의 인사, 복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수용자 계호 등 수용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 지위나 권세를 이용할 수 있는

즉 '위력'을 행사 할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고, 소청인은 H에게 '근평을 잘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실제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듯한 발언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③ 조직 내에서 통상 여성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남성 상관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소청인에게 즉각적으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 1 (B에 대한 성희롱 비위) 관련하여서는,

①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와 강제로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고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B에게 약 1시간 반 동안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을 전제한다면, 앞서 살펴본 소청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객관적 상황과 당시 유추되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혐오감 등의 감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인 점, ② 징계사유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직장 내 상, 부하간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B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고,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동료 직원들이 있는 회식 장소에서 이루어진 바, B 입장에서 느꼈을 모멸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B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이 사건 소위는 위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사유 2 (C에 대한 성희롱 비위) 관련하여서는,

① 소청인은 C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녁 술자리나 회식에 참여를 강권하였고, 특히 2015. 7. 경 병원 진료 차 2차 회식에 빠진 C에게 '홍일점이 빠지면 어떡하냐, 홍일점이 분위기를 살려야 하지 않냐'고 말하였는데, 이는 관용적 표현으로 보아 성적 의미가 배제된 일상적 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여기에 소청인이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술자리에 C가 참석할 것으로 요청한 점, 특히 심야 시간에 혼자 사는 C의 집에 찾아가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린 점, C도 소청인에게 "차라리 아가씨를 부르고 나를 부르지 말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당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비위 후 C에게 '너는 이제 아웃이다'고 말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는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각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주장에 선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라) 징계사유 3 (H에 대한 성희롱 비위) 관련하여서는,

① 소청인은 2015. 8. 10. 직원들과 저녁 회식 후 H의 수차례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술을 더 마시자',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등 요구하였고, 위 과정에서 계속해서 H에게 '앞으로 단둘이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 점, ② 소청인이 H에게 보낸 2015. 8. 11. 자 이메일 전체 내용 취지로 보았을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해당 남성과 연인관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③ H 역시 소청인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과장이 자신을 데리고 노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H는 이러한 성적인 굴욕감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토로하며 성희롱 고충상담을 하고 고민 끝에 소청인의 언동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로 결정함으로써 소청인에 대한 성희롱 비위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 조사결과가 징계 절차로 이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H에게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는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각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주장에 선 소청인의 변소 역시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과장의 직책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 [별표 1] 에 의하면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혹은 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과 본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내지 성추행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 바 같은 규칙 제5조가 정하는 징계 가중 사유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사 소청인의 성추행, 성희롱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는 바, 소청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차 기록을 살피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 중 소청인은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성희롱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제재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 정도에 따른 악성을 구별할 수는 있을 것인 점, 육체적 성희롱 혹은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여성의 은밀하거나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다소 그 악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또한 언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남녀의 육체관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상대방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지적하며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은 그 악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성희롱 등의 비위에 대한 일벌백계라는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성희롱 정도, 수위, 피해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한 합리적 징계 양정의 필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면, 공직을 박탈하는 이건 처분과 소청인의 비행 정도의 균형을 고려해야할 것인 점, 그 외 소청인이 약 22년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전력이 없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어 감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의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5 부하 직원으로부터 상품권 수령 및 부적절한 처신(견책→기각)

처분요지

부하 직원으로부터 5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매주 간식을 구입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식비를 대납하게 하고 협력단체 국장으로부터 식권 31매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간식 및 직원들 식비 대납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협력단체에서 준 식권은 행사 후 남은 것을 준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5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계장 근무 당시,

가. 2014. 12.경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후 사무실에서 '내가 상을 받은 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경장 B(여, 30세)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폰으로 받았으며,

나. 2015. 8.경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활동비(30만 원)로 간식을 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사 C(서무, 34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함으로 인하여 2015. 8.~10.경 사이 직원 8명이 순번을 정하여 매주 1회 떡볶이, 순대 등 15,000~20,000원 상당의 간식을 구입하게 하는 등 상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다. 2015. 7.~8.경 2회(16:00경), 추석 직전 1회(18:30경) 등 총 3차례에 걸쳐 경장 D(31세)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역 부근 마트에 가서 개인 식재료를 구입하는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라. 2015. 1.~10.경 사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약 25회 가량 소속 직원, 타 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식사(25회 × 3,000원 = 75,000원)를 하고, 4월경 외부 협력단체인 국장 E로부터 식권 31매(31 × 3,000원 = 93,000원)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 사실의 사실관계

1) 강압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사무실에 있던 10여 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경장 B만이 그런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장 B 역시 '당시 경감 A의 모범공무원 선발 소식을 늦게 접해 축하꽃다발 등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것이 미안해서 상품권을 선물한 것이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청인 또한 '내가 상을 받은 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냐'라는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

2) 매주 간식을 구입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관련

○○계는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로, 소속 직원들이 각자 업무로 인해 한자리에 모일 시간이 자주 없어 소청인은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 1회 정도 떡볶이·순대 등 간식을 함께 먹는 '간식 Day'를 제안한 것으로, 직원들만 간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청인 역시 직원들에게 밥을 사는 등 평등하게 '간식 Day'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수사활동비'라는 내용을 덧붙여 소청인이 상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논리적 비약이며, 오히려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 유관기관을 만날 때 친분을 다지기 위해 식사를 함께 하거나 음료수·빵 등을 사가야 하는데 그런 곳에 사용하는 예산이

없다'는 불만사항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활동비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며 설득과 이해를 시킨 적이 있을 뿐, 수사 활동비로 간식을 사야한다는 식의 강압적인 '간식 Day'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직원 8명은 '직원 동의를 받아 모두가 함께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식권 대납 등 관련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대부분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고, 보통 직원들과 밥을 먹다보면 소청인이 살 때도 있고, 직원들이 살 때도 있는 것으로 1일 조·중·석식 기준으로 10개월이면 200~600회 정도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중 25회를 직원들이 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고, 당시 대납을 했다는 직원들 역시 '강압 등에 의해 억지로 구내식당 밥값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협력단체에게 식권을 받았다는 부분은 2015. 4.경 경찰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자 협력단체에서 참석자 50여 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식권을 미리 구매하였으나 행사 후 20여 명만 식사를 하여, 남은 식권을 당시 E 사무국장이 연락관이었던 소청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3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3년 남은 정년까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내가 상을 받은 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냐”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으며, 수사활동비로 간식을 사야한다는 식의 강압적인 ‘간식 Day’를 운영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식권 대납 역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협력단체에서 소청인에게 준 식권은 행사 후 남은 것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고 나서 “내가 상 받은 것도 모르냐 관심이 없냐”라는 말을 사무실에서 한 번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장 B는 소청인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는데, 축하해 주지도 않는다고 하는 등 섭섭하다는 얘기가 들려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폰으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굳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경장 B에게 소청인이 섭섭해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결국 여러 직원 중에서도 특히 경장 B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경장 B는 소청인과 계장과 팀원의 관계이자 위계질서가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섭섭하다는 언급으로 인해 경장 B는 큰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설령 경장 B가 자의로 상품권을 선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선배이자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를 정중히 거절하지 않고 수령한 것은 매우 부절한 처신이며,

또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주무계장으로서 같은 계에

근무하는 어린 하급직원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으며, 이에 더하여 ○○지회로부터 식권 31매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되는 바, 이는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② 소청인은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간식 Day'를 운영하였다고 하나, 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간식을 사도록 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부담과 불만을 가졌으며, 또한 소청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매주 수요일마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간식을 사야하는 상황이 납득이 안 돼 서무에게 여러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간식요구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직원들조차 소청인이 간식자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마치 수사활동비를 받았으니까 소청인을 비롯한 상급자에게 간식을 사라는 말투로 들려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서무 역시 직원들에게 "이번에는 네가 간식을 사는 차례다"라고 미안해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볼 때, 서무를 주축으로 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간식을 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구내식당 식권 대납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강압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부 직원들에게 식대비를 대납 받은 사실과 협력단체인 ○○지회로부터 식권을 받아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소청인은 징계처분 이후 소청인에게 유리한 동료 진술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본 사건 이후 소청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직원들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진술과 징계처분 이후에도 소청인이 계속하여 관련 직원들과 같은 서에서 함께

근무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최초 진술 내용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감찰조사에서 밝힌 동료 진술까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 점, 동료 직원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상급자인 소청인을 음해할 특별한 이유나 정황상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같은 계에 근무하는 하급직원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소통과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식 Day'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간식을 사도록 강요한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이며,

또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살펴보더라도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 3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그리고 소청인은 직원들로부터 식비 대납을 받고 협력단체로부터 식권을 수령한 비위사실 등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4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별표1]에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6 경계강화 근무기간 중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경계강화 근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가 운전도중 도로 우측에 차량을 주차하고 가버리자, 혈중알콜농도 0.150% 주취상태로 약 200미터 음주운전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던 점, 24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감승진후보자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102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을 물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 2. 5.~2. 25.) 예고에 따라 경계강화 근무 기간 중이며 '설날 전후 특별방범 활동 기간' 중인 2016. 2. 5.(금) 13:00~20:00까지 관내 발생사건 수사 등의 근무를 지정 받았음에도 총경 B의 요청에 따라 2016. 2. 5.(금) 16:49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경찰서에서 사전 약속한 경위 C를 소청인 차량에 태우고 총경 B의 자택인 ○○으로 가서 동승시켜, 같은 날 19:00~21:30경까지(2시간 30분)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소청인을 포함 ○○경찰서 ○○회장 등 5명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총경 B를 내려준 후, ○○으로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대리기사에게 "빨리 출발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왜 안가냐."라고 욕을 하자, 대리기사가 "더 이상은 못 모시겠다."라며 차량을 도로우측에 주차 후 가버리고 경위 C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내린 사실을 모르고 같은 날 23:05경에 잠에서 깨어난 소청인이 대리기사와 경위 C가 없어진 것을 알고 ○○시 자택으로 귀가할 목적으로 ○○시 ○○구 ○○동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동 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서 교통과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특진 2회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승진후보자인 점, 상훈 감경 사유인 표창수상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불가피한 음주 운전 상황을 고려해야 함

소청인이 사건 당일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도중 가버렸고 동료 경찰관도 없어서 부득이 뒤 차량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3차로에 있던 차량을 골목으로 이동 주차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즉, 소청인은 사건 당일인 2016. 2. 5. 19:00~21:30까지 ○○시 소재 식당에서 ○○회장 및 ○○지방경찰청 과장 등 윗분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예의상 마시다 보니 상당히 취해서 자가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식당 여주인에게 부탁하여 ○○을 거쳐 ○○경찰서와 소청인 집까지 대리기사비 12만원을 선불하고 ○○시 ○○동에 도착하여 B 과장을 내려 드리고 가던 중에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크락숀 소리에 눈을 떠 보니 소청인은 조수석에서 잠든 상태였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소청인 차량이 ○○아울렛 앞 ○○방향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서 있고 뒤쪽에서 차량들이 '비켜 달라'며 크락숀을 울려대고 있었다.

처음에 소청인은 대리기사와 동료 C 경위가 없어진 것에 당황하였지만 뒤 차량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차량들이 소통되도록 일단 골목 등으로 차를 빼 놓고 대리기사와 C 경위를 찾아볼 생각으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이동하는 중에 언제왔는지 경찰 4~5명이 차량을 정지시키며 내리게 하여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음 날인 2016. 2. 6. B 총경과 C 경위 등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시 ○○동 아울렛 앞 신호대기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C 경위는 소변이 급해 차에서 내려 용변을 보고 잠이 들어 돌아오지 않았고 대리기사는 잠든 소청인이 짜증을 내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라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어서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감찰조사에서 대리기사는 소청인이 "빨리 출발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왜 안가냐."라고 욕을 하자, "더 이상은 못 모시겠다." 라며 차량을 도로 우측에 주차 후 갔고 대리비를 4만원 밖에 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 사실에 대해 주변에서 12만원을 선불로 받았으니 목적지인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의무라고 조언하며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소청인은 대리기사의 입장에서 뒷자리 손님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고 잠결에 소청인이 짜증을 내며 욕까지 했을 상황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과는 다르지만 다투지 않았다. 만일 소청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소청인의 주장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음주 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나.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요망함

소청인은 ○○경찰청 관할 시스템이 습관화되어 새로운 부서에 대한 담당 관할구역 근무에 대해 적응하지 못했고 명절을 앞두고 경찰업무상 늘 협조관계에 있던 ○○회장 및 ○○지방경찰청 과장 등 선후배간 안부 및 인사차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 부득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점과 24년간 봉직하며 작은 징계한번 없이 열정적으로

근무해 꿈에 그리던 경감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점,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2. 3. ○○경찰청 전 ○○과장 총경 B로부터 2016. 2. 5. 19:00에 ○○에서 '고향에 못가는 사람들끼리 소주나 한잔하자' 라는 제의를 받고같은 날 16:49경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전 약속한 ○○청 ○○과 근무 경위 C를 만나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인 ○○경찰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9:00~21:30경까지 ○○도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전 ○○과장 총경 B, ○○청 ○○과 경위 C, ○○서 경감 D, ○○서 경우회장 E를 만나 양주 2병, 소주 2병, 맥주 7병 등 음주를 하고 같은 날 21:35경 식당주인이 불러준 대리기사가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청인과 B 총경, C 경위와 함께 같은 날 22:50경 ○○시 ○○구 ○○동 B의 자택에 도착하여 B 총경이 하차 후 ○○으로 가던 중 소청인에게 욕을 들은 대리기사가 가버리자 같은 날 23:05경 잠이 들었던 소청인이 깨어 대리기사와 동료 C 경위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자신이 운전하여 ○○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 중 같은 날 23:18경 ○○경찰서 ○○과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0%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2) ○○경찰서장은 2016. 2. 22.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2. 25.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의결되었으며, 2016. 2. 26. ○○경찰서장은 소청인에게 '정직3월'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등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관련 교양교육을 수시로 받아 왔다.

3) 본 건으로 인해 ○○지방법원은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4) 본 건으로 인해 2016. 2. ○○경찰서 경감 F가 감독책임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4. 판 단

소청인은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도중 가버렸고 동료 경찰관도 없어서 부득이 뒤 차량들의 소통을 위해 차량을 3차로에 있던 차량을 골목으로 이동 주차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2. 6.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이 소청인 차량 대리운전 기사인 G에 대한 확인(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소청인 등 3명이 ○○에서 탑승하여 최초 목적지는 ○○이었으나 도중에 ○○으로 변경하여

○○초등학교 입구에 도착하여 1명이 내리고, 다시 출발하다가 좌회전 신호로 곧바로 출발하지 못하자 소청인이 욕설을 하여, “더 이상 못 모시겠다.”라고 말하고 차량을 ○○오거리 인도 노상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6. 2. 5.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경찰서 ○○관리계 수경 H의 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2차로로 계속해서 직진해서 오던 중 전방 20미터 거리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아울렛 골목 쪽으로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 상경 I와 함께 저지하자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하는 바람에 30~40분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이 당시 음주운전이 불가피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회피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차량 소통이나 이동주차 후 동료 직원을 찾을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근무 시스템에 습관화되어 새로운 부서에 대해 적응하지 못했고 명절을 앞두고 경찰업무상 늘 협조관계에 있던 ○○회장 등 선후배간 인사차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 부득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점과 24년간 봉직하며 작은 징계한번 없이 열정적으로 근무해 꿈에 그리던 경감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점, 경찰관으로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관련 교양 등을 수시로 받아왔기 때문에 의무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전 근무지인 ○○지방경찰청 ○○수사 업무가 습관화되어 새로운 부서 근무시스템 적응이 어려웠고 경찰 업무상 선배 과장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하여 지정받은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비록, 본 건으로 인적 피해는 없는 점과 관련 형사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경된 점,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의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된 점, 이로 인해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 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7 음주 후 택시기사 욕설 및 폭행(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택시 앞문을 열고 문짝을 3~4회 발로 차 앞문을 손괴하고, 항의하는 택시기사의 좌측 손등을 휴대전화기로 때린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택시 손괴는 사실과 다르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징계전력이 없으며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18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2. 17. 02:30경 ○○시 ○○구 소재 이른바 '○○'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사○○호)에 탑승하여 귀가하면서 같은 날 02:35경 ○○시 ○○구 ○○대로 ○○ 노상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 세워 새끼야'라고 욕하며 택시를 정차하도록 하고, 앞문을 열고 발로 문짝을 3~4회 차 앞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택시를 손괴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택시를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 확립)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경찰경력 약 1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2013. 10. 21.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2호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2016. 2. 16. 20:00경 소청인은 주간근무를 마치고 같은 팀 동료 직원 부친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여러 동료들과 함께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부모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당시 소청인은 약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홀로 되어 어렵게 6남매를 키워 온 것도 쉽지 않았는데 늙고 병든 나이가 되었음에도 ○○장애 1급인 44세 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평소 주량인 소주 반병을 초과하여 한 병 가까이 마시게 되었다.

또한 약 4년 전 소청인의 큰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아빠(○○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음)가 모처럼 ○○에 올라와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였기에 위 장례식에 참석한 뒤 만나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은 시간도 늦었고 술도 많이 취해서 다음에 보자고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위 ○○아빠는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만나러 오겠다고 하여 같은 날 23:40경 ○○동 ○○ 삼겹살집에서 만났고,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과 늦은 시간에 만나러 온 ○○아빠가 혼자 술을 마시게 둘 수 없어 소주 한 병 가까이 마시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에 불과함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사건 당일에는 소주 2병 가까이 마시면서 사실상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아빠와 어떻게 헤어진지도 모른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다음날인 2016. 2. 17. 아침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계 당직 반에서 잠이 깨워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 사건 전날 밤 ○○아빠를 만나 삼겹살집에 들어가 소주를 한 병 나누어 마신 것 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이후 아침에 깨어날 때까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경찰서 형사계 담당자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두 맞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소청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배상을 받아들이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바, 검찰에서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소청인이 택시 앞문을 손괴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주장

1)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평소에는 결코 하지 않은 일이었고,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급히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발로 아래쪽을 밀고 내리는 소청인의 습관으로 인해 택시를 발로 찬다고 피해자가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지역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한 소청인이 발로 문을 찼다고 오인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해명을 하려고 발로 툭툭 택시 문을 차는 습관을 보였을 수도 있으며, 키 172cm와 몸무게 78kg로 건장한 체격을 지녔고, 거의 모든 운동의 대표선수로 뛸 만큼 운동을 많이 한 소청인이 발로 3~4차례 찼다면 택시 문이 손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사건 택시 파손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차량 손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소청인이 택시의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경미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평소 습관대로 택시에서 내리는 중에 발로 밀면서 생긴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부분

만약 이 사건 당일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그것은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었을 것이며, 나이 드신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후회스럽고 죄송할 뿐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건강한 60대 남성인 피해자의 손을 붙들어 차체에 고정시키거나 한손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붙든 채 다른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는 것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며,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기로 손등을 찍기 위해 손을 잡는 경우에는 정상인이면 충분히 이를 뿌리칠 수 있다고 보이고, 휴대전화기로 손등을 찍었다면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이 사건 발생 후 아침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형사계에 왔던 피해자의 손등은 붕대를 감는 등 상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따라서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휴대전화기로 찍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으나,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소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피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처벌의사가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청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어떠한 형사적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위 규칙에 적용하더라도 이는 견책 수준의 처분이며, 상훈감경 표창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문경고 처분도 가능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이 술을 마시고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면서 적극 탄원하고 있고,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는 경찰관 신분임을 스스로 밝힌 점,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약 13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음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먼저, 소청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과음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2016. 2. 17. 02:30경 소청인이 ○○구 소재 '○○'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35경 소청인이 ○○구 ○○대로 ○○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정차시키도록 하고, 택시 앞문을 열고 발로 문짝을 3~4회 차 앞문이 벌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청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은 소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②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청인의 폭행 등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과 합의한 후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며 제출한 처벌불원서 등에도 당시 소청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이었으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자신의 왼손 등을 때린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청인을 못 가게 막고 있었고,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내가 무얼 잘못했냐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적인 처벌을 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어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 시 처벌을 원하였지만 이후 소청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청인은 만취상태로 2016. 2. 17. 04:00경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의자 대기실에서 잠을 잤으며, 같은 날 08:40경 잠에서 깬 소청인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살펴 담당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비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피의자 신문 등을 받으면서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직접 시인한 사실과 이 사건 발생한 전후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평소의 주량보다 과음을 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단순히 자신의 비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설령 소청인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면피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취폭력 등을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오히려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더욱 크며, 이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청인의 폭행에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가진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점,

그리고 위 차량이 파손된 곳이 없어 피해자가 담당수사관에게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적 책임은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적용함은 물론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하달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부분도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도 추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형사적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견책이며, 상훈감경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불문경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당시 사고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으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서 손괴한 혐의로 112신고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을 도외시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처분청에서는 북한 장거리미사일 관련하여 전국 경찰에게 발령중인 '경계강화' 재강조한 지시사항을 하달(2016. 2. 7. ○○경찰서 경비과)하여 경계태세 강화 및 각종 의무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 당시 소청인의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상당한 정도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취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일반 시민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하여 경찰조사까지 받는 물의를 야기하였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더욱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기타)·복종의 의무(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계 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공적,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

에게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힐 수 없었으나, 담당수사관에게 밝힌 점, 택시 앞문을 발로 찬 것도 평소 습관에 기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면, 소청인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자라고 하였으며, 확인서 및 체포구속 통지서 등에도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고, 감찰 조사 당시 '○○경찰서 형사계 담당형사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직업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밝혔다'고 소청인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16. 2. 25.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소청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로 인해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에 따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소청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2016. 2. 17.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다른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유예 등 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기소처분과 달리 '공소권 없음'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점,

④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며,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51호, 시행 2015. 12. 29.)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에서 공소권 없음과 같은 불기소결정에 대해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8 음란문자 전송(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내용의 쪽지를 SNS로 전송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호기심으로 단 1회 쪽지를 발송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였던 점, 기소유예 처분된 점, 27년 간 성실히 근무하고 30여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18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2016. 1. 26. 07:09경 ○○구 ○○로 소재 주거지 주변 불상지에서 휴대폰 SNS 어플 '카카오스토리' 쪽지 기능을 통하여 전혀 모르는 피해자(여)에게 '마스크가 시원하게 생겼네요, 연애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섹스도 잘할 것 같아요ㅎㅎ'라는 음란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으로 입건되어 ○○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경찰조직의 위상을 실추시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양정 기준), 제9조(상훈감경)를 적용하고, 비위 사실이 성폭력 범죄(제2조)에 해당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검찰처분 결과 기소유예로 결정된 점 등 기타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 초 휴대폰 SNS어플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사진에 딸의 사진을 게재한 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섹시하네요', '차 한 잔 하고 싶네요', '섹스 한 번 할 수 있나요'라는 쪽지 문자를 수 회 전달

받은 후, 소청인 또한 단순 호기심에 2016. 1. 26. 전혀 알지 모르는 진정인에게 '마스크가 시원하게 생겼네요', '연애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섹스도 잘 할 거 같네요'라는 쪽지를 단 1회 발송하여 2016. 3.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진정인의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진정인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2016. 3. 10. 17:00경 3,000,000원의 금전적 보상으로 진정인으로부터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으며, 2016. 3. 2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호기심으로 단 1회 쪽지를 발송한 점, 소청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진정인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바,

소청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검찰에서 이러한 내용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된 점, 신체적 접촉 또는 음란성 통화, 야동 전송이 아닌 1:1쪽지 기능으로 진정인 한 사람에게만 문자가 전송된 점, 2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3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 이후 크게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카카오스토리 쪽지기능을 통하여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검찰에서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신속하게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도모한 점, 2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행위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비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키고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고비난성 행위로 다른 비위에 비하여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감봉-견책'을 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2차)(○○지방경찰청, 2015. 8. 11.)'에 따르면 모든 성 관련 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특히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배제징계(One-strike Out) 및 직무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근거한 상훈감경은 물론 개인 정상을 참작한 작량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의 과실로 상훈

감경 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기소유예 처분 시 참작되었던 사유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관계 또한 징계의결 시 이미 참작된 것으로 판단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부당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만큼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본 건 법령 적용에 있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조항은 직무수행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 건 징계사유를 살펴볼 때 소청인이 직무에 소홀했던 사실 등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없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9 카지노 출입 위해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행사(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카지노를 출입하려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정기적인 예방치료를 받고 있는 점,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3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3. 1. 소청인은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친구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2016. 3. 6. 11:15 경 소청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등 2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카지노를 출입하려다 공문서부정 행사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처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97세 된 치매환자인 소청인의 아버지가 노령으로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가 어렵고, 장애 3급으로서 74세인 소청인의 어머니 역시 노령으로 골다공증과 당뇨 등의 환자이지만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으로 소청인과 아내가 노부모의 집에 왕래하면서 매일 식사도 만들어 드리는 등 지근거리에서 봉양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다른 시·도로 소청인이 전출을 가게 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점,

소청인은 카지노 출입제한을 신청한 아내 때문에 자제하고 근신 중에 있으며, 도박꾼이라는 소문으로 이미지가 도박하는 사람으로 비쳐 다른 도박도 일체 생각하지 않기 위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 소청인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정기적인 예방치료를 받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관리센터(○○ ○○구 ○○로 ○○빌딩 6층 소재)에서 2015. 5. 13.부터 같은 해 7. 2.까지 개인상담 4회 8시간을 이수하고, 동기강화 집단상담 및 교육 1회(2시간) 상담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받을 예정인 점, 소청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

1) 소청인은 2015. 3. 1., 같은 달 3. 6.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구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위 카지노에 출입하였는바, 이로 인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이 사건 감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부터 이번 소청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이 사건 원처분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단서 [별표 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모든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카지노이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서면으로 출입제한 요청을 하면 당사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7. 5. 20. 및 같은 해 7. 22. 2차례에 걸쳐 허위로 병가를 낸 채 카지노에 출입하여 25만 원 가량을 패한 사실과 그 외 2006년부터 2008년 5월까지 휴무·비번일을 이용

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1회 출입 시 마다 20~30만 원을 갖고 출입한 사실 등이 2011년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당시 근무하던 ○○경찰서로부터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2016. 5월말경 소청인이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 증명에 부정사용하여「형법」 제230조가 정하는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2015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공문서부정 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도박의 상습성 내지는 중독성으로 인해 법령을 준수해야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 증명에 이용하는 형사상 범죄 행위를 범하고, 도박을 예방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카지노에 출입하려고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보여「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소청인은 도박 등 의무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허위로 병가를 낸 채 카지노에 출입하여 직권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카지노를 출입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단순한 카지노 출입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은 도박 등을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야기하며,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보이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인 점,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08호, 시행 2016.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 성실의무(기타)·복종의 의무(기타)·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강등'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의 목적이 공무원 근무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점과 징계처분이 재량권 행사라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평소 소행이나 근무태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0 직무관련자와 불건전한 이성관계(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동거 및 성관계를 갖는 등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병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관련인을 사실상 직무관련자라 볼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법한 점,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관련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43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2015. ○. ○.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2015. ○. ○. 전화상담 요청을 받고 직무관련자 B(여, ○○세,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상담 차 관련자의 집을 방문하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자에게 이사 비용 926만원을 빌려 주는 등 함께 ○○ 지역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사를 한 날부터 주 3일 정도, 3주간 같이 생활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소청인의 집요함에 싫증을 느낀 관련자가 2015. ○. ○. 소청인을 멀리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당신한테 피해도 많이 갈 텐데, 둘 다 피해를 입지 않겠어'라며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고, '우리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 왜 그러냐, 내 사랑을 왜 배신하느냐, 어떤 놈을 만나는지 두 눈 뜨고 지켜 볼 거야, 날 자극하지 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60여건 발송하는 등 둘 간의 관계가 악화되자, 관련자가 2015. ○. ○.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청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16. 2. 24.~2. 26.까지 3일간 병가를 실시하면서 2. 24.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 25.은 ○○산 등산, 2. 26.은 자가에서 휴식을 하였으므로 2. 25.~2. 26.은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병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를 참작할 때 북한 포격 관련 접적지역 비상근무 기간(2015. 9.~12.) 중 해당 비위가 주로 발생하여 그 책임이 더욱 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가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가) 관련인에 대한 '직무관련자' 적용 관련

2015. ○. ○. 관련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바닥에 쏟고 전 남편에게 폭언을 하자, 관련인의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가 집기류를 파손하고 있다.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가정폭력, 아이도 죽인다고 위협해요'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어 신고자를 관련인과 분리조치 한 것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관련인을 '사건관련인'으로 보았으나 '사건청탁 제로화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사건관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2016. 3. 25.부터 '직무관련자'로 적용하였으나 관련인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관련자라고도 볼 수 없다.

(나) 카카오톡 사진 증거 사용 관련

2015. ○. ○. 관련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경찰관은 소청인과 관련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80여장을 촬영하였고, 관련인은 당일 귀가한 후 상담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안에 대하여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5. ○. ○.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접수를 취소요청하고, 전날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여 상담경찰관이 관련인 앞에서 사진 전부를 삭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된 바, 이와 같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증거 자료 사용은 부적법하다.

(다) 소청인에 대한 관련인의 처벌의사 관련

관련인은 2015. ○. ○.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청인의 집요한 만남 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면 처리과정에서 설령 소청인이 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고 상담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확인하여 본 바 관련인은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관련인을 상담해 준 경찰관은 관련인에게 '이 정도로는 구속이 되질 않는다. 품위손상으로 감봉 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하여 관련인은 소청인이 큰 처벌을 받지 않는 선에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감찰민원을 접수 또는 상담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직권을 벗어나 판단한 것에 해당하여 감찰민원 접수 처리 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

2) 나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평소 당뇨 및 고지혈증이 있고 이번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병가를 신청한 후 1일차는 병원 치료, 2일차는 혈당 강하를 위한 등산, 3일차는 식이요법을 위하여 자가요양 한 사실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의하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청인이 병가를 사용한 것에 무리가 없으며,

정말 병가를 쓸 수 없는 사안이라 한다면 'e-사람 시스템'에서 허가권자의 결재를 거쳐 연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행위이다.

3) 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위법성 관련

피소청인은 본 건 감찰민원 접수 및 징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경찰서 청문감사관 매뉴얼',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감찰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난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하고 강직하게 근무하며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고, 이번 징계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관련인이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가항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징계과정에서 피소청인의 과실로 소청인의 징계 처분 사유가 다소 부당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소청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며, 나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병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여 병가를 사용한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추후라도 연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과정 상 발생한 다수의 하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직무관련자'의 정의를 적시한 후, 이하 가.~타. 목에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관련인이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 된 사안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인의 요청에 따라 아이 양육권 문제 등을 상담해 주는 위치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관련인은 타. 목 즉,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개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고,

당시 관련인을 상담한 경찰관은 상담 시 확인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해 둔 후 감찰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16. ○. ○. 진술조서 작성 시, '우리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 왜 그러냐, 내 사랑을 배신하느냐', '어떤 놈을 만나, 너와 내가 같이 보낸 80일간의 기록사진이 다 들어 있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관련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징계 절차나 그에 따른 쟁송절차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방법의 증거 능력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종합할 때, 관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징계처분 사유로 삼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도 찾아 볼 수 없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2016. ○. 25. 수사보고서(관계자 B와 상담한 ○○ 경찰관 상대 출장면담)에 따르면 '관련인은 내연 관계에 있는 소청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자, 상담 차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이 건은 가정폭력이 아닌 경찰관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청문감사관실로 방문할 것을 안내하며, 해당 경찰관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그래도 감사실 직원과 면담에 동의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관련인이 동의하자 청문 직원이 상담에 응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관련인의 최초 상담계기 및 목적을 기록하고 있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후 관련인이 소청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민·형사상의 처벌과정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서는 징계양정 시 단순 참작사유에 불과하고,

상담 과정에 있어 상담경찰관이 '이 정도로는 구속이 되질 않는다' 등의 발언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설사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담 경찰관의 문책으로 다루어 져야 할 사안에 불과할 뿐 본 건 징계처분 사유 또는 징계양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지막으로, 피소청인이 2016. ○. ○.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소청인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제5항을 위배한 사안은 2016. ○. ○. 해당 징계위원회 정회 및 소청인에게 징계 이유서를 교부한 후 2016. ○. ○. 속회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관련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여 지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은 소청인의 사실관계 오인 내지 피소청인의 단순 과실로 인정되어, 본 건 징계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청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나항 관련하여 병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면 추후라도 연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함에도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고, 동 규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서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할 때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동 규정 제3항에 명시해 놓은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앞서 살핀 사용 목적에는 마땅히 부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6일 이하 병가의 경우 반드시 병원 진료를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평소 당뇨 및 고지혈증 등 지병을

앓아 온 소청인이 혈당 강화를 위한 운동 내지 식이요법을 위한 자가 요양을 한 것은 통상적인 질병 치료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항 기타 비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유지되었던 시기는 비상근무 경계강화 기간으로 수회에 걸친 교양을 통하여 근무기강 확립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강조하였음을 종합할 때, (나)항 징계처분 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1 오토바이 절취(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노상에 주차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로 전혀 기억이 없고, 고의가 아닌 순간의 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8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정청 ○○우체국에서 현재까지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2. 6. 22:20경 ○○구 ○○동 ○○로 ○○-○○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25cc)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중히 문책함이 바람직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5. 2. 6. 업무가 끝난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 소청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당일은 금요일이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평소 소주만을 마시는 것과 달리 당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속칭 폭탄주로 3~4병 가량을 마셨다.

사건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없었지만 경찰조사를 받고 사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본 바에 의하면,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으로 나왔는데 소변이 보고 싶어 화장실을 찾으려고 ○○ 건물 옆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평소 근무시간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로 착각하고 끌고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은 위 오토바이를 ○○ 건물에서부터 거주지 근처까지 약 400~500m 끌고 와서 거주지에서 약 100m 앞에 있는 빌라 건물

주차장에 세워 두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의 집이 1층 상가이기 때문에 따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위 주차장을 우체국 주차장으로 착각하였던 것 같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찰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3. 13.경 소청인이 출근하는 길에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당일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소청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이었기에 이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오토바이를 절도한 사실이 맞으니 전부 인정하고 빨리 조사를 끝내자고 수차 심한 압박을 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간 사실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소청인은 오토바이 소유자를 만나 사과하였고 당시 오토바이 수리비(실제로 오토바이는 핸들 브레이크 부분이 약간 굽어지고 긁힌 흔적만이 있어 수리비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이었으나, 소청인의 잘못을 통감하여 충분히 보상한 것임)와 위로금으로 약 3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2015. 4. 7. 이 사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비록 직장 회식 이후 음주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비로소 인지하게 된 이 사건 범법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그 후 음주의 위험성을 자각하여

단주해 오고 있는 등 뼈저리게 반성해 오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평소와 다른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단순히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거의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절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넘어 과실에 가까운 행위인 점,

소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인회사에 근무하다가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아무런 징계나 형사 처분 전력 없이 우편배달업무를 하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업무수행을 해 온 점,

소청인은 처와 아들 1명을 부양하며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며, 별다른 재산도 없이 급여로 200만 원 정도 받아 가족들 생활비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병원비와 용돈을 드리며 저축할 여유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더 이상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이 전혀 없고, 고의가 아닌 한 순간의 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청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피해 장소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거주지 인근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에 따르면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청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이 사건은 소청인이 초범으로서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비난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혹은 윤리적 비난까지 면한 것은 아니며, 일반 시민들보다는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인 소주 2병보다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 더 나아가 심신이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위「형법」제10조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음주로 인하여 만취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이에 부가하여 소청인의 범행 당시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여부, 정신병력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소명할만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음주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행위(원인행위)와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사이에 불가분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형법」제10조 제3항에 해당되어 감경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심신미약 상태의 발생에 있어 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인 감경요소가

될 뿐이며, 더욱이 술을 많이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지르고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며,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51호, 시행 2015. 12. 29.)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더욱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에게 절도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으며, 소청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다거나 절도 의사가 없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집배원이 직무상 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기종이 아니라 후배에게 빌려 타는 고가의 오토바이의 기종과 같다는 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끌고 갔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불리한 정상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수준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2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 성추행(해임→기각)

처분요지

공중이 밀집한 열차 내에서 3차례에 걸쳐 여성승객을 성추행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주취상태에서 잠을 자다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고의성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9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단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소청인은 2015. ○. ○. 10:35~11:00경 ○○발 ○○행 ○○호 열차가 ○○~○○역 간을 운행 중일 때,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세)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잠을 자는 척하며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기대고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위에 올려 2~3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2) 2015. ○. ○. 08:50경 ○○발 ○○행 ○○호 열차가 ○○~○○역 간을 운행 중일 때, 13호석에 앉은 피해자 C(여, ○세)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옆 14호석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원을 그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3회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추행하여 약 20분간 5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열차내에서 추행하였으며,

3) 2016. ○. ○. 07:00~7:30경 ○○발 ○○행 무궁화호 열차가 ○○~○○역 간을 운행 중일 때, 4호차 41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세)에게 성적충동을 느껴 옆 42호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오른손 등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댄 채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넣어 약간씩 움직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위자의 양정기준을 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이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소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무위반 사실이 언론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는 점

1) 1차 사건(2015. ○. ○.)

당시 소청인은 전일 주간근무 종료 후 마신 술이 깨지 않아 하차하지 못하고 가던 중 일어난 일로 소청인의 승차 당시 옆좌석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소청인은 배낭과 옷가방을 무릎위에 올려 안고 잠들었다가 고개가 좌우로 떨구어지기와 다시 똑바로 앉기를 반복하던 중 손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것일 뿐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소청인은 철도경찰에게 조사받을 당시에도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중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도 어머니를 통하여 서둘러 합의하였던 것이다.

2) 2차 사건(2015. ○. ○.)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어머니가 계시는 ○○에 가기 위해 열차에 승차하여 빈자리를 찾다가 좌석에 앉게 되었고, 짐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잠을 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덩치가 큰 편이라 옆 사람과 닿게 되었으며, 소청인의 무릎을 긁기 위해 만진다는 것이 옆 사람의 무릎을 만지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여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빈자리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공교롭게 같은 곳에 또 앉게 된 것이었을 뿐, 당시에는 같은 자리였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또한 재차 무릎을 만졌다고 하였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고 만약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하였다면 같은 자리에 두 번 앉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단연코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며, 처벌이 두려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신분을 속이고 어머니를 통하여 서둘러 합의를 하였다.

3) 3차 사건(2016. ○. ○.)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탔는데 소청인의 좌석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다른 빈자리에 가서 짐과 가방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깍지 낀 손이 풀려 떨어지면서 옆 사람의 허벅지 근처에 떨어져 손등이 닿게 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

피해자가 증거를 얻기 위해 다시 깍지 낀 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소청인이 술에 취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이 억울하였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처벌이 두려워 이건 역시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서 근무 당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고

최초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 술을 자제해 오던 중, 2015. 7. 17. ○○기동대 전입 이후 대규모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당시 승진심사 탈락 및 원만하지 않은 가정생활 등으로 인해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에 있는 어머니를 보기 위해 기차에 탑승하였으나 또 다시 실수로 세번째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또한 평소 잠을 잘 때 아내의 배에 손을 올리고 꿈에서의 행동을 무의식중에 하는 등 잠버릇이 있었던 점 등에서 결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성적인 고의성으로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또한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회, ○○기동단장 ○회 총 ○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징계사건 발생 이후 받았던 심적 고통과 봉사활동을 하며 갱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 판단

소청인은 3건의 사건 모두 소청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처벌이 두려워 서둘러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1년여의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성추행 비위를 저질렀는데,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의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 그 수법과 경위가 매우 유사한 점,

② 소청인 스스로 본인의 범죄 경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예방적 조치 및 제어를 하지 않고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3차 사건의 경우 2차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소청인은 본인의 지정좌석에 앉지 않고 20대 초반의 여성이 앉은 옆 좌석에 앉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3차 사건의 경우에 본인의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빈 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리가 없으면 같은 객차안의 빈 좌석에 앉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객차까지 찾아갔고, 당시 소청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객차 내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것을 볼 때 소청인이 범행대상자를 찾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소청인은 2차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을 바라보자 다른 좌석으로 옮겼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추행하였는데, 소청인은 놀라서 빈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공교롭게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뿐으로 만약 제정신이었다면 같은 자리에 앉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깜짝 놀라 자리를 떴던 소청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을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이 역시 소청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3차 사건에서 피해자는 소청인은 추행하는 도중 역무원의 표 검사에 손을 떼고 또렷한 정신으로 표를 제시한 후 다시 자는 척하며 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빈 좌석으로 피해가자 소청인도 일어나 앞의 다른 좌석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보면 소청인에게 의식이 있었고 고의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⑥ 소청인은 3차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을 느꼈으면서도

손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최소한 손이 닿은 이후부터 추행의 고의를 가졌음을 인정한 점, ⑦ 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보면, 1차 사건(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나, 2차 및 3차 사건의 경우 소청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비위의 정도를 살피면,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오히려 3차례에 걸친 성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의 양태를 살피면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아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점차 추행의 수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주취상태와 잠버릇에 의한 사고였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범행 후 경찰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타 기관 조사를 받는 경우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비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소청인은 성추행 등 의무위반 예방에 대한 교양이나 교육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3회에 걸친 비위행위로 인해 비위가 경합되어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추행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소청인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을 고도의 준법의식과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직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을 손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성실성,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 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3 휴대폰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견책→기각, 전보→기각)

처분요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로 견책 처분 및 전보 조치

소청이유

절취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한 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잘못된 처분에 기초하여 징계 및 전보처분을 한 것인 점, 상사와 동료 대부분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6-32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323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견책 처분

소청인은 2016. 3. 11. 20:20경 ○○시 ○○로 ○○번길 ○○ ○○문화센터 2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B(29세, 여)가 위 장소 의자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을 절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예의 바르고 적극적이며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다는 소속관서의 평가가 있는 점, 4급 기관장 표창을 3회 받은 점, 공직생활 동안 징계이력이 없는 점, 최근 2년간 근무상황에 특이사항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귀가하여 5일이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은 대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

○○지방우정청장은 2016. 5. 23.자로 소청인에게 ○○우편집중국 ○○과에서 ○○우체국으로 '전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1년여 전부터 ○○문화센터 수영장에서 격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는 같은 수영장 회원인 친구 C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 19:30경 ○○문화센터로 가서 2층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여중생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 문제의 휴대폰이 놓여 있어 그들에게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자신들 것이 아니라 하고 뒷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르겠다고 하여 그 휴대폰을 입고 있던 오리털 잠바 주머니에 넣고 1층 로비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마침 C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고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채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21:30경 집에 들어가서도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잊고 옷장 속에 잠바를 벗어 걸어 놓았으며 다음 날부터 날씨가 풀려 다른 옷을 입고 출근하는 바람에 앞서의 일을 까맣게 잊고 며칠을 보내게 된 것으로 절취의 의사로 휴대폰을 가져갔던 것이 아니다.

며칠 후인 2016. 3. 16.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날인 3. 17. 09:00경 경찰에 휴대폰을 전달하였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였으며 경찰에서도 검찰에 가서 사실을 밝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것이라 하여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소를 유예한다는 통보가 왔다.

나. 절도죄의 혐의 유무

소청인은 우연히 휴대폰을 습득하여 무심코 집에 보관하였을 뿐 절취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절도죄가 아니고(굳이 입건한다면 유실물횡령죄 정도로 생각함) 사건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절도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휴대폰 주인을 찾고자 그 자리에 있던 여학생들과 아주머니들에게 확인하고 C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했는데 휴대폰을 욕심냈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휴대폰 액정에는 금이가 있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 소청인이 이를 탐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일 21:00~22:00경까지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으러 오거나 전화를 하지도 않았고, 소청인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이 켜진 상태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을 여러 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등 여러 정황상 이 사건은 경찰에서 입건유예 등으로 조치했어야 함에도 형사범으로 입건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부적절했던 것이고 검찰에서도 의당 '혐의없음' 처분을 했어야 했다.

다. 견책 및 전보 처분의 위법·부당성

위와 같이 이 사건 견책 처분과 전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경찰, 검찰의 처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며, 설령 절도죄(또는 유실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불문경고로 감경되었어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사운영규정」 제27조의2(전보의 특례)에 의하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평소의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향후 승진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음은 물론 당장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타격이 크고, 격일제 근무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소청인이 집안일을 하며 처가 일을 나갔으나 새로운 직장인 우체국은 매일 근무하는 관계로 처가 일을 포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장시간 출퇴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능숙한 우편업무 대신 생소한 대민업무인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잠시 실수에 비해 이 사건 징계와 전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결론

소청인은 1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아무 과오도 없음은 물론 3번에 걸쳐 기관장 표창을 받았고, 상사와 동료 대부분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의는 아니나 본건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데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번 일로 더욱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견책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견책 처분 관련

소청인은 절도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잘못된

경찰, 검찰의 처분에 기초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이 ○○문화센터 2층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넣었고 이를 소지한 채 귀가한 후 5일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위 휴대폰을 ○○파출소에 전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후 절도죄에 대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소청인은 처음에 휴대폰을 발견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1층 안내데스크에 맡기려고 집어 들어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경위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휴대폰을 안내데스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 주머니 속에 타인의 물품을 소지한 채로 귀가하였고, 집에 가서야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온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라도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나 의사표현을 했어야 함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가져다 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게 되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는데 닷새 후 경찰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타인의 물건을 상당 시간 점유하면서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소청인 자신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5일간이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해 잊고 지내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최초에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과정에서 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검찰에서 절도죄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직무와 무관하다 하여도 소청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징계 재량의 적정성

피소청인은 개개인의 우편물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절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소청인의 평소 소행이나 사건 초기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하고 있고, 이 사건 견책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고의성 여부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전보 처분 관련

소청인은 전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거워 부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바 없으며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바,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44 민원인에게 욕설 등 부적절 처신(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노상에 투기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관련자에게 화가 나 뒤돌아서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고, 이후 관련자를 찾아가 사과하여 민원이 해소된 점,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표창을 4회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36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5. 1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4. 4. 09:42경 ○○구 ○○ 앞에서 ○○ 방향으로 2차선 직진 차선에서 1차로로 끼어들며 좌회전하는 차량(○○호○○)에 대해 끼어들기 위반으로 교통위반 범칙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날인란에 대필하였다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관련자(운전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4:30경 ○○구 ○○동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관련자의 사무실 앞으로 직속상관인 교통안전계장 경감 B, 팀장 경위 C와 함께 관련자를 찾아가 해명을 하는 장소에서, 관련자가 "소청인이 사과를 하지 않으니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 니 맘대로 해, 법대로 해 씨발"이라며 직속상관들이 있는 장소에서 관련자에게 욕설을 하고, 관련자가 지켜보고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순찰차량 옆 노상에 투기하여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약 2년 6개월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진정을 받거나 지시명령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5. 2. 4. ○○경찰서 ○○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 시 2015년 하반기 베스트 순찰팀으로 선정되어 경장으로 특별승진 하였으며, 2016. 2. 1. 교통안전계 교통외근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애로점은 많지만 성실히 근무하여 우수한 교통단속 실적을 거양하였다.

이 사건 관련자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우리 서 민원실을 통해 감찰에 연락하여 "경찰관이 위반사실을 말하지 않고, 범칙금통지서 운전자 서명란에 경찰관이 대필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그런 일이 없으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다"고 하자 관련자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지금 통화를 녹음 중이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감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관련자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화가 나 "그러면 나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전화를 끊었고, 조금 뒤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교통안전계장님과 팀장님, 청문감사관이 있었으며 소청인에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찾아가서 수습을 하자"고 하여 같은 날 14:30경 관련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으로 교통안전계장, 팀장과 함께 찾아갔다.

관련자에게 해명하는 중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자 관련자는 "단속 경찰관이 사과하지 않으니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관련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데 화가 나 "야 씨발, 니 맘대로 해, 법대로 해 씨발"이라며 상사가 있는 장소에서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후 관련자가 지켜보고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순찰차 옆 노상에 투기하였다.

그리고 경찰서로 돌아왔다가 사실 여부를 떠나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될 것 같아, 소청인이 교통안전계장님과 팀장님에게 "제가 먼저 사과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관련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여 관련자도 이해하고 민원이 해결되었으나, 관련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삭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소청인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면서 위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날인란에 대필하였다는 관련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소청인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지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증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관련자에게 교통안전계장님과 팀장님이 무조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에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으로서 치욕스럽고 회의감이 몰려 와 뒤돌아서서 1~2m 걸어 나오며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지 관련자에게 대놓고 욕을 한 것은 아니며, 순찰차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달려 와 화를 내며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냐"며 시비를 걸어 담배 꽁초를 순찰차량 옆 노상에 버리게 된 것이고, 이후 소청인은 다시 관련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민원을 해소하였는데 다음 날 홈페이지에 민원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관련자는 바로 내리겠다고 한 후 민원글을 삭제하였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소청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경찰관으로서 민원을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근무경력 2년 2개월(교통

경찰경력 2개월)로 경험이 없어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임용 이후 ○○지방경찰청 ○○기동대와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이는 인근 상가 주민들과 동료경찰관의 진술과 탄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2년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등 표창을 4회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관련자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증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관련자에게 화가 나 뒤돌아서서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며, 이후 다시 관련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모든 민원이 해소되었으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소청인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으로 보아, 소청인이 관련자와 통화 중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관련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후 관련자를 이해시키고자 직속상관들과 함께 관련자를 찾아가 해명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비가 되어 관련자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이에 “이 씨발, 니 맘대로 해, 법대로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관련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노상에 투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가 이 사건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화가 난 것이라고 하는데, 업무특성상 잦은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은 예상되나 관련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삼가고 상황을 설명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책임이 인정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관련자를 찾아간 자리에서 또다시 관련자와 시비가 되어 욕설까지 한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직속상관들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소청인과 함께 관련자를 방문하여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관련자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관련자와 상관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상관들의 위신과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고 할 것인 점, 국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의무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시로 교육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또다시 관련자를 방문하여 사과하고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는 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위반 단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경장으로 특진하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5 가정폭력(견책→기각)

처분요지

과도를 들고 배우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려 찌를 듯하며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로 가정폭력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44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 5. 6. 19:20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가족끼리 묶는 휴대폰 할인요금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그런 요금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 온 후, 본인이 헛수고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야, 야”라며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시비 걸지 마라”고 말하자, 소청인은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 길이 12cm 가량)를 오른손으로 들고 “니는 내를 뭐라고 생각하노, 용돈만 받아쓰니 좋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과도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려 찌를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20○○. 5. 25. ○○검찰청으로부터 가정폭력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의 감경)제2항에 따른 정상 참작 및 소청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가정폭력사범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직장으로 인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족 사이가 소원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소청인의 희생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한편, 소청인의 가족은 소청인이 짜증만 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서로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다.

20○○. 5. 5. 어린이날이라 저녁에는 가족과 외식을 하였고, 20○○. 5. 6. 사건 당일 아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 후 피해자가 "휴대폰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으니 가서 상담해 봐라"고 하여 소청인이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결국 헛걸음 한 것에 대하여 짜증이 나 있었고, 당초 피해자가 혼자서 장을 보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에게 "시장 보러 가자"고 하여 다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으며, 소청인의 딸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화를 내는 바람에 소청인은 약간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다.

소청인은 이러한 부분이 누적되면 안 될 것 같아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소청인이 불러도 전혀 대꾸도 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주방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서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옆에서 시비 걸지 마라"고 대답하며 쳐다보지도 않자,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양은 냄비를 들었다가 놓았고, 다시금 과도를 잡았는데 이는 그야말로 화풀이 내지 분에 못 이긴 행동이었으며, 소청인은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었으나 피해자는

소청인의 왼편에서 거의 나란히 서 있는 상황으로 과도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겨누는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은 잘못을 인지하고 과도를 바로 내려놓아 어떠한 위해나 협박의 고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소청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으나 소청인이 고함을 지르며 과도를 들자 소청인의 처도 고함을 지르며 소청인을 보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말만 들은 소청인의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하는 바람에 사건이 순식간에 확대된 면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 동안 교정직 공무원으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범죄자들의 교화에 앞장서 온 점, 이 사건은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소청인은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이미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은 본 건 관련 경찰수사,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큰 심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

인은 본 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20○○. 5. 10. ‘특수협박죄’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송치 된 후 20○○. 5. 27. ‘가정폭력사범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② 이 사건 피해자이자 소청인의 처는 소청인의 당시 행위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과도의 칼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게 들고 손을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입술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매우 흥분된 상태로 오른손을 몇 번 흔들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무서웠고 애들도 머리에 떠오르고 머리도 어지럽고 아팠습니다.”라고 피해 상황을 묘사하듯 진술하였고, 이 사건 112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소청인의 딸 또한 “아빠가 과도를 들고 엄마를 찌르려고 하고 있었다.”, “오른손에 과도를 거꾸로 들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엄마를 찌를 듯이 하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와 유사한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③ 피해자 및 목격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으로 소청인을 특별히 음해할 만한 이유 또한 찾아볼 수 없어 당시 소청인의 행위 및 상황에 대한 진술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④ 소청인은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그 때는 과도를 손에 쥐고 싱크대 위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로 처의 멱살을 잡기 위해 다가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최초 진술한 후 “자녀가 나왔을 때는 처가 고함을 질렀을 때인데 그 때 제가 처의 멱살을 잡기 위해 처에게 다가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칼을 든 손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라며 칼을 든 손의 위치에 대한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고, 그 손의 위치에 따라 피해자가 인식하는 위협 여부 또는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의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소청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흉기를 들게 된 사정 또한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소청인과 피해자 간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해 있었던 상황에서 불과 1m 거리에 있던 소청인이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실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 기타에 해당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처분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상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위원회 시 참작된 바 있으며,

현 정부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범죄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공무원이라면 마땅히 국가 정책 시행에 모범이 되어야 할 당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도의적으로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6 상급자와 상호간 욕설(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상급자와 상호간 욕설하고, 컴퓨터실에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극상하여 내부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사건 발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하극상으로 매도한 것은 과도한 처분인 점, 사건이후 상호 사과하여 아무런 갈등 없이 근무하였음에도 사건발생 1년이 지난 후 징계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폭행 등으로 더 나아가지 않아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이고 곧바로 서로 화해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46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7. 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소대 부소대장인 소청인은 경위 B가 2015. 8. 일자불상경(오전) 상경 C 등이 있는 행정반 내에서 지휘요원 신발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각자 신발은 좀 치우라'고 하자 항의하였고 이를 이유로 상호간 욕설을 하다가 컴퓨터실로 자리를 옮겨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당직 근무 후 행정반 내에서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 행정소대장인 경위 B가 인상을 붉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각자 물건을 치우라'고 하면서 소청인의 물건(칫솔 등)인 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듯이 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정대원에게 '야 여기 깨끗하게 해, 지저분하면 다 치워버리고 다 갖다 버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화를 내었다.

이에 소청인도 행정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망신스럽고 창피한 마음에 '내가 애들 같아 보이냐'고 말하자 경위 B가 먼저 욕설을 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게 되었으나, 행정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요원들의 언쟁을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지켜보던 직원들 중 3소대장 경위 D가 소청인을 컴퓨터실로 데리고 가고, 1소대장 경위 E가 경위 B를 데리고 나가 일단락이 되었다.

그 후 소청인은 컴퓨터실에서 위 3소대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약 5분 정도 지나서 경위 B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쫓아와 다시 욕설을 하여 소청인도 욕설을 하게 되었다.

또한 경위 B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방어차원에서 소청인도 경위 B의 멱살을 잡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소청인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고, 그 안경 코에 이마 부위가 부딪치는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곧 서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아무런 갈등 없이 근무하였다.

그런데 2016. ○. 2. 행정대원 13명이 국민신문고에 경위 B 등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로서 경위 B와 소청인간의 언쟁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행정대원들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해 언론 보도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전보조치가 있었고, 이미 1개월 전 지구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도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하극상하여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이나, 하극상의 사전적 의미는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름'으로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경미한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하극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또한 하극상이라면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은 상급자인 경위 B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소청인을 향해 행정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어 대응하면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먼저 욕설하거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오히려 소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위 B는 소청인과 같은 나이 때로 조직 내부 상·하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며, 단순히 이 사건을 '하극상'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여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은 사건 발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다소 과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한편, 소청인은 평소 상급자나 나이가 많든 적든 조직 상·하 동료들에게 언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행정대원들이 경위 B를 표적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된 점,

행정대원들과의 관계가 아닌 행정소대장과 잠깐의 해프닝임에도 이 사건으로 견책 처분이 받은 것은 너무 과하며, 약 ○○여년을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총 1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소청인이 사건발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극상'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여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처분한 것이므로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행정반 사무실에서 자신보다 직급 상으로 높은 행정소대장 경위 B와 상호 욕설을 하고, 컴퓨터실로 자리를 옮겨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 있던 행정대원들이 소청인과 B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복도로 나가서 서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실로 옮겨 주먹다짐을 하다 소청인의 안경이 부러지고 이마에 흉터가 났다고 진술한 점,

②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와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를 위반한 점,

③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자신을 향해 상급자인 경위 B가 행정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위 B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따지는 듯이 '내가 애들 같아 보이냐'는 말을 하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행위가 하극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특히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을 관리 감독하는 지휘요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경위 B는 소청인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경찰과 같이 계급을 중시하고 있는 조직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동료나 상사 등이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이 사건 처분사유인 상호 욕설 및 폭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그 탄원서 역시 징계 이후 소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방범순찰대 소속 대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휘요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소속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와 서로 욕설과 상호 멱살을 잡았는바, 이는 경찰과 같이 계급을 중시하고 있는 조직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 '견책' 수준으로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공적 등을 참작하였고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 상급자인 경위 B와 소속 대원들이 있는 행정반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후 소속 대원들이 없는 컴퓨터실로 옮겨 잠시 다툼이

있었으나 폭행 등으로는 더 나아가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곧바로 서로 화해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거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비를 착복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아파트 관리 규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일이 아닌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501 감봉1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근무 당시,

20○○. 7. 27.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등이 '규정 등을 무시한 채 관리비를 착복하고 이들의 부정으로 회계사가 감사를 포기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0○○. 11. 2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처분(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2심 모두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20○○. 5. 27.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소청인의 명예훼손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일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임에도 소청인에게 벌금처분과 감봉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며,

기타 참작사항으로, 소청인은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3회의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피고인(소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횡령 등 비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전단지를 작성·게시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비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대에 해당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승강기에 전단지를 게시하거나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것으로 그만큼 전단지에 적시된 내용의 파급력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만일 추후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 질 경우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는 실로 중대하므로, 피고인은 더욱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내부적인 조사를 심도있게 거친 후에 밝혀진 사실만을 적시하였어야 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만일 피고인이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부적인 비리를 파헤친 결과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그러한 소명자료의 허점 등을 객관적으로 가감 없이 유인물에 기재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자들의 비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가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비리행위에 관하여 의혹을 가졌던 부분을 공론화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의 적시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20○○. 1. 19.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 5. 27.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동 판결은 확정 되었는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형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즉 소청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위를 저지른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소청인은 과거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더 신중한 행실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전단지에 기재된 비리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을 따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8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문자 전송(파면→정직2월)

처분요지

당직근무 중 방문한 민원인을 상담한 후 데려다 준다며 근무지를 이탈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문자를 수회 전송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늦은 시간으로 버스 시간을 알 수 없어 ○○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만남을 의도한 것은 아닌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문자 내용이 사회통념상 극히 혐오스러운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504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7. 13.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 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소청인은 20○○. 4. 23.(토) 당직근무 중 20:47~22:09 간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 당직팀에서 상담해 준 후, 상황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시 소재 ○○역까지 다녀오는 등 동일 22:10~22:37 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동대 차량을 목적 외 사용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4. 24.(일) 15:04~15:15 간 피해자에게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그러게요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네 속상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소주 살께요 ㅎ'라며 만남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문자를 3회 전송하였다.

다. 소청인은 20○○. 5. 12.(목) 11:00경 당직 근무 후 팀원들과 소주 1병,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데리고 나와라, 잘생긴 사람하고 나갈 테니 같이 술 마시자'라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4:11경 '오늘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문자로 거절의사를 표현하자, 14:12~18:25까지 '저하고 둘이서 한 잔 해요. 저에게 위로가 좀 되어 주세요', '답 좀 줘

봐요 ○○씨', '제가 쏠게요, 오늘은 애인만 해줘요. 정말 힘든데ㅎㅎ', '나 너무 힘든데 무리죠. 예의 없고. 엄마가 아파서 힘들어요. 그래도 ○○씨한테 실수하면서 잠시 잊고 싶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기 싫으면 노 해요. 전 마음을 보였으니까', '둘이서 술 한 잔 해요'등 총 6회 부적절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19○○. ○. 13.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청장 2회, 지방경찰청장 3회 등 29회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 4. 23. 야간 당직 근무 중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접수 하러 왔다'는 민원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찾아 와 먼저 수사과 경제팀으로 안내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제팀 사무실 문이 잠겨 있다고 하여 다시 지능팀 사무실을 안내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능팀 사무실도 문이 잠겨 있다고 하자 소청인은 피해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그간 사기사건 등을 취급하였던 다양한 경험으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게 되었다.

소청인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피민원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라고 하여 ○○경찰서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한 마음에 밤늦은 시간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서까지 찾아온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경찰서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소청인은 당초 상황관리관에게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늦은 시간이고 버스 시간을 잘 알 수 없어 피해자를 ○○역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상황관리관에게 사후보고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 4. 24. 피해자에게 전날 귀가를 잘하였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문자를 보낸 것일 뿐 민원인과의 만남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은 20○○. 5. 12. 야근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팀원들과 아침 겸 점심을 먹으며 소주 몇 잔을 마시게 되자 전날 근무로 몸이 피곤하고 어머님의 병세 악화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터라 갑자기 취기가 올라 와 누군가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만지던 중 20○○. 4. 24.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문자가 눈에 띄어 그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의 병세와 관련한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고자 우연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를 희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소청인은 민원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진정 취소장 및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항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고,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과 소속의 소청인은 당일 당직자로서 밤늦은 시간이라도 관할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여성 민원인이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것을 우려하였다면 콜택시 호출 등 당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민원인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마땅하였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에 소홀한 등 업무의 공백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근무지 이탈 과정에서 사건 현장 긴급 출동 시 사용해야 할 형사기동대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②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초 근무지 이탈 사실에 대하여 상황관리관에게 사전·사후 보고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CCTV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아도 소청인이 민원인과 근무지를 이탈할 당시 상황관리관에게 보고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②항과 관련하여 설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상황관리관에게 보고를 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당직자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사안은 상황관리관의 재량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근무지 이탈 사전보고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8조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모친의 병세와 관련하여 크게 상심하고 있었다면 마땅히 소청인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근심하고 이들 사이에서 위안을 받음이 마땅함에도 소청인 보다 열 살 이상 적고 소청인의 집 안 사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청인의 상황을 위로받고자 했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소청인이 본인의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상담해 준 사실이 있고, 향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음이 상당하다. ③ 피해자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상담하여 준 사실, ○○역까지 데려다 준 사실 등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소청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여 '친구를 데리고 나와라, 잘생긴 사람하고 나갈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는 부적절한 발언 및 '둘이서 술 한 잔 하자, 애인 해 달라, 전 마음을 보였다'등의 문자를 받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며, 실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나아가 피해자는 미혼 여성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기혼자인 소청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의 대상이 되자 상당한 성적인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판단되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성인의 관점에서도 소청인의 언행은 성적 혐오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과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계기,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비난의 소지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각 비위 행위는 1. 성실의무, 3.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다. 성희롱·성매매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보여 지며, 특히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각 경합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처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건 주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정도, 수위, 피해의 경중에 비추어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극히 혐오스러운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공무원 신분의 소청인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회에 걸쳐 보낸 것이 매우 부적절했던 것과는 별론으로 이 중 성희롱으로 판단될 만한 문자는 1~2건으로 국한되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은 그간 유사 전력을 포함하여 일체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피소청인 측에서도 소청인의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본 건 비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소청 결정례를 참고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없이 성희롱 발언으로만 배제징계를 받은 사안은 흔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9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주취 소란 행위(파면→해임)

처분요지

숙취운전, 폭행 등의 비위로 4차례의 징계를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임에도 식당 종업원 및 출동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미지급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음식점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거나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점, 노모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소란과 술값을 미지급한 비위의 정도만을 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54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7. 2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대기근무 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09. 5. 20. ○○ 성매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감봉2월, 2015. 4. 27. 술집에서 일반인과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견책, 2015. 9. 30. 술집에서 종업원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감봉2월, 2016. 3. 10. 숙취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정직2월 등 4회의 징계를 받고 2016. 5. 16. ○○경찰서로 전보된 후, 청문감사관, 생활안전과장, ○○파출소장 등 상급자들로부터 과도한 음주 자제와 의무위반 금지의 교양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음식점에서 음주 소란

○○경찰서 ○○파출소 근무 시, 2016. 7. 8. 01:00경 ○○시 ○○동 소재 '○○'식당에 일행 1명과 함께 만취 상태로 들어가 식당 종업원을 향해 "야 임마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며 옆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식당 동업자 B(남, 36세)의 목덜미를 잡고 술좌석으로 데려와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차려 하였고, 옆 자리에 앉혀 놓고 13분여간 술주정을 하고, 같은 날 01:56경 식탁에 쓰러져 잠이 들어 업주와 종업원이 5회 번갈아 가며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같은 날 02:17경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 C가 깨우자 "너 뭐야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너 같은 경찰관은 제일 싫다."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수차례 삿대질과

잠시 피해있는 C 경사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소란을 피우고, 술 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당일 01:00부터 02:40경까지 1시간 40분 동안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손상을 하였다.

나. 음식점 술값 미지급

한편, 소청인은 2016. 6월 말경 일행 3명과 위 업소에서 마신 술 값 100,000원을 갚지 않아 ○○파출소 소속 팀장이 대납하였고, 2016. 7. 8. 위 업소 소란 행패 시에도 술 값 28,200원 역시 지불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대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고, 비록 소청인은 ○○년 재직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장관 표창 등 40여 회의 표창 수상한 사실과 위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2009. 5. 20. ○○ 성매수 사건으로 감봉2월, 2015. 4. 27. 술집에서 일반인과의 다툼으로 견책, 2015. 9. 30. 술집에서 종업원 폭행으로 감봉2월, 2016. 3. 10. 숙취운전으로 정직2월 징계를 받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식점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거나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

소청인은 '○○'식당이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인 D, B가 운영하는 곱창집 식당이며, 평소 두 달에 한 번 정도 매상을 올려주고자

들렀던 곳으로 사건 당일인 2016. 7. 8. 01:00경에도 지인과 함께 곱창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01:56경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위 식당 종업원이 영업을 마치는 시간이 되자 소청인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귀가한 것이고 당시 소청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지불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식당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만일 소청인이 욕설과 소란을 피웠다면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무전취식을 했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나. 소청인의 근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소청인은 고혈압, 당뇨, 척추협상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 모친과 어린 두 딸(16세, 13세)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처해진다. 또한 2014년 부친이 암으로 사망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모친의 치료비 등 가족 부양과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를 다하고자 휴직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여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게 된 것이 공교롭게도 3회에 걸쳐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부친에게 하지 못한 효도에 대한 죄책감을 술을 마시는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경으로 임관된 이래 18여 년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장관, 경찰청장 등 40회 이상 표창을 수상한 상훈 경력 있는 점, 새로운 각오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

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 여부

소청인은 '○○식당'이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평소 두 달에 한 번 정도 매상을 올려주고자 들렀던 곳으로 사건 당일에도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이 들었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귀가하였고, 술값은 소청인 일행이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식당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만일 소청인이 욕설과 소란을 피웠다면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무전취식을 했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사건 당시 112에 신고 식당 종업원(20세)의 진술에서 "경찰관이란 손님이 일행 한명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고기와 술을 먹다가 01:40경 일행은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정리하다 보니 소청인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신고자와 다른 종업원이 번갈아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술 취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잠을 자고 있어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다.' 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라고 하고, 출동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청인을 깨워 소지품 및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천원권 지폐 1매와 핸드폰 이외 소지한 금품이 없었고, 술 집 주인은 과거 외상값 10만원까지 갚아 줄 것을 요구하자 소청인과 과거 같이 근무를 했던 출동경찰관 경위 E가 사건 당일 술 값 28,200

원만을 대납하고 남은 외상값 10만원은 차후에 갚도록 당부하자 소청인은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술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사건당일 출동경찰관 경사 C가 잠을 깨우자 “아”하며 일어나 “맘대로 해”, “너 뭐야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에게 10분 정도 행패를 부린 행위가 동 업소에 설치된 CCTV 및 관련 경찰관 진술 등에 의거 확인되고, 종업원 및 업주 역시 진술에서 사건 당시에도 소청인은 단골이라는 명분으로 “야 임마, 이리 와 봐” 등 비어를 사용 종업원 및 사장에게 말 한 사실로 볼 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2016. 6월 말경 위 ○○ 식당에서 소청인 포함 4명이 마신 외상술값에 대해서도 식당종업원이 술값을 청구하자 소청인이 “돈이 없다. 다음에 준다.” 라고 한 사실이 종업원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소청인이 비록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경범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친분관계가 없는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약 1시간 40분 정도 욕설과 행패 등 소란을 부린 사실과 술을 마시고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여 년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장관, ○○청장 등 40회 이상 표창을 수상한 상훈 경력과 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 모친과 어린 두 딸(16세, 13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부친이 암으로 사망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여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게 된 것이 공교롭게도 3회에 걸쳐 징계를 받게 된 점, 모친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휴직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청장 표창 등 40회의 표창에 대한 감경은 2016. 3. 10. 숙취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징계처분 시 상훈경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자녀양육 및 모친 치료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어려움을 이유로 감성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사적 생활 전반에 대하여 절제를 못하고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지고, 술에 취하면 언행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어 경찰조직에서 배제징계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2009년부터 시작된 성 매수, 폭행, 숙취운전 등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위 전력 관련 상급자들로부터 수차례 의무위반 예방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불과 2개월도 안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또 다시 의무위반의 비위를 저지른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고, 그동안 반성의 기회에 반하여 일탈행위의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건 징계의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1]에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음주로 인해 ○○경찰서에서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기 지급이 제한되고 ○○경찰서로 전보된 후에도 소속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오고 있는 자로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약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 단순 음주 소란과 술값을 미지급한 비위의 정도만을 볼 때, '파면'이라는 최고의 중징계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0 민간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처신(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술에 취한 상태로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대로변에서 동행한 민간인 근로자의 얼굴을 잡고 볼에 뽀뽀를 1회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평상시 딸에게 했던 습관이 취중에 나왔던 것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76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원　　연구사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3. 18. ○○과 ○○연구실 연구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1차로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카페에서 와인을 마신 후,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3차 장소로 이동하는 대로변에서 동행한 민간근로자 B의 얼굴을 잡고 볼에 뽀뽀를 1회 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청인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의성은 없으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여성 민간근로자가 그 피해자인 점, 사회통념상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징계수준의 감경 없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본인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피해자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틀 후 다소 진정되어 소청인의 친밀한 표시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고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소청인의 감경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청인은 ○○년 10개월 동안 ○○관련 시험 연구사업에 종사하면서

○○분류, 외래 ○○연구 등 ○○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결과, 2012년 ○○원장상, 2013년 ○○학회 우수논문상, 2014년 ○○청장상 및 2015년 ○○청 우수도서 동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2015년 ○○장관상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감경 공적이 있다.

또한,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금번 징계처분으로 인해 다른 오지 부서로 전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제재 지침'에 따라 승진 후보대상자로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추가적으로 6개월을 더 받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의 공직기간 동안 소청인의 전문성이 ○○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각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3차를 위해 이동 중에 술에 취해 대로변에서 피해자 B의 볼에 1회 뽀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당시 평소 주량 보다 많은 술을 마심에 따라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평상시 딸에게 했던 습관이 취중에 나왔던 것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6. 7. 22. 소청인의 행동을 이해하며 본건을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11. 10.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본건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지로 전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본건은 기본적인 사안 자체가 여성이 피해자인 성과 관련된 행위인 점, 특히 소청인은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사이고, 피해자는 ○○연구실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근로자로 두 사람은 명확한 갑을관계인 점, 이는 피해자가 계약 연장을 앞둔 상태에서 소청인과 여전히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7. 22.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동을 이해하며 본건을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서의 내용과 피해자가 11. 14. 소청인의 소청 청구 직전인 11. 10. 소청인의 감경을 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 또한 가감 없이 믿기 힘든 점, 실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라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당분간 소청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C 연구관에게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추행으로도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소청인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을 먹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사과를 받을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따로 사과를 받지는 않은 것이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틀 후 다소 진정되어 소청인의 친밀한 표시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고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해주길 원하면서 소청인의 감경을 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처분청에서는 피해자가 뽀뽀를 당했을 당시에 성적으로 수치스럽다거나 성적인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을 성추행이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한 바, 소청인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여성 민간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한 점, 본건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유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임→기각)

처분요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4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총 31,020,931원의 물적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주차된 차량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사고 후 조치에 대한 판단을 못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물적 피해는 모두 변제한 점, 합의금을 지불한 점, 형사판결에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점,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85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원　　7급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원 ○○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시 ○○구 ○○길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식당 쪽에서 ○○빌라 쪽으로 이동하다 주차중인 ○○ 차량 및 ○○ 차량을 1차 충격하고, 주차중인 ○○ 화물차량 및 고가사다리 차량을 2차 충격하는 등 총 4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31,020,931원의 피해를 남기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 검거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공직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가에 봉사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 12. 3.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비위를 저질렀으며, ○○청에서는 2015. 11. 1.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실시 및 2016. 7. 19. 음주운전 관련 처분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가 발생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는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강등' 상당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물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6. 28. 사무실 정리정돈 작업으로 벽허물기 작업 등을 하면서 육체노동을 과하게 하였고, 매우 피곤한 상태로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다. 같은 날 21: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소청인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길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 식당 쪽에서 ○○빌라 쪽으로 이동하다, 피해자 B 소유 ○○ 차량 등 총 4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총 31,020,931원의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피해차량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양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양측의 외상성 혈흉 및 기흉 등 중상을 당하게 되었고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하여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였다. 예기치 못하게 부상을 당하자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체포 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며, 이후 음주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음주 단속 및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피해차량은 모두 주차차량으로 인적 피해가 전혀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며 보험으로 물적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별도의 합의금을 지불하여 피해자 4인 중 3명과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피해자 C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 또한, 소청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처벌기준인 0.050%를 극히 미량 초과하여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탄원서, 반성태도 및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연퇴직되지 않고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판결 받았다.

소청인은 ○○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 2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소청인의 징계사실에 안타까워하며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유사소청례에 비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혹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배제징계를 받는 경우 생계가 막막한 점, 정년퇴직까지 불과 3년 밖에 남지 않은 점,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6. 28. 21:10경 사무실 정리정돈 업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음주 후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소청인은 위 같은 무렵 ○○시 ○○구 ○○길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식당 쪽에서 ○○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주차중인 B 소유의 ○○ 차량 및 C 소유의 ○○ 차량의 전면부분을 소청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다.

3) 소청인은 1차 충격 후 도주 중 ○○빌라 앞 노상에서 우측에서 주차중인 D 소유의 ○○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 및 좌측 앞부분을 소청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좌측에 주차중인 E 소유의 고가사다리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소청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4) ○○청장은 2016. 10. 31.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6. 11. 23. '해임'으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원장은 2016. 12. 1. 소청인에 대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5)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6. 9. 27. 소청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6. 12. 13.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이 소속된 ○○청에서는 2015. 11. 1.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며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2016. 7. 19. 음주운전 처분기준 강화를 명시하는 등 수차례 교양을 하였다.

3) 소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4인 중 3인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합의한 3인이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소청인은 약 ○○년간 근무하며 본 건 외 2009. 12. 3.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장 표창 2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라는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할 때 다소 과중하여 징계재량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청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 관련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점, 더욱이 소청인은 2015. 7. 14. 부터 소속부서의 과 서무를 수행하여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제재지침 및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소속부서 직원에게 공람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는 점, 과거 2009. 12. 3.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비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파면~정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로 법정기준치인 0.05%를 극히 미량 초과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 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2 음주측정 불응(강등→기각)

처분요지

음주 후 숙소 이동 중 인도 연석선 및 교통시설물을 충격하고 조치없이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비위로 강등 처분

소청이유

과음으로 인하여 운전을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점, 사건 당일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10여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861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안전서　　경장　A
피소청인 : ○○안전본부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안전본부 ○○안전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0. 11. 19:00경 ○○시 ○○동 소재 ○○ 마트 옆 ○○식당에서 경위 B, 경사 C, 경장 D와 함께 소주 5~6병, 맥주 4~5병을 분음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인근 ○○시 ○○동 소재 ○○맥주 전문점에서 23:3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경위 B와 택시를 타고 본인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경위 B와 같이 ○○시 ○○동 소재 ○○방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경사 C, 경장 D와 상호미상의 생맥주집에서 합류하여 다음 날 00:40경까지 술을 마셨다.

그 후, 소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0:48경 ○○시 ○○동 소재 ○○4거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주의로 우회전 하는 도로를 회전치 못하고 좌측 앞바퀴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충격, 계속하여 그곳 인도 교체작업을 위해 세워둔 교통시설물 충격방지 PE 적색 드럼통을 충격하여 운전석 앞 바퀴에 드럼통을 끼운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00미터 떨어진 ○○스포츠 앞까지 진행하다 타이어가 펑크나자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 도로 우측에 주차하였으며,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 10. 11. 19:00경 친분이 있는 직원 4명과 ○○함대사령부 앞 ○○식당에서 소주 및 맥주를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택시를 이용하여 ○○시 ○○동 소재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택시를 타고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으로 이동,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동까지 이동 후 다음날인 20○○. 10. 12. 00:00경 ○○동 소재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헤어진 것까지는 기억하나 대리운전 이후의 행동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기억이 없다.

소청인은 지인들과 헤어지고 난 후 ○○사거리 인근에서 과음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소청인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보니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소청인의 차량이 ○○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소청인은 차량이 아닌 도로 옆 인도에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관 2명이 음주측정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소청인은 그 당시 대리운전을 하여 이동한 기억밖에 나질 않았고,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있지도 않았으며, 소청인이 운전한 기억도 없었기에 소청인이 ○○안전서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되었다.

이 후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소청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소청인의

지나친 과음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만약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가사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0.1%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직~감봉'의 징계에 해당되는바, 여러 정황을 볼 때, 소청인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은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해양경찰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건 당일에도 2회에 걸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였고, 소청인의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20○○. 9.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입청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장 표창을 비롯한 1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년부터 사단법인 ○○와 ○○재단, ○○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 점, 소청인은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는 아들(8세) 등 어린 자식 총 3명과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10. 11. 19:0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경위 B, 경사 C, 경장 D와 소주 5~6병, 맥주 4~5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맥주 전문점에서 23:30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2) 소청인은 경위 B와 택시를 타고 본인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리운전을 이용, 본인소유의 차량에 경위 B와 같이 ○○시 ○○동 소재 ○○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경사 C, 경장 D와 상호미상의 생맥주집에서 합류하여 20○○ 10. 12. 00:40경까지 술을 마셨다.

3) 소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가 20○○. 10. 12. 00:48경 ○○시 ○○동 소재 ○○거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주의로 우회전 하는 도로를 회전치 못하고 좌측 앞바퀴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그 곳 인도 교체작업을 위해 세워둔 교통시설물 충격방지 PE 적색 드럼통을 충격하여 운전석 앞 바퀴에 드럼통을 끼운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00미터 떨어진 ○○스포츠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 타이어가 펑크 나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 도로 우측에 주차하였다.

4)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소청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5) 20○○. 10. 31.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안전서장은 20○○ 11. 14.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 11. 18. ○○안전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20○○. 11. 28. ○○안전본부장은 소청인에 대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 기준 【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은폐한 경우 '해임~강등'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차, 2차 감독자는 본 건 책임을 물어 '교양교육'을 받았다.

3) 소청인은 20○○년 공직에 입직한 이후 약 ○○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원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4. 판 단

소청인은 과음으로 인하여 운전을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은 아니며, 소청인의 행위 및 동기, 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본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살펴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 E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20○○.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약식 처분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며,

나아가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더구나 소속 관서에서는 매일 2회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 발송 및 출근시간대 전 직원 대상으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자체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소청인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2회 제출하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은폐한 경우 '해임~강등'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소청인은 술에 취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비위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Ⅳ. 금품·향응 수수

53 승진인사 관련 금품 요구 및 향응 수수
(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경찰 후배에게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요구하고, 2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승진인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저녁 술자리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친교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점,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당사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14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150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2. 24.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2015. 8. 14. 〈업무지원〉 ~ 현재) 당시, 2016. 1. 5. 18:18경 순경 C에게 "듣고만 있어! 심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라며 심사승진이 될 수 있다는 언질을 주고 2016. 1. 9. 18:0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순경 C를 만나 2016년 승진인사에서 경장으로 승진 되었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인사를 하려면 350만 원이 필요하다'며,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350만 원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00~22:55경까지 순경 C로부터 ○○식당 및 ○○노래방 비용 등 2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같은 해 1. 14. 10:10경 ○○시 ○○동 소재 소청인의 자택 앞에서 순경 C에게 요구했던 3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에 동행하였던 감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3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2016. 1. 5.경 B 주임으로부터 'C가 이번 심사에서 승진될 수도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친한 후배인 C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 후 실제로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C가 2016. 1. 9.경 ○○으로 내려와 이전부터 종종 해왔던 것처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하면서 "승진 인사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하자 선례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당시 C가 "혼자 대장님을 찾아뵙기 어렵다"고 하여 심사승진 가능성을 알려주고 기동대장과 친분이 있는 B 주임이 함께 동행해 주도록 주선해 준 정도가 전부였을 뿐,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C에게 2016. 1. 9.경 승진인사에 필요하니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감찰관에게 불법으로 체포, 연행된 2016. 1. 14. 10:10경 당시 현장에서 C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소청인이 2016. 1. 9. C와 가진 저녁 술자리는 어떤 대가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던 개인적인 친교 자리였음에도, 이날이 공교롭게도 C가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다음날이라고 하여 이날의 술자리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C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편견이다.

그렇다면, 본 건 소청인의 비위 내지 의무위반 사항으로 언급된 내용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예단과 편견을 갖고 시작된 위법, 부당한 감찰보고의 결과일 뿐, 그 전체적인 기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 바, 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심사승진 이후 기동대장과 B 주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C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C와 술자리 혹은 전화통화로 전달할 금품의 액수, 방법 등을 조언하고 협의해주었을 뿐이었는데도, 직접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자 하였던 당사자인 C에게는 '정직2월'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고, 위 C의 부탁으로 그 인사 방법 등을 조언하고 상담해준 소청인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최초 누구의 전화통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발생 경위, 소청인이 본 건 비위 행위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관여한 정도, C가 금품을 전달하려고 했던 상대방과 그 금품 제공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심사승진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직접 당사자인 C가 받은 '정직2월'의 징계처분보다 상담자 혹은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그친 소청인이 훨씬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다 할 것이며,

또한 경찰감찰규칙이 정한 감찰관의 권한과 행동준칙을 위반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인신 구금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감찰관의 조사 결과는, 그 내용의 진위를 불문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바, 적법 절차에 위배되어 수집된 '감찰조사 보고' 등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 혹은 독수독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잘못된 악습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누를 끼친 과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약 23년 동안 재직해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은 72세인 노모와 처 그리고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승진 인사 명목으로 C에게 350만 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C로부터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보면, 소청인은 승진인사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만 해 준 것이며 2016. 1. 9. C와의 저녁자리는 개인적인 친교자리였다고 주장하나, C가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다음날 소청인이 C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여 소청인의 집 주변 ‘○○

식당'에서 90,000원 상당의 1차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도 소청인이 노래방에 가서 "맥주나 한잔하자"라고 하여 C는 180,000원 상당의 노래비용을 지불하는 등 도합 27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승진심사에 고마움을 느꼈던 C가 소청인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결국 소청인은 순경 C로부터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C로부터 향응을 받으면서 승진인사를 하려면 35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C에게 말을 한 후 같은 날 21:10경, 21:13경 B에게 전화하여 금품수수 금액(대장 200만 원, B 100만 원)을 제시하였고, C에게는 50만 원은 인사를 갈 때 선물을 사고 함께 동행 할 B의 경비로 사용하라는 등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한 점, 2016. 1. 10. 20:32경 350만 원이 맞는지 C가 전화로 묻자 "맞다"라고 금액을 확인해 주었고, 2016. 1. 12. 18:10경 C가 "350만 원이 준비됐는데, 내일(1. 13.) 야간근무가 떨어지면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이 되니까 제가 내일 ○○에 내려가서 현금으로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렇게 해라"라고 말한 점, 2016. 1. 13. 16:09경 C에게 "B가 D와 통화를 했고 만나서 소주 한잔하기로 했다, 그러면 대장이 너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같이 고맙다고 해라"라며 재차 금품 전달의사를 확인해 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금품을 전달할 대상, 금액,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음에도 특정인사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암시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소청인은 감찰 적발 당일(2016. 1. 14.) C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으며, C를 B에게 데려다주고 소청인은 수영장에 갈 생각이었다고

하나, C가 35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소청인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혹여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비위사실을 인정한다 할 것이며, ○○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는 감찰 적발에 앞서 C와 참고인의 조사를 통해 이 사건 비위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2016. 1. 14.은 소청인이 C로부터 35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날로 C가 소청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자 위 350만 원을 받기 위해 나오는 소청인을 경찰감찰규칙에 따라 감찰관 신분과 비위요지를 고지한 후 현장에서 적발한 것으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가 법령을 그르쳐 위법에 이르는 사정은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순경 C에게 금품 요구와 향응을 수수한 비위를 저지른 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그 금품이나 향응의

금원이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더욱이 같은 규칙 [별표 2] 하단의 비고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수수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건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한 수수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심각한 사안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 질서를 심히 해 할 것이며,

또한 당시 소청인의 행위로 '○○경찰, 승진 금품로비 혐의 경찰관 3명 적발' 제하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면, 소청인이 순경 C의 승진인사 명목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 이전에 순경 C가 금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먼저 의견을 구한 점,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청렴의무 위반 등의 비위에 대한 일벌백계라는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청인과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당의 각 1/2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취임의 제한이 따르는 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이건 처분과 앞서 살핀 소청인의 비행 정도의 균형을 고려하면 본 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135천 원)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비위 금액 등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4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정직3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3회에 걸쳐 300만 원의 금품 및 기념품을 수수한 비위로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소청이유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상품권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여 찢어 버린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부하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200만원은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나머지 금품의 수수 경위 또한 소청인의 적극적 요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17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2016-177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3. 15.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는 기각하되, 그 기초금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가. 금품 수수

1) 소청인은 2013. 9. 9.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B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 기념품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2) 2014. 1. 20.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대학교 ○○사업단 C가 ○○ 출장 시 구입하여 전달해 온 ○○ 향수 등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3) 2014. 2. 23. ○○ ○○구 ○○편의점 앞에서 업무 해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대학교 ○○사업단장 교수 D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는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나. 민간인력 파견 부적정 등 법령위반

소청인은 2013. 3. 23.부터 2014. 6.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 사업단장 D를 통해 자신의 업무 보조인력 명목으로 '2012년 ○○대 ○○ 사업단'에 근무하던 E를 ○○대 사업단 연구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약 11개월간 위

E를 ○○부 ○○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위 사실을 ○○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부하직원 및 직무관련자인 ○○대학교 ○○사업단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수한 합계 300만 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공무원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하게 민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시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30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인부에 대한 주장

1) B로부터 현금 200만 원 금품 수수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B 연구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상식적으로

현금을 줄 때는 직접 교부하면서 특정 청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매일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소청인의 책상에 금품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공여자로서 추후에 금원 수령 여부를 확인해봄직함에도, B로부터 이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소청인은 B의 업무 태만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금품을 수수할 관계가 아니었다. 특히 2013. 12.경에는 B가 소청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당시 국장에게 과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 결과 범죄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건 징계에 이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D로부터 상품권 수수 비위에 관하여

○○대 D 학장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와인을 받았을 뿐, 그 안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사실을 수수 당시에는 몰랐으며, 추후 이를 알고 D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여 D에게 말을 하고 위 상품권을 찢어 버린 사실이 있다.

나. 정상 등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이건 관련하여 약 1년 9개월간 직위해제 상태로 놓여진바 이로 인해 극도의 고통을 받았으며, 본 건으로 ○○부에 누를 끼친 점은 반성하고 있다.

3. 판 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징계사유 가항 1), 2)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B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기본적 사실 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 ○○과는 2010년경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 전문학과가 편성되어 있는 대학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전담기관 즉 사업단을 운영하였는데, B는 2010. 9.경 ○○부 ○○과 파견연구사로 발령 받아, 2012. 2. 경 ○○과 연구사로 근무해 오면서 2011년경부터 위 ○○ 사업 등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청인은 2013. 3. 경부터 위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당해 과의 주력 사업인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예산확보, 시도교육청 협조요청 등 전반적인 해당 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수행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3. 9. 6. 위 B, ○○실장 F와 함께 위 ○○ 사업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 행사에 ○○대 사무국장인 G의 주선으로 참석을 하였는데, 위 행사 종료 후 소청인은 ○○대 ○○과장 H와 술자리를 하면서, 위 G에게 전화를 하여 '초대해 놓고, 술도 한잔 사지 않느냐'는 취지로 자신을 접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위 행사 후 귀가를 하던 B에게도 역시 위 행사 관련하여 섭섭하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위 소청인과의 전화통화는 B와 같이 귀가 중이던 F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다) 2013. 3.경부터 B의 추천 선발에 의하여 위 ○○ 사업 관련 ○○대학교 사업단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는 2014. 1.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 국제교류 연수를 가게 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사업홍보비 550만 원을 유용하여 ○○ 향수 8개, ○○지갑 3개, 각종 기념품을 구입하여와, 위 ○○ 향수와 ○○ 지갑을 B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B는 2015. 12. 22.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자신의 조카, 후배 등을 4개 사업단 및 단체에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각 사업단으로부터 이들의 인건비 6,680만 원을 지급받고, 사업단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5,457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자문료 및 ○○대여료 등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아 본인이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사기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고, 위 공소사실에 더하여 940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 및 6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점, 사업위탁 지시 등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추가된 비위 사실로 2014. 8. 25. 징계 파면되었다.

마) 소청인 역시 경찰에서 위 B의 사기 등 사건에 대해 참고인의 지위로 진술하기도 하고, 나아가 B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소청인에 대해 입건하지 아니하고 내사종결로 마무리를 지어, 이후 소청인의 이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품 수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여자인 B의 진술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비위 사실의 존부 판단은 결국 위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불어 보면, 위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증거 등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B로부터 2013. 9. 9. 자 100만 원, 2014. 1. 20.자 1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항 1), 2)]는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1) B의 진술 내용

① 2013. 9. 6. ○○대 행사 이후 ○○대에서 소청인에게 많이 섭섭

하게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당시 소청인이 사비를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서 같은 달 9. 출근하여 오전 09:00경 현금 5만 원권으로 100만 원을 ○○대 기념품 봉투와 함께 넣어 A 과장 자리로 가서 책상 안쪽에 놓아 드렸다. 당시 A 과장 자리에서 기념품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② C는 2013. 1. 18. 부터 1주일 정도 ○○ 연수를 다녀왔는데 당시 ○○부 공무원들은 아무도 가지 못하고 ○○대 사업단 관계자들만 갔다. 그 후 같은 달 22. C로부터 ○○부 청사에서 ○○ 향수, ○○ 우산 등을 건네받았고, 당시 소청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C가 소청인에게 인사드리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C와 의논한 바가 있어서 ○○ 우산은 별도 소청인 책상에 올려놓았고, ○○ 향수는 노란색 서류 봉투에 넣고,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 노란 색 서류 봉투 안에 넣어서 소청인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2) B의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의 경위

B는 자신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업단에 허위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 편취, 사업단 법인 카드 사적사용, 뇌물 수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 경찰의 3회 차 조사에 이르러 이건 소청인에게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별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의 진술은 그 진술이 별건에서의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하여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허위진술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중 2014. 3. 25.자 작성 B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를 보면, B는 수사관의 단순한 뇌물 공여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소청인에 대한 자신의 공여

사실을 일시· 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상세히 자인하였다. 그러나 수사관의 첩보나 혐의를 기초로 한다거나, 어떠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한 계속된 추궁을 통해서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단념 속에서 부득이 자신의 범행을 자인한 것이면 모르되, 해당 부분에 대한 혐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특별히 자신의 뇌물 공여에 대해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실토한 이건 B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신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나) 금품 공여 동기

① B가 진술하는 뇌물 공여 동기는 2013. 9. 9. 자 100만원 금품 수수 비위[징계사유 가항 1)]의 경우 ○○대 행사 후 소청인이 행사 주재자의 접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것이고, 2014. 1. 20. 자 100만 원 금품 수수 비위[징계사유 나항 2)]의 경우는 소청인이 ○○ 연수를 가지 못해 이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는 B가 소청인에게 공여할 만한 뚜렷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소청인이 B에 대해 섭섭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직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외부 사정이나 제3자에 대해 소청인이 언짢은 심정을 품고 있거나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200만 원이라는 고액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외 당시 B의 직무 혹은 인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전·사후 답례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특정 사안 등에 있어 소청인에게 청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등의 통상 상·하 공무원간 금품이 수수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동기를 B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② 소청인이 B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직속상관으로서 당해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 관련 특정한 시점이나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부하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 등에 관한 혜택을 기대하며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의 직무상 감독을 받은 사업단에 허위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 편취, 사업단 법인 카드 사적사용, 뇌물 수수 등 일련의 범행에 소청인이 가담·개입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고, B가 소청인에게 위와 같은 편취 범행들이 소청인에게 발각되지 아니하고 원활히 자신의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B에게 상관으로서 업무 지적을 몇 차례 한 것이나, B가 소청인을 상대로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한 상태였음을 인정한다면, 그러함에도 B는 단순히 일반적·포괄적 의미의 청탁 취지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데, 그 공여의 동기로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 공여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① B는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 금품 공여 일시,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건 뇌물 공여는 이를 증빙하는 금융자료는 물론 이거니와 공여 내역을 기록한 B의 자필 메모나 장부 등 객관적 자료는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공여 사실 관한 기억을 환기할 만한 어떠한 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한 내용치고는 공여 일시 등을 몹시 정확히 특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대부분일지고, 특히나 특정 날짜나 시간에 대한 것은 이를 기록하였다거나 특별히 기억할 만한 계기가 없는 이상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작위적으로 부자연스럽다.

② B는 공여 장소 및 그곳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가 현금을 소청인의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여가 이루어진 것인데, 위 소청인이 과장으로 있는 소속 과 직원으로서 직무상이나 일상적으로도 소청인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이는 B가 이 사건 현금 전달 장소에 대한 진술에 구체성이 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B는 자신의 형사 절차에서나 징계 절차, 즉 징계의결 당시나 당 소청에 이르러도 자신의 범행이나 비위를 일관하여 부인하면서도, 유독 소청인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만을 자인하였다. 즉 형사상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나, 금융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질 것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면서도 자신의 자백 진술만이 증거로서 유일한 이건 공여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순순히 인정하는 진술 경위는 다소 이해되기 어렵고, 진술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의문스럽다. 특히 이건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소청인과 B의 뇌물 수수·공여 사실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기록상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동 사실이 입건되지 아니한 채,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는바, B 입장에서는 추후 이건에 대한 허위나 과장의 진술을

한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빈약해진 점과 더불어 B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를 보면 B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공범으로 공소 제기된 I에게 자신의 편취의 범행과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진술을 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점을 부가 한다면 위와 같은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 금품 조달 방법, 공여의 목적물 및 전달방법에 관하여

① B의 공무원 신분이나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공여액 200만 원이 언제든지 쉽게 조달 가능한 소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B는 해당 금원의 출처는 물론이거니와 당시 각 100만 원의 현금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달한 것인지 있었는지, 해당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제3자로부터 전달 받아 제공한 것인지 등 그 진술 어디에도 공여에 제공된 자금은 마련, 조달 방법에 대한 진술이 없다.

② B는 이 사건 2건의 금품 공여 장소를 소청인의 사무실로 진술하면서 소청인이 회의 등으로 부재 시 현금 100만원을 봉투나 기념품에 동봉하여 소청인의 책상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의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청인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도 업무상 왕래가 충분히 가능하여 공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공여를 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의 진술은 굳이 소청인과 대면하여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소청인이 사무실에 부재하는 경우에만 현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인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여 언제든지 소청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공여자가 자신이라고 밝히지도 아니하는 등 출처의 표식도 하지 아니한 기념품 등과 함께 현금만 책상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이례적이

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③ B는 소청인에게 대학행사 기념품인 ○○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서 전달하였다거나, ○○에서 사온 향수와 현금 100만 원을 같이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기념품은 물론이거니와 향수 또한 비교적 고가의 선물로는 볼 수 없는데 여기에 고액인 현금 100만 원을 같이 동봉하여 공여하였다는 것이 그 경위로서 다소 의아하다. 즉 소청인으로서는 직무상 각종 대학으로부터 수많은 행사 관련 기념품을 받아 왔을 것이고, 위 ○○대 행사 기념품인 ○○ 역시 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소청인의 입장에서 위 기념품의 비교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히 보관이나 간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분실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고액인 100만 원을 동봉하여 금품을 공여 하였다는 것을 두고 일반적인 금품 공여의 모습을 띈다고는 볼 수 없다.

(마) 공여 후 정황

이건과 같이 공여자가 수수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책상에 올려놓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수자가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을 전달한 경우라면, 공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수수자를 상대로 뇌물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B가 소청인에게 자신의 제공한 금품을 전달 받았는지에 관하여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를 확인해 보았다는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1) 정직3월 처분에 관하여

가) 소청인은 ○○부 ○○과장의 직위에서 직무에 관하여 ○○대 ○○

사업단장을 관련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여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여기에 자신의 업무 보조 명목으로 민간 인력을 파견 받아 그 사실을 ○○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민간 인력 파견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을 부가한다면 비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유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주된 비위는 소청인이 총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중 B로부터 수수하였다는 200만 원은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처분에 기초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은 결국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인정되는 금품 수수 비위 역시 소청인은 감찰조사나 수사 시부터 당 소청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 경위 또한 소청인의 적극적 요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비록 공여자에게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준 행위는 인정되나, 이를 소청인의 구체적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처사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직무 수행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 나아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감봉'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여 징계사유 일부가 제외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양정 기준 역시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를 종합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관하여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30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중 200만 원 수수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대상 금액은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나) 그러나 징계부가금 2배 부과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수수 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소청인은 이 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정직3월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5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해임→기각)

처분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업체 대표를 조사하고 식사 및 노래방 비용 등 316,666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업체 대표가 저녁을 먹자고 권유하여 단순한 저녁식사 정도로 생각하여 수동적으로 응한 점, 업체 대표가 억지로 팔을 끌고 2차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23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고용노동청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청 ○○과에서 피보험자격, ○○ 사회보험, 실업급여부정수급 조사 업무 담당자로서, 2015. 11. 5. ○○지청 ○○과 사무실에서 실업급여수급자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산업 대표 C, 현장소장 D를 조사하고, 2015. 11. 5. 18:30.경 ○○시 소재 '○○식당'에서 ○○산업 대표로부터 83,333원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날 20:30경 ○○시 소재 '○○노래홀'에서 ○○산업 대표로부터 233,333원의 향응을 수수하여 총 316,666원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의거, 소청인이 징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0대 가장으로서 부인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향응수수액이 316,666원 상당으로 고액이 아닌 점, 부정수급 단속 업무 실적이 우수하여 소속 관서가 우수관서로 선정되는 데 일조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공무원 비위 사건 조치기준」(2015. 10.)[별표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의하면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사 직무 등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배제 기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수수 금액,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2011. 5. 3. ○○지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 당시 ○○ 대표 E로부터 술, 접대비 등 486,66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2014. 3. 13.에는 홀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기 ○○ 대표 E에게 전화로 술값 계산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2014. 9. 4. 중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로 처분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와 유사한 향응수수 비위가 발생한 점, 소청인은 2014. 9. 4. 징계 처분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라 2014. 9. 4.부터 2016. 9. 3.까지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어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어떠한 비위도 없어야 함에도, 이 기간 중 새로운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발생 빈도 측면에서 볼 때 그 정도가 심하고 과실도 적지 않다고 보이고, 유사한 비위가 지속 발생할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316,666원×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소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용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당시 ○○산업 대표 C가 조사 이후 계속하여 저녁을 먹자고 권유를 하여 소청인은 단순한 저녁식사 정도로 생각하였고, 당시 배가 너무 고파 얼떨결에 저녁을 먹으러 간 것으로 소청인은 수동적으로 단순한 저녁만을 먹었으나, 그 후 술이 약한 소청인을 ○○산업 대표 및 현장 소장이 억지로 팔을 끌고 2차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소청인이 ○○산업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머리가 아파 무심결의 넋두리의 말을 했던 것을 ○○산업 대표의 말만 듣고 침소봉대하여 능동적으로 저녁을 사달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은 술이 취해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잠만 잤으나,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이유로 인해 2차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오인을 받았다.

나. 기타 참작사유

2014. 9. 6.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은 2010년도에 발생했던 수동적인 단순한 향응 사건으로 원래는 경징계 처분이 맞으나, 2014. 8.경 ○○ 기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크게 파문이 일어 능동적인 향응사건이라고 석연찮게 해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등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징계처분과 별도로 검찰에서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로 조사받았으나 2015. 9.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전 중징계 처분으로 인해 2014. 12. 22. 비연고지인 ○○○○고용센터에 발령받았으나 소청인은 성실하게 근무하여 소청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2015. 7.경 ○○고용센터에서 ○○지청으로 상향 전보 조치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였다고 자부하나,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향응수수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3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한 점, 향응 수수에 있어 ○○산업 대표의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인 점, 40대 가장으로서 부인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해임으로 인해 퇴직금을 1/2밖에 수령하지 못해 소청인의 가정은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가엾게 여겨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인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16,666원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다툼은 없다.

가. 능동적 향응수수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산업 대표 C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넋두리 말을 했고, 조사 이후 관련자가 권유해서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 능동적인 향응수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관련자는 소청인으로부터 실업수당 부당 수령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던 바, 소청인과는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있다.

② 관련자는 2016. 3. 9. 1차 조사 시 향응수수 일자 및 노래방 비용에 대하여 2015. 11. 13.(금), 저녁식사 비용은 약 30만원(현금 지급), 노래방 비용은 약 60만원(현장소장 신용카드 50만원, 10만원은 후일 현금 지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16. 2차 조사 시에는 2015. 11. 5.(목), 저녁식사 비용은 약 25만원(현금 지급), 노래방 비용은 70만원(계좌이체 60만원, 카드 10만원)이라고 번복하였다.

③ 소청인은 관련자가 주장하는 향응수수 일자(1차 조사시 2015. 11. 13., 2차 조사시 2015. 11. 5.)에 향응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④ 2015. 11. 13. 소청인은 실업수당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B에 대하여 정당 수혜로 결정하였다.

⑤ 상기 B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산업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청인의 징계처분 이후 ○○산업에 과태료 200만원을, B에게는 부정수급액 1,124,920원 환수,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향응수수 양태에 대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감찰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확인서 징구 이외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어 소청인의 진술, 이 사건 당시 관련자의 처지 및 ○○산업에 부과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관련자를 조사할 당시 '소주가 땡긴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자료도 없이 B가 2015. 8. 근로를 안 했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암묵적으로 관련자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조사받을 당시, 관련자로서는 소청인이 B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였다면 과중한 과태료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 사건 적발 이후 관련사업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으로 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볼 때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비록 B가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관련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B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관련자1, 2가 먼저 소청인에게 향응 공여를 제안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자들이 먼저 저녁식사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진술보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능동적으로 저녁을 사달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차 향응수수 오인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2차 노래홀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쇼파에서 잠만 잤으나,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이유로 인해 2차 향응을 받은 것으로 오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2차 노래홀 향응에 대하여 '관련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소청인이 간단하게 커피나 한 잔 하자고 관련자에게 이야기했고, 2차 노래방 비용은 소청인이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나갔는데 이미 계산이 다 끝났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없었고, 소청 제기 시에도 별 다른 주장이 없다가 피소청인의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받은 이후 돌연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만 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2차 노래방 비용을 모두 관련자들이 지급하였고, 당시 노래방 비용은 70만원으로 통상적인 노래방 비용에 비해 상당히 고액인 점, ② 관련자는 영세 사업장의 대표로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 통상적인 노래방 비용에 비해 상당히 고액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저녁식사 이후 노래홀에 가게 된 경위와 2차 노래홀

비용을 소청인이 계산하려고 하였다며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노래홀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렀는지에 대한 질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 소청 제기 이후 돌연 노래방에서 잠만 잤다고 주장하는 등 소청인은 매번 달리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청인 주장에 대한 증거나 납득할만한 주장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관련자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수수일자에 관하여 2015. 11. 13.에서 2015. 11. 5.로 번복하였는데, 소청인은 공여자들의 향응수수 일자에 대해 모두 자인하고 있지만, 소청인은 '2015. 11. 5. 관련사업장에서 8월 근로내역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는데, B 이외에도 사건외 F도 정정신고를 하여 이상하여 대표인 관련자1을 출석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때 관련자가 최종 출석한 일자는 2015. 11. 9. 이후로 보인다. 하지만 소청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가 다 끝난 이후 향응 수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횟수를 1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차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청인은 실업수당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실업수당 부정수급 의심자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향응을 요구하는 등 소청인의 직무 및 행위의 양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능동적인 경우에는 '정직'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2015. 9. 4.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6 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해임→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에 있던 조직폭력배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여 술값과 성 접대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도합 19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동료 경찰관이 정보를 얻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점, 소청인이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성매매 혐의는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허위진술에 기한 것이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공여자가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를 요구하였거나 소청인이 이를 승낙한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 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27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276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4. 1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 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향응 수수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대 근무 당시인 2015. 5. 15. 20:00경 ○○시 ○○동 소재 '○○ 유흥주점' ○○호실에서 경위 B가 관련자 C(4○세, 남)으로부터 당시 수사 중에 있던 조직폭력배 D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여 술값과 2차 비용(성 접대)을 지불하게 하는 등 도합 19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품위 손상

소청인은 이건 관련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위 ○○ 유흥주점 불법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여종업원인 E, F 등 참고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지목을 받고 수사팀에서 배제, 관련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2(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제2항,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에 대한 성매매 부분에 대한 불기소의견 송치와는 별개로 향응을 받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및 장부의 기재사항으로 볼 때 소청인이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의 정상참작 여지가 없으며, 같은 규칙 제9조(상훈 감경)의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경찰의 잔존 부조리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도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50,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 지역의 범죄첩보 수집 등 외근활동 중 ○○파 조직폭력배 G 발견하고 B 경위에게 '○○파 G 요즘 뭐하나요'

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B 경위가 ○○에 있다면 ○○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주점에 도착하여 보니 평소 선입견이 좋지 않았던 C 기자가 같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잠시 밖에 나가는 척을 하고 나오게 되었다.

위와 같이 주점에서 나온 후 혹여 C 기자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C에게 전화를 하여 '일이 있어서 먼저 나오게 되었다'고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술값을 누가 계산하였는지 2차 성매매를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청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후 ○○ 주점 근처에 있는 '○○'라는 상호의 바(카페)에 들어가 5만원 상당의 맥주를 마시고 23:0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통화를 한 후 B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로 C를 만났느냐,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소청인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

2) 향응 수수 사실 부인

가) 소청인은 당시 B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른 상태에서 ○○ 주점에 가게 된 것이고, B가 C를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도 몰랐으며, C로부터 조직폭력배 D사건에 대해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며, B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C를 만난 것인데 이후 C가 단순히 D가 자신의 친구라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탁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소청인이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자신의 술값을 낼 터인데,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C 기자가 당시 술값과 성매수 비용으로 195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돈을 세어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히 D는 2015. 5. 말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5만 원 향응을 수수하고 D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또 구속이 되었다면 향응을 제공한 C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며, 소청인은 이건 관련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특히 소청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아가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반하는 ○○ 주점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장부의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청인에 제출하는 ○○ 빠의 장부는 그곳 사장의 직접 작성한 장부로 이를 조작하거나 끼워 넣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 원본은 그대로 보관 중이며, 다른 날짜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이는 소청인이 제출하는 ○○ 빠 업주 J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B와 말을 맞추고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나,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이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알려 주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게 되었고, 그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가끔 가는 ○○주점 근처 ○○ 빠 업주에게 당일 행적을 물어보아 겨우 환기할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으며, 만약 B와 말을 맞추고자 하였다면, 소청인도 B와 같이 당시 B가 맥주 5병 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할 터인데,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청인이 제출하는 C의 확인서 기재를 보면,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 주점에 왔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소청인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품위 손상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성매매 부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언론 보도 등으로 품위가 손상된 부분은 ○○ 주점 여종업원들의 허위 진술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소청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약 ○○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청장 표창 등 17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 2008년경 ○○암에 걸려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에도 1년에 2번 정도는 추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당시 소청인을 병간호하던 소청인의 처 역시 ○○ 암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초교 6년생인 아들과 초교 4년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이 1억 6,000만원이나 남아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일부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음해성 진술에 의한 것으로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청인 주장

소청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성매매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 B 경위 등 관계

소청인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지방경찰청 ○○과 ○○수사대 ○○팀에 근무하면서 주로 강력사건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B는 경위 직급으로서 2014. 7. 16. 부터 2015. 12. 11.까지 같은 ○○수사대 ○○팀에서 근무를 하였다. 소청인과 B는 2003년경 ○○대에 같이 소속되어 그때부터 서로 알게 되었으며, 특히 2011년경 B가 ○○경찰서 ○○팀에 근무할 당시 이른바 ○○ 사건에서 관련 조직폭력배를 구속시키는 등의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경위를 특진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서 근무 중으로서 ○○과장의 명을 받아 B가 속한 ○○팀에 합류하여 B와 함께 위 사건을 수사하였고, 2012년경 B가 ○○경찰서 ○○팀에 근무할 당시 이른바 ○○ 사건 수사에 당시 같은 서 ○○팀에 근무 중이었던 소청인이 영장 서류 작성 등 도와주는 등 B와 직무상 접촉할 기회가 다수 있었다.

한편 C 기자는 지역일간지인 ○○일보의 대표이자 기자로서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소청인은 C 기자가 당시 지역 조직폭력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B가 수사 중이었던 조직폭력배 D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에서 C와 단순히 기자로서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비위 당시 경위에 대한 소청인 등 진술

(1) 소청인은 2015. 5. 15. 20:00경 B와 C가 같이 있던 ○○시 ○○동 소재 '○○'상호의 유흥주점 ○○호실(이하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당시 B와 SNS 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중 B가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B는 이 사건 감찰에서 C로부터 자신이 수사 중인 D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C에게 연락하였고, C를 ○○에서 만나 C가 안내하는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소청인이 위 주점에 온 사실을 인정하나, 소청인이 어떤 경위로 오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같은 날 20:11경 52초간, 20:14경 20초간 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에 대해 이 사건 감찰 등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말도 없이 먼저 나오게 되어 C가 오해를 할 수 있어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등에서 위 유흥주점에 가긴 하였으나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곳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중 조사결과보고서 기재를 보면 이건 관련 형사 수사 절차에서는 약 30~40분 정도 주점 방에서 있다가 B와 C가 옥신각신하다가 B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주점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이 사건 감찰에서 위 주점에 들어 가 여성접대부 2명을 부른 후 주점 마담이 양주 1병과 맥주 5병을 가져왔으나, 맥주만 마시겠다고 한 후 맥주를 마셨고, 이후 방에 있던 아가씨들을 나가라고 하여 나간 후 D에 관련하여 C와 대화를 하였으나, C가 자신의 친구인 D를 두둔하자, 룸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오면서 웨이터에게 맥주 값이나 받으라고 하며 5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리를 뜰 당시 소청인은 그 방에 없었다고 하였다.

(3) 소청인은 위와 같이 위 주점에서 나온 후 약 30m 거리에 있는 '○○'라는 상호의 바(Bar)에 들어가, 그곳에서 맥주 10병 등 술값 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감찰이나, 관련 형사 절차에서 위 ○○의 장부를 제출하였다. 위 장부 기재를 보면 2015. 5. 15. 자 매출 현황에 대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장부 말미 'PS ○○ 50,000 TIP'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이를 두고 여기서 '○○'는 경찰인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23:21경, 23:32경에 각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39경 B에게 전화통화를 하였다. B와 통화 경위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왜 그런 사람을 그런데서 만나냐'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23:47경 재차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였고,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으로 ○○으로 이동하여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점 종업원들의 진술 등

(1) 이 사건 주점의 여종업원 E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통상 여종업원이 이 사건 주점 룸에 들어가면 테이블 TC로 7만원, 2차(성매매)를 나가면 20만원을 받고, 영업주의 지시에 따라 각 여종업원들은

자신이 일한 내용 등을 퇴근 후나 그 다음날 장부에 기재하였으며, 만약 손님과 2차를 나가게 되면 손님 연락처를 받지 못하면 업주에게 벌금 1만원을 내야한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에 대해 '같은 여종업원인 H(가명 수○), F(가명 지○)와 함께 ○○호실에 들어갔으며, 자신은 곱슬머리 경찰관의 파트너가 되고, 맞은편 소청인과 H가 같이 앉았으며, 상석에는 C(방송국 회장님 이라 칭함)와 F가 파트너가 되었으며, 양주 3병을 마셨고, 손님 모두 2차를 나가 이 사건 주점 옆 ○○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은 곱슬머리 경찰관과 성관계를 하기 전,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아 이를 기록한 후 다음 날 장부에 '5. 15. (○○호) A 3:3 지○, 수○, 경찰T, ○○이 ○○-○○-○○'으로 기재하였다. 이 같은 장부를 감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였는데, 위 적시된 휴대전화번호는 B의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주점 여종업원 F 역시 위 E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술값, 장부 기재 방식, 성매매 여부 등에 진술하였는바, 특히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자신에게 '오랜만이네, 더 이뻐졌다'고 말을 하였고, 소청인이 목이 쉰 목소리로 말을 하자, '오빠 그때도 목이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요'라고 하자 소청인이 목을 가리키며 '목이 안 좋아'라고 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당시 양주 4병 정도를 마신 후 B와 E가 먼저 2차를 갔고, C가 당시 주점 실장 I에게 세명의 술값과 2차비 총 195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였고, 이후 소청인과 H, 자신과 C 순으로 옆 ○○ 모텔로 2차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F는 위 2차를 마친 후 자신의 장부에 '5. 15. 270,000(○○) 3:3 수○, 초○, 방송국 회장, ○○ 팀장'이라고 기재를 하였고, 동 장부를 이 사건 감찰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적발 및 소청인에 대한 형사 처분 경위 등

이 사건 주점의 영업주가 여종업원(I 실장)을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하던 중 동 주점 영업 장부에 기록된 성매매 리스트에 경찰 2명, ○○시청 2명, ○○청 1명 등 7명의 공무원 등 총 51명의 남성이 입건된 사건을 기화로, ○○지방경찰청은 2015. 12. 31. 소청인, B에 대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바, ○○지방경찰청은 2016. 3. 16. 소청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해 8. 31. 소청인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 이유는 소청인의 성매매 당사자로 지목된 H가 소청인의 얼굴, 성매매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성매매 사실이 장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선뜻 믿기 어렵고, 현장 부재하였다는 알리바이 주장 또한 이를 근거할 증거가 부족하다. 반면 이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이에 부합된 관련 장부 등 객관적 증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같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술값 등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소청인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점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이 건 관련 형사 절차에서는 B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B가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이에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는 당시 B와 통화기록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에서는 B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재차 진술을 번복하여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청에 이르러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을 제출한바 없고, 오히려 B는 이 사건 감찰 조사 당시 소청인에게 유흥주점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이는 소청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나) 소청인은 이건 관련 형사 수사 절차에서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가 약 30~40분 정도 있다가 B가 C와 말다툼 후 먼저 나가게 되어 이를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건 징계위원회 당시에는 위 주점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여 이 또한 진술이 번복되었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감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올 당시 룸 안에는 소청인이 현재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어, 소청인이 B가 나간 후 자신도 방에서 나왔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도 역시 배치된다.

(2) 진술의 구체성 부족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 유흥주점 ○○호에 B, C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가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현장에서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없다. 즉 앞서 본 바대로 어떻게 하여 위 주점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며, 당시 주문한 술의 종류 및 양, 여성접대부가 동석하였는지 여부, 소청인 및 B 등의 자리 배치, 주점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주점에 현재 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찾을 수가 없다. 소청인이 이 사건 향응 수수를 부인한다면 자신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급히 자리를 떠난 경위는 이 사건 비위 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일진데, 그럼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 결여

(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20:11경 52초간, 20:14경 20초간 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 주점에서 말도 없이 먼저 나오게 되어 C가 오해를 할 수 있어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당시 B가 먼저 룸에서 나가, 자신도 나가게 되었다는 이 사건 초기 진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청인이 자리에서 먼저 나가게 되어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하여도 B에게 전화하지 아니하고 소청인의 진술과 같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까지 한 C에게 전화를 한 것이 의아하고, 20:11경 52초간 C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충분히 자신이 자리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렸을 터인데도, 20:14경에 재차 C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가, 소청에 이르러야 전화가 끊어져 재차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C와 2번에 걸쳐 통화한 경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청인, B 등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간 시간이 20:00

부터 21:00경 사이라고 본다면, 소청인이 C를 주점에서 만나기 전 통화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나)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부재하였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와 그 근처에 있는 '○○' 상호의 주점(바)에 가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 주점의 2015. 5. 15.자 매출 내역 장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제출 내역 장부 기재를 살펴보면 이날의 매출 일련의 현황에 대해 테이블, 손님 명, 술 종류 및 주문량, 주문한 안주 종류, 결재 비용 및 방식(현금 또는 카드) 순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유독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 부분은 단순히 'PS ○○ 50,000원 TIP'이라고만 적혀 있어, 다른 매출 기재 방식과 다르게 술 종료 및 주문량, 안주, 결제 방식에 대해 알 수가 없고, 위 문구로 보았을 때 해당 업소의 '○○'라는 호칭의 종업원이 어떤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은 상황을 말미에 부가하여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여지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소청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명확하게 하여 준다고 볼 수 없는바, 특히 소청인이 이날 술값 비용 5만 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없고, 이에 부합될 만한 카드명세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 또한 제출된바 없는 점을 아울러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다) B는 이 사건 감찰 등에서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왜 주점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당시 상황, 경위, C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즉 유독 소청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선명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 같은 B의 전반적 진술이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와 무관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점 여종업원들의 진술의 신빙성 등

(1) 진술의 경위

이 사건 주점 여종업원들인 E, F는 앞서 살핀 이 사건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 중 해당 주점의 영업 장부가 발견됨에 따라 그 장부에 적시된 자들에 대한 성매매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이건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추후 이 사건 감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E나 F에게 이건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모면하거나 그 밖에 진술로 얻게 되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자신들이 기록한 장부 등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기한 추궁 및 조사가 이루어지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할 수 있다.

(2)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E, F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시, 장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 대화 내용, 소청인 등에 대한 직업, 신체적 특징, 비용 결제 상황 등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같은 E, F의 진술은 이건 관련 형사 절차에서나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도 그 일관성이 유지되어 모순된 점이 없었다. 특히나 F는 소청인을 이 사건 당시 재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소청인의 목소리 특징 등에 대해 소상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영업 장부의 신빙성 등

E, F가 각 제출한 이 사건 장부는 상업장부 문서로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 상황, 결제 내역 등을 기록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 현황 등을 기재한 내역까지 아울러 보고, 특히 이 사건 내역을 E나 F가 위조, 변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다른 내역에 비추어 특이할만한 사정 또한 없는바,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1) 징계 해임 처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치명적인 이 건 해임 처분은 소청인이 저지른 비행의 내용과 정도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감하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소청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술값 등 향응 65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또이를 기대하는 국민적 신뢰에 해악을 끼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향응 공여

자인 C 기자는 B 경위가 수사하는 사건의 청탁을 하고자 이 사건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B 경위와의 고도의 직무관련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별론, 소청인과의 C 기자와의 직무관련의 정도는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고, 공여자가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를 요구하였다거나 소청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이른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나항은 소청인이 불법 성매매자로 지목되어 관련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으로서 비록 소청인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직접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건 징계의결 당시에도 소청인은 불법 성매매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불기소 송치되었고, 이건 징계의결 이후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소청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에 대한 여사인 소청인이 성매매자로 지목된 사실을 징계의결요구사유로 기재함으로서 의결 당시 소청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심어주게 되어 이 같은 사정이 소청인에게 유해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언론보도된 부분 역시 사후에 종국적으로 성매매 사실이 없음으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점이 언론이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지운다면 이는 결과책임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 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4조를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에,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은 능동일 경우 '정직', 수동일 경우 '감봉'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6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비위에 기한 이건 해임 처분은 피소청인이 정하고 있는 위 징계 양정기준에도 벗어나 있다.

소청인은 2000. 4. 1.경부터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이 사건 처분 이외에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합계 17회 표창을 수여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50,000원) 부과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수수 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소청인은 이건 관련 형사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7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비용 및 금품수수(해임→기각)

처분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2,236,208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고,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할 피자비용 346,88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선물과 식사비용 등 총 546,88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최초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및 확인서와 구체적인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점, 관련자가 선의로 간식을 제공하여 고생하는 직원들과 나누어 먹은 것을 금품 수수로 보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31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 ○○센터에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접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항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강령 제14조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 (주)○○, (주)○○, (주)○○, (주)○○은 ○○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들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고, ○○공사는 ○○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이들 업체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이들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수수

소청인은 2015. ○. ○○.(일) ○○도 ○○군에 있는 ○○ CC에서 (주)○○ D, (주)○○ E, 업체미상 F과 골프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당일 골프비용 137,000원(당일 그린피, 카트비, 식사비용 포함한 금액은

1,028,000원)을 제공받는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2015. 6. 7. ~ 10. 31. 까지 총 13회에 걸쳐 2,236,208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주)○○ 소속 직원이 2015. ○. ○. ○○관 소속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자, 소청인은 같은 부서 직원에게 주변 피자판매점을 알아보고 주문할 것을 지시하고, 피자판매점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주)○○ 소속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주)○○에서 피자비용 346,880원을 지불하도록 하였고,

2015. ○. ○. (주)○○ 대표자 G가 보낸 3만원 상당의 선물을, 같은 해 ○. ○. (주)○○ 대표자 I, (주)○○ 대표자 E, (주)○○ 대표자 H로부터 각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로 받는 방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2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며,

2015. ○. ○. (주)○○ 대표자 J 및 K와 ○○시 ○○구 소재 ○○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120,000원을 위 J가 지불하도록 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식사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해 ○. ○. ○○공사 직원 4명 및 (주)○○ L과 함께 ○○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240,000원을 ○○공사 직원이 지불하도록 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식사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546,88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근무지 무단이탈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 ○○.(화) ○○에서 개최 된 ○○원 주관 '○○구축사업 중간 점검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결재를 받고 같은 날 06:30~11:00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 ○○시 소재 ○○에서 직무관련자인 (주)○○ E 등과 골프를 하고, 같은 날 14:00경 이후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소청인과 업무관련자와의 관계

소청인은 1997년 당시 ○○부 ○○원에 파견 나왔을 당시 ○○사원이었던 E를 처음 알게 되어 이후 '○○센터'를 구축하며 10년 이상 함께 일해 온 사이였고, Q도 ○○의 ○○정보관련 유지·보수 업무 담당직원으로 소청인과 2006년부터 함께 일을 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위 E와 Q는 2012년 경 ○○전산이 파산하면서 (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20○년 경 ○○부에서 구축한 ○○시스템과 ○○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통신의 ○○업무 팀장이었던 G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D는 G가 운영하는 (주)○○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7년 경부터 소청인과 친분을 쌓아 온 사이로,

소청인과 E, Q, G, D와의 관계는 단순한 공무원과 외주업체 직원 이상의 것이었으며, 그러던 중 소청인이 건강관리를 위해 골프를 시작하였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위 E, G가 자신들의 모임에 빈 자리가 있으면 소청인과 함께 하기를 권하였고, 소청인은 위 E 등이 업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행위 또한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에 반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간의 친분관계로 함께 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2) 골프 향응 등 금품수수액의 과다산정 관련

소청인은 2015. ○. ○. 감사담당관실 주무관이 "○○실에서 'A사무관이 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에서 고스톱을 친다'는 민원이 있어 조사의뢰가 왔다"하여 소청인은 당당하게 핸드폰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에 동의를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핸드폰에 담겨 져 있던 2년여 동안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에서 업무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골프 가자' 등의 문자메시지가 확인된 것으로,

소청인은 2015. 11. 2. 비위사실이 우연히 알려진 후 2015. 11. 11. ○○부 감사관실에서 사건 관련 문답을 진행하였고, 2015. 11. 13. 골프 향응 및 금품수수 액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리라고 전혀 예상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골프 향응 등 수수내역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의 기억을 더듬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용 등을 확인한 결과 소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와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소명하였으나 최초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소청인의 문답서·확인서상의 금액만이 인정되었다.

또한, (주)○○ 직원이 2015. ○. ○. 소청인에게 "간식으로 피자를 시켜먹으려고 하는데, 사업단 인력들만 간식을 먹으면 함께 일하고 있는 ○○관 소속 직원들에게 미안할 것 같으니, 피자를 주문하여 ○○관 전체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으면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소청인이 먼저 (주)○○ 직원에게 피자 주문을 요구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주)○○ 직원이 선의로 간식을 제공하여 고생하는 직원들과 나누어 먹은 것을 소청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설사 금품수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자는 소청인 개인이 아닌 ○○관 직원 전체(1단 5과 45명, 파견 5명)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청인의 금품수수액은 수정되어야 하며,

소청인이 2015. ○. ○. (주)○○ J, K와 ○○ ○○구 소재 ○○식당에서 식사한 비용에 대해서 최초 12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위 J 등에 확인한 결과 87,000원으로 확인되어 이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액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

3) 징계양정 과다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이'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2]에 따라 '해임'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골프 향응과 관련하여 당시 사무관 신분이었던 소청인은 사업자, 감리기관 및 검사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특혜를 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 (주)○○ 등은 소청인이 ○○센터 근무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부터 ○○센터의 용역을 수행하였던 점, (주)○○, (주)○○ 관련자들과 함께 골프를 하게 된 것은 순수한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소청인이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들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 등을 수수한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청인은 2015. 9. 중순 경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만원 상당의 선물을 4회에 걸쳐 택배로 받았으나 추석에 즈음하여 이를 크게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반송하지 않았던 점, ○○시 소재 ○○공사 실장 R은 소청인의 고향 선배이자 대학원 선배로 2015. 10. ○○로 출장을 간 소청인에게 단순히 사적인 친분관계로 저녁을 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2015. ○. ○. 근무지 이탈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상관인 ○○센터장 S는 출장 전날 소청인에게 "아침에 ○○청사로 출근하면 바로 다시 ○○로 가야 하니, ○○ 자택에서 곧장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당일 오전 시간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관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약 13:00에 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14:00에 시작한 관련 회의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회의 전날은 물론 당일도 약 23:00까지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선정 외 4차례의 장관급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은 과도한 공무수행으로 건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의 처를 비롯한 큰 아들도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점, 현재 주택자금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이 건강 문제로 골프를 시작한 후 이러한 비위 사실이 발생하였지만 이전에는 업체로부터의 아무런 금품·향응수수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징계사유 관련

가) 직무관련성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과 골프 향응 공여자들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향응수수에 직무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청인의 경우 ① 비위 당시 ○○부 ○○센터에서 근무하며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공간정보 이용·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정책 및 활용화 방안 등의 업무 총괄자의 지위에

있었다.

② 소청인의 골프비용을 대납한 업체들은 ○○센터에서 발주한 다수의 용역사업들을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이었으며, ○○공사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며 ○○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③ 소청인은 2015. ○. ○. (주)○○ D와 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

④ 소청인은 총 13회에 걸쳐 용역업체 관련자들과 골프를 하였고 실제 소요된 경비 대부분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였다.

⑤ 그 외 징계사유 중 금품 등 수수사실에 해당하는 선물 또는 식사 등의 형태로 제공된 금품 내지 향응수수 사실 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착 관계에서 기인한 향응수수 비리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나) 수수액 확정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이 제출한 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2015. 10. 31. 및 2015. 8. 5. 골프 향응수수액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2015. 8. 16. 골프 향응수수액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다른 건에 대하여 캐디피를 지불하였다는 주장이 모두 인정된 점, 2015. 8. 16. 소청인과 함께 골프를 한 관련자 Q가 소청인으로부터 캐디피 12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 또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 ○. ○. (주)○○에서 ○○센터 직원 및 ○○정책관에서 제공한 피자 대금 346,880원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도하여 별도의

접대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원들로 하여금 (주)○○로부터 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고, (주)○○ 입장에서 소청인은 물론 ○○센터 직원 및 ○○정책관 소속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을 포함한 ○○정책관 직원 모두가 346,880원에 상당하는 피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수수액은 6,937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2015. 9. 7. (주)○○J 등으로부터의 향응접대 금액이 (주)○○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87,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수수액은 29,000원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골프 향응수수 액수는 1,860,583원으로, 그 외 금품 등 수수액수는 195,937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근무지 이탈 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제1항에서는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2015. 10. 13. ○○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했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라 볼 수 있는 09:00 ~ 18:00 동안 공무 수행에 정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던 점, ② 소청인은 06:30 ~ 11:00까지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출장 공무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③ 소청인은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 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6. 청렴 의무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적으로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해임'을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어, 소청인의 금품 등 수수액이 다소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소청인의 경우 '직장 이탈금지 위반'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해당될 뿐 아니라 짧은 기간에 비하여 골프접대 횟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8 단속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처분요지

사건 관련자로부터 오락실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300만원을 수수하고, 단속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중징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인 점, 다수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징계처분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형사재판에서 벌금 600만원 및 추징 300만원이 선고되고, 공직에서 배제되어 징계의 실효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 결정

사　　건 : 2016-48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49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12. 2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금품수수

1) 2015. 4. 초순경 ○○구 ○○동 소재 ○○오락실에서 오락실 불법 환전 관련 수사를 위해 그곳에서 게임을 하며 잠복하고 있던 중, 환전상을 발견하고도 놓치게 되자 오락실 업주 B를 불러 조사를 하다가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게임랜드 오락실 운영자 C로부터 '얼마 전에도 ○○오락실에 단속을 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오락실 사장을 잘 알고 있고, A형사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환전상도 잡히지 않았는데 좀 봐 달라.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C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17.경 ○○구 ○○동 소재 소청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정공 내 ○○정공 사무실에서 위 소청인 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에게 '○○정공으로 오라.'고 말한 후, ○○정공으로 온 C로부터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단속 정보 등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8. 3.경 ○○구 ○○동 소재 ○○에서 C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경비에 쓰십시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5.10.경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위 C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경비에 쓰십시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총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 부정처사

1) 2015.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 단속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오락실에 단속이 있을 예정이니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오락실의 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 2015. 6. 중순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 단속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가 운영하는 ○○오락실에 대한 신고 여부 및 단속 계획을 파악하고 있던 중, C에게 전화하여 '오늘 ○○오락실에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단속을 갈 예정인데, 내가 오락실로 들어갈 테니 아는 척을 하면서 내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오락실에 마치 단속을 하는 것처럼 들어간 후 함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이 들통 난 것처럼 말하였다.

3) 2015. 9.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 있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C가 ○○오락실에 있다고 말하자, 잠시 후 위 ○○오락실로 C를 찾아가 C에게 '오늘 D반장이 이쪽으로 단속 나올 예정이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오락실에 단속 계획을 알려주었다.

4) 2015. 9.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소속 D반장이 ○○오락실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계획을 알려 주었다.

5) 2015. 10. 12.경 C로부터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락실에 관한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중 C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오락실에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단속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C로부터 뇌물을 제공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범인도피

2015. 8. 10. 15:10경 소청인과 ○○경찰서 ○○계 소속 경장 E는 ○○구 소재 원룸 앞에서 예약한 성 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을 안내해 주는 F를 적발하고,

소청인은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중 공동 업주 G가 나타나자 G와 F로부터 "우리는 ○○ 공무원인데 한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G와 F가 공동 업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G와 F에게 "둘이 갈 것이 뭐가 있냐, 두 명 중 한 사람이 가자, 한 명이 총대를 메라, 누가 총대를 멜 것인지 상의를 하고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G와 F가 상의를 하여 F가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소청인은 G에게 “당신은 여기에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니까 빨리 사라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단속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F에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직업을 무직으로 이야기 하면 되고, 처음부터 니가 혼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같은 날 17:00경 G를 제외하고 F 및 현장에서 적발된 ○○ 여성 2명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시키고, 같은 날 20:19경 ○○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적발보고서 대상자란에 G를 제외하고 F, ○○ 여성 2명만을 기재하였다.

라.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 위반

상기 불법게임장 출입 및 업주(B, C)를 만나거나 전화하였으나, 풍속 업무관리시스템 상 사전사후신고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129조(수뢰),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제151조(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오락실 업자로부터 4회에 걸쳐 300만원을 금품을 수수한 행위, 오락실 업주와 통화하고 단속을 하러 간다고 알려준 점 등으로 보아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도박성을 유발하는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은 어떤 이유로든 용인할 수 없는 행동

으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 및 징계 부가금 1배 부과(3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소청인은 금품수수 금액을 300만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이 불법 환전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오락실에서 게임한 금액 60만원을 제하면 소청인이 실제 수수한 금액은 240만원이다.

나. 원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의 금품수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아직 재판 계류 중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도 있으나, 타 기관의 경우 소청인과 같은 경우 해임 이하의 징계나 기관장의 계고나 경고 또는 형사처분 외에 징계벌은 불문에 붙이는 사례도 있는데, 소청인이 처한 어려운 사정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재판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너무나 과중한 신분 박탈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너무 과중한 처분이다.

다. 기타 제반사정

소청인은 경찰에 투신하여 ○○년을 재직하여 오면서 이 사건 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남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파출소와 방범순찰대에 장기간 근무하며 중요범인 검거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그 공로로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는 팔순의 노환중인 아버지와 학업중인 자녀 2명(중 1, 초 5) 등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3,800만원 부채와 월세에 살고 있는 어려운 형편과 가진 기술과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연금 1억원 가량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가족을 부양할 생계대책이 막막한 점, 이 사건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남용 내지는 너무 가혹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2015. 12. 9. 소청인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5. 12. 15. 소청인을 체포한 후, 2015. 12. 18.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범인도피 혐의로 공소 제기를 하였다.

피소청인은 2015. 12. 21. 소청인에 대하여 제2회 감찰조사를 한 후, 2015. 12. 22.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2015. 12. 28.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6. 6. 10. 소청인에 대하여 수뢰후 부정처사,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 벌금 600만원 및 추징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항소한 소청인은 2016. 6. 17.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같은 날 소청인의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유죄 확정 전 징계처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2. 9. 14. 선고82누46),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제 수수금액이 240만원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C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불법오락실 단속을 위해 소청인의 사비로 게임한 60만원을 제하면 실제 수수한 금액은 240만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 판결서에 의하면,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수사비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수사 대상자인 게임장 업주에게 이를 직접 회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C는 소청인에게 게임기에 투입된 돈의 반환과 단속 무마를 위한 대가를 엄격히 구분하여 100만원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C로부터 교부받은 3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는바,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고,

비록 징계처분 당시 소청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수수금액에서 소청인의 사비로 게임한 60만원을 제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요범인 검거 등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한 공적, 향후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 경찰관의 고유 직무를 저버린 채 불법 게임장 업주인 C로부터 금품을 수차례 수수하고, 나아가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소청인의 고유의 직무인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심히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비위사실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벌금 600만원 및 추징 300만원 선고가 확정되었는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소청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적정을 재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고,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처분이 공무원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파면'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의거 국가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재산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더라도 부당하지는 않겠으나,

징계부가금 부과제도의 도입취지가 직무 고발되지 아니한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에 의해 신설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의 비위사실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벌금 600만원 및 추징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공직에서는 배제되어 징계의 실효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취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9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향응 제공
(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 공무원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술값과 숙박비 등 약 66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비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소청이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에 참여하였고, 승진 인사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던 점,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도 아니하여 비상시 즉시 소집에 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구체적인 인사 청탁 내지 부정한 처사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응 수수자의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49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2016-499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7. 1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세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다.

가. 향응 공여

소청인은 2016. ○. 14.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시 ○○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인 ○○청 B, ○○청 C와 함께한 술자리의 술값과 B, C의 숙박비 등 3명이 공동 부담해야할 총 100만 원을 소청인이 부담으로써 약 66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나. 지시명령 위반

소청인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 1. 6.)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특별지시 및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6. 1.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B, C와 함께 여성접대부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공여한 향응 660,000원 상당은 제78조의 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사에게 술값, 숙박비 등 향응(660,000원)을 제공하고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상사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66만 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1) 향응 공여 부분(직무관련성 부인)

가) 공여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세관 ○○국 직원을 대상으로 '○○ 업무설명회'가 있었던 날로서 당시 이에 참여한 ○○세관 ○○국 소속 과장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선약이 되어 있었으나, D과장이 B를 ○○역에서 모시고 저녁식사 자리로 와, 저녁을 함께 해달라는 부탁으로 이 사건 술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즉 우발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에

참여한 것이지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차 저녁 만찬이 끝난 후 B와 C를 미리 예약된 ○○행 기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통해 ○○역으로 모시고 가던 중 B가 지인과 통화를 한 후 ○○구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소청인으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로 이동하면서 D과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 인근 2차 술자리에서 B, C와 술을 마신 후 C가 술값을 결제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술값이 110만 원 가량 된다는 것은 이 사건 감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2차 술자리를 마친 무렵, B 혹은 C가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잘 아는데 가 있느냐'고 물어본바, 소청인은 아는 술집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전화를 하여 알아보아 예약을 부탁하였고, 이에 ○○동 소재 유흥 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B나 C가 모두 술에 많이 취하여 계산하기 곤란한 상태였고, 두 분에게 계산을 하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2차 술값을 C가 계산한 것도 있고 하여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던 소청인이 3차 술자리 100만원을 계산하게 된 것이다.

나) 직무관련성 부인

이 사건 당시에는 ○○청 승진 일정이나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금년 승진은 2016. 3. 7. 내부 게시판에 갑자기 공고되어 진행 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B나 C와 승진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대화가 오고간 것이 없다.

앞서 본 경위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술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2차, 3차 술자리 역시 B와 C를 ○○역까지 안내하여 주다가 우연히 참석하게 된 것이며, 3차 술자리 술값도 위 두 분이 너무 취하여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공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지시명령 위반에 관하여

소청인은 B, C가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도 각 이동 과정에서 D과장에게 문자로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는 등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도 아니하여 비상시 즉시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과 조직의 상사인 B, C 등이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년간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등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110일간의 직위해제, 서기관 승진 누락 등으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승진 인사 계획 이전이었고, 일체의 승진과 관련된 청탁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15. ○. 1.부터 ○○세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 단속 및 조사 등의 업무 총괄하였고, C는 2015. ○. 경부터 ○○청 ○○관실 ○○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청의 총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소청인은 2016. ○. 7.에 시행된 ○○청 승진 심사 계획에서 승진후보 대상자 명부 ○○위에 등재되어 있었다. C는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소청인에 대해 본청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는 있었으나, 특별한 친분 관계는 없었고, 특히 ○○관으로 인사담당 국장이므로 승진 배수 범위 내에 있는 대상자는 거의 알고 있었고 특히 소청인이 기존 ○○청 내 승진 서열 명부상 상위권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는 2016. ○. 13. 14:20경 당시 ○○세관본부장 E의 명예퇴직 신청 독려 및 명퇴신청서 수령을 위하여 ○○세관본부로 출장을 갔고, 같은 날 17:30 ○○세관본부 세관장실에서 E로부터 명예퇴직서를 작성하고 희망 명예퇴직일 협의하였다. 소청인은 같은 날 18:00경

○○역에 도착한 전 ○○청 B와 함께 아래 저녁 만찬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에 B, C 소청인은 같은 날 19:10부터 21:30경까지 ○○세관 근처 ○○식당에서 E세관장, D과장, F계장 등 ○○세관 직원 12명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는 등 저녁 만찬을 하였다. 위 저녁 식사비용은 총 56만 원 상당이었는데, ○○세관 업무추진비 카드로 위 비용을 결제하였다.

다) B와 C는 같은 날 22:30경 위 만찬 종료 후 미리 ○○세관 직원이 예약하여 둔 ○○행 KTX(22:20 발)에 탑승하기 위해 ○○세관에서 제공된 차량에 소청인과 같이 탑승하여 ○○역으로 가는 도중에 B가 지인인 G와 통화를 하던 중 G가 ○○ 소재 ○○유흥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B, C, 소청인은 같은 날 22:30부터 00:00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 4명과 함께 술값(65만원) 및 접대부 비용(41만원) 총 11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이하 '2차 술자리'라 한다.) 위 술값 비용은 C가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이튿날인 2016. ○. 14. B로부터 위 술값비용 중 50만원을 돌려받았다.

라) B와 C, 소청인은 위 2차 술자리를 마친 후 소청인이 당시 동료 후배 직원에게 상호와 위치를 물어보아 예약하여 둔 ○○시 ○○동 소재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00:30부터 01:30까지 여성 접대부 3명과 함께 술값 및 접대부 비용 등 1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이하 '3차 술자리'라 한다.) 소청인은 같은 날 01:32경 현금 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위 술값 등 비용 100만 원[술값 및 접대부 비용(90만원 추정), 모텔 숙박비(10만원 추정) 포함]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 B와 C가 함께 위 유흥주점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고, 소청인은 집으로 귀가를 하였는데, B와 C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당시 술에 만취 하여 3차 술자리 장소, 음주량, 여성 접대부 착석 여부 등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인사혁신처는 전 부처 및 소속 공무원에게 2016. 1. 6.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통보를 하였다. 국무총리 특별지시로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들은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을 통보하면서, 전 직원 근무시간외 및 토, 공휴일, 유무선상 대기상태 유지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즉시 응소 가능한 상황 유지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판단

가) 향응 공여 사실의 확정

소청인은 원처분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이 사건 3차 술자리에서 술값 비용 등 총 향응 공여 사실, 그 제공된 액수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이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이 사건 3차 술자리 총 비용 100만 원 중 자기 부담 부분 33만원(100/3명)을 제외한 나머지 66만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직무관련성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 하 공무원간 이루어진 향응 공여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공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조 제2항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을 요하는 제1항에도 저촉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C는 이 사건 당시 ○○청 ○○관실 ○○관으로 근무하였는바, ○○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145호) 제6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에 대하여 차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 등 인사에 대한 사무는 법령상 C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

② C의 ○○청 ○○관이라는 직위, 직책, 조직 내의 위치, 직급, 직무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청 내 소속 공무원의 인사 전반에 대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③ 또한 소청인은 2016. ○. 7.에 시행된 ○○청 승진심사 계획에서 승진후보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바, 비록 그 시점이 이 사건 향응 수수 이후라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 위반을 논함에 있어 사전의 청탁, 금품 등 수수 시기가 문제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나 이 사건 향응 수수는 승진심사가 사실상 임박했다고 보이는 시점에 이루어 진 것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나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에도 기존 승진 서열 명부는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C는 이 사건 당시에도 소청인의 승진 서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추후 ○○청 승진 계획이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소청인과 C 사이에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개의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④ 소청인과 C가 이 사건 이전에 비록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찰에서 C의 진술이나 소청인과 C 사이에 직위,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상호 교분에 기하여 사교적 의례를 할 만큼 친분관계가 두텁게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며, 특히나 소청인과 C의 신분 등에 비추어 100만 원 상당의 술값(이 사건 당시 술값의 총 금원은 200만원)은 단순한 직장 동료 간의 회합 차원에서 이루어질 만한 의례 수준이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소청인은 당시 B나 C가 만취하여 술값을 계산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공여가 불가피하였다거나 그 공여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고의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이 B나 C에게 추후에라도 술값 비용을 돌려받았다거나 다시 정산하였다는 한 사정 역시 기록상 찾을 수가 없는 점을 부가하여 본다면 이점 더욱 그러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징계 '감봉1월'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에게 6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해악을 끼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건 향응 공여의 포괄적 직무관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수수자인 B나 C에게 이와 결부된 구체적인 인사 청탁 내지 부정한 처사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향응 수수가 소청인의 인사 등 청탁을 위하여 계획적 혹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B 주도로 즉흥적으로 술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향응 공여 당시 B나 C가 술에 만취하여 술값 계산을 할 처지가 못 되어 자신이 부득이 결제하였다고 소청인의 변소를 일견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인바, 이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점, 즉 비록 청렴의 의무 위반은 직무관련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하는 행위 역시 금한다 할 것이고, 금품·향응 수수와 그 공여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공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수수 행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스스로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본질로 함에 비해 공여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죄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수수와 공여는 비위의 각 특성에 따라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에 끼친 해악의 정도는 공여 행위에 비추어 수수가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징계 양정을 구별한다면, 이건 대향하여 이루어진 향응 수수자인 C가 받은 감봉1월 처분과 공여자인 소청인이 받은 이와 같은 수준의 징계는 형평을 그르쳐 징계 재량 영역에서 다소 어긋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과중하여 이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의 향응 공여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여 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소청인은 이 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정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이 구하는 감봉1월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0 인사청탁 및 사건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관련자로부터 지인의 인사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400만원, 사건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인사청탁 관련 누구에게도 실제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평소 친분관계상 거절하지 못하고 조언이나 몇 차례 편의를 봐준데 불과하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55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직위해제 된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실 ○○단에 파견 근무할 당시,

① 관련자(○○ 이사장 B)가 고향 후배인 경찰관을 ○○청 ○○대로 옮겨 달라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2014. 7. 16. 100만 원, 2014. 7. 23. 100만 원, 2014. 9. 5.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소청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합계 400만 원을 뇌물 수수하고,

② 관련자가 선거부정 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2014. 5.~6.경 관련자로부터 "아는 경찰관이 있으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11.경 ○○ ○○구 소재 ○○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현금 200만 원, 2015. 1. 10. ○○ ○○군 소재 ○○CC에서 현금 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 수수하였으며,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③ 관련자의 딸이 2015. 5.경 ○○여행 후 귀국하면서 반입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이 세관 통과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자로부터 "○○공항 세관에서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등 그간의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와 향후 ○○ 이사장으로서 ○○을 운영하는 과정에 각종 형사사건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찰 업무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2015. 9. 1. 소청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 2015. 11. 22. ○○군 ○○읍에 있는 ○○CC에서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총 1,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에 해당하고, 관련자로부터 받은 1,3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검찰공소장에 명시되어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중징계(파면) 기준에 해당되며,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공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연금도 감액되며 비록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형이 예상되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징계부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과잉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감면 근거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 표창 1회, ○○부장관 표창 1회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징계부가금 미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와 약 15년 전 ○○지방경찰청장 부속실에 근무할 당시 청장의 지인으로서 인사를 하고 가깝게 지내오는 사이로, ○○ 등지에서 가끔 만나 골프 및 식사와 함께 술도 마시고 관련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렵게 살고 있는 소청인이 귀가할 때 차비를 챙겨주는 등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형님이다.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고향 후배 C 경위가 ○○청 ○○대에 지원했는데 갈 수 있게 살펴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소청인은 ○○청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최근 인사는 공모제로 실시하고 있어 사전에 해당 과·계장에게 얘기한 후 응모하면 갈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준 사실이 있으나 ○○청에 근무하는 누구에게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다만 나중에 지원한 대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징계사유 ① 중 2014. 7. 16. 100만 원은 관련자가 소청인의 모친상에 참석치 못해 미안하다며 조의금으로 입금해주었으며, 2014. 7. 23. 100만 원은 관련자가 전화해서 후배가 원하는 부서로 갔다며 고맙다고 하여 소청인은 도와준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100만 원을 입금해준 것이고, 2014. 9. 5. 200만 원은 관련자가 전화하여 소청인이 경감으로 특진한 것을 축하한다며 회식이나 하라고 준 것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자가 스스로 용돈 하라며 보낸 것이다.

징계사유 ② 관련, 관련자가 전화를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도와줄 수 있냐고 하여 소청인이 선거관련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해준 사실이 있으나 ○○서에 부탁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은 처음 검찰 진술 시 선거 관련해서 돈 받은 사실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중에 대질신문 때 관련자가 주었다고 하여 마지못해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고, 대가성이 전혀 없이 용돈 및 차비조로 관련자가 챙겨준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이다.

징계사유 ③ 관련, 관련자가 전화로 딸의 입국 관련 부탁을 하여 공항세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한번 챙겨봐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세관 직원이 도와줘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입국한 것으로 보여지며, 2015. 9. 1. 100만 원은 세관업무와 상관없이 관련자가 용돈 하라며 입금해주었고, 2015. 11. 22. 300만 원은 ○○까지 가는데 차비 및 용돈으로 하라며 준 것이지 세관 입국이나 각종 형사사건이나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업무 등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다.

소청인은 민원 관련 금품수수나 사건 관련 민원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직접적인 직무에 관하여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관련자를 위해 행한 바가 없으며, 다만 관련자로부터 소소한 부탁을 받게 되어 평소 친분관계상 거절하지 못하고 몇 차례 편의를 봐준데 불과하였고,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자가 먼저 나서서 주는 용돈을 마지못해 받은 것이며, 30여 회에 걸쳐 각종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점,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봉직한 경찰관직에서 물러남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도 삭감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공직에 복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명예만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받은 1,300만 원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은 2016. 6. 21. 본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되는 비위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공소사실, 즉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경찰관 보직 인사, 수사 무마, 세관 통과 등의 청탁 대가 및 향후 경찰업무 등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총 7차례에 걸쳐 공여된 금품 1,3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6. 8. 19. 소청인이 '공무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알선뇌물수수)'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뇌물수수)'하였음을 각각 인정하여 소청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소청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는 바,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자료,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증거에 따라 소청인의 위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으로 징계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의 직무 범위나 관련성 판단은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관련자가 ○○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부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수사대상자였고 소청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경찰관 보직 인사나 선거부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소청인이 ○○년 이상 경찰직에 있었던 간부급 경찰공무원이고 비위 당시에는 ○○실 ○○단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로 경찰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세관 통과관련 부탁을 받고 세관공무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관련자가 특별한 목적 없이 소청인에게 1년 4개월여 남짓한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품을 공여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금원의 대가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더불어 소청인의 본 소청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뇌물성 여부 등에 대한 변소는 이미 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배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경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한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2013. 11.경부터 위 부서에 ○○실 ○○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행사 과정에서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2014. 7.~2015. 11.

까지 다수에 걸쳐 특정인으로부터 1,3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인 점,

법원에서 소청인의 1,300만 원 뇌물수수 비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및 추징금이 각 선고되었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에 비난 보도됨으로써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금품수수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행위의 고의성 여부나 직무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파면' 상당으로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1 승진 축하 명목으로 금품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

직무관련자인 세무사로부터 승진 축하 명목으로 3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소청이유

30만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없는 점, 승진축하 회식에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6-69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696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2. 23. 세무사 B가 당시 소청인의 근무지인 ○○세무서 ○○과로 찾아와 사무관 승진 축하 덕담과 양도소득세 관련 자문을 구한 후 주고 간 3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금품수수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부장관 표창,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전의 정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3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세무서 근무 당시인 2000년 경 동향 선후배 모임에서 관련자 B 세무사를 알게 되었으며 평소 관심을 가져온 재산세 분야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으나 이후에는 가끔 안부를 묻고 몇 년에 한번 꼴로 연락하여 보는 정도였다.

2015. 12. 23. 17시 경 관련자 B가 몇 년 만에 사전 연락도 없이 당시 소청인의 근무처인 ○○세무서 ○○과 사무실로 찾아와 “승진 소식을 듣고도 연락을 못해 들렀다.”며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관련 법령을 묻는 정도의 질문과 근황 등의 대화를 20~30분 정도 하였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B가 저녁식사를 청하였으나 소청인은 ○○팀 송년 회식이 있어 거절하였는데, B가 섭섭해 하며 ”승진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 팀 회식비용에 보태 쓰라“며 5만원권 몇 장을 소청인의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는 거절할 겨를도 없이 사무실에서 나가버렸다.

소청인은 금액이 3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인데다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호의까지 뿌리치면 섭섭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무관으로 승진한 소청인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뜻으로 알고 다음날 돌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일단 위 금액을 합하여 같은 날 송년회 회식비용을 전액 사용하였는데, 다음 날 관련자 B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있던 중 2016년 초여름 경 ○○지방경찰청 특수부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았고, 출두해보니 B가 ○○세무서 ○○과 양도소득세 감면 수뢰 사건 피고인으로 구속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

소청인이 받은 30만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 받은 것으로 대가로 받은 부정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검찰청에서는 공무원 비위사실통보 시 소청인이 ‘향후 진행될 ○○세무서 감사에서 관련자 B로부터 B가 세무대리인인 C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하였는데,

뇌물이란 직무에 관하여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은 당시 ○○세무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세무서 ○○과 소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청인의 관할 지역과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았고 장래 ○○세무서에 발령 받아 영향을 미칠 확률도 지극히 낮은 만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대가관계가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일반적 포괄적이라도 무관한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앞에서와 같이 전혀 소청인의 직무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받은 30만원과 소청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없이 인간적인 교분을 나누는 관계로 사무관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회식비용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수뢰죄 또는 알선수뢰죄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며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자 B 세무사가 준 30만원은 소청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사무관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팀 회식에 보태어 쓰라고 준 것이므로 B가 ○○팀 회식에 참석하여 30만원을 낸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27,273원(30만원/11명 참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형법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에 비해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따른 것이거나, 개인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교분상 필요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무 조항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 한 것이 공무원행동강령과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 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종합하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받을 수 있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1회당 3만원이내를 말한다)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는 그 예시에 해당한다.

본 건으로 소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27,273원에 불과한 소액으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서 허용하는 1회당 3만원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30만원을 모두 회식비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B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60만원)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다음 인사이동 시 지방으로 하향 전보되고 2015. 8. 행정사무관 승진후보자로 내정되었음에도 금품수수 비위로 판단되어 9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년간 국세청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온 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음에도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점, 남은 공직생활동안 엄격한 기준과 청렴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 봉사하면서 명예롭게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을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청인은 2015. 12. 23. ○○세무서 ○○과 ○○팀장 근무 당시 세무사 B가 소청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사무관 승진 축하 덕담과 함께 양도소득세 관련 자문을 구한 후 주고 간 현금 3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자 B는 2015. 12. 23. 당일 자신이 세무대리인으로 있는 납세자 C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취득가액(공사비)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 공사비를 인정받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전에도 관련 사항을 전화로 1~2회 문의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은

2015. 12. 23. 관련자 B에게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5. 12. 23. 관련자 B가 팀 회식비용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갔으며 당일 11명이 참석한 팀 회식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라) 소청인은 2016. 2.경 관련자 B가 보낸 납세자 C의 인적사항을 ○○지방국세청○○실 세무주사보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금품수수 금액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 B 세무사가 갑자기 찾아와 승진 축하인사와 함께 팀 회식비용으로 쓰라며 30만원을 주고 간 것으로 30만원을 11명이 참석한 팀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자신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27,27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관련자 B는 2015. 12. 23. 이전에도 1~2회 전화로 C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팀 회식비용으로 3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언급은 없었고, B가 과거에도 소청인에게 어려운 자문을 하는 경우 교통비조로 30만원 정도의 금전을 2회 정도 준 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문에 대한 대가 또는 인사의 의미로 30만원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청인이 30만원을 실제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회식에 참여한 인원, 사용처 등이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B에게 받은 30만원을 11명이 참여한 팀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소청인 자신이 소청이유에서 사무관

으로 승진이 내정된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뜻으로 B가 30만원을 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B가 금전을 제공한 대상이 ○○세무서 ○○과○○팀이 아닌 소청인 자신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 B가 회식 비용을 대납하는 형태가 아닌 직접 소청인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금전에 대한 처분 재량을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금품수수 금액은 3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회상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된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및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관련자 B가 소청인의 근무지인 ○○세무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자신이 대리하는 납세자 C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1~2회 전화로도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후 소청인이 B가 보낸 납세자 C에 대한 사항을 ○○지방국세청 ○○실 세무주사보 D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 B가 제공한 금전을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여지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 중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중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직접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 점,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나 이전에도 B로부터 금전을 2회 수수하는 등 금품 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견책'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감봉'보다도 가벼운 처분인 점과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 역시 가장 가벼운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범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절차 중 확인서에 상훈 공적 일부가 누락된 하자가 확인되나 취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상훈 공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서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2 세무서 감사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및 전달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각하)

처분요지

세무서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500만 원을 전달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 처분

소청이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

사　　건 : 2016-70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6-705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소청인이 청구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이었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 2.경 동료 공무원인 B로부터 ○○지방국세청에서 실시중인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와 관련하여 담당감사인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급 C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 2. 19. ○○시 ○○동 소재 ○○식당에서 B 및 C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B로부터 '감사가 잘 끝날 수 있게 C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밤,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 중 공영주차장에서 C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여 20○○. 8. 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3자뇌물취득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비록 소청인은 ○○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의 상훈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위사실로써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4배(기초금액 1000만원)' 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소청인은 20○○. 9. 27.에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부가금 고지서를 소청인에게 교부하면서 20○○. 9. 28.자로 소청인을 파면에 처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반면, 소청인은 20○○. 9. 22.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20○○. 9. 26.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해당,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를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때 이미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확정된 만큼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판결 확정 및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9. 22.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1심 선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소청인은 20○○. 9. 26. ○○지방법원에 피고인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에 의하면 소청인의 이 사건 형사재판은 20○○. 9. 26.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소청인이 제출한 법원에서 발급된 형사재판확정일 회신서에 의하면 판결선고 확정일은 20○○. 9. 30.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각 기관에서 판결선고 확정일에 대하여 달리 기재하고 있는 만큼 소청인의 이 사건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부여되는 것으로 비록 소청인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닌 검사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에 따라 항소제기기간은 7일로 보장되며 동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초입불산입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특별히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20○○. 9. 22. 판결 선고가 있은 후 22일을 제외하고 23일부터 7일을 계산하여 20○○. 9. 29.까지 검사의 항소제기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검사가 항소와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 20○○. 9. 30. 0시에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판결 확정일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역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을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검사의 의견서는 명실공히 보석의 허가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밝힌 의견서이고, 다만 거기에 보석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87판결 참조)하고 있다. 즉, 비록 소청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발급받은 문서에는 20○○. 9. 26.이 형사재판 확정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 검사가 법원에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항소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검찰청의 이 사건 담당 검사가 내부적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일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20○○. 9. 30.이고 소청인은 20○○. 9. 30.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확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다. 나아가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 9. 27.에 송달된 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 통지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이 사건 원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검토

소청인이 20○○. 2. 19. B로부터 '감사가 잘 끝날 수 있게 C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날 밤,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C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어 소청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를 받아 20○○. 9. 30.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 9. 22. 선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신설 2015. 12. 29.〉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 제1항관련)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만큼 '파면-해임'의 징계에 해당하고 비록 소청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개전의 정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파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다.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에 대한 전액 감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검토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가 인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고 소청인은 20○○. 10. 18.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후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12. 14. 징계부가금 제도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신청의 취지 또한 벌금 이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종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처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로 공직에서 배제됨은 물론 퇴직급여 등도 감액지급 되고 파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의 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전액 감면하는 의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는 20○○. 12. 20.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및 의결이유서를 발송하였고, 20○○. 12. 22. 10:41에 소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구하고 있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 12. 22. 10:41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및 의결이유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은 원처분을 변경하는 의결이 아닌 새롭게 처분을 명하는 재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처분의 처분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전액감면 의결이 되어 재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소청인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 하면 처분의 효과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어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할 당시에는 소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였으나 청구의 계속 중 이미 징계부가금 전액 감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소청인에게는 더 이상 우리 위원

회에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3 자녀 면접시험 관련 청탁 및 금품 제공 (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아들의 채용결과 확인 등을 관련기관 전직 기관장에게 부탁하고, 관련기관 기관장을 방문하여 4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제공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업무 협의를 위한 기관방문 시 약간의 선물을 제공하는 관례를 따랐던 점, 결과적으로 아들의 최종면접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함

사　　건 : 2016-71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71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12월 경 ○○지방경찰청 ○○과장 근무 당시 소청인의 아들 B가 ○○회사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자, 前 ○○지방청장 C에게 전화하여 “2차 면접이 진행 중인데 잘 되는지, 결과를 미리 알아 봐 달라”며 부탁하였고, 위 C는 ○○지방청장 D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소청인에게 알려 주었으며,

소청인은 2016. 1. 12. ○○청 담당 ○○관 경위 E와 함께 ○○지방청을 방문하여 위 D에게 “아들이 취직하게 되어 고맙다”며 양주(○○, 40만원 상당)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동 법 제72조의 2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199○. 5. ○○부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 시 前 ○○지방청장 C를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호형호제 하면서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여 평소 통화를 하면 자녀에 대한 안부도 서로 물어왔었고,

2015. 12. 위 C와 통화 시에도 C가 소청인의 아들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아, 소청인은 아들이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냈다며, '아들의 최종면접 합격여부를 발표일보다 미리 알게 되면 2016. 1.에 예정된 다른 ○○회사 면접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 측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12월 30일) 이틀 전인 12월 28일 소청인의 아들 휴대폰으로 합격 문자를 발송하여, 소청인은 이를 통하여 아들의 합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청인이 위 C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며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C가 '아는 후배 D(당시 ○○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1차 면접시험 합격만 알려 주어 최종면접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 줄 수 없었다'며 소청인에게 미안하다고 하여, 소청인은 C가 D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위 C를 통하여 아들의 최종면접 결과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

소청인은 2016. 1. 12. ○○ 업무 협의를 위하여 ○○청 담당 ○○관 경위 E와 함께 ○○청을 방문하였고, 당시 D ○○청장실에는 ○○청장 외 업무 담당 직원이 배석하는 등 소청인이 대가성 양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으며, 소청인은 업무 협의 후 기관방문 시 약간의 선물을 제공하는 관례에 따라 미리 준비한 양주를 놓고 온 것일 뿐,

○○청 방문 후 연이어 ○○지방청을 방문하여 ○○지방청장에게는 소청인이 사비로 구입한 ○○ 1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소청인 아들의 취업 대가로 위 D에게 양주를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아들은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던 중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그 꿈이 좌절되었음에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였고, 소청인은 그러한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여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의 최종 면접시험 결과를 알아봐 달라고 C에게 부탁하게 되었으며, ○○회사 인사과장은 2차 면접 시 소청인 아들의 ○○선수였던 경력을 언급하며 이미 합격에 대한 언질을 주었던 점, 소청인은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 표창 등 각급 기관장 표창 37회를 수상한 점, 2016. 4.경○○실 감사관들이 갑작스레 D ○○청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청인이 제공한 양주를 발견 후 아들 취업에 대한 대가성 있는 향응제공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이에 소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소청인이 지휘하는 ○○경찰서가 ○○ 단속 분야에서 ○○경찰청 내 1위를 차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소청인은 2015. 12. 11. 소청인의 아들이 ○○회사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자, 당일 C 前 ○○지방청장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

회사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진행 중인데 잘되고 있는지, 면접시험 결과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C 前 ○○지방청장은 일자불상경 소청인의 요청을 ○○지방청장 D에게 전달했고, 관련 사항은 위 D를 통하여 ○○회사 ○○공장장 F에게 다시 전달되었다.

다) 소청인은 2015. 12. 28. 소청인의 아들로부터 ○○회사 최종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C 前 ○○지방청장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C 前 ○○청장이 D ○○지방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소청인은 D ○○지방청장에게 'C 청장이 D청장께 아들 채용시험 관련 부탁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 줘서 고맙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자 D ○○지방청장은 소청인에게 '아닙니다. 아드님이 충분한 합격요건을 가지고 있어 합격한 것이지, 제가 한 역할은 없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6. 1. 5. E ○○관에게 ○○지방청 및 ○○지방청 방문일정을 잡을 것을 요청하였고, E 정보관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기관 방문을 잡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로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었다.

마) 소청인은 2016. 1. 12. E ○○관과 함께 ○○지방청을 방문하여 D ○○지방청장 등과 '○○' 등 업무 협조 관련 이야기를 한 후 양주 1병(○○, 400,000원 상당)을 전달하였고, 곧장 ○○지방청을 방문하여 ○○지방청장에게 ○○세트(○○, 85,000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바) 소청인은 2016. 3. 17. D ○○지방청장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발령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 ○○지방청장은 당일 소청인

에게 '소청인의 아들이 ○○사 또는 ○○으로 발령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3) 판단

가)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중 1차 면접시험은 2015. 12. 16., 2차 면접시험은 2015. 12. 22.로 당시 소청인의 아들이 1차 면접시험을 5일 앞둔 시점에 굳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의 ○○회사 지원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일반 입장에서 소청인이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당시 소청인의 아들은 서류전형만 합격했을 뿐 아직 1차 면접시험도 보기 전이었음에도 최종 면접시험 결과를 시험 진행 일정보다 먼저 알려 달라는 요청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실질적으로 소청인은 C에게, C는 D에게, D는 다시 F에게 소청인의 요청 사항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회사 채용 시험 지원자 중 ○○지방경찰청 ○○과장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들에게 자연스레 알려졌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소청인 아들이 최종합격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는 실제 동기를 떠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되는 점, ④ 소청인이 아들의 ○○회사 최종합격을 알게 된 시점 및 E ○○관을 통하여 기관방문 일정을 잡고 실제 ○○지방청 등을 방문한 시점, 정보관 E의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지방청을 방문한 사실이 소청인 아들의 ○○회사 합격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일반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⑤ 소청인이 ○○지방청장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준비했다면서도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 또한 소청인의 과실에 해당되는 점, ⑥ 소청인의 인지여부를 떠나 결국 40만원 상당의 양주가 ○○지방청장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사회상규상 기관 방문 시 의례적으로 전달할 만한 수준의 선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소청인은 2016. 3. 17. ○○지방청장에게 아들의 발령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아들의 ○○회사 취업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라. 기타, 2.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라. 기타에 해당하고, 특히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동적으로 수수했을 시에도 '견책' 처분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또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기준한 것으로 본 처분 외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른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 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4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금전차용(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직무관련 업체 대표에게 술을 사도록 문자를 발송하여 노래방에서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85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직무관련자가 아닌 점, 어떠한 대가나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표창을 받으며 열심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83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8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관련자에게 술값 대납을 종용

20○○. 6. 19.(목) ○○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직무관련자 ○○ 대표 B에 '나 술 먹는데 돈이 부족한데 올래'라고 술을 사도록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관련자가 찾아와서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소청인은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나.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차용

20○○. 6. 23.(월) B에게 '○○ 계좌로 85만원 부탁할게 삼개월로 나눠 결제해줄게 부탁해'라는 문자를 보내어 당일 관련자로부터 85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특히 소청인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함은 물론,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응수수의 행위는 감경대상에 비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히 징계처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간 징계

전력 없이 경찰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경찰청장 표창 수상), 최근 우수한 성과(2015년 S등급)를 거두었으며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관련자에게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관련자 또한 소청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 금액 150,000원)'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직무관련성의 부재

먼저 이 사건에 있어 피소청인이 직무관련자라고 판단한 B는 2012년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간혹 만나 식사 등을 하는 사이였고, 주로 연장자인 소청인이 식사비 등을 부담하여 지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B를 직무관련자라고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만큼 위법부당하다.

(2) 징계사유 가항, 술 값 대납 종용의 점

소청인은20○○. 6. 19. 밤 평소처럼 B에게 연락하여 술 한잔 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나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3) 징계사유 나항,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의 점

20○○. 6. 23. B에게 돈(85만원)을 빌려 사용하게 된 경위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어 B에게 부탁한 것이었고, 그 후 소청인은 변제를

위하여 수차례 B에게 연락을 취하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바쁘다면서 바로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알려 주겠다고 미루던 중 소청인도 잊어버린 채 지내오던 것일 뿐, 소청인이 개인적인 지인관계가 아닌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현재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소청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2016. 9. 26.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소청인은 모친의 병간호와 불효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도 ○○협회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원으로 등록하여 독거노인 주거 가구에 방문하여 LED 전등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행동과 처신에 주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소청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그간 징계전력 없이 정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동안 근무하면서 ○○부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십 수차례의 표창을 받으며 열심히 근무하였다. 특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서 항상 노력하며 온갖 잡다한 업무도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마다않고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3년여 전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소청인의 근무태도나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원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향후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을 보았을 때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에 관한 검토

소청인은 이 사건의 증뢰자인 B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스포츠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한 만큼 B가 직무관련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 9.에 있었던 소청인의 감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B와는 20○○. 3. ○○경찰서와 ○○의 전산장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소청인은 ○○계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내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자였고 B는 관련업체의 대표로서 경찰서 내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은 B의 관련 진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 단계에 이르러 B는 2012년부터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재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B가 직무관련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검토

(가) 징계사유 가항

소청인은 20○○. 6. 19. 직무관련자 B로부터 술값 대납의 향응을 받은 징계사유와 관련, 처음 B에게 연락한 것은 술 한 잔 사라는 취지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나 향응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B는 당시 소청인의 문자를 받았을 때 '술을 사라는 의미로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무조건 아쉬운 상황이라 제 입장에서도 도와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만큼 소청인과의 원활한 업무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소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술을 먹고 있는데 돈이 부족한데 올래'라고 하는 문자를 받은 B가 소청인의 술값을 대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가능하다. 나아가 소청인은 평소에도 몇 차례 B와 술자리를 가진 것처럼 변소하고 있으나 실제로 B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20○○. 6. 19.이 유일하였고, 해당 술자리 역시 소청인의 적극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당시 소청인과 B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20○○. 6. 19. B의 술값 대납은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수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징계사유 나항

소청인은 20○○. 6. 23. 직무관련자 B에게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하나, 당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몇 차례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본의 아니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B가 제출한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B는 몇 차례에 걸쳐 소청인에게 금전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비로소 B에게 금원을 변제하여 주었다. 즉 소청인은 B에게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금전을 차용

하였고, 그 이후에도 3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말만 한 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 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제시된 증거와 전혀 상반되는 소청인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르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이고 향응의 과정이 능동인 경우, 그 비위의 유형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정직'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이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능동적으로 발생한 향응수수(100만원 미만) 및 채무미변제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5 세무사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처분요지

직무관련자인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300만 원을 수수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소청이유

업무와 관련 없이 모친의 팔순잔치 축의금으로 받게 된 것인 점, 세무사의 청탁이 있었거나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징계처분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공직에서 배제가 확정되어 징벌의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배로 변경

사　　건 : 2016-87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874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소청인의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6. 12. 9.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8.자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 부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당시 2014. 11. 13. 부하직원인 7급 B가 상신한 C의 '2011년 재산세 결정결의서'를 결재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2. 8.경 ○○시 ○○동 소재 '○○'에서 위 B와 함께 위 C의 재산관리 및 세무대리·자문을 담당하였던 세무사 D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B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D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자인 세무사 D로부터 수수한 300만 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바,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3,000,000원×3=9,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C의 재산세 업무처리 경위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C의 재산세 처리경위를 보면 C와 E는 부부이면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재산세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신고하였

으나, E는 2011. 10. 31. 토지의 취득가를 환산취득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재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12. 6. ○○세무서에 환산취득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업무 담당자인 F는 이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타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상신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결재한 바 있다.

그런데 C는 E와 다르게 소득세법에 맞추어 환산취득가가 아닌 실제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액을 신고하여 이미 소득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액을 바탕으로 과세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었으나 업무 담당자 B가 2014. 11.경에야 뒤늦게 C에 대한 재산세 결정결의서를 상신하는 바람에 소청인이 이를 결재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한 재산세 결정은 적법한 업무처리로서 불법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 소청인이 재량이나 권한을 행사할 만한 여지 자체가 없었음에도 소청인이 세무사 D를 만나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위 C에 대한 재산세 결정결의서를 결재한 다음이었기에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편의를 위해 부정처사를 하였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나. 세무사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

한편 소청인이 위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는, 소청인과 친하게 지내는 G가 위 D를 소개하여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B도 이 자리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청인도 들은 바 없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소청인은 ○○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팔순잔치를 앞두고 있어 ○○에 다녀 올 예정이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G가 위 D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이야기했었다고 하며, 이를 들은 D가 소청인과의 식사자리에서 팔순잔치 축의금이라며 건네주었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이 세무사 D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부정한 청탁이 있거나 부정처사를 한 바는 전혀 없고, 더욱이 재산세 업무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만 18세의 나이로 서기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여년에 이르는 공직생활 동안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3회를 포함해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공직생활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년 모범공무원(총리 표창)으로 선발된 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퇴직급여(연금 포함) 및 퇴직수당이 25% 삭감되었고, 세무사 자격 취득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퇴직연금과 세무사 자격 취득으로 노후대비를 설계하고 있던 소청인과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300만 원으로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수수에 그쳤고, 소청인이 먼저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소청인이 세무사 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으므로 위 D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더불어 법원은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라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99도4940. 참조)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모친 팔순 부조금으로 300만 원을 부조한 사실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세무사 D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만난 소청인에게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그 의도가 순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게다가 ○○과장으로서 소청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세무사 D로부터 금품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증·수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이 면피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C의 재산세 업무처리 당시 부하직원 B에게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받아 ○○청 ○○담당관에게 그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였고, B는 위 지시내용을 2014. 12. 1.에 결재상신, 2014. 12. 30. 그 결과회신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위 C의 재산세 관련하여 신고시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이미 위 ○○청 ○○담당관의 회신공문이 오기 한달전에 결재를 완료(2014. 11. 13.)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곧바로 사망한 위 C를 대신한 상속인 E의 세무대리인이라고 인정되는 세무사 D를 만난 식사자리(2014. 12. 8.)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살펴 볼 때,

C의 재산세 결정은 이미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거래가에 의하여 올바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재량이나 권한을 행사할만한 여지가 없이 신고액을 바탕으로 과세결정을 하면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다소 곤란하다 할 것이다.

한편 C와 E는 부부로서 공동소유하는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음에도 업무 담당자가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E의 재산세가 먼저 처리되었고, C의 재산세를 담당하는 B가 뒤늦게 상신하여 문제가 된 것이라고 소청인이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공동소유하는 토지의 재산세 업무 담당자를 각각 다르게 배정하는 사실과 이 사건 비위사실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배제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전면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1)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염결성을 해치고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국세담당 공무원과 세무사간에 이루어진 금품 등의 수수의 경우 징계처분을 통해 국세 관련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현금의 공여로 인하여 국세 관련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밝혀진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위 공익 추구의 필요성을 감쇄시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중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청렴의 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상훈감경 대상 표창인 ○○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은 있으나 금품 수수 비위는 상훈감경 제한 대상인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3~4배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금품비리 특히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개별 비위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함이 제도의 주된 취지인 점(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12헌바435 결정 참조),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으로 공직에서의 배제가 확정되어 소청인의 비위 정도나 책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 공금횡령

66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처분요지

동료직원에게 총10회에 걸쳐 e-사람 시스템에 허위 등록을 요구하여 초과근무수당 총 5시간을 부당 수령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팀장으로서 8시 이전에 출근하려 했으나 차량사고에 따른 요양치료로 10분 늦게 출근한 것을 숨기려 한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에서 수급한 것은 아닌 점, 적발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지 않음에도 징계처분 한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적발 횟수가 1회이고, 이에 따른 부당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당수령 금액 전액 환수 및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당한 점,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중지 처분을 받아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32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1. 5.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 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8. 3.~2015. 9. 8. 기간 중 시간외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07:52분에서 08:03분 사이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소속 공무원인 우정주사보 B에게 총 10회에 걸쳐 'e-사람 시스템'에 출근시간을 허위 등록을 요구하여 총 5시간의 허위 실적이 등록되어 그 결과 41,98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소속직원의 호의적인 평가와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발지를 위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8시 이전에 출근하려 했지만, 차량사고 및 요양치료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15. 8. 3.~2015. 9. 8.까지 기간 중에 10여분 늦게 출근한 것을 숨기려고 한 것이지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 등 악의적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청인의 집배 업무는 특성상 자신의 구역 우편물은 자신이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0여분 늦게 출근이 업무 공백이나 배달지연이나 민원발생 등 문제를 초래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에서 '고의로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소청인은 적발횟수가 1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3월 초과근무명령금지와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다고 한 징계사유는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소청인과 같이 동료가 대신하여 출근 등재하는 잘못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인사혁신처 예규에 정한 바와 같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징계까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우체국의 '2015년 상반기 초과근무 및 복무실태 부적정자'에 대한 조치 시에 소청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공무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

업무와 관련된 측면이 강함에도 이런 정상을 참작해 주지 않는 등 원처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 사유 존부 판단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10여분 늦게 출근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지 초과근무 수당을 악의적인 의도에서 수급하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청인은 2015. 8. 3. 부터 같은 해 9. 8. 까지 총 10회에 걸쳐 B에게 대신하여 인사정보내부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소청인의 출근시간을 허위로 입력케 함으로써 총 5시간 41,98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였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당시 '교통체증으로 출근 시간이 08:00 전후로 임박하게 될 것 같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번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추후 '수당에 대한 욕심보다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반복적으로 대리 입력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고자 출근시간을 등록할 경우에는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는데, 그 접속 초기 화면에는 아래와 같은 유의문구로 교양하고 있다.

'사적용무 후 신청 등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관행적인 시간외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효율적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강화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판단

소청인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관련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점,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그 내심적 의도가 이건 징계사유에 영향을 준다거나 비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기능할 수 없는 점, 또한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율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은 적발횟수가 1회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3월 초과근무명령 금지와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만 하면 되는 것이며, ○○우체국의 경우 소청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가 있음에도 감봉3월의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015. 1. 23.)에서는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기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정하고 있다.

소청인이 약 1개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허위의 초과근무 입력을 하여 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이건 경위에 비추어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고 초과근무 부정 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 건 처분의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허위 등록 적발 횟수가 1회이고 이에 따른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총 5시간 41,980원)인 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미 부당수령 금액 전액 환수 및 그 외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당한 점,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중지 처분을 받아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기존 유사한 사례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그 비행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측면이 있어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의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7 출장여비 부당수령(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

설명회 참석으로 출장 승인을 받고 소속 과장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출장목적 미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없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비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소청이유

설명회는 과장의 지시로 추진되었고, 설명회 개최를 준비한 것은 사실이나 교통편의 문제로 좌절된 점, 과장의 부재로 설명회 취소 결정을 하기 어려워 일부 직원들은 교통편을 구해 현지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 결의에 따라 해당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6-11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113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지도사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원 ○○과에서 채소 ○○지원 및 ○○사업 업무 및 과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3. 27.자 ○○도 ○○사업 순회 설명회가 소속 부서장 자녀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사실과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하여 출장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 사건 설명회 참석으로 출장 승인(2015. 3. 27.~3. 28. 1박 2일)을 받고 2015. 3. 27. ○○공항에 도착하여 다음 날 소속 부서장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출장목적 미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없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이후 소청인이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 여비는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 문책을 하고,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269,900원×2=539,8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원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5. 3. 9. J ○○과장의 주재 하에 열린 오전 회의에 참석하였고, 당시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의 현장 보급을 위해 2015년에 46개 사업을 전국 266개 시군에 보급하는 신기술시범 사업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위 회의 중 J 과장은 자신의 자녀가 같은 달 28. ○○도에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지역적 특성 상 하객이 많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각 실별로 1~2명씩 참석해 달라고 하였고, 이왕이면 그 즈음 ○○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여 이 사건 설명회 계획을 진행하였다.

○○과 각 실별로 선별된 참석자들이 각자 이 사건 설명회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갔고, 서무와 지도계획을 담당한 C 지도사가 J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5. 3. 27. 14:00경 이 사건 설명회 계획을 기안·결재를 올렸다.

하지만 당시 일정에 맞추어 ○○도 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참석자들은 우선 해당일 중 가장 빠른 항공권을 예매하고, 추후 이 사건 설명회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약한 항공권이 취소되면 이를 확보하여 출발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설명회 개최일이 다가옴에도 예상 외로 항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설명회를 취소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설명회 계획을 승인한 J 과장은 당시 자녀의 결혼 준비를 이유로 부재중이었고, 결재 대행자로 지정해 둔 B 연구관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중 이 사건 설명회 참석자인 F 연구사는 ○○시 ○○로부터 현지 기술지도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설명회 하루 전이나 이른 시간에 먼저 출발하겠다고 하면서 B 연구관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B 연구관은 F 연구사가 교통편을 구했고, 출발 당일에도 취소되는 항공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예정대로 이 사건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한 후, 2015. 3. 26. 소속 부서 직원들의 출장을 대행자 권한으로 승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설명회 당일인 2015. 3. 27. 오전 F 연구사는 배편을 통하여 ○○도에 도착하여 현지 ○○에 기술 지도를 나갔지만 나머지 참석자들은 인근 공항의 항공편을 계속해서 알아보았음에도 끝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설명회는 취소되었고, 소청인은 J 과장 자녀의 결혼식이라도 참석하기 위해 사전에 예매한 항공편으로 ○○도로 갔었다.

애초에 예정되었던 이 사건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여 출장목적 미이행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J 과장의 지시가 없었고, 소청인도 예정된 업무와 출장 등 바쁜 일정으로 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여 타 지역 출장 여비들과 함께 결재되면서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2015. 10. 초경 이 사건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출장여비를 모두 반납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 금원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결정하면서 납입 고지서를 보내옴에 따라 위 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부가금 2배 납부처분을 받아 부당 수령한 출장여비의 총 5배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이 이 사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출장여비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설명회는 부서장인 J 과장의 지시로 추진되었고 승인까지 받아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J 과장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 사건 설명회 개최 준비를 하였으나, 결국 교통편의 문제로 좌절되었던 점, ③ 출장자 중 일부는 교통편을 구하여 현지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설명회를 지시하고 승인하였던 과장의 부재로 인해 대행자로 지정된 B 연구관으로서는 이 사건 설명회의 취소를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점, ④ 이 사건 설명회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대행자로 지정된 B 연구관이 임의로 다른 직원들의 출장신청을 반려할 수 없었던 점, ⑤ 소청인이 수령한 출장여비는 그 금원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납결의에 따라 해당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⑥ 소청인은 수령한 출장여비를 반납한 이후에도 감사담당관실 및 피소청인의 징계부가금 처분으로 두 차례나 각 2배의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변상책임을 이행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금원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필히 취소(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그 능력과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 사유 존부 판단

1)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설명회는 과장의 지시로 추진되었고, 이 사건 설명회 개최를 준비한 것은 사실이나, 교통편의 문제로 좌절된 점, 일부 직원들은 교통편을 구해 현지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결의에 따라 해당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이 사건 설명회가 부서장인 J 과장의 자녀 결혼식 참석을 목적으로 허위로 계획되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며, 부서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부정한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참한 사실과 이 사건 설명회가 2015. 3. 27. 개최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출장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서는 ○○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위 강령 제28조(부패행위 신고)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설명회 개최 준비를 하였음에도 교통편 등의 문제로 좌절된 것이라고 소청인의 주장은 ① 이 사건 설명회 개최지인 ○○도 ○○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참석 대상인 도원 및 ○○센터 업무 담당자 등 10명 직원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등 이 사건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도행 교통편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과 1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이 사건 설명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최 예정 시간 이전에 도착하는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통상 이 사건 설명회 개최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③「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을 받고서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하여 출장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부서장인 J 과장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또한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출장명령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출장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마땅함에도 이에 필요한 사후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위 법령 및 지침에서 명시한 내용이나 절차 등 이행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변명이라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수령한 출장여비를 반납(환수)한 이후에도 감사담당관실 처분으로 인해 2배를 납부하였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취소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국가공무원법」제48조(실비변상) 및「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가산징수 등)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라 그 부당 수령한 여비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제3항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의거하여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환수금(1배)과 가산징수금(2배)을 감안하여 합계액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징계부가금을 2배로 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는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피소청인의 답변 등을 살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량의 일탈 및 남용 여부

1) 이 사건 징계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부서장인 과장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명회 개최가 불가하여 출장목적을 이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출장 계획에 동참하고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비위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되기는 어렵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고비난성 비위행위로서 각 기관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언론 등에 보도되어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기관의 위상에 손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행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처분사유인 출장여비 부당 수령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해당되며, 공무수행이 아닌 부서장인 J 과장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허위로 출장 보고를 하고 출장여비를 수령한 점 등을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 1의 3】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 대해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8 초과근무수당 및 교통급식비 부당수령(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교통외근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기 퇴근 132회, 지각 출근 131회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초과근무수당 5,808,820원 및 교통급식비 570,000원을 부당 수령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식사 및 휴게시간이 지정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었던 점, 근무일지 대로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점, 교통질서확립 및 치안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34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계 ○○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요원은 근무지정표에 따라 주간근무는 07:00~20:00, 야간근무는 09:00~22:00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2015. 2. 1.~2016. 4. 22.까지 조기퇴근 132회, 지각출근 131회 등 근무를 결략하고, 2016. 4. 22. 야간근무 중 ○○읍 소재 ○○공장 뒤편 주차장에 순찰차를 주차해 두고 15:20경부터 19:0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지인의 집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TV를 보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또한, 2015. 2. 1.~2016. 3.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5,808,820원을 부당 수령하고, 조기 퇴근했음에도 총 95회에 걸쳐 주간근무 시 교통급식비(석식)를 청구하여 570,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상자들끼리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실제 근무치 않고도 초과근무수당 및 교통급식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전체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그 금액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어 비난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며,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그간 근무경력 및 수여된 상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게 된 점

소청인은 교통외근 경찰관 근무 당시 총 3명이 '주간(07:00~20:00)→주간(07:00~20:00)→주간(07:00~20:00)→야간(09:00~22:00)→비번→야간(09:00~22:00)→비번→야간(09:00~22:00)→비번' 순으로 9일 주기 3교대 근무를 해야 했는데,

① 주3일 연속 13시간 주간근무를 하고 뒷날 쉬지 않고 4일 째 야간근무 13시간을 강행하는 이러한 근무형태는 ○○지방경찰청 소속 3급지 경찰서 ○○계 중 어느 경찰서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근무조건인 점, ② 1일 13시간을 근무하나 근무일지에 중식 및 석식시간,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점, ③ 식사시간 없이 근무함에도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에서 중식시간으로 20시간을 공제한 점, ④ 비번 1명을 제외하면 2명이 야간 음주단속까지 해야 하는데, 특히 1명이 휴가 시 1명이 모든 근무를 해야 하는 점, ⑤ 근무일지대로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소속 과·계장에게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근무여건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과 함께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B 경위는 일부 본 건

징계이유와 유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근무기간이 짧았고 감찰조사 후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며, 기피부서임에도 소청인이 자원하여 근무해왔고, 우수한 실적거양으로 교통질서확립 및 치안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한 점, 장기간 경찰생활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정직 처분으로 소청인이 ○○청 내 원거리 경찰서로 강제 발령받을 예정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주간근무 3일 연속 13시간 근무를 하고 뒷날 쉬지 않고 4일째 야간근무 13시간을 강행해야 하며,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전혀 지정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었던 바, 근무일지대로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기에 근무여건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경찰공무원으로서 원활한 치안수요 대응을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성실히 근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결코 임의로 이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인 점,② 먼저 소청인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주간(07:00~20:00)→주간(07:00~20:00)→주간(07:00~20:00)→야간(09:00~22:00)→비번→야간(09:00~22:00)→비번→야간

(09:00~22:00)→비번' 순으로 연속하여 4일을 13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은 알 수 있으나, ○○팀과 동일하게 9일 3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경찰서 내 타 현업부서(112 상황실, 지역경찰)의 근무형태와 비교해보면, 주간근무 시간은 ○○팀보다 적더라도 야간근무의 경우 익일까지 밤샘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어 밤샘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팀이 더 열악한 근무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팀은 현업부서로서 초과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월별 근무형태를 사전에 지정하여 '월중근무계획서'를 작성, 경찰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이에 근거하여 ○○계장이 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결재 받은 2015. 3월~6월까지 월중 ○○ 근무계획서를 살펴보면 '휴게부여 : 12:00~13:00(중식20시간 공제)'로 휴게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할 근무일지상에는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규정상 ○○계장이 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평소 주간근무자가 ○○용 컴퓨터에 저장된 근무일지 양식에 날짜만 바꾸는 방식으로 ○○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월중 근무계획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할 근무일지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청인이 직접 매일 습관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휴게시간 미지정에 대해 소청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소청인이 휴게시간이 가능함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 필요했다 하여 임의로 근무시간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중 근무계획서를 확인하여 근무일지에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는 점,

④ 아울러 소청인은 일반근무로의 전환 등 소속 과·계장에게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했지만 초과근무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속 계장이며 초과근무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E 경위(2014. 2. 17.~2016. 2. 21.)가 소청인이 불만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5. 3월~2016. 4월 초과근무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에도 관련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참작하려면 최소한 근무시간을 조정한 후에는 성실히 근무했어야 할 것임에도 근무시간 중 지인 또는 자신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를 결략해 온 점,

⑥ 또한 임의조정 이후 근무한 시간을 볼 때 주간 6시간, 야간 9시간에 불과한데다 주간근무 시 6시간만 근무한 뒤 13시에 퇴근하였다면 충분히 본래 야간근무 시간인 09:00~22:00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야간근무마저 시간을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결국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습관적인 근무태만이 행해져 온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상습적으로 근무를 결략하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 관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이 이를 준수하지 못할 현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 판단

소청인은 본건과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동료 직원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건 처분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은 약 6개월(2015. 2. 2.~7. 21.)동안 소청인과 함께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B 경위가 소청인과 달리 조정된 근무시간 이후에는 후임으로 발령받은 ○○계 내근서무(순경 F)의 교통내근 서무업무를 지원하는 등 근무했다는 점을 조사결과를 통해 인정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소청인과 비행의 경위와 정도,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타 현업부서와 비교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만큼 현저히 열악한 근무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기퇴근·지각출근 횟수를 보면 근무일에는 거의 대부분 조퇴·지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임의조정 후 근무시간이 기본 근무시간보다 짧으며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한 후에도 근무를 결략해 온 점 등을 볼 때 결국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습관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교통외근업무는 교통사고 수습과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인 1조로 성실히 근무해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의 임의적·계획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1인 단독근무를 하고, 더욱이 1인 단독근무 시에도 근무를 해태하였던 행위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위를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비위인데, 소청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과 석식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당수령해온 바, 그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고 이를 당연하게 수령해 온 소청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내지 행적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이 침해 받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그르쳐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의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9 특근매식비 부당 집행 및 횡령(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허위 결제한 매식비 총 1,062,000원을 부당 청구한 후 총 360,000원을 식당 업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702,000원은 집행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과장과 ○○계장에게 정산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제공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했던 것이지 전적으로 소청인이 제안하여 이 사건 비위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순찰 차량 전복 사고로 장애를 입고 치료중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43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 중인 2012. 7. 4.경 경정 B가 ○○과장으로 부임하자 승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특근매식비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3. 6. 3.~2015. 1. 27.간 총 489회에 걸쳐 지인의 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매식비 총 2,960,000원을 부당 청구하고, 매월 초 식당업주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 중 8만 원 가량을 위 B 과장에게 전달하는 등 합계 160만 원을 제공하고,

2) 2014. 2.경 후임 ○○계장으로 부임한 경감 C에게도 위와 같은 제안을 한 후, 2014. 2. 13.~2014. 4. 30.간 총 64회에 걸쳐 지인의 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매식비 총 384,000원을 부당 청구하고, 식당업주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 중 10만 원씩 2회 합계 20만 원을 위 C 계장에게 제공하고,

3) 2013. 6. 3.~2014. 2. 17.간 총 183회에 걸쳐 지인의 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매식비 총 1,062,000원을 부당 청구한 후, 매월 초 식당업주로부터 4만 원 가량을 정산 받는 등 총 36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702,000원은 집행 목적과 다르게 부당 집행·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특근매식비의 부당 청구·집행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간부가 지침 위반 및 부적절한 행위를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부당 청구·수령금 액수 자체도 상당하며 행위가 지속된 점, 현금화 등 행위의 방식도 매우 부적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과 얼마 남지 않은 정년퇴직, ○○사고 감소 등 업무 성과,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감찰조사 당시 부당수령 금액을 환수 조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속상관인 B 과장이 2012. 7. 4. 부임하여 ○○매식카드에 대해 물어보면서 자신은 아침식사를 먹지 않으니 제과점에서 빵을 사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사용하는 매식비 카드로 식당에서 정산하여 빵을 구입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과장에게 전한 것이며, 2014. 2. 18. 소청인이 ○○계장에서 ○○계 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더 이상 과장의 매식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같은 해 4월경 과장이 소청인을 불러 후임인 C 계장은 매식비 카드를 별도 신청하여 사용한다면서 소청인에게 계속해서 정산을 해달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단호히 거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정산해주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전적으로 제안을 하여 매식비를 현금화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소청인은 ○년 9개월간 다른 비위 행위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하였고, ○○부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서장 13회, ○○청장 6회, ○○청장 1회의 표창과 기장 그 외 봉사활동으로 ○○지사 표창 2회를 받는 등 유공

경력이 있는 점, 2015년 ○○사고 감소율 ○○ 1위, 전국 3위에 기여하는 등 경찰 발전을 위한 노력과 비위 내용을 비교할 때 과중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인 점, 소청인이 20년 전 순찰차량 전복 사고로 ○급의 장애를 입고 치료 중인 점, 정년까지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소청인의 어려운 형편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소청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특근매식비의 부당 집행·사용 사실과 그 방법, 비위 금액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했던 것이지 전적으로 소청인이 제안하여 이 사건 비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4. 2.경 인사이동으로 과장과 매식비 카드를 같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는 허위 결제 후 현금화 등을 하지 않았고 다만 과장의 요청에 따라 과장의 매식비 카드 정산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초 2012. 7.경 B 과장이 부임했을 때 소청인이 먼저 과장에게 '○○매식비 나오는게 있으니까 제가 현금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던 점, 소청인이 그 이유에 대해 '3년 동안 특진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과장에게 잘 보이면 특진이나 승진에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먼저 그렇게 제의한 것'

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소청인의 제의로 이 사건 비위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도 부적절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이 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으로도 특근매식비를 부당 집행하고 일부 현금화한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후임자인 경감 C의 특근매식비까지 허위 결제한 것으로 보아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비위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 재량의 적정성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은 정부예산을 집행,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그 사용 목적과 집행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근거한 ○○지방경찰청의 '특근매식비 집행 방법 통보(○○지방경찰청 경무과-○○호, 2012. 3. 5.)' 공문에 의하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정규근무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여 실제 매식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매식마다 집행하여 증빙 처리하도록 하며, 특히 실제 매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 예산 지급 금지 및 지급기준에 위배하여 회식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부당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소청인은 원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므로 참작사항 등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하나, 소청인이 위 '특근매식비

집행 방법 통보' 공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매식비 카드를 허위 결제하면 안 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특근매식비를 허위 청구·부당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행위가 주도적이고 장기적이며 일부 금액은 식당업주에게 카드수수료까지 주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에 도움 받을 목적으로 직속상관인 과장에게 의무위반 행위를 제안하고 그 과정에 일부 허위 결제금액을 현금화하여 상관에게 공여했던 사실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잘못된 관행을 후임 계장인 경감 C에게 인수인계하였으며 직접 C 계장의 몫으로 허위 결제를 하고 일부 현금을 챙겨주는 등의 행위로 후임자까지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이 계장 또는 팀장의 지위에서 소속 직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과실로 보기도 어려우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예산·회계질서 문란 비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해임' 이상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정직' 상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예산집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태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0 물품구입비 횡령 및 유용
(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칼라머그컵 120개(1,723,320원)를 구입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실제 513,300원에 해당하는 머그컵만 구입한 후, 나머지 1,210,000원은 팀원 등 5명의 겨울점퍼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 중 270,000원을 자신의 옷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비위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예산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점, 고의적 횡령한 것이 아니며 불순한 의도가 없었던 점, 그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6-599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600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1. ○○사업 활성화 관련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칼라머그컵 120개를 1,723,32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칼라머그컵은 40개만 구입하여 513,300원을 지출하고 팀원 등 5명의 겨울점퍼 구입비용으로 1,21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270,000원은 소청인의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예산을 횡령·유용하여 팀원들의 방한복을 구매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최종결재권자인 소장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칼라머그컵 납품업체가 칼라머그컵 비용에 대한 차액을 의류 구매업체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무경력이 20여년에 이르는 소청인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11. 팀장 B로부터 수용비 잔여예산 활용계획 수립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당시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팀원 D가 얇은 점퍼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너무 추워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예전부터 출장복 구매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으니 이참에 우리팀 출장이 많고 날씨가 추우니 겨울 출장복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팀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여 팀원 중 선임이었던 소청인이 구매 기안을 한 것으로,

B의 진술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관도 예산으로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우리팀도 예산으로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 "근무복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 "개인부담까지 추가하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주도적으로 방한복 구매를 추진하였고, 이에 B는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팀의 모든 업무는 팀장이 센터소장에게 보고하는 체제로 팀원이 센터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례가 없고, 관련 내용은 소청인이 팀장에게, 팀장이 센터소장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은 사안으로 팀원이었던 소청인이 예산 관련 내용을 센터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방한복을 구매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상신하였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소청인이 예산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겨울철 팀원들을 배려하고자 한 순수한 의도로 방한복을 구매한 것일 뿐 고의적 횡령 내지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 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에 수행해 왔으며, 소청인의 공로를 인정받아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동 조에서의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관계 법령 뿐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의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며,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이에 포함된다.

나)「○○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에서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 사실

가) 팀장 B는 2015. 11.경 소청인에게 ○○사업 일반수용비 예산활용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

나) 소청인은 그간 판촉물을 구매하였던 '○○광고 기획' 대표에게 예산의 일부로 옷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팀원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고 자비를 보태어 겨울철 출장 시 필요한 방한복을 구매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팀원들은 소청인 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다) B는 소청인의 의견에 반대하였으나 소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피력하자 알아서 하라고 최종적으로 동의 의사를 보인 바 있다.

라) 소청인은 2015. 11.~12. 경 '○○광고 기획' 대표에게 방한복을 소개받았으나 단체복으로 적합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다른 브랜드(○○ 골프)의 옷들을 카톡 사진으로 받아 B 등에게 보여 주고 원하는 디자인을 확인한 후, 그 내역을 ○○ 골프 ○○ 매장 업주에게 전달하였다.

마) 소청인은 실제 칼라머그컵을 40개만 구입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513,300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2. 21. '○○광고 기획'으로부터 칼라머그컵 120개를 1,723,320원에 구매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하였고, B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동 문서를 중간 결재하였다.

바) ○○지청 ○○과는 2015. 12. 23. 마) 항과 관련한 문서에 따라 '○○광고 기획'에게 1,723,300원 지출 결의하였다.

사) 소청인은 2015. 12. 28. '○○광고 기획' 대표에게 ○○지청에서 '○○광고 기획'으로 집행한 금액 1,723,300원과 실제 납품한 머그컵 대금 513,3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210,000원을 ○○ 골프 ○○매장 대표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안내하였다.

3) 판단

가)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보태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앞서 살핀 일련의 과정에서 소청인과 팀원 D는 37만원 상당의 의류를, 팀장 B와 팀원 C는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선택한 사실이 있고, 이는 단순 근무복이라기에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일 뿐 아니라각자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한 점, 방한복 구매에 자비로 10만원씩을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복으로의 활용성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소청인은 예산업무에 무지하였고 직원들 복지만을 염두에 둔 결과 본건이 발생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방한복을 구매하면서 머그컵을 사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스스로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반증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팀장 B는 방한복을 받자마자 다른 팀원에게 옷을 전달하였고 팀원 C는 구매한 방한복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업무 수행 상 팀원들의 방한복 구매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예산횡령·유용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특히 최초 예산을 이용하여 방한복을 구매할 것을 제안한 사실

외 방한복 구매 과정에서 '○○광고 기획' 대표와 공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건을 주도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의무 위반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스스로의 행위가 상당히 부적절했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예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비위 사실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공금 횡령·유용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공모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를 그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또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1 허위 영수증으로 출장비 부당수령(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출장을 나간 대원들에게 영수증을 끊어오도록 하여 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내 출장비 202,460원을 부정 수령하고, ○○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사적심부름을 시킨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출장비 부당 수령이 관행적이었고, 부당 수령한 출장비는 개인 용도가 아닌 대원들의 간식을 위해 사용한 점, 부당 수령한 출장비를 전액 반환한 점, 사적심부름을 시켰다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점,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70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6. 5. 9. ○○학교, 같은 해 6. 13. 및 16. ○○학교 등 출장을 나간 ○○대원들에게 영수증을 끊어오도록 지시 후 이를 근거로 5회에 걸쳐 허위 출장을 내 출장비 220,46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같은 해 8. 3. 축구 경기 후 ○○대원들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회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외박을 다녀온 ○○대원에게는 '여자 친구랑 잤느냐'는 성적 모욕감이 드는 발언과 '씨발놈,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같은 해 8. 25. 오후 상경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지시하며 평소 ○○대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라면을 끓이게 하고 세탁물을 대신 세탁하도록 하는 등 사적 심부름 시켰다.

또한 소청인은 같은 해 9. 1. ○○대 내무반 입구에서 ○○대 근무일지로 일경 C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등 대원 4명을 총 5회에 걸쳐 폭행하고, 통합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행정대원에게 알려준 후 각종 문서 접수, 기안 및 대원 신상면담까지 위 행정대원들에게 일임하는 등 ○○대장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1) 출장비 부정 수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것에 대해서 비록 ○○대원들의 피자나 통닭 등 간식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서 반성하며, 징계부가금 부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지방경찰청 감사실로 연락해서 부정 수령한 위 출장비 202,460원은 2016. 10. 13.자로 국고에 전액입금 완료하였다.

2) 성적 모욕감이 드는 발언과 욕설을 수회 반복했다는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소청인과 ○○대원들은 ○○경찰서장 주관으로 월 2회(첫째·셋째주 수요일) 자체 체력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2016. 8월 초경 함께 축구를 한 경찰서장이 '○○대장, 오늘 꼭 대원들 구보나 쪼그려 뛰기 시켜'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경찰서로 돌아와 ○○대 내무반 옆에 있는 경찰서장 관사에 있는 경찰서장에게 보여 주겠다는 생각으로 ○○대원들에게 쪼그려 뛰기 50회를 시켰으나, 이는 진정으로 ○○대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것으로서 정말로 얼차례 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규정에 의한 신상면담 과정에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신중한 용어를 선택하여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정하였다.

3) 사적 심부름을 시킨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을지훈련기간 중 비상대기 근무 중 전화수신 응대를 하기 위해 고장난 휴대전화 액정수리를 해 오도록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평소 잦은 속쓰림으로 인한 만성위염에 시달리다보니까 밀가루로 된 음식은 전혀 먹지를 않고 있으므로 소청인만을 위해 라면을 끓이게 하거나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한 사실은 추호도 없기에 이 부분은 억울하다.

소청인은 ○○대원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사비로 라면을 구입하여 주었고, ○○대원들이 먹을 때 국물을 얻어 마셨을 뿐이고, 2016. 8. 일자 불상경 한참 더울 때 ○○대원들의 위생 점검을 하였는데 모든 ○○대원들의 수건에서 쉰 냄새가 나서 한꺼번에 세탁물을 걷어 세탁기에 넣어 돌리도록 지시하면서 소청인의 수건까지 세탁을 하게 하였으나,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시킨 적은 없다.

4) 대원 4명을 총 5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대원들이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여 그렇지 않도록 하였는데 재차 인사를 하여 근무일지로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의사로 구타를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근무일지로 폭행을 당했다는 일경 C 뿐만 아니라 다른 ○○대원들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 대원들은 소청인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다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소청인은 평소 출근하면 전일 근무한 ○○대장과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데, 2016. 8. 7. 08:30경 당시에는 일경 D가 ○○대장 책상에서 하는 일 없이 비켜 주지 않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살짝 '툭' 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비켜 주라고 했던 것이지 전혀 폭행이나 구타의 의사로 행한 행동은 아니었다.

5) 행정대원들에게 행정업무를 전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대 근무는 격일제 근무로서 소청인의 휴무일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서가 하달되어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번을 행정대원에게 알려줘 대신 접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였다.

그러나 행정대원에게 업무 자체를 일임한 사실은 없으며 신상면담 역시 소청인이 불러주면 행정대원이 작성하는 것은 몇 차례 있었으나 이 역시 지적받은 즉시 시정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은 해당 대원의 이의제기가 아닌 휴가기간 연장을 위한 E 대원의 불평불만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지방경찰청 지시에 의한 ○○경찰서 ○○과의 인사조치에 의해 행정대원에서 ○○대원으로 인사발령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위 E 대원의 주관적인 의사가 많이 개입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소청인과 같이 근무해 온 대다수의 ○○대원들은 소청인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에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은 약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단 한 건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2016. 5. 12. ○○지방경찰청 주관 도내 21개 경찰서가 참여하는 ○○대 역량평가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양하는 등 업무 면에서 매우 열성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경찰의 명예를 드높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중 ① 출장비 202,460원을 부정 수령한 부분, ② 2016. 8. 3. 축구 경기 후 ○○ 대원들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회 쪼그려 뛰기를 시킨 부분, ③ 같은 달 25. 오후 상경 B에게 자신이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지시한 부분, ④ 통합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번을 행정대원에게 알려줘 대신 공문 등을 접수한 부분 등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대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라면을 끓이거나 또는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도 없으며, 출장비 부정 수령이 관행적이고, 개인 용도가 아닌 대원들의 간식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의 ○○대원들에 대한 폭행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9. 1. C 대원이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여 “인사 좀 그만해”라고 하며 근무일지로 등 부위를 툭 친 것이며, ○○계에서 D 일경에게 “업무를 잘 챙기라”고 하며 귓불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대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② 일경 D는 8. 17. 아침 ○○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출근하던

소청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으며, 8. 26. 아침에도 ○○대 근무 일지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2회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③ 일경 F는 8월 초순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출근하던 소청인이 들어오면서 "축구할 때도 굼뜨더니 여기서도 금뜨냐"며 자신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 일경 C는 의경어머니회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후 내무반 복도에서 소청인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자주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지니고 있던 결재판으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⑤ 상경 G는 9. 3. 09:30경 내무반에 침대에 기대 있는 것을 본 소청인이 "너는 타격 대장이 왔는데 예의가 없다. 2생활실에 가서 책만 보아라"고 호통을 치자 2생활실에 가 있는데 소청인이 따라와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어 뒤쪽 관물에 부딪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과 ○○대원들의 진술 등을 살펴 보면, ○○대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구타나 폭행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다소 부족하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항을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평소 만성위염에 시달리다보니까 밀가루로 된 음식은 전혀 먹지를 않고 있으므로 자신만을 위해 라면을 끓이게 하거나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② 일경 E는 소청인이 평소 출퇴근 시 대원들에게 수건, 속옷, 자전거복 등 본인의 빨래를 매일 시켰으며, 자신도 3회 가량 소청인의 수건과

팬티를 세탁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일경 J는 소청인이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날이면 'J야'라고 불러 샤워 후 자신의 몸을 닦고 난 수건을 던져 주며 세탁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월 2회 있는 축구경기 후 소청인의 유니폼과 양말 등 수시로 세탁해 왔으며, 평일 오후 시간대에 ○○대 사무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가 '라면 좀 끓이고 식당에 가서 반찬 좀 가져와라'고 지시하여 약 10회 가량 라면을 끓여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④ 일경 K는 소청인이 매일 아침 자신의 이불과 베게, 장판 등을 내무반 옆 빨래줄에 널도록 지시하였고, 소청인의 속옷, 운동복 등 빨래를 대원들에게 시켜 자신도 7회 가량 빨래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일경 박지원은 소청인이 자기 이름 이니셜이 적힌 파란색 수건을 대원들에게 세탁해 주도록 하였고 만일 자기 이니셜이 적힌 수건이 아니면 "야 씨발놈아 이름이 없잖아"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과 ○○대원의 진술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미흡하다고 보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원들이 소청인으로부터 폭언과 사적 심부름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출장 신청을 하고서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출장을 간 ○○대원들에게 출장지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영수증을 가져오도록 하여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과 제356조(업무상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어 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해당된다 하겠다.

게다가 해당 기관에서는 매년 출장비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감액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소청인은 출장비 부정 수령이 관행이며, 비록 출장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지만 ○○ 대원들의 간식비로 사용한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여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한 처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대원들의 복무와 직무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휘요원으로서 악습이나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을 행하였고, 이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지휘요원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 자질에도 의문이 든다 하겠다.

더욱이 소청인이 ○○대장으로서 출장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출장을 간 ○○대원들에 출장지에서 영수증을 끊어 오도록 시키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스럽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품위유지 위반(바.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까지 부가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정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Ⅵ. 감 독 책 임

72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사고 감독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음주회식 후 부하직원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해 감독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술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부하직원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하고,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수회 한 점, 술을 마시는 중에 보이지 않아 3차례 전화하여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히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30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과 ○○팀장 근무 당시, 소속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였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6. 4. 21. 19:30 ~ 21:00간 ○○시 ○○읍 ○○리 소재 '○○식당'에서 소속 부하직원 경사 B 등 3명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21:30 ~ 22:30간 ○○ 소재 '○○'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경사 B가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2016. 4. 22. 01:00경 경사 B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17:00경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 태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주장대로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 반복 교양한 점, 대리비를 지불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수회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4. 21. 18:00경 회식장소에 부하직원 경사 B를 참석시키기 전 대리운전비 4만원을 지급하고 음주운전 금지 교양조치를 수회 한 상태에서 19:30경 ○○시 ○○읍 ○○리 소재 '○○식당'에 도착하여 친구 1명과 3명이 함께 소주3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21:00경 대리기사 2명을 불러 친구의 동창이 운영하는 ○○ 소재 '○○'로 이동하여 예전에 키핑한 양주 1병을 22:30경까지 나누어 마셨는데, 함께 먹던 B 경사가 아무런 말없이 자리를 이석하였고, 이에 화장실 등을 살펴보았으나 보이지 않아 22:56경 B 경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자,

“팀장님 지금 대리기사 불러서 가고 있습니다, 대리아저씨 운전 잘하세요...” 라고 대답을 하였고, 대리기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걱정 마세요 대리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3:01분, 23:04분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자 “집에 다 와서 내리려고 하니 걱정 마세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 B 경사가 음주운전 하게 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부하직원 B와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수시로 자리 이석을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친구와의 대화로 인해 B가 몰래 이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사실만으로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소청인의 징계책임을 높이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등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 아들, 딸 등 6명과 함께 생활하여 오다가 1년 전 아버님이 5년간 ○○ 투병 중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 ○○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수시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치료 중에 있는 점, ○○년간 경찰청 ○○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팀, ○○팀 형사로 근무하며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많은 공적을 쌓아 2회에 걸친 특별승진과 ○○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어떤 부조리나 비리에도 현혹되거나 연루되지 않고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부하직원의 잘못 판단을 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실수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경사 B의 소속 직속팀장이고, 부하직원과 함께 술을 마셨으면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은 술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경사 B에게 대리비용을 팀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술을 마시는 중에 보이지 않아 3차례 전화하여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히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친구와의 음주회식 자리에 부하직원 경사 B를 참석하도록 하였고, 1차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당시 술자리가 2차까지 이어졌으며, 경사 B의 차량이 술자리 근처에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한 점, 더구나 경사 B는 당시 소청인과의 통화한 내용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아주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금년 초에 전국적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2016. 3. 3.)을 하였고, 특히, 최근 소속 ○○지방경찰청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추진 종합계획(청문감사담당관-○○ 2016. 4. 8.)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묵인하거나, 만취자를 방치한 동급자·상급자 등에게도 행위자에 준하는 관리 감독 책임 기준으로 문책한다는 '동석·감독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의 특별지시를 하달한 점,

또한, 당시 소청인은 같은 팀 부하직원 경사 C로부터 2016. 4. 22.

01:06경 경사 B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을 연락 받았으면 소속 상관 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것이고, 더구나 타 관내인 ○○경찰서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경사 B가 피해 택시 운전자와 만나 합의금을 지불한 이후인 17:00경에야 관련 사실을 지연 보고한 점,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 본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기강의 확립이나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에 처한 본건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3 조기퇴근 묵인 및 음주운전사고 감독 소홀 (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직원들의 조기 퇴근을 묵인하고, 음주운전 블로킹맨 운용 등 지시된 음주운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소속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야간근무팀이 일찍 출근하여 개별적으로 인수인계 후 정상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점, 회식 전후로 참석자들의 교통수단과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음주운전 블로킹맨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평소 직원들에게 의무위반행위 교육을 꾸준히 해왔던 점, 사건 당일 직원들의 이동수단과 귀가여부를 확인한 점, 직상위 감독자가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44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6. 2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소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5. 26.(목) 19:00경부터 ○○시 ○○동 소재 ○○식당에서 팀 회식을 하면서 총 9명이 소고기 구이 등을 안주로 소주 9병, 맥주 9병, ○○ 담금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21:30경 회식을 종료하였다.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서 2016. 5. 26. 08:30~19:00간 주간근무인 순찰1팀 직원들의 조기 퇴근 및 야간근무팀과의 근무교대(18:30~19:00) 결략을 묵인한 채 순찰1팀장 경위 D와 함께 18:16경 퇴근하여 순찰1팀 회식에 참석하고, 부서 회식 시에는 참석자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귀가 관리를 위해 음주운전 블로킹맨을 지정·운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2:11경 발생한 경위 B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총괄 관리·감독해야 할 파출소장으로서 근무지침상의 정상적인 근무교대를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의 조기 퇴근을 묵인한 점, 지시된 음주운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 그로 인해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 비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이 7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근무는 주간 1팀, 야간 2팀으로 야간근무자가 출근하여 무기 등 장비를 인계인수한 후 근무공백 없이 주간팀이 퇴근하였고, 소청인은 정상적으로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퇴근한 것으로 회식 참석을 위해 조기 퇴근을 묵인한 것은 절대 아니었으며, 근무교대와 관련하여 평소 수시로 교양 및 인계인수를 하였고 당시 주간에는 중요한 인계사항이 없었으며 단지 전원이 한자리에 집합하지 않고 교대한 것을 근무교대 결략으로 보고 소청인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불합리하다.

회식은 1팀에서 주관하였고 블로킹맨은 누가 지정·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규칙이나 지침 없이 포괄적으로 지정·운용하라고만 지시된 것으로, '15년 의무위반 ZERO화 종합 추진 대책(○○경찰서 청문감사관실-○○호)'에는 '음주 회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파출소는 파출소장에게 회식을 한다는 구두 또는 문자 통보하고 음주회식 시 1명을 선정하여 회식 중에 음주하지 않고 참석 직원 전원상대 음주자제 요청, 회식 후 전 직원 안전귀가 책임을 수행'토록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회식을 주관하는 팀에서 사전에 미리 지정·운용하는 것이 옳으며, 소청인이 단지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에게 블로킹맨을 지정·운용하지 않았다고 징계 처분한 것은 불합리하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서 사건 당일 17:44경 교육 중이었던 경사 E에게 택시를 타고 오도록 통보하였고, 회식 전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회식장소까지 이동한 교통수단을 확인했는데 경위 B는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회식을 마치고 각자에게 또다시 귀가 수단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B는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대리운전을 해서 갈 사람은 9명 중 2명에 불과하여 대리운전자 2명을 부르라고 지시하고 귀가 후에도 직원들에게 전화로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회식 전후로 3회에 걸쳐 확인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 이유가 경위 B의 상급자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라면 소청인이 상급자로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의 노력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면 10대 주요 의무위반행위도 아니고 2차 감독자임에도 감봉 상당의 책임으로 보고 견책으로 의결하였다는 것인데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은 감독의무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하고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하는 것으로 명시된 점, 그리고 음주운전 발생 시 단순히 음주현장에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한 지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호, 2011. 7. 20.) 등도 참작하시길 바란다.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고 ○○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한 점, ○년 6개월간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는 점, ○○ 표창에 선발되는 등 46회의 상훈이 있는 점, 평소 의무위반행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한 점, 직원과의 소통과 사기진작을 위해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전후 이동수단과 귀가 여부까지 3회에 걸쳐 확인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야간근무팀이 일찍 출근하여 개별적으로 인수인계 후 정상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회식 전후로 참석자들의 교통수단과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음주운전 블로킹맨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 사건 당일 ○○파출소 근무일지 등에 따르면 ○○팀의 정규근무시간은 08:00~19:00까지이고 18:30분부터 30분 동안은 교대자 전원이 집합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하며 지역경찰관서장은(부재시 근무시작팀 순찰팀장) 근무교대를 총괄하고 근무기강 확립 등 교양을 실시해야 함에도, 사건 당일 회식 참석을 위해 ○○팀 직원들이 17:33~18:16경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 역시 사건 당일에는 근무교대자 전원을 집합시켜 인수인계를 하거나 교양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지역경찰관서의 근무시간 미준수 등 관련 '지역경찰관서 근무시간 준수 철저 지시' 등이 있었음에도 야간근무팀이 일찍 출근하여 개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총괄 관리·감독해야 할 파출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조기 퇴근을 묵인하고 정해진 근무교대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청에서는 반복하여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을 하고 있었고, 소속 경찰서에서도 '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청문감사관실-○○호, 2016. 4. 8.)'을 하달하여 동석·감독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의 특별지시를 하달한 점,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는 교양 등으로 의무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주의하여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음주운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이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꾸준히 교양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도 직원들 각각의 이동수단을 확인하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였으며 귀가한 후에도 직원들의 귀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점, B에게 귀가 방법을 확인했을 때 B가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라고 답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과 B의 직상위 감독자인 ○○팀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차상위 감독자인 소청인의 감독 책임을 견책 상당으로 보는 것은 다소 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아울러 소청인이 약 ○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 표창 등 상훈감경 대상 표창 7회를 포함한 총 33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4 부하직원의 성비위 사건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부하직원이 성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어린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결국 위계로써 간음까지 하여 파면에 이르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발령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실질적 감독이 곤란한 시기로 1개월 미만은 임의적 감경 또는 면책기간으로 규정된 점, 단체 문자방을 통하여 학교 활동 시 사전보고, 상담 시 언행을 유의, 여학생과 개별 상담 금지를 교양하는 등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는 점, 전임 계장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소청인에게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이 발령 받아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이 비위 건을 인지한 당일 직속상관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 사건 은폐나 허위 보고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6-63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9. 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B의 1차 감독책임자로서 B가 ○○서 ○○과 ○○경찰관으로 근무 시 알게 된 여고생 C에게 “이혼 후 책임을 지겠다, 결혼하자”며 기망하여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 20:00경 ○○경찰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말까지 10여회 성관계를 한 의무위반 행위로 2016. 8. 17.자로 파면 처분을 받은데에 1차 감독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B가 어린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 위계로써 간음까지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파면에까지 이르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이건으로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됨으로서 경찰 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된 점, 소청인 이외에 2차 감독자 ○○과장은 ‘감봉2월’,

3차 감독자 ○○경찰서장은 '정직1월' 등 감독자들이 감봉 이상의 엄정한 처분을 받은 점, 학교전담 경찰관의 중간관리자로서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직원들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간 소청인이 ○○년 2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징계 상당의 책임 있다고 판단하는 바,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1. 26. ○○서 ○○과 ○○계장으로 발령 받기 이전인 2015. 6. 경부터 이미 B는 해당 여학생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경찰청 ○○단 조사 시에는 2016. 3월 초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여학생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 시기가 불분명하고 만약 3월 초에 최초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발령 받아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감독이 곤란한 시기였으며, 양정 규칙에 의할 때 부임기간 1개월 미만은 임의적 감경 또는 면책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계장으로 발령 받기 이전까지 12년간을 오직 ○○부서에만 근무하여, 발령 후 ○○과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었고, 과장이 주관하는 일일회의 시 과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기록하여 ○○계 직원들에게 각종 현안업무와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철저히 교양하였고, ○○경찰관들은 회의 참석이 어려워 단체 문자방을 통하여 학교 활동 시 사전보고, 상담 시 언행을 유의하고

여학생과 개별 상담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후 면담을 교양하는 등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B는 ○○경찰관이나 주로 내근업무만 담당하였고, 해당 여학생은 ○○경찰서 관내 학교의 학생도 아니었기에, B가 타관 내 여학생을 퇴근 후에나 주말에 만나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성관계 등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B는 2015. 6.경 해당 여학생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여학생의 부모에게 교제 사실을 들켜 부모님의 항의를 받게 되자, 당시 ○○계장(D)에게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고 하였고, 전임 ○○계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후임 계장인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아무런 사실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소청인이 B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비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계장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소청인에게만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소청인은 상훈감경 대상 표창인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5조 제1항 관련[별표4]에 의하면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행위자의 징계가 중징계일 경우 1차 감독자는 견책 처분에 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만약 상훈감경이 적용된 것이라면 위 규칙에 위배된 것이다.

소청인은 ○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 조차 받은 사실이 없고, 2012년부터 4년간 치안성과 평가 S등급을 받았으며, ○○경찰관으로서는 드물게 12년 동안 수사업무를 전종하면서 범인 검거 등으로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이건으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으며, 112종합상황실로 문책성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자녀 양육에 고초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B의 비위 등

B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같은 해 6. 경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과정에서 담당 학교 여중생인 C(15세)를 알게 되어, C와 2016. 3. 부터 같은 해 4.경까지 B의 차량, 주거지, 모텔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이하 'B의 성 비위 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기록 중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C는 당시 친부에 의한 성학대가 추정되고, 이성관계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나 분별력이 미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C는 2016. 5.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E와 상담을 하던 중 위와 같은 B와의 성관계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위 아동보호기관은 B에게 연락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B는 해당 기관에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후 자신의 상관인 소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직의 의사가 있음을 말하였다. 그런데 B는 그 이전에도 2015. 7월 경 위 학생 C와 이성교제 사실을 C의 부에게 발각되어 당시 상관인 ○

○계장 D가 학생의 부모와 면담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B는 같은 무렵 내근 근무로 업무 분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었다.

한편 소청인은 당시 ○○계장으로서 당시 B의 직속상관이었는바, 이 사건 감찰에서 '본인은 2015. 1. 경부터 ○○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고, B가 15년 하반기부터는 ○○전담경찰관 ○○으로서 내근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고, 평소 직원들이 학교 가는 것을 규제하거나 자제하라고 교양을 했다. 전임 ○○계장으로부터 B가 여학생과 교제 사실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지방경찰청은 2016. 7. 6. B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경찰청장은 같은 해 8. 17. B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방경찰청은 위 수사 결과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 하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9. 21.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이건 소청 결정 현재 검찰에서 B의 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증거 등 이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의 직속부하인 B는 2015. 2. 1. ○○경찰서 ○○과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6월 여중생인 C(15세)를 알게 되어, C와 2016. 3월부터 같은 해 4월 경까지 B의 차량, 주거지, 모텔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이로 인해 B는 같은 해 8.

17. B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고, 관련 형사 사건으로 현재 검찰에서 B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B가 단순히 직무와 관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으킨 단발적 비위가 아닌, ○○계 소속이자 ○○경찰관으로 보호·감독 대상인 어린 학생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인 연관 하에 이루어진 접촉 속에서 성 관계를 가진 비위로서 이를 두고 소청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다소간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직속상관으로서 부하직원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한 성 비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감독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소청인에게 행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 여부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청인이 비록 B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성 비위에 기한 파면 처분에 대한 1차 감독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핀바와 같으나, 소청인은 2015. 1. ○○경찰서 ○○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같은 해 3월경부터 B의 비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여학생과의 교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이 ○○계장에 부임하면서 전임 계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이를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는 등 이 건 이른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의 감독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B가 기존에 징계전력이나 형사 처분 전력이 없으며 소청인이 ○○계장으로 부임된 이후에도 별다른 마찰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B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감독하여할 고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비교적 찾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B의 성 비위 건을 인지한 당일 직속상관에게 즉시 보고하였으며 이 건 비위에 대한 서장 주재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B에 대한 의원면직 결정에 기한 사건 은폐나, 허위 보고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의 잘못에 비추어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감일등 함이 이 사건 비위 내지 책임의 정도와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정

그렇다면 소청인이 구하는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75 부하직원의 음주단속 업무 감독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소속 직원이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운전자를 측정 없이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한 보고는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후에 받았고, 이미 3일 이상 경과되어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점, 청문감사관실에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64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27. 부하직원인 B 경위가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운전자를 측정없이 보냈다는 사실과 관련, 다음날 경찰서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가운데 이 사건 발생 후 3일 후에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청문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관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어야 함에도 관서장에게 보고를 누락하였고, 주무과장으로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자인 D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조사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B 경위에 대한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소속 직원 B가 음주단속에 대한 트라우마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이로 인해 의무위반이 발생하였고 감찰조사에서는 의무위반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을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나, 다만 소청인은 자신의 의무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6. 17. 21:30 경 B 경위가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음주운전자 D 경위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행위책임),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감독책임)하지 못하여 직무태만의 비위사실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사실 관계는 징계사유와 다소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 6. 20.(월) 아침 9:00 B 경위가 교통관리계장인 C 경위에게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을 보고 한 후 같은 날 10:00경 C 경위는 소청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D 경위의 음주운전 관련 조사와 같은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B 경위가 이미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청문감사관실에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청문감사관실에서 엄정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추가적인 음주운전 관련 조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직무태만의 비위라고 하지만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인 20○○. 6. 18. 청문감사관실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D 경위를 접촉하여 사후조치(의원면직을 희망)를 한 상태로 6. 20.에는 이미 D 경위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관리계에서 당사자와의 접촉(진술)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수치를

측정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즉 이처럼 교통관리계에서는 이 사건 음주미측정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감독자로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행위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6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재직하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15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규정인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인 20○○. 4.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 2명, 실명 5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 1명 등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한 공적이 있다. 나아가 소청인 개인적으로는 현재 경감 18년차로서 경비·교통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상위계급 직위 직무대리를 1년 이상 근무하고 ○○지방경찰청 산하 21개 경찰서 중 경비기능성과 1위, 교통기능성과 3위를 달성하여 승진을 기대하던 차, 승진발표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소청인이 그동안 열심히 근무한 보람에 비해 너무 가혹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하직원을 좀 더 독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감독자로서 깊이 통감하나, 이 사건 견책 처분으로 인하여 20○○. 1. 경정심사 승진에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만큼 이 사건 견책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의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 3일이 지난 6. 20.(월)이었고, B가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사이에 도주한 관련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시점이 이미 시간이 3일 이상 경과되어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청문감사관실에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과 피소청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점과 관련하여 20○○. 6. 18.(토) 아침인지, 20○○. 6. 20.(월) 아침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가운데 B와 교통관리계장 C 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다음날인 6. 18. 아침에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C는 B로부터 보고를 받은 직후 소참모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소청인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6. 18.은 토요일이었기에 소참모회의는 없었고, 6. 20. 월요일에 소참모회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6. 18.에는 ○○ 플랜트 노조 집회가 있는 날로서 경비교통과장 C는 ○○경찰서장의 주최 하에 티타임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이 사건 보고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C와 소청인에게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지시의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6. 20.(월)이었다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자가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인

만큼 추가조사를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추가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6. 18.(토)이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청문감사관인 H와 부청문감사관인 I가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은 인지하고 ○○ 파출소를 방문하여 관련자를 만나 간단한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관련자에게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이 6. 18.(토)에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청인은 경비교통과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미 인지하여 청문감사관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청문감사관실에 일방적으로 미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소청인의 경우 비록 정식으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6. 18.(토) 아침 담배를 피우면서 타격대장 E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렇다면 교통관리계장인 C나 해당 직원인 B를 불러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던 점에 있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B가 20○○. 4. 교통사고 목격 및 신고 사건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고 교통관리계 외근 업무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이동을 희망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이르게 된 만큼 소청인의 감독자 책임이 인정된다 할 수 있다.

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은 B가 음주단속 관련 업무를 힘들어하며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B에 대한 직상감독자 및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이러한 고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방치하여 이 사건 음주 미측정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소청인이 B의 이 사건 음주 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점을 명백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보고의 시점과 상관없이 이 사건과 관련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미 인지하였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감독책임은 물론 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6 안전사고 감독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누수배관 교체 관련 용접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들이 상해를 입고 소방서 추산 15,000천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하직원에 대한 근무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이 사건 화재는 작업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는 점, 화재 발생 후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피시켜 작업자 외의 인명피해 발생을 막았고, 화재 확산을 막은 점,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67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관리소 ○○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직무태만

○○관리소 ○○지소는 2016. 1. 29. ○○ 용역 근로자로부터 ○○지소 어린이집 옥외 놀이터 상부 필로티 천장 내부의 누수사실을 보고받고 시공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마치고 작업 일정을 협의한 후, 2016. 2. 4. 10:30경 누수배관 교체를 취해 안전관리 용역 근로자 1명과 시공사 직원 1명이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필로티 천장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천장으로 튀어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작업자들이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기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실패한 후 사다리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5~6미터 아래로 떨어져 3도 화상 및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필로티 천장재 및 단열재(650㎡), 조명등 24개, 화재감지기 9개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안전의무 감독 책임 있는 소청인은 2016. 6. 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소청인은 ○○관리소 ○○지소장으로서 당해 비위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지위에 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지소 ○○ 청사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지난 ○여 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표창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하직원에 대한 근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11. ○○에 발령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6회 이상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전날에도 작업현장에 대하여 안전 상태 점검을 지시하고, 서면으로 이상 없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 당일에도 안전 관리를 지시하여,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은 없었다.

이건에 기한 형사 절차 진행 중 ○○지방검찰청 ○○지청 ○○조정위원회에서 용접 작업자가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는 것을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소방서 조사결과서에도 화재원인이 용접 부주의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용접 작업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임을 자인한 것으로 화재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 아니다.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기관장으로서 즉시 150여명의 공무원과 100여명의 민간인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작업자 외의 인명피해 발생을 막았고, 이후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 확산을 막아

피해 규모를 줄였다.

소청인은 ○여년의 공직 생활 중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없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 표창, ○○ 공무원 선정 등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청인은 2015. 11. 18.부터 ○○관리소 ○○지소장으로서, B는 2015. 11. 1. 부터 ○○관리소 ○○지소(이하 '○○청사'라고 한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바, ○○청사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소청인은 지소장으로서 ○○관리소 ○○지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B는 ○○청사의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 시설유지 관리, 용역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B는 2016. 1. 29. ○○ 조경위탁 직원 C로부터 ○○ 청사 내 어린이집 놀이터 천장에 있는 알루미늄 패널 부위에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 ○○의 안전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직원인 D, E 및 시설관리 직원들과 함께 이를 확인하여 누수 배관을 테이프로 묶는 등 임시 조치를 한 후, ○○ 청사 기계설비 시공업체인 ○○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누수 부분 배관을 절단하고 새로운 배관으로 용접하여 이를 보수하는 등의 수리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3) 위 ○○에서 ○○청사의 기계·설비 하자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 F는 2016. 1. 30. 위와 같은 누수 현장을 실사하여 확인을 한 후, B에게 '안전 및 화재 위험으로 천장 안에 들어가 작업하기 보다는 스카이 차량을 이용해 외부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B는 F의 의견과 같이 스카이 차량을 통해 누수 배관을 용접 등의 작업을 통해 수리·보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같은 해 2. 1. ○○ 측에 연락하여 같은 달 4.로 수리 일자를 정하였고, 소청인에게 누수 부분 수리 예정 및 작업 일자 등을 구두로 보고하였는바, 소청인은 위 보고를 받고는 '안전하게 잘 조치해라'고 답변하였다.

4) B는 2016. 2. 4. 08:30경 수리·보수 작업자 및 시설관리 위탁 직원을 상대로 현장 안전 교육 및 점검 실시하였다. 이후 같은 날 10:35경 F(추후 F는 용접 기사 등 용접 작업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와 보조 작업자 ○○ 직원 E는 누수배관 수리를 위해 스카이 차량에 탑승하여 ○○ 청사 2층 피트에 올라가 누수배관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누수 배관 주변에만 석면포를 사용(3m 상당)하고 천장 주변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누수 배관을 절단하고 새 배관 소켓을 잇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어 스티로폼 소재 천장에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F는 스카이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통해 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화기가 분사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불이 번지자 F와 E는 7~8M 높이에 있는 스카이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 소청인, B 등을 포함한 ○○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소화전을 연결하여 화재 진화를 하였고, 이윽고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55경 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진화되었다.

5)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F와 E는 3도 화상 및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청사는 필로티 천장재, 단열재, 조명등 화재감지기 소실 등 ○○소방서 추산 수리비 1,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소청인과 B는 업무상 실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상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건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신문 시 소청인은 '공사 관련 보고를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화재 당일에 공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실무자가 안전 조치 등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B는 '석면포는 D에게 지시하여 화재 전일 구입을 하였고, 배관 주변만 감싸는 데는 무리가 없는 양이었다. F가 용접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몰랐었고, 소화기는 ○○ 측에서 압력 체크를 하였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소청인, B를 포함한 D 등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 5. 9. 피해자인 F, E와 ○○지방검찰청 ○○지청 ○○조정위원회 주재의 형사조정을 통해 형사 합의를 하게 되었는바,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같은 해 6. 8. 소청인, B의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내지 동종전력이 없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7) ○○관리표준안전수칙(제정 1999.12.15 ○○관리소 예규 제1호) 제2조는 작업자는 작업여건에 맞는 필수적인 안전 장비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 소화기, 물통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수칙 제3조는 공사장 주변의 인화물질 등 위험요인은 공사 전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청사 안전사고 매뉴얼 및 안전수칙에 따르면 작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며 주변 발화요소 및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시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 사유에 대한 주장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화재는 작업자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자신의 지위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소방 등 안전 관리 실무자로서 발화 가능성이 높은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 장소 특히 인화성, 가연성이 강한 물질인 스티로폼으로 소재 이루어진 천장에 대한 방화재인 석면포를 충분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용접 작업 관련 자격이 없는 작업자의 용접 작업 중 용접 불꽃이 천장으로 튀어 발화되는 바람에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초기 발화시 스카이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계속된 연소로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되었고, 소청인은 ○○지소장으로서 해당 청사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방화 관리의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B로부터 이건 배관 용접을 통한 보수 작업 내용을 보고 받아, 그 특성상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실시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히 화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시 등을 하거나 그 이행 사실을 확인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작업자인 F는 3도 화상 및 척추 골절, 폐쇄성 등으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E는 요추, 발, 골반 등이 골절되었으면 다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소방서

추정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청사건물이 소훼되는 결과를 발생하였는바, 소청인과 B는 이로 인해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형사 처분을 받아, 소청인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등 피의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소청인은 작업자의 과실로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작업자들의 작업 부주의가 이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소청인의 직무상 과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여러 개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화재의 발생을 가져온 최초의 과실, 직접적으로 원인된 과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또 다른 과실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 과실이 경합에 따른 화재나 손해 발생에 이른 경우 소청인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기여정도의 대소는 불문(또 이를 징계 양정에 참고 여부는 별론), 앞서 인정한 소청인의 직무소홀과 이건 화재의 발생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지위에 따른 직책에 기하여 ○○청사 내 시설 관련 공사 추진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청사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 결과를 발생시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본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에 대한 주장 판단

앞서 든 증거 등과 이 사건 제반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관리소 ○○지소장으로서 해당 청사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방화 관리의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청사 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보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화재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3도 화상 및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청사 시설은 1,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라는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면,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성실의무 위반 중 다목 부작위·직무태만 혹은 라목 소극 행정의 경우 소청인의 직무 위반 행위가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감봉 내지 견책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가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7 소속 대원의 가혹행위 감독 소홀(견책→취소)

처분요지

소속 대원 일경이 같은 소대 이경의 뺨을 잡아당기고, 욕설 및 가슴부위를 멍들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대원들 대상으로 면담을 월 8회에 걸쳐 실시하였음에도 피해대원이 가혹행위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아 알지 못한 점, 골절로 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원들과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을 함께 한 점, 피해대원이 가해대원과 화해한 점, 전보조치로 심적 고통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피해대원에게 관심을 갖고 성실히 관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점, 현실적으로 가혹행위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소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없다는 일관된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사　　건 : 2016-71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10. 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 소속 일경 B(이하 가해대원이라 한다)가 2016. 7. 27.경~8. 21.경 같은 소대 이경 C(이하 피해대원이라 한다)의 좌측 뺨 부위를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약 13회 정도 잡아당기고, 일자불상경 피해대원이 ○○순찰대 버스의 좌석 등받이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로, 명찰을 뒤집어 맸다는 이유로, 출동 시 물 가방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보다 머리카락을 길렀다는 이유로 피해대원에게 "야이 씨발놈아" 라는 욕설을 4회 하였으며, 같은 해 8월 하순 경, 1소대 2생활실에서 피해대원의 가슴 부위를 양손 검지로 각각 약 10여회 눌러 직경 약 1cm 정도의 멍이 들게 하는 가혹행위 등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고「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및「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제5조(감독자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 29.자로 ○○경찰서 ○○순찰대 ○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원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였고, 특히 대원들을 대상으로 정식면담 및 간이면담을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대원을 대상으로 월 8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애로사항을 물어보며 유심히 관찰했음에도 피해대원이 가혹행위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아 미처 알지 못한 사정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최선을 다하여 대원을 관리하였음에도 결과만을 두고 소청인에게 징계처분 한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이 201○년 ○○지방경찰청 ○○대 근무 당시 '○○대회' 훈련 중 우측 슬개골 및 우측 척골상단을 골절하여 장애 판정을 받은 점, 그럼에도 대원 관리를 위하여 대원들과 함께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을 함께 하며 대원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노력한 점, 200○년 경찰공무원 임용 이래 어떠한 비위행위 없이 ○○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받은 점, 피해대원이 가해대원과 원만히 화해한 점, 소청인은 원처분 외 전보조치 되어 심적 고통이 컸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1) 이경 C는 일경 B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가혹행위 일시 및 구체적인 행태 등에 대하여 수첩에 세세히 기록해 놓았다.

2) 일경 B는 정확하게 가혹행위를 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경 C를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 C가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가혹행위를 한 것이 맞을 것이라며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이경 C는 일경 B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피해를 주장하며 ○○구 소재 ○○피부과로부터 '상세불명의 여드름'으로 병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였고, 피소청인이 직접 ○○피부과 담당 의사에게 확인해 본 바, 담당 의사는 "2016. 8. 30. 피해대원이 내원하여 여드름 관련 진료를 원하여 진료해 주었고, 2016. 9. 21. 다시 내원하여 코피지와 여드름 관련 진료를 받으며 '가해대원이 볼을 잡아당겨 여드름이 생겼다'며 진단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이들 간 연관관계가 희박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어 대신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일경 D와 일경 E는 이경 C와 함께 일경 B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상황과 관련하여 그저 장난스럽게만 기억하고 있어, 개개인의 입장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 대원의 진술이 조사과정에 있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5) 이경 C는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해) 많이 신경 써주는 부소대장님과 소대장님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고 열심히 군생활을 하려고 하였는데 복무점검단이 와서 자꾸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말해 보라고 하여 말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6) 일경 B는 “1주일에 한 번씩 4층 강당에서 전 대원들이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한테(가혹행위 금지) 교육을 받는데 저의 소대장님한테도 가혹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부소대장님한테는 평소에 면담하거나 소대원들 전체 교육 중 지속적으로 금지 행위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데 구체적인 날짜와 일시는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받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7) 대원들의 정기면담 및 간이면담은 각 월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해대원이 2016. 7. 27. ○○경찰서 ○○순찰대로 전입하여 2016. 9. 8. 이 사건이 최초 인지되기 전까지 소청인은 피해대원을 대상으로 정기면담은 2회, 간이면담은 7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당해 대원들의 1차 감독자로서 평소 대원들 간 구타 등 가혹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직무는 물론 가혹행위 발생 후라도 대원 간의 소통으로 이를 최대한 빨리 인지하고 피해대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한편 가해대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원들 간 질서를 유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고 소청인은 소속 부대에서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경찰청 ○○팀에서 피해내용을

직접 적발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경 C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이상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경 C의 가족 관계, 이성 관계, 향후 직업에 대한 생각, 현재 감정 혹은 신체 상태,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실제 피해대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관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경 C의 피해 정도, 가혹행위를 당한 시점, 발생 장소 등을 종합할 때 현실적으로 소청인이 가혹행위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대원, 가해대원을 불문하고 소청인이 부소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6]에서는 가해대원이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직상감독자는 견책 처분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규칙 5조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2항 제5호에서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거나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이 소청인이 평소 소속 대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였고,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소청인에게는 징계 책임의 감경 또는 징계 책임을 면해 줄 여지가 있다. ④ 비록 견책 처분이「국가 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승급이 제한되고, 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에게 소속 대원들 간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더라도 앞서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의 권고나 지도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 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소속 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여 대원들의 구타 내지 가혹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실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이 평소 소속 대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대원들은 물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소속 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원 관리 감독에 충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체 경고 · 주의 등 다른 행정 처분으로 소청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2 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78 종합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소홀(경고→기각)

처분요지

2014년 종합감사 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현지시정 요구하였으나, 2015년 종합감사 착수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위로 경고 처분

소청이유

의제배당 여부 판단 및 과세결정을 요구한 현지시정감사 처분 지시가 부적절한 점, 의제배당 과세는 매우 난해한 사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기 어려워 후임에게 인계했던 점,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126　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2014. 12. 3.~12. 23.) 결과, 관내 법인 ○○(주)의 자본 감소와 관련한 B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현지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2015년 종합감사(2015. 12. 3.~12. 22.) 착수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인사)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현지시정감사 처분지시 부적절

○○(주)는 현재 가동법인이므로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면 '○○과'에서 의제배당과세를 확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에게 배당소득원천세 고지결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에 직접 의제배당 여부 판단 및 과세결정을 요구한 현지시정감사 처분지시는 부적절하였다.

나. 업무 난이도로 인해 조속한 업무처리 곤란

의제배당과세에 관해서는 조세전문가 사이에서도 법리해석과 사실관계에 있어 갑론을박이 분분한 매우 난해한 사안으로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 판단하여 처리하기에 애로가 있었다.

또한 당해 법인이 본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B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B가 당해 법인에서 주식감자처분 의사를 결정하는 데 무관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처분 시 거액의 추가부담세액으로 인해 납세자 권익 침해, 조세마찰, 과세권 유지 불확실성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했으며,

만성적인 업무 과중 및 때마침 ○○청 차세대전산시스템 교체(2015. 2. 23.)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미처 본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2015. 6. 17. 내부인사(○○계 근무에서 ○○계 팀장으로 보직변경)로 후임에게 인계(2015. 6. 22.)하였다.

다. 처분의 가혹성·부당성

본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담당 근무기간은 4개월 15일에 불과(2015. 2. 2.~2015. 6. 17.)하고, 의제배당 과세적법성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조세채권을 일실한 상황이 아닌데도 단지 담당기간 내 미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인사경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또한 2014년 감사 시 지적된 타 지적사항 중 소청인 담당기간(2015. 2. 2.~6. 17.)보다 늦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2015년 감사 시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건 감사지적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본 건 감사지적에 대해 2015. 6. 17.까지 처리하여야 한다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감사 착수시점 까지 미처리하였다 하여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36여 년 동안 국세청장 표창 4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지병인 당뇨로 인해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데 인사경고에 따른 타서 전출 시 건강관리가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과'가 아닌 '○○과'에 의제배당 여부 판단 및 과세결정을 요구한 현지시정감사 처분지시가 부적절하였다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사결과 처분지시 사항에 대한 소관 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즉시 업무 소관에 대한 조정·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기관 차원에서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공문이 접수되고 담당으로 배정받은 이상 이 지시에 대해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상급자 보고 등을 통한 기관 차원에서의 조정 절차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처분지시 내용으로 인해 소관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지시사항 불이행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제배당과세가 매우 난해하고, 거액의 추가부담세액에 따른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소청인의 담당

근무기간은 4개월 15일에 불과하고 감사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2015년 감사착수 시점까지 미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인사경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같은 기간 지적된 타 지적사항 중 소청인 담당기간보다 늦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2015년 감사 시 지적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업무라는 점에서 소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담당한 약 5개월 여의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담당기간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본건을 처리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실질적 행위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과에서 ○○과로 공문통보 시(2015. 1. 30.) '즉시 처리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라고 기재하였고, 매년 종합감사 시 직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전말을 우선 확인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업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사결과 시정사항은 기한 없이 지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처리하려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본건은 2014년 감사결과 시정사항을 2015년 감사 착수 전까지 미처리한 결과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처리를 완료한 사례의 처리기간과 소청인의 관련업무 담당기간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잘못이 인정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중요 업무인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 처리하려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이후 처리절차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점, 또한 업무소관 및 관련사항이 불명확하고 난해하다고 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관에 대한 조정 협의나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사항에 대한 다각적 검토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청인 본인과 소속기관 내 타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세무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원처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9 수사과정 중 부적절 언행(경고→취소)

처분요지

급박한 체포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사안임에도 다수의 경찰관이 임의수사 명분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과 기공사에게 혐의사실을 확인하려다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경고 처분

소청이유

기공사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조용히 대화할 장소가 있는지 물었고, 없다고 하기에 소파로 가서 방문 이유를 설명하려 했던 점, 임의수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므로 방문 이유와 범죄 혐의를 설명하려던 것인 점, 민원인의 오해로 사실과 다르게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서 문책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6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사　　건 : 2016-266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4. 6.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 11.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 관련, 병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거나 피의자들에 대해 급박한 체포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사안임에도 다수의 경찰관이 임의수사 명분으로 사전고지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민원인이 진료 중이고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치과기공사에게 혐의사실 확인하려 한 점,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혐의내용에 대해 기소하겠다며 단정적으로 말한 점, 개인정보가 포함된 환자 진료 차트를 현장에서 즉시 임의제출 요구한 점 등 수사 과정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민원인이 진료 중이고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기공사에게 혐의사실 확인하려 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5. 10. 중순경 ○○시 치과의사회로부터 ○○구 관내 치과에서 기공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사무장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진행 중, ○○시 치과의사회 법제담당이 위 치과의 무면허 의료행위 동영상 CD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방문하여 이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였고, 동시에 치과의사회에서 ○○구보건소에도 고발을 했다고 하여 보건의료과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위 치과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된다는 진술을 받아 범죄 인지하였다.

치과의 구조와 위치 파악, 실제 기공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2016. 1. 11. 소청인 외 2명(나중에 차량운전 직원 합류)이 치과를 방문하였더니 환자 1명이 1번 유니트에 누워 원장(민원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고, 카운터에는 위생사로 보이는 직원 2~3명, 안쪽에서 기공사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으며, 진료를 보던 민원인이 무슨 일이냐고 하여 진료 계속하시라고 말하고 기공사에게 소청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어디 조용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하였고, 그나마 넓은 환자대기 소파가 있어 그곳에서 가지고 간 사건기록 중 기공사가 진료하고 있는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방문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민원인이 소리를 치며 따라 나오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치과 밖으로 나갔다.

치과를 방문했으니 방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므로 범죄 혐의 또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설명을 하려 했던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혐의내용에 대하여 기소하겠다며 단정적으로 말한 점에 대하여

민원인이 나오라고 하여 따라 나갔더니 치과건물 4층과 5층 중간계단으로 데려가 왜 방문을 하였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업무방해다, 편

파수사다, 청탁수사다' 등을 운운하며 소청인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임의수사가 불가능하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돌아서는데, 그때서야 무슨 이유냐고 물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여 사건 진행사항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임의 제출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구보건소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며 CD 동영상 자료만 보아도 무면허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해서, 경찰 측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출석하면서 유리한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시면 된다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설명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환자 진료차트를 현장에서 즉시 임의제출 요구한 점에 대하여

민원인은 소청인이 방문한 이유를 알게 된 후 소청인에게 흥분하여 항의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동의하는지 물었더니 진료차트는 개인정보라서 환자에게 물어보고 제출해도 좋다고 하면 출석하면서 가져다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 즉시 현장에서 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사무장 병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병원에서 거래하는 계좌, 개인 계좌, 기공사의 계좌내역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관계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자료 요구는 그때그때 해도 협조하겠는지 묻고 수긍하기에 경찰서로 돌아온 것이다.

라. 결어

소청인은 한 점 부끄럼 없는 수사를 진행하였고 관계자들 모두에게 부당한 대우나 억압, 강요에 의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 민원인은 우리 서 청문감사관실, 국가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억압, 강요를 당했다고 진정한 것이고, 그럼에도 경찰서장님은 진정 내용을 불문에 붙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독려하였으며, 그 과정에 민원인의 범죄 혐의가 기공사와 공모하여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닌 영업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건범죄에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으로 의율수사 중이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틀니 교정, 배열, 본뜨기의 치료행위를 기공사가 도맡아 하였고 기공사의 진료행위를 치과위생사가 진료차트에 허위로 기재하고 민원인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변호사를 통해 민원인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의 청탁에 따라 수사관들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오해하여 진정을 하였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취소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소청인은 범인검거 과정에서 신분증을 분실한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6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찰조직은 물론 국가에 누를 끼치거나 민원 또는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번 일로 열심히 소신껏 일하고 있는 소청인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경찰서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서 청문관께서는 격려하고

성원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소청인의 명예회복과 경찰조직을 무시하는 민원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며, 소청인이 민원인을 상대로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라도 중요 사건 및 악성민원 상대 수사 시 민원인 같은 진정이 있을 때 같은 동료들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청을 하게 된 이유도 있고, 민원인의 오해로 사실과 다르게 진정을 제기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기공사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조용히 대화할 장소가 없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하기에 환자대기실 소파로 가서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방문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민원인이 나오라고 소리쳐서 아무 말도 못했고, 임의수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므로 방문 이유와 범죄 혐의를 설명하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6조(임의수사 원칙)는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제49조(사실확인 할 때 유의사항)에서는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청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확인을 위해 사전고지 없이 민원인의 병원을 방문한 것이고 현장에서 방문 이유를 설명하려던 것이었다는

주장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과정에 상대방의 업무에 장애를 줄 여지를 최소화하고 당사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혐의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등 민원인이나 기공사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있는 대기실에서 기공사와 사건 내용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다소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기소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 경찰 측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리한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설명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1. 25. 소청인이 서면으로 작성·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민원인에게 사건 설명을 하면서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 중인데 사무장 병원에 대하여는 이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판단을 하여야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확보한 자료들로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안 할 수가 없다.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 유무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고 만약 재판까지 넘어가면 판단은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한다.

민원인이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여 소청인이 임의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말한 상황이었고, 이에 민원인이 무슨 일인지 묻고 그에 답하는 과정이라면 오해의 빌미가 될 발언을 삼가야했음에도 기소 의견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다소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이나 기공사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 등 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임의수사 명목으로 사전고지 없이 최초로

병원을 방문한 시점에 담당수사관이 기 확보된 자료들을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청인이 유죄로 결론을 내리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원인이 화를 내며 경찰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하여 수사 진행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시키고자 했던 의도이고 민원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라는 안내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 소청인이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수사를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볼 정황도 없는 바, 이 부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현장에서 진료차트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인에게 임의수사에 동의하는지 물었더니 진료차트는 환자에게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의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임의수사 단계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청인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 사실상 강제성을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이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를 줄 수는 없다. 환자한테 여쭈어 보고 환자가 동의하면 주겠다", "필요한 서류를 말해 달라" 등의 말을 했고 이에 소청인이 준비서류의 목록을 적어주고 갔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실제 현장에서 강제로 관련 자료를 가져온 사실도 없는 바, 그 과정에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청인은 민원인의 오해로 사실과 다르게 진정을 제기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보건대 민원인과 소청인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각각에 대해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으며 이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민원인의 '편파수사, 인권침해, 부당한 업무처리, 불친절'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문 결정한 사실이 있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찰서의 불문 결정 이후 민원인을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청취한 반면 소청인에 대해서는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자료(소청인의 답변서 및 진술서 포함)에 근거하여 소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 중 '수사 과정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 야기'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하였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수사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서 문책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교양 또는 지시 등의 방법으로 행태 개선을 촉구하거나 경각심을 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 처분이나 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없는 점, ○○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0 구매계약 장비 납품 검수 소홀(불문경고→취소)

처분요지

공고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가 납품되었음에도 시험성적서 검토 및 현장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검사조서에 서명하여 규격 미달의 장비가 납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비위로 불문경고 처분

소청이유

방폭무전기 배치 이후 2년 동안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점, 징계요구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납품 단계에서 소청인이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큰 점, 입찰시 경쟁사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쌍방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한 점, 공정한 민원처리와 물품검수를 위하여 공개검수를 실시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한 점, 납품한 방폭무전기 등 통신장비의 규격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에 이르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사　　건 : 2016-296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조대　　소방교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4. 19.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본부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11. 21.부터 2014. 11. 18.까지 舊 ○○청 ○○본부 ○○팀에서 현장지휘업무를 담당하며 2014. 1. 15. ○○(대표이사 C)과 구매계약을 맺은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같은 해 3. 1.부터 3. 14. 까지 위 무선통신장비의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청인은 2014. 2. 19. ○○으로부터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가 기술규격서에 미달된다는 ○○(대표이사 D)의 민원이 제기되자 2014. 3. 6. 전문자문위원 및 업체 관계자(○○ 및 ○○ 관계자 포함) 12명의 입회하에 공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자문위원인 E로부터 납품된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검사하고, ○○본부에서 기 보유중인 무선장비와의 호환 여부는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시험성적서 등이 기술규격서에 미달하거나 기존 무선장비와의 데이터 송수신 등의 호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계약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계약상대자인 ○○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러나 소청인은 전문자문위원 E의 제안에 따라 -20℃~+55℃의 환경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서도 이를 검토하거나 현장검사를 하지 않은 채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2014. 3. 14. 적합한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감독공무원인 소방위 B에게 제출하였고, B는 계약부서인 ○○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또한, ○○원 감사기간 중인 2015. 6. 22.~6. 23. 까지 기술규격 충족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절차에 따라 납품규격을 확인한 결과 ○○으로부터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와 기 보유중인 무선통신장비 간에 맨다운 기능, GPS 전송기능 등 데이터 송수신이 구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에 한글 키패드가 없어 문자작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구조대원들이 현장활동 시 사고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시험성적서 등이 기술규격서에 미달하거나 기존 무선장비와의 데이터 송수신 등의 호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계약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문제점을 시정조치 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검수 보고서를 적정하다고 작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당시 6개 ○○센터가 개소하는 시점에서 물품 미 납품시 무선통신장비(무전기) 없이 현장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고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가 납품되었음에도 적합한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검사조서에 서명하여 규격 미달의 장비가 납품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문책이 불가피 하나, ○○처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경위에 대해

소청인은 2013. 11. 21. ○○본부로 전입하여 ○○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2. 30. 계약이 체결된 ○○구조대원 방폭무전기 등에 대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14. 1. 15.~2014. 3. 14.의 기간 중 동 물품에 대한 검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

소청인은 방폭무전기 구매 건에 대한 ○○원 감사(2015. 6. 8.~2015. 7. 17.) 결과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시험성적서 등 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일반무전기와의 일부기능에 대한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지 않아서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50°C 이상의 극한환경에서 기능 작동이 보장되지 않아 원활한 사고대처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2013. 2. 2. 징계처분 요구되었고, 피소청인은 2016. 4. 19. 소청인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나. 감사원 감사결과의 명확성 결여 및 사실오인에 대해

1)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제품 납품과 시험성적서 검토 소홀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납품된 무전기의 성능에 대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방폭 기능을 신뢰할 수 없으며, 통신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방폭무전기 배치 이후 2년 동안 ○○센터 대원들이 ○○ 특수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이후 방폭무전기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임자들의 과도하고 잘못된 규격 설정, 타 장비들과의 통합계약 체결, 사업자 간 민원제기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였다.

소청인은 기타 장비들과 통합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방폭무전기만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였고 전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폭무전기 납품 업체가 2개사에 불과하여 재구매를 추진을 하더라도 그 중 하나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2개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방폭무전기가 ○○본부에 처음으로 도입되고 계약 탈락업체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문자문위원, 계약업체 및 민원업체, 계약담당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하는 공개검수(2014. 3. 16.)를 실시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연구원 및 ○○인증센터 등 전문기관과 시·도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문의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가) 납품제품 규격은 기술규격 대비 동등 이상이며, 특히 방폭성능에

있어서 납품제품이 민원제기 업체 제품보다 우수하다.

나) 무전기 통신품질에 관계된 '주파수안정도'는 제시 기준규격(±0.5ppm)에 방폭무전기 납품 가능한 2개사 모두 납품이 불가한 관계로 과도한 규격임을 인정하고 현재 소방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안정도 적합 국내기준(±1.5ppm)을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였다.

다) 통신품질에 관계하여 또 하나의 기술규격(-75dB)로 제시된 '스퓨리어스 억압' 부분 미달은 휴대용 방폭무전기가 아닌 같이 도입된 차량용 무전기에 대한 감사결과로서 국내에서는 적합성에 대한 인증 공인기관이 없기 때문에 2개 제작사의 해외인증을 검토한 결과 ○○사는 미국인증으로 -75dB, ○○사는 미국인증 -75dB 및 유럽 인증 -70dB로 명시되어 있어 양사를 동일조건에서 비교 가능한 미국인증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소청인은 방폭무전기 공개검수를 통해 시험성적서 등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공개검수에 참석한 계약 담당공무원, 민원제기 업체 등 참석자 전원이 방폭성능이 우수하고 다른 기능에서도 동등이상 규격의 제품이 납품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며, 만약 당시 절차의 공정성이나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면 민원업체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인해 방폭무전기 납품을 포함하여 통합계약이 되어있는 6개 ○○센터 상황 수보시스템 구축은 지연 되었을 것이다.

소청인은 납품업체 및 탈락업체 양 본사 기술 인력까지 참석한 공개검수이기에 그 누구도 어떠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 공개검수를 한 것에 감독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업무관련 상급자로부터도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2) '일부기능 호환성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징계이유에서는 공개검수 시 전문자문위원으로부터 '수요부서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 일반무전기와 신규 도입되는 방폭무전기 간에 데이터 송수신의 호환에 따른 GPS 기능, 맨다운 기능 및 비상알림통신 등의 작동 여부는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받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문자문위원 E는 당시 이미 양 회사의 제품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음성 송수신 등 대부분의 기능은 호환이 가능하나 2개 제작사 간 무전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문제로 GPS 기능, 맨다운 기능 및 비상 알림통신, 문자전송에 한하여 호환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문자문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장검사를 하라고 한 적은 없었으며 '○○청 유권해석 사례집 제1장 6항에 의거하여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보다 기능이 동등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검수담당자 시험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을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납품업체가 입찰 참여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호환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무전기와 일부기능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나 ○○센터에서 사용하는 최초 방폭무전기로 기존 무전기가 없으니 호환성과 관련해서는 입찰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지만 공개검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정확한 검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논의하였고, 그 결과 특정회사에만 치우쳐 호환성에도 문제가 되었음을 민원업체도 인정하여 민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소가 된 것이다.

3)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대하여

기존 보유 일반 무전기와의 방폭무전기 간 4가지 기능이 호환이 되어야 안전이 확보된다는 감사결과는 타당하지 않다. 납품 제품은 방폭무전기가 사용되는 ○○ 현장에서 방폭무전기 간 4가지 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이 호환되며, 특히 방폭 고유성능이 뛰어나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어 ○○ 현장 출동 시 사용하고 있다.

○○센터에는 현재까지도 일반 무전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만약 대원들에게 출동 시 사용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전이 확보될 수가 없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사와 ○○사 제품이 양분하고 있는데 현재 ○○ 등 11개 시·도에서도 두 회사의 무전기를 같이 사용하여 현장 활동을 하고 있다.

4) 「+50℃이상의 극한환경에서 기능 작동이 보장되지 않아 원활한 사고 대처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에 대하여

수요부서 기술규격에 무전기 작동온도 범위가 −20℃ ~ +55℃까지 되어 있는데 납품된 제품의 카탈로그에 −20℃ ~ +50℃ 까지의 온도만을 반영한 감사결과로 납품업체가 제출한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공인 인증시험기관인 ○○에 발행한 시험성적서에는 더 열악한 환경인 −20℃ ~ +60℃까지 인정받아 기술규격 대비 동등이상이 인정되며 공개검수 시에도 참석자 전원이 시험성적서를 인정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행정처리의 부당성

2016. 2. 2. 감사원에서는 ○○처(○○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 문서를 시행하였으나(소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2016. 3. 4.에야 전자메일과 문자를 통해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를 통보함에 따라 감사원법 제36조 규정의 재심의 청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소청인이 이를 알았다면 감사원에 재심의신청을 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오해를 적극 해명하였을 것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행정적인 부분과 방폭무전기 도입에 대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013. 11. 국가직 전입 시 전임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상황에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점, 과도하고 잘못 설정된 방폭무전기 규격기준, ○○센터 ○○시스템 장비 사업이 통합계약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방폭무전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가하였고 ○○센터 개소 완료에 따른 방폭무전기 배치가 시급하였던 점, 극심한 민원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다각도 검토와 적극적 행정으로 ○○본부 최초로 전문자문위원과 민원업체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공정한 공개검수를 실시하여 우수한 제품을 배치토록 하여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보호에 기여한 점과 ○○센터들이 현재까지 총 500회가 넘는 특수한 재난현장 출동에도 방폭무전기에 어떠한 이상도 없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점, 검사공무원으로서 민원업체가 인정할 정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최적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가능케 한 점을 참작하고,

방폭무전기 도입 사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감독공무원으로서 다각도의 검토와 적극적 행정으로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공개검수를 실시하여

방폭성능이 우수한 기술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을 ○○센터에 긴급하게 배치하도록 한 점,

방폭무전기 감사와 동일 기간에 ○○ 감사를 중복하여 받으면서도 새벽까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여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를 최초로 구축하는 등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감사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처 ○○실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요구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감사원법」 제36조 규정의 재심의 청구를 통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등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의 청구인은 처분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과 같이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위 요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감사원법 제36조에 기한 재심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비록 감사원법에서 정한 재심 절차가 소속 장관 등 기관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해도, 이로 인한 감사 결과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요구에 까지 이르러 신분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

에서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을 소청인에게 한 달이 도과한 시점에 알림에 따라 소청인의 해명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었던 점은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처분 사유의 존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은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인은 舊 ○○청과 ○○(대표이사 C) 간 무선통신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검사공무원으로서 방폭무전기 등 납품된 물품이 당초 공고된 기술규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알려 계약 파기, 대체 납품, 하자 보수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당초 공고된 기술규격과 납품된 방폭무전기 등 통신장비의 규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납품된 물품을 '적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부서인 ○○팀에 검사결과를 통보한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납품된 물품이 당초 규격에 비해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작동온도 범위'의 경우 2014. 2. 26. ○○에서 제출한 시험성

적서를 보면 기술규격인 -20℃~+55℃ 외에 60℃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과, '스퓨리어스 억압'의 경우 공고된 규격서 상에 '75dB'라고 규정하였을 뿐 인증기준이 유럽 또는 미국기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와 비교가 가능한 미국인증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 'ATEX 분진등급'의 경우 전문자문위원 E가 -20℃~+55℃ 조건에서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자문하였음에도 ○○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등 확인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주파수 안정도'의 경우 납품된 ○○무전기에 대해 ○○에서 제출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공고된 기술 규격 상 허용편차 '±0.5ppm 이내'를 초과하는데도 전파법 시행령 상 주파수 허용편차 기준이 ±1.5ppm인 점과 타 지방○○본부에서 무전기 구매 시 ±1.5ppm를 규격으로 하는 점, ○○ 방폭무전기 역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등을 근거로 '적격'으로 판단하였는데,

당시 전문자문위원 E의 자문 내용을 보면 '주파수 안정도 ±0.5ppm 이내에 적합여부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의 판단을 요함'이라고 하여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2014. 12월 ○○에서 공고된 기술규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도 주파수 안정도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더라도 규격 변경 및 재계약 등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당시 검사 및 감독공무원인 소청인이 임의로 '적격' 판단한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4) '기존 일반무전기와의 호환' 관련하여 기술규격에서 '모든 기능에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검수 당시 호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계약해지 조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여진다. 다만, 동 사업이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기존 무전기인 ○○ 외의 무전기가 납품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자문위원 E가 의견서를 통해 당시 ○○와 ○○ 무전기 간 일부 기능이 호환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어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수담당자에게 판단하라고 자문 하였다고 하여 징계이유에서 현장확인 절차를 하도록 자문하였다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기존 ○○ 무전기와 ○○ 방폭 무전기의 일부 기능이 호환이 제한되는 원인이 ○○사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소청인의 주장에 수용할 만한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소청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적격' 판단한 사실이 불가피했다거나 납품 물품이 규격에 비해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는 점이 명확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처분 재량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하는 처분 사유를 바탕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경우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징계의결이 가능하며, 기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수준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의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에게 행하여져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술규격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청인 및 피소청인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초 설정된 이 사건 구매계약의 기술규격이 납품 가능한 물품의 조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등 적정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납품 단계에서 소청인이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큰 점, 소청인은 입찰시 경쟁사인 ○○과 ○○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쌍방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검사공무원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한 점, 공정한 민원처리와 물품검수를 위하여 납품업체인 ○○과 납품된 무선통신장비가 기술규격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 전문가가 참가하는 공개검수를 실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 점, 당시 ○○센터가 2013년 신설된 상태였고, ○○ 등 5개 ○○센터도 2014. 1월 중 신설되어 방폭무전기 공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이 ○○이 납품한 방폭무전기 등 통신장비의 규격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에 이르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이 건 당시 및 전후 경위를 살필 때, 소청인에게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소청인의 경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등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부가한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는 주의나 경고 등으로 각성을 촉구

하거나,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 보임에도, 공무원으로서 각종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이건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정

따라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1 보고업무 소홀 및 지시명령 위반(주의→기각)

처분요지

수용동 전기선로 증설공사 계호근무와 관련하여 보고 불철저 및 직무와 관련한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비위로 주의 처분

소청이유

소명의 기회 없이 일방적인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해 보이는 점, 작업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 교도소로 복귀하여 대면보고를 상세히 한 점, 당직자로부터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불복종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301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교정청 ○○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6. ○. ○.부터 ○○과 공사 전담 근무자로서 2016. ○. ○. 교도소 수용동 전기선로 증설공사 계호(戒護) 근무와 관련하여 보고 불철저 및 직무와 관련한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책임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교도관 직무규칙」 제3조(기본강령) 및 제7조(직무의 처리) 등 교도관의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5. 5. 어린이 날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출근하여 잔업을 하고 작업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 근무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 퇴근하였는데 당직 간부의 전화를 받고 작업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에 교도소로 복귀하여 대면보고를 상세히 하였으므로 보고 불철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작업계호가 중요한 업무였다면 사전에 교육을 하거나 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당직자로부터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지시나 명령에 불복종 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평일이 아닌 휴일 근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완료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당일 소청인도 타 직원과 같이 퇴근하였는데 당직 감독이 소청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소청인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선처나 해명 등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 부당하다.

3. 판 단

가. 처분 절차 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주의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처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 의결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정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의' 처분은 법이 정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나아가 절차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의 정함은 없고,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24호, 2016. 4. 14.)의 공무원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에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공무원을 지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정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이 2016. 5. ○. 부서장(○○과장)에게 해당 처분의 대상 사실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소청인은 처분 이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주의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결론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주의 처분에 앞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의 처분이라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 사유 존부 판단

1) 보고를 불철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2016. 5. 5. 어린이 날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출근하여 잔업을 하고 평소보다 빨리 끝나 근무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 퇴근하였다가 당직 간부의 전화를 받고 작업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에 교도소로 복귀하여 대면보고를 상세히 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보고 불철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령 「교도관직무규칙」 제7조(직무의 처리)에서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974호) 제19조(교도관 근무일지 작성 등)에서 '① 수용동, 작업장 등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해당 근무지에서의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교도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근무 종료 후 보안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교정시설 보안근무 운영지침 개정(안)」(2015. 1.)(법무부예규 제1078호) 제15조(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근무)에서 '①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근무는 당무일근자가 담당한다. ②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근무 인원이 부족한 경우 그 지원근무는 보안일근자와 사무근무자가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16. 5. 9. ○○교도소장으로부터 2016. 5. 5.(목) 09:00~18:00 까지 B와 함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휴일 일일 근무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근무 후에 해당 근무지에서의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기록한 '교도관 근무일지'를 근무 종료 후 당직 교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당일 16:00경 교도소 내 전기 선로공사 계호 근무를 마치고 작업내용, 특이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당직교감에게 보고 없이 퇴근한 사실과, 당직 교감이 휴대폰으로 소청인과 통화(약 10분 정도)하여 기록되지 않은 근무일지의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작업인원은 '○○시스템'에 올렸고 전기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모르니 전기기사(B)에게 물어보라는 등으로 답변하였고, 소청인이 17:25경 다시 복귀한 후에도 당직교관의 근무일지 기록 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당직교감과 대화중에 언성을 높이고 작업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당직(교감 C) 및 동료(교위 D)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작업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와 보고를 철저히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고,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교도관이 쓰고 있는 '교도관 근무일지'는 당일 상황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소청인도 상세하게는 기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기록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에서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당직교감에게 사과한 사실로 보아 당일 진행된 교도소내 전기 작업 상황에 대해 당직교감(C)이 투박한 말투로 지시함으로써 어린이 날로 일찍 일을 마치고 퇴근했던 소청인이 평상시와 다른 당직교감의 지시에 대한 순간적인 반발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지시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님

소청인은 작업계호가 중요한 업무였다면 사전에 교육을 하거나 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당직자로부터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불복종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 제3조(기본강령)에 의하면 '교도관은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에서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 훈련, 교정장비의 사용·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도소 교관 C가 2016. 5. 5. 07:50~08:00까지 소내 직원 287명중 42명을 대상으로 소장지시사항인 작업장 관리, 유사사고 사례, 음주 운전 예방 등을 교육한 것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직원일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평일 및 휴일 근무 전에 당직교관 주관으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참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일지 등을 통해 전달교육을 하고 있고, 소청인은 2016. 4. 25.부터 공사 계호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명을 받았고 사건 당일(2016. 5.5)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의 감독자 교육·지시사항에 '수용자 접근금지', '도구 관리 철저' 등 기록사항을 보더라도 공사 계호 근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건 당일 당직 교감이 작업사항, 작업인원 등에 대해 소청인

에게 전화로 물으면서 근무일지에 기록해 놓으라는 지시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교도관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은 수용자, 수용시설, 근무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5.부터 ○○과 공사 전담 근무자로서 2016. 5. 5. 교도소 수용동 전기선로 증설공사 계호 근무와 관련하여, '교도관 근무일지'를 근무 종료 후 당직 교감에게 제출하지 않고, 당일 16:00경 근무를 마치고 작업내용, 특이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당직교감에게 보고 없이 퇴근한 사실과, 당직 교감이 휴대폰으로 근무일지의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인원은 '○○시스템'에 올렸고 전기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모르니 전기기사(○○과 주사보 B)에게 물어보라는 등으로 답변하고, 다시 복귀한 후에도 근무일지 기록 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당직교감과 대화중에 언성을 높이고 작업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한 「교도관 직무규칙」 제3조(기본강령) 및 제7조(직무의 처리) 등 교도관의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의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2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처분요지

모욕죄 등으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 통보되어 그 직위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소청이유

아무런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불법행위이므로 원처분의 무효확인을 요구

결정요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소청인이 이건 직위해제 당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사　　건 : 2016-353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부 ○○관　　4급 A

피소청인 : ○○관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6. 9.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관 ○○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하여 모욕죄 등으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 통보(사건번호 : 2016년형제○○호, 2016. ○○. ○○.)가 접수되었는바, 소청인은 업무지시, 조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과장급 간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16. 6. 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먼저 ○○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과중심 체제 강화를 위해 부서 성과평가 순위에 비례하여 부서원의 성과급 등급이 결정되는 '경쟁적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 개인평가는 부서장이 부성원의 등급만을 부여하고, ② 부서평가는 공정·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직원 다수가 평가자로 차명하는 등 다중·다면 평가를 수행하며, ③ 부서성과성적에 따라 부서원의 기관내 개인별 성과급 등급이 정해지는 절차로 수행된다.

금번 5급(연구관)이하 직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각 부서별 순위가 확정되었고, 이 부서순위 점수와 부서별 직급별 인원 분포를 적용하면 각 부서별 성과별 등급별 인원수가 계산되고 각 직원들은 본인이 속한 부서 순위점수와 해당 직급자의 부서별 분포 상황을 감안하면 자신의 성과급 등급을 추산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이 과장으로 있는 ○○과는 부서순위 1위를 하여 부서원 8명 중 5명이 S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사부서는 실제 성과급 집행을 위한 '2016년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순위명부 조정기준에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고 특별히 순위가 부적절한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 위원장(○○단장 B)과 위원 4명(부서평가 시 피평가자, 교차평가자 역할을 수행한 부서장들)들은 평가대상자 중 18명에 대한 성과급 등급을 변경하고, S등급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과에서 S등급 예정자 5명 중 3명(5~6급)이 A등급으로 낮춰짐에 따라 해당자 2명이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등급 하향평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본인이 S등급을 받아야 할 사유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의신청을 철회하게 하였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과 중심의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성과급제도 운영 목적에 반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직원들의 객관적 직무성과 이외의 다른 관점에서 편파적으로 성과급 등급을 변경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은 해당 직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 18명은 상위직급의 성과급 상위등급에 해당되고 인사부서 및 위원회 참여자 부서의 직원들에게 재배정된 것이 드러나서 이에 대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을 내부망에 공유하고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은 일부 간부직원들에 의해 평가결과가 임의적·자의적으로 뒤집혀 직원들이 열심히 성과를 올리기 보다는 위원인 간부들에게 줄을 대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성과급제도의 목적이 올바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관 내부망에 글들을 올린 것이며, 이 사례에서 착안한 풍자 소설을 작성하여 구독을 원한 직원 19명에게만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내부메일 등에 올린 글을 빌미로 그 글에 누군가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성과급 지급 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소청인을 압박하기 위해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소청인은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으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가 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창작 글(소설)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아니었고, 어느 사회든 구성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 사회의 공정성 수준이 된다는 취지이었으며, 간부직원으로서 소청인이 직원들의 직무성과가

공정하게 인정되고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목적이 건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거나 품위의 손상 등으로 매도될 수 없고, 피소 그 자체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소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던 바,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며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어 원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먼저 소청인은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참조),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공무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소청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이거나 금품 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금품 관련 비위나 성폭력·성매매 등 그 죄질의 정도가 중대한 비위행위는 검찰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과 특히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사유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종료 후 기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단순히 기소된 사정뿐만 아니라 고도의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과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등을 살펴서 그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판결 등 참조)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건과 같이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직위해제 사유는 단순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좀 더 엄격히 해석하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직위해제 처분 당시 이건 직위해제 처분의 바탕이 된 수사 중인 혐의가 금품 수수나 재산범죄로 인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아니고 성폭력 및 성매매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 당시 국민적 신뢰의 손상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고 충분히 소명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즉,

(1) ○○지방검찰청은 2016. 6. 2. 이 사건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를 통보하였는데, 이 건 직위해제는 그로부터 불과 7일 후인 같은 달 9.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경위는 피소청인이 당시 소청인에 대한 고소장 등 수사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입수한 다음 구체적인 혐의 내용 및 직무와의 관련성 정도,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향후 혐의의 유죄 가능성, 당시 수사 개시에 따른 사회적 파장 내지 국민적 신뢰의 저해 정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을 한 다음에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즉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서 금품 관련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소청인이 과장급 직위에 있으면서 관내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를 벗어나 부적절하게 자신의 상관과 동료들을 비방·풍자하는 소설을 작성하여 유포하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위 상관과 동료로부터 고소된 사실 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추구하는 보호법익이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및 법정형 등에 비추어 금품 관련 비위나 성폭력·성매매 등과 같은 범죄와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이 사건 고소의 요지는 소청인이 직무와는 무관하게 상관인 ○○단장 B와 관내 인사업무자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내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즉 소청인이 비방하였다는 대상은 내부 구성원이며, 유포 방식 역시 언론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공무원만이 볼 수 있는 내부망을 이용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소청인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극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청인으로 하여금 계속 해당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공무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게다가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구속이 되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건과 같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지 않아 통상 구속 수사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소청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향후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소청인이 이건 직위해제 당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의 명시적 제한이 없고, 사실상 관련된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의 경과에 따라 임용권자의 직위 부여 여부에 대한 재량을 주고 있는 것인 바, 형사재판 또는 징계의결절차가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처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이 건 처분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인 피소청인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피소청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에 다툼은 없으나, 장기간에 걸친 직위해제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 등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정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소청인이 이 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재량을 그르친 위법은 있으나 이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행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취소를 구하는 소청 제기로서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는 이상 이 건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3 시보임용기간 중 성희롱(직권면직→취소)

처분요지

시보임용기간 중 주취상태에서 동료 여경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

불필요한 농담이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는 점, 정규임용 적격 여부 결정 시 징계사유만으로 향후 음주·성관련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인 점,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 소청인에게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근무실적이나 책임지도관 및 소속 상사·동료들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잘못을 반성하며 만회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장래에 음주·성관련 비위가 우려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사　　건 : 2016-364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5. 24.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시보 임용기간 중인 20○○. 6. 29. 21:3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B, 순경 C, 순경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순경 B를 향해 '눈빛이 섹시하다, 앉아있는 것도 섹시하다, 옷을 여성스럽게 입고 다녀라, 경찰서 E경장은 얼굴은 못생겨도 치마입고 다니니깐 봐 줄 만하다'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20○○. 10. 27.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20○○. 5. 23.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비록 소청인이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성적 면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지만,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취상태였다고 하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여경의 외모·옷차림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과 타 여경 관련 성희롱 발언 등은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현저하며,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 및 윤리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성관련 비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0조 및 제22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및 제47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계획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언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 및 윤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소청인에게 직권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소청인은 그 동안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소속 상관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초·중·고 학창시절 정근 및 개근하였던 출석 상황, 행동 발달상황 그리고 평소 소청인은 일반인은 물론 여경들에게 불필요한 농담이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는 점,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 사실이 없는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피해여경도 감찰조사 시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 소청인에게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기타 참작사항으로, 원룸 전세를 구하는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본 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20○○. ○.경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다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사건의 소청심사 결과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정규임용 적격 여부 결정 시 징계전력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징계사유만으로 향후 음주·성관련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시보임용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며,

나아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①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또는 ②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고,

같은 영 제47조 직권면직 사유로는 제1항에서 ①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제2항에서는 ①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적부 심사에 있어 ①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 호에의 해당여부, ③ 같은 영 제47조 각 호에의 해당여부 및 ④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의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 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아울러, 경찰청은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의 구체화 기준을 정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시'에는 정규임용 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 사실

본 건 직권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청인은 시보 임용기간 중인 20○○. 6. 29. 21:30경 피해자 순경 B를 향해 '눈빛이 섹시하다, 앉아있는 것도 섹시하다, 옷을 여성스럽게 입고 다녀라, 경찰서 E 경장은 얼굴은 못생겨도 치마입고 다니니깐 봐 줄 만하다'며 성적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20○○. 10. 27.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기하여 20○○. 5. 23.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 및 윤리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성관련 비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기준을 보면,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은 ○○점으로 만점(1,000점)의 6할을 초과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점으로 만점(20점)의 5할을 초과하여 위 규정을 충족하며,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의 소견이 긍정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하는 등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피소청인도 직권면직 의결서에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성적 면에서는 소청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경찰청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에서 규정해 놓은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의 구체화 기준(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에는 소청

인이 받은 징계 비위가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다. 판단(처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보임용제도가 시험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부단히 교육·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료여경에게 성희롱 발언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 질서를 심히 해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징계전력과 정규임용 관련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정규임용 여부가 피소청인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소청인이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근무실적이나 책임지도관 및 소속 상사·동료들의 평가가 양호하며,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만회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장래에 음주·성관련 비위가 우려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정

따라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4 징계처분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처분요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

소청이유

징계처분의 이유가 된 관련자는 사건관계자나 어떤 청탁을 받기 위하여 만난 사이가 아닌 점, 교제기간 동안 어떠한 종류의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없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점, 같은 시기에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수사경과가 해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처분권자의 처분이 법령을 그르쳐 위법하다거나 처분권자에게 부여된 처분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57 수사경과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6. 1. 14.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해제사유 등)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부여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 소청인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 위반 및 근무 태만 등으로 2015. 10. 19.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음.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교제하던 B(이하 '관련자'라 한다.)가 고용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BAR 형태의 '○○' 카페는 ○○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의 불법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등 해당 단속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어 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 관련자는 학원 강사를 10년 이상을 하면서 생긴 후유증으로 인하여 목 수술(성대 결절) 여파로 해당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직업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이후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였으나, 불황으로 그 매매가 지연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며, 만약 불법 영업을 하였다면 이처럼 폐업을 결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다른 동종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비추어 불법영업이 있었을 것이라는 감찰 조사관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위 업소를 불법 업소로 단정 짓기는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단속대상인 불법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관련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징계 처분한 사유는 이유가 없고, 이를 근거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함은 부당하다.

그리고 소청인은 2010. 8월경 이혼 후 아들(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고령의 어머니(73세)를 혼자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지각과 당직 근무 시 정보원과 접촉하여 그 정보로 현장을 확인하고자 자리를 이석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지각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담당자가 제시하는 CCTV상 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정확한 당시 상황에 대해 알 길이 없지만, 초등학생인 소청인의 아들은 08:20 이후 등교가 가능하였고, 과제물 등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소 10분에서 많게 30여분 이상이 소요되며, 담당 선생과의 면담도 오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와의 거리가 11km 가량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40여분 안팎이 소요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사무실에 소청인이 도착하게

되는 시간은 오전 09:30 경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은 한 달에 3~4차례 가량 발생하고, 차량 펑크나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 내 주차문제로 지각을 하거나 또는 근무 중인 ○○경찰서의 열악한 주차문제로 일찍 도착하였으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주차하는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였으며, 주말에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집안일을 챙기던 중 지각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팀장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소속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에게도 사전에 보고된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부주의로 병가를 사용치 못하고 당직 근무 시 교체 승인을 하지 못하고 10여 시간 늦게 출근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전화로 자진출석한 피의자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진술 중 자리를 이석한 사실 역시 소청인의 부주의라고 인정한다.

더불어 ○○팀 당직은 24시간 교대근무로서 민원이 없으면 사무실내 설치되어 있는 간이침상에서 2~3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피로감을 느낄 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청인도 이에 따라 사무실내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책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는 당시 민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팀 직원 뿐 아니라 수사부서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찰관이 취하고 있는 휴게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은 소청인이 처한 가정환경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활동과 휴게 형태를 전혀 무시한 채 소청인을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지적되었다고 보인다.

나.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교제한 관련자가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만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고, 당시 관련자는 미혼으로 10년 이상을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업을 찾던 중 해당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폐업을 결정한 사실 등을 볼 때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자는 교제 기간 중 박봉의 경찰관 월급을 걱정하여 아들의 학원비라도 아끼고자 소청인의 집에 주말마다 방문하여 자신이 미리 준비한 교재를 이용하여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였으나, 징계과정에서 관련자와 이별을 하였으며, 설령 교제 당시 관련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상황에서 이는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소청인의 이혼 경위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문제 삼아 자신의 이성교제를 불건전하고 온전치 못한 관계로 보게 된다면 이혼한 모든 경찰관은 수사부서에서 당당히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관련자의 직업을 문제 삼아 소청인이 지나친 과음으로 지각을 하고, 사무실내에 취침을 하였다는 주장은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소청인이 과음할 처지가 못 되고, 당시 어머니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가압류되면서 심한 심적 고통을 겪어 늦게까지 술자리 등을 가질 수 없던 상황 등으로 성실한 수사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은 억측이며, 음해성 제보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다.

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수사 인지부서에서 약 17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8회에 걸쳐 포상을 받은 사실로 볼 때 당시 각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성과를 항상 이루어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기간인 2015. 5월 초순경부터 7월 중순경까지 4대악과 관련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 2곳과 관련업자 6명을 검거하고, 2014. 12월경부터 시작된 ○○지구개발과 관련한 공무원 비리사건을 진행하는 등 소청인이 맡고 있던 수사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지장도 초래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는 소청인의 수사역량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화합과 동료애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고, 소청인이 팀원들과 융화에 노력한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내용을 진술한 직원들은 2014년 위조지폐사범 C 등을 구속시킨 후 이에 대한 특진을 비롯한 포상에 대한 의견이 당시 소청인에게 우호적으로 흐르게 되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 직원과 이 직원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며, 소청인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진술한 ○○팀 근무 직원은 전입 후 현재까지도 인지사건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한편, 소청인이 갖고 있던 첩보나 기획수사에 해당하는 사건은 진급을 앞둔 직원들에게 배당하였을 뿐 만 아니라 당시 소청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내사사건에 집중한 점, 인지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해도 모두 범죄를 인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1년 동안 인지사건 1건 뿐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인지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라.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이 오로지 수사 분야 한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하였으며, 가정마저 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형사, 수사관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을 갖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점,

소청인이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들과 노모랑 같이 생활하면서 특별한 이성교제도 없이 지내다가 자신을 이해하는 관련자를 만나서 교제한 사실로 자신의 근무태도까지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후회하며, 설령 관련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교제사실을 숨기지 않은 자신의 불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관련자는 사건관계자나 어떤 유형의 청탁을 받기 위하여 만난 사이가 아니고, 교제기간 동안 어떠한 종류의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맡고 있던 업무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시점 이후 어떠한 형태의 근무 위반 사례를 야기하지 않았고, 민원을 포함한 직접적인 물의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악의에 가득찬 허위제보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정말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오랜 기간 동안 소청인이 수사부서에 근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거나 적발당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의 비위행위도 수사 업무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점,

○○경찰서에서는 2015. 12. 10. 실시된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 상태로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사경과가 해제되어 인사

발령의 대상이 된 점,

수사경과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고,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적성이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같은 시기에 견책 처분을 받은 경사 D는 수사경과가 해지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처분의 경위

1) 경찰청에서는 지능화·흉포화 되는 범죄추세에 대처하여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수사경과제를 도입하였고, 수사경찰의 선발 및 교육, 수사경과의 부여 및 해제, 전문수사관 인증, 보직관리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소청인은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3. 2. 10.부터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였는데,2015. 10. 19.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 위반 및 근무 태만 등의 비위 내지 징계사유로 징계권자로부터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3) ○○지방경찰청은 2015. 12. 16. 2016년도 수사경과 해제(1차) 심사 시,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직권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일반경과로 전과발령 여부를 심사한바,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경과 해제

대상자로 의결하였으며, 소청인은 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같은 해 12.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30. 수사경과 해제 이의신청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불수용하였다.

4)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15. 10. 19.자 징계(견책)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6. 2. 4.이에 대해 심사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고, 소청인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수사경과 해제의 법적성격 및 판단 기준

「경찰공무원법」 제3조(경과구분)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는 경찰공무원의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등으로 구분하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전과 및 특기변경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에서는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제1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제3호),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제4호) 등의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재량행사의 준칙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비록 위 훈령이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볼 때 수사경과의 해제(전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단서)의 예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수사경과의 해제 후 일반경과를 부여받는 것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수사경과 해제 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경과의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경찰조직의 운영 합리화 등의 필요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그에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소청인의 이 사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 재량의 일탈·남용 등

소청인은 수사경과 해제의 바탕이 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수사경과 해제사유 제1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먼저, 위 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수사경과에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언급된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은 피징계자의 다양한 의무위반 사항 중에서 예시적으로 그 일부를 열거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예시된 비위에 한정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능력이라 함은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의 검거 등의 업무능력이라고 할 것인데 징계처분의 비위사실로서 열거된 항목 중 특히 금품 수수, 음주 운전은 수사능력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 까지 이르렀다면 해당자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로 보이며, 해당자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주목함이 행정청의 의사로 읽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불법영업 대상업소 업주와 2014. 12.말경~2015. 7.초까지 사전 및 사후신고 없이 약 70회 만나고 약 420회 전화통화를 하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고, 위 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 등으로 인해 2015. 10. 19.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소청인은 위 규칙에 따라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사경과 해제사유 제3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다음으로, 위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는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업무의 특성상 경찰 내 다른 업무에 비해 사건관계인과 유착비리 유혹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위호의 취지는 유착 등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적극성 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수사경찰관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경찰 대상업소와의 유착의혹을 차단하여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자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지방경찰청, 2010. 1. 12.)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사업무 능력이나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향후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이혼한 지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유흥업소 업주인 관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불건전한 이성교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전·사후신고 없이 단속대상인 유흥업소 업주와 만남을 유지한 소청인의 행위는 수사경찰로서의 업무 수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혼 후 홀로 노모와 어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이유로 지각하거나 출근 후 사무실내에서 취침을 하며, 당직근무 중 자리를 이석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소청인에게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은 위 규칙에 따라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수사경과 해제사유 제4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다음으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상관으로서 ○○경찰서 ○○과장 경정 E는 2015. 12. 10. ○○경찰서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수사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수사경과를 유지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수사업무능력은 우수한 편으로 볼 수 있고,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 다소 정상을 참작해 줄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업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판단력·상황대처능력, 적극성 내지 능동성 등이 부족한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 위호의 취지라고 볼 때, 홀로 노모와 어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소청인의 가정 형편이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 소청인의 수사업무 능력과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를 처분함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① 각 경찰관서 특히 이 사건 수사부서가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며, 인사권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과별 정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과 시행 등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건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수사경과의 해제 등 경과변경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2015. 10. 19.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수사경과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자 또는 물의야기자, 비수사경과 근무자 등에 대한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그르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점이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법령을 그르쳐 위법하다거나 처분권자에게 부여된 처분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5 법인세 조사업무 처리 소홀(경고→기각)

처분요지

법인세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 및 부실기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 미실시 등의 비위로 경고 처분

소청이유

조사 대상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수익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던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업무성과평가가 우수했던 점,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885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 근무 중인 세무공무원이다.

가. 법인세 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장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이 2014. 8. 4.~8. 19.까지 ○○시 ○○구 ○○동 ○○-○○ 소재 (주)○○(대표이사 B에 대해 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으로 수입금액은 7,771백만원(2012 사업연도의 오피스텔계산서 교부분의 합계), 매입비용은 2,695백만원(취득원가 안분계산), 기준경비는 707백만원(부동산공급업 기준경비율 9.1%)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 4,342백만원을 산출하고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공무상 대표이사 B가 아닌 C 명의로 소득처분 하였다.

한편, 위 법인 (주)○○은 2009. 12. 15. (주)○○로부터 64호를 8,735백만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신탁에 신탁하였고, 2011년도에

15호를 5,945백만원에 2012년도에 31호를 9,279백만원에 매각하였음이 등기부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2013 사업연도에는 (주)○○에 11호를 매각하였는데 매각대금이 확인되지 않지만 대략적인 시세인 4억원을 기준으로 4,400백만원 정도로 추정한다. 그리고 현재 7호가 신탁 중이므로 대략 28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위 법인 (주)○○은 8,735백만원에 취득하여 22,424백만원에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13,689백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도 폐업의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그 과세실익이 세수와 연계되지 않아 기타 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136억원의 고액이고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였으므로 신탁자산 처분에 따른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실 귀속자 및 관련 경비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지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소청인 소속 ○○세무서 ○○과에서는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추계소득금액 43억원을 '법인세 기본통칙 67-106 …19'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이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부상 대표자인 B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사업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C에게 소득처분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이 하였다. 또한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기한 내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43억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나. 부실기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조사 등 미실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제17조(징계)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성실의무를 위한 경우 ○○부장관은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징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 위반) 제7호, 제21조(징계요구사항 - 진실은폐·허위진술)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의한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경우와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실기장을 성실의무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 및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 세무사법 제17조제1항의 징계 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사후 검증결과 가공경비 계상협의로 조사 의뢰된 (주)○○에 대해 2015. 5. 15.~6. 3.까지 2013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계상(매출원가 644백만원, 기타계정 153백만원)하고 상대계정에 회수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222백만원의 탈루를 확인하였음에도 부실기장 등 성실신고의무 위반이 명백한 기장 및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D에 대해 징계요건조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에 대해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경고(인사반영)'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에 대해 소청인은 이의 신청을 통해 조사 법인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결손법인이고 직전 연도인 2013. 1월에 ○○세무서가 조사한 자료에도 조사법인의 실지 대표자를 C라고 조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계금액을 C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양도물건은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어 신탁자산의 정산내역만 확인해도 양도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양도차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질 대표라고 주장하는 C에 대하여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분양 및 이익금의 분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신탁부동산의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그 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금융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소득처분 대상자인 C는 무재산 체납자로서 결손이 예상되므로 과세 실익이 없어 자료 통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통·수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업무인 점, 자료 통보 누락 소득금액이 43억 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부작위 행위는 중대한 업무 과실에 해당한다.

한편, 소청인은 (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확인하고도 관련 세무대리인을 성실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감사원은 이러한 업무소홀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양도물건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점,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밝혀 소득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점, 인정 상여 소득금액 43억원에 대한 자료통보를 누락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확인하고도 관련 세무사에 대해 징계요건을 조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인사경고 처분은 정당하므로 소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

1) 조사 대상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수익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었음

소청인이 조사한 (주)○○은 2009. 12. 5. 오피스텔 64호를 매입하여 2011년에 15호, 2012년에 22호를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0~2011 사업연도는 ○○세무서에서, 2012 사업연도는 ○○세무서에서 소청인이 ○○팀장으로 법인세 무신고 조사를 하였는데, 위 법인의 오피스텔 매입가격은 총 9,220백만원으로 매입자금은 ○○은행 등에서 10,500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매입 후 2년 뒤부터 오피스텔이 매도되고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밝혀졌듯이 제2금융권의 대출과 사채 등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수익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

2) 조사 대상 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B이지만 실질 대표는 C임

소청인이 (주)○○에 대한 조사결과, 명의상 대표자인 B는 2002년~2012년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무 상태에서 신용불량자인 친구 C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내용이나 장부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C도 결손 폐업된 조사법인에 대해 비협조적이었고 신용문제로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고 실질 대표자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2010~2011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조사한 ○○세무서에서도 B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 대표자가 C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동일법인과 동일내용에 대해 뚜렷한 반증 없이 ○○세무서장의 결정 내용을 ○○세무서장이 달리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대외적인 신뢰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조사공무원은 실질과세에 대한 논란 소지가 많아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신적으로 공부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청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이력을 조회하여 기 조사 내용에 입각한 조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C를 실지 대표자로 판단하여 소득처분한 것이다.

3) 과세자료 통보 누락은 무재산자로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임

소득처분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 누락은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로 그동안 팀원에게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지 시켜 왔으나 소득처분자인 C가 무재산이고 체납자로 결손이 예상되어 과세 실익이 없어 자료 통보를 간과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팀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

4) 기타 부실기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조사 등 미실시

소청인이 (주)○○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 조사결과를 실시하여 증빙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대리인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5) 기타 소청인 표창 등 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공무원에 임용되어 국세공무원으로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유공으로 ○○청장상 3회 지방청장상 2회, 세무서장상 4회 등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업무성과평가 우수자에게 부여하는 성과평가 마일리지를 32점 획득하는 등 업무실적이 탁월하며 정년퇴직을 ○○년 여 앞두고 있다.

나. 처분의 위법성

금번 ○○지방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대한 정기 교차감사 결과 처분지시인 법인세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사 종결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단지 추정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주)○○은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밝혀졌듯이 제2금융권의 대출과 사채 등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수익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이 매각되는 시점까지는 금융비용으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부동산이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매각되는 시점에서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조사가 필요한데, 위 법인 부동산은 취득과 동시에 신탁되었고 신탁 이후 2013년까지 분양된 수입금액이 178억원으로 취득가액 87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바,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부동산 판매대금을 우선 수익자 등에 배분하므로 신탁계약서, 정산서 등(붙임 참조)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야 추계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조사결과와 해당 법인 대표의 진술에 의존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사 대상법인의 대표자 및 조사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소청인은 (주)○○의 명의상 대표자 B는 2002년~2012년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무 상태이고 신용불량자인 친구 C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일 법인에 대해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와 같이 실지 대표자는 C로 결정 내용을 달리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대외적인 신뢰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한 논란 소지가 많아 대부분의 조사공무원은 공부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청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이력을 조회하여 기 조사 내용에 입각한 조사를 하여 C를 실지 대표자로 판단하여 소득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고 대표이사를 법인 등기부에 등재

함으로서 대외적인 의사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C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면 최초 부동산을 인수하게 된 배경 및 과정, 자금계획, 대출 관련 서류, 분양과정에서의 역할 및 분양대금 집행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표이사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C는 무재산자로 체납이력이 있고, ○○세무서 조사는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로서 대표이사 확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종결한 반면, 소청인이 조사한 이 건은 통합조사로서 조사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발생하므로 실질 대표이사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 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법인 (주)○○의 2013~2015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B는 명의 대표자이고 실 대표자는 C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법인 법인세 귀속 대상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법인세 조사 업무처리 위법성

소청인은 금번 ○○지방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대한 정기 교차감사 결과 처분지시인 법인세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사 종결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단지 추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처분지시는 소청인이 (주)○○ 법인의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신고에 대해 조사한 사항에 대해 ○○지방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대한 정기 교차감사 결과, ○○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지시된 것으로 이와 별개로 ○○세무서에서 2013~2015년도 위 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상여 소득금액 43억원에 대한 자료 통보를 누락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확인하고도 관련 세무사에 대해 징계요건을 조사하지 아니한 위반은 존재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중 양도물건에 대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점,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라.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공무원 상벌규정 및 ○○지방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양정기준에서 인정상여 결정 누락 및 자료 미통보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고는 인사권자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고장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가

적용된다.

소청인의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조상대상 법인의 양도물건에 대한 조사시 공부상 및 실제 대표이사가 무재산으로 실거래가액 확인, 실질 귀속자 조사가 어려워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점, 공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귀속 처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정 상여 소득금액 43억원에 대한 자료 통보를 누락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확인하고도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을 조사하지 아니한 점,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 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6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처분요지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여 구속구공판 결정, 공무원범죄 처분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소청이유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리한 처분이라는 점,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34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40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6-325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8. 11.경 ○○지방경찰청 ○○과 ○○팀에서 B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B가 보내준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2016. 5. 6 소청인에 대해 구속구공판 결정을 하고, 2016. 5. 11.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하였기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 처분사유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는 존재하지 않는 법조항이다. 이는 소청인이 처분에 대한 방어의 준비를 하는데 혼란과 불편을 가져오고, 불복의 기회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범죄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 소청인에게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리한 처분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현재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소청인은 34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40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소청인에 대하여 단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2016. ○. 1. 경감 승진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위 처분을 포함한 인사자료가 2016. ○월 초에 제출되어 승진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청인이 입을 불이익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바, 행정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행정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보다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적시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소청인은 처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는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이 사건의 처분을 한 사유는 '소청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것이므로, 피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 법령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를 기재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라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출자료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2016. ○. 18. ○○지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소청인에 대해 ○○과 대기발령을 한 사실, 2016. ○. 20. 소청인이 구속되었고, 2016. ○. 4.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 소청인이 약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처분 이전 금품수수 비위로 정직3월(당초 해임처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처분 경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처분사유에 근거 법령의 기재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고, 그 기재 조항에 구애됨이 없이 소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근거 법령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피소청인은 2016. ○. 14. 법조항 오기사항을 정정하였고, 2016. ○. 16. 소청인에게 오기 수정한 처분사유설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로 볼 때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착오로 처분서상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위해제 사유 존부

소청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범죄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 소청인에게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처분은

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판결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위해제 처분 이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 소청인은 구속된 상태로 사실상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소청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청인이 계속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직위해제 처분에 특별한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처분 재량을 그르쳐 일탈되거나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소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지방경찰청 ○○과 ○○반장 직위로 근무하면서 C 사기사건(B 등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지위 및 수행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공무집행의 공정성은 높은 수준으로 기대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체 처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혐의 사실로 사전 구속이 되어 (구속)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효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소청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지방검찰청은 2016. 4. 20.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지방법원은 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16. 5. 4. 소청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즉 소청인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청인이 2008. ○.경 ○○지방경찰청 ○○과 ○○팀에서 같은 ○○팀 소속 경사 D 등과 함께 C 관련 사건(B 등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B로부터 5,000만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소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소청인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소청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6. ○. 18.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6. ○. 19. ○○경찰서 ○○과 대기 명령을 하였고, 2016. 5. 11.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6. ○. 13.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일련의 처분 절차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마)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바) 더 나아가,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죄로, 선택 가능한 벌금형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죄가 나올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 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3 편

형 식 요 건

87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 (성과상여금 등급부여→각하)

처분요지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환산한 개인성과평가(환산)점수가 총 83.151점이며,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개인등급을 C등급 부여

소청이유

소속 부서 성과평가가 최고등급(S)을 받았으므로 그에 기여한 구성원들은 성과결과에 연동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C등급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성과상여금 등급판정 취소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

사　　건 : 2016-165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지방경찰청 경무과, 2016. 2. 11.)에 의거하여 개인성과 평가(환산)점수가 총 83.151점이며,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개인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산출되어 2016. 3. 11.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포함된 112종합상황실이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을 받았고,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이에 버금가는 기여를 하였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며, 각 구성원들은 성과결과에 연동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평가는 부서평가 60%와 기여도평가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기여도 평가는 성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에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소청인도 부서평가에서 52.663점, 기여도평가에서 30.488점으로 총 83.151점이 되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며, 이에 소청인은 부끄럽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과 비슷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최악의 평가를 받은 2016년 성과상여금 등급인 C등급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사건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위「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목적과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살펴 볼 때,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 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소청인이 2016년 성과상여금 등급판정에서 하위등급(C등급)을 받게 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수용되지 못하여 소청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서,

성과상여금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의거하여 경찰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평가(60%)와

개인평가(40%)로 구분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으로 인센티브적 급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부서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고 개인평가에서 하위등급(C등급)을 받아 그 기준액의 65%를 받아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보여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경찰청에서 성과급 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부서가 최고성과를 받았음에도 개인은 최하등급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 좋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은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획일적으로 개인평가를 S, A, B, C로 구분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경찰청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부서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기여도와 기여한 기간도 각자 다르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소관 부처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적 제언이나 제도의 개선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역시 이 또한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따라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 등급판정 취소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8 징계절차 하자(감봉1월→취소)

처분요지

후임자와 술을 마신 후 후임자의 음주차량에 동승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218%로 음주운전한 것을 방조한 비위로 감봉 1월 처분

소청이유

무의식 중에 음주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방조한 죄만이 존재하며 음주운전 이동 거리도 약 2km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 적발 후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상훈감경 대상이 되는 표창공적을 누락하여 징계절차상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16-45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6.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안전서 ○○함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던 2016. 5. 12. B와 함께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3병을 나누어 마셔 B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날 21:30경 B의 "○○교육원 가까운 ○○동 소재 ○○편의점으로 소주 한 잔 하러 가자"는 제안에 선임자임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B가 운전하는 음주차량에 동승하여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함께 마신 후 출발, 23:53경 ○○교육원 후문 앞까지 약 2km구간을 B가 혈중알콜농도 0.218%로 운전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바,

음주운전 방조로 타 경찰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또한 선임자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의무를 결여하였으며 신분확인 시 뒷좌석에서 "그냥 가, 밟아."라며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는 등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상훈 감경) 제3항에 의거 소청인의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상훈 감경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해 본 적도 없고 사건당일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식당차량을 이용하여 교육원에 귀가를 했으나,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귀가하는 시점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는바, 무의식 중에 음주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것으로 법 적대적 의사가 적었다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을 한 후배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를 방조한 죄만이 존재하며 음주운전 이동 거리도 약 2km 미만으로 비교적 짧았고 이 사건에서 적발이 되고 난 뒤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등 소청인에게 향하는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은 본인이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으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특히 반듯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공무원의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일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해왔고, 한 달에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에서 ○○ 불법 어선을 나포하고 불법 조업을 단속하며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일에 솔선수범 해왔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탓에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해왔는데,

2013년 저축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을 사기당하여 2년간의 법정싸움을 해왔으나 돌려받지 못한 채 빚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처분이 내려지면 소청인 가정 생계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징계양정에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단순한 행위요소에 터 잡아 처분이 나온 것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인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2호에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감경 규정을 두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2010. 3. 12. ○○표창 ○회, ○○지방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이 중 ○○청장 표창은 상훈감경

대상이 되는 공적(차관급 표창)에 해당하나,

처분청에서는 2016. 6. 15. 본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에 소청인의 '감경대상 공적' 사항에 상기 표창공적을 누락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2016. 6. 2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표창공적을 누락하여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심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살피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음주운전 방조'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훈감경 제외대상 비위로 판단하여 상기와 같이 조치하였으나,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3항에 따른 상훈감경 제외대상의 비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음주운전의 책임은 주취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의 방조 책임은 이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죄책에 해당하는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의 방조를 한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음주운전의 방조는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비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서도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기준을 제시하면서 비고 제8항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결국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사항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감경대상인 표창 공적이 제시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그 공적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 판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2012. 6. 28. 선고 2011두 20505 판결 참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9 징계절차 하자(감봉1월→취소)

처분요지

의무경찰 부대운영경비로 구입한 식료품 53,130원 상당을 4회에 걸쳐 사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닌 점, 당직 근무시 야식으로 먹기 위해 사무실에 두고 먹었던 점,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16-60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8. 1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 ○○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서업무비 등 의무경찰 부대운영경비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난 2016. ○월경 취사장에 보관중인 ○○ 1봉지(1kg) 7,700원 상당, 같은 해 6월 초경 취사장 보관중인 ○○ 3개 17,490원 상당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또한 같은 해 6. 9.경 ○○ 2박스 및 같은 해 7. 8. 창고에 보관중인 컵라면 1박스를 본인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 또는 유용하는 등 의무경찰 부대운영경비로 구입한 식료품을 총 4회에 걸쳐 53,130원 상당을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결정)에 규정한 참작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또한 본 건은 방범순찰대 공용물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안이므로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 1봉지 件(2016. ○월말, 7,700원 상당)

○○부소대장인 소청인은 매일 09:00쯤 취사장 조리실 냉장고를

점검하여 식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동일한 냉동식품이 일주일 넘게 보관되어 있어 취사대원(현재는 전역함)에게 물어보니 “시식용이라 한번 가져가서 드셔 보십시오. 이것 하나로 요리를 하여 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하여 취사 보급 담당자인 소청인이 시식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절대 임의로 ○○을 가져간 것이 아니며, 특히 취사반 냉장고와 주변을 CCTV로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임의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

2) ○○ 3봉지 件(2016. ○월초, 17,490원 상당)

해당 부식비 예산에는 의경 뿐 아니라 직원들의 부식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 3봉지는 소청인이 외근업무 등으로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기 어려울 때나 당직 근무시 야식으로 먹기 위해 사무실에 두고 먹었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3) 생수 2박스 件(2016. ○. 9, 6,940원 상당)

생수는 행정반에 쌓아 두고 대원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마실 수 있었는데, 소청인이 올 초 콩팥에 요로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4리터씩 마셔라’ 라는 의사의 충고가 있어 출·퇴근중 차량에서 마실 목적으로 대원에게 차량에 넣도록 한 것이다.

4) 컵라면 1박스 件(2016. ○. 8, 21,000원 상당)

작년에 구입했던 컵라면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행정반 사무실에 몇 상자씩 쌓아놓고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행정반에 보관하였는데, 도서관에서 승진 공부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출출할 때 먹게 할 생각으로

대원에게 “직원들이 책 보면서 하나씩 먹도록 컵라면 좀 챙겨 달라”고 하여 소청인의 차에 싣게 한 것이었다.

나. 징계의 과중성

소청인은 대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식료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감봉1월’의 처분은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가혹한 처분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고, 지적장애 ○급인 큰 딸을 돌보고 힘들게 살고 있으며, 소청인 역시 요로결석 진단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모두가 기피하던 ○○부소대장 업무를 흔쾌히 맡아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의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항에서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제5항에서도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1 서식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징계 사유,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내용을 사전에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절차 없이 한 징계의 효력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 등 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 규정인 동시에 강행 규정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나. 사실관계 확인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음을 소청이유로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소청인과 같은 날 징계를 받은 건외 사건(사건번호 2016-○○)의 소청인이 이 사실을 적시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소청이유로 제기하여 확인한바, 본건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2016. ○. 12.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요구서(이하 '징계의결요구서'라고 한다) 및 별지 징계사유를 제출하였음에도 2016. ○. 14. 소청인에게 출석통지서만 전달하고 징계의결요구서는 송부하지 않았는데, 당시 소청인이 받은 출석통지서에는 출석 이유에 '의무위반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제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본건 판단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 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한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등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절차인 점,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은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써 강행 규정이다'라고 판결하여 동규정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피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본건의 경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청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나 소청인에게 전화통화 후 출석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대면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수위를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동일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취지를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임의로 구두 전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송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 당시 간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낭독하여 소청인이 이 시점에 소청인이 정확한 징계의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피소청인의 주장에서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상기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였으며,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 설명서도 수령하였으며 징계혐의사실 모두를 시인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방어권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결국 상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건에서는 ①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아닐지라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 상응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즉, 공소장과 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따라서 ②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일단 처분청은 만나서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 상응하는 어떠한 서면을 소청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가 어떠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구체화된 징계혐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 받는다는 것은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효율적으로 방어논리를 수립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처분청의 구두 설명으로 충분히 이러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문서를 송부 받을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적시된 징계절차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소청인의 입장에서 그 특단의 사정을 엄격히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금이라도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0 특별승진 이행 청구(부작위→각하)

처분요지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규정이 적용되나, 2016년 상반기에는 승진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별승진에서 제외되고, 하반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부결로 특별승진에서 제외

소청이유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는 점, 규정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별승진 임용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의 일탈·남용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작위 처분의 이행을 요구

결정요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 결정

사　　건 : 2016-868 부작위 처분 이행 청구

소 청 인 : ○○본부　　경위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부작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본부 ○○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년도 ○○제안 심사에서 ○○분야 ○○상을 수상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53조,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제2항 등의 특별승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특별승진시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을 검토하면서 특별승진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어, 임용권자가 반드시 특별승진을 시켜야 하는 인사법령상의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유사 소청 사례 등을 감안하고, 소청인이 당시 경감 승진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별승진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시에는 소청인이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여 심사에 포함하였으나, 제안 실시로 인한 구체적 예산절감과 뚜렷한 행정발전 실적으로 보기 어려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특별승진임용하지 않았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소청인에게 특별승진임용을 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청인은 ○○본부 ○○대에 근무하면서 ○○ 작전 수행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침투를 위해 ○○ 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함을 느끼고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2012. 11월경 ○○용 ○○ 덮개 및 이를 구비하는 ○○ 장비를 개발하였다. 20○○. ○○. ○○. 소청

인은 위 장비에 대해 특허 등록을 마쳤고, ○○본부에서는 소청인의 연구개발품을 ○○훈련·작전 및 ○○구조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도록 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소청인은 20○○년 ○○제안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여 ○○ 표창과 부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소청인의 발명품은 20○○년 동안 대테러 합동훈련, ○○대 전입자 기본교육 훈련, ○○ 유관기관 합동훈련, ○○대 ○○ 연합훈련 등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대로 확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은 본건 발명으로 발명사례에 대한 교육과정과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강연과 전시 활동도 하였고, 20○○. ○○. ○○. 소청인의 특허권은 대한민국(○○처 ○○센터장)으로 이전되었다.

공무원 제안규정 제17조에서는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규정하면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승진 임용행위는 기속행위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장관은 2016. 1. 13.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이 제안규정 제17조 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렸고, 피소청인은 2016. 1. 15. ○○본부(○○과장)에게 소청인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소청인은 2016. 2. 1. '○○제안 채택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출' 공문에서 소청인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라는 이유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향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시 특별승진심사에 포함될 예정임을 ○○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제안 수상자로 특별승진 대상자가 된 이상 최저근무연수 요건은 필요적

요건이 아니며, 피소청인이 법령적용을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4, 제53조, 공무원 제안규정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요건에 해당하며, 피소청인이 공문을 통해 소청인의 인사상 특전(특별승진) 조치표시를 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의 의무가 있다.

나. 피소청인의 승진거부처분의 위법성

2016. 5. 13. 2016년 경찰공무원 특별승진 계획이 공지되자, 조직경쟁력 분야에 특별승진 희망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본부 인사담당자가 소청인의 특별승진 신청은 금번 특별승진 취지와 맞지 않으니 제출한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하며, 개별 검토하여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소청인은 상반기 특별승진임용이 되지 않았다.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 계획이 공지되어서도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2015년 소청인에게 특별승진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특별승진 신청서를 낼 수 없었고, 결국 소청인은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임용도 되지 못했다. 이는 석연치 않은 내부결정으로 소청인에 대한 특별승진여부가 정해진 불법행위이며, 피소청인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 심사에 포함했으나, 탈락한 것이라고 하나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5조 및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 계획 보고 문서에 의하면, 특별승진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이 서류가 인사팀에 제출된 바가 없음에도 소청인이 심사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다.

다. 소청인에게 승진임용을 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특별승진과 관련된 판례에서 승진임용을 위한 신청권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고, 해당규정을 근거로 피소청인도 소청인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조치를 명한 바 있으므로 소청인은 지체없이 특별승진임용을 할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특별승진임용하지 않음으로서 소청인의 특별승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재량의 일탈·남용 등

소청인과 같이 ○○제안을 수상했던 B 사무관은 소청인보다 낮은 ○○상을 수상했음에도 인사상 특전인 특별승급이 이루어졌으나, 소청인은 특별승진에서 누락된 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않으며 이는 특별승진임용을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의 일탈·남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들의 제안 계발을 장려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이를 위한 소청인의 성과를 인정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징계처분과는 무관하고, 행정청에서 소청인에게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거나 소청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부작위인지를 살펴보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바,

인사관계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에서도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승진 임용이 재량행위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서도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제2항에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사상 특전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는 전제가 있으므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후단 문구만으로 임용권자가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동 규정의 이러한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 소관부처인 ○○부에서는 2017. 1. 6.자 전면개정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별승진과 관련된 판례에서 승진임용을 위한 신청권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사관계법령상 재량행위인 특별승진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법적인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대상자가 임용권자에 의해 특별승진임용 예정자로 선정되고 그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까지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의 '○○제안자 인사특전부여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처 ○○담당관이 ○○과장에게 보낸 '○○제안자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 문서 등을 근거로 소청인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조리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나, 이는 제안제도 담당 부서와 부처간 법령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이를 근거로 특별승진 임용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 록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 관계법령
- 소청심사 현황분석
- 소청심사 통계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 역대 소청심사위원장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 1963. 06. 20.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25호 1963. 04. 17.제정)
사무보좌기관으로 소청과를 둠

※ 위원장 포함 위원 7인 : 위원장(차관급), 위원(별정1급)

○ 1966. 05. 07. 소청과를 행정실로 개편, 3계를 둠

○ 1967. 04. 08. 위원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조정

○ 1972. 05. 16. 위원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 1973. 02. 05.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운영

○ 1978. 12. 05. 비상임위원제 도입

○ 1981. 06. 01.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추가

○ 1991. 08. 24. 행정실을 행정과·심사과로 개편

○ 1999. 05. 24. 행정과·심사과를 행정과로 통합

○ 2004. 06. 1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속 변경

○ 2007. 03. 01. 비상임위원 2인 위촉, 총 7인으로 구성·운영

○ 2008. 02. 29.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속 변경

○ 2011. 04. 11. 비상임위원 2인 추가위촉, 총 9인으로 구성·운영

○ 2013. 03. 2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속 변경

○ 2013. 09. 26. 비상임위원 임기 변경(1년 → 2년)

○ 2014. 11.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속 변경

❒ 관계법령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 소청절차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2016. 03. 29. 법률 제14146호)
- 행정소송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 소청심사 현황분석

1. 소청처리 현황(총괄)

○ 최근 5년간(2012~2016) 소청심사 처리건수는 연평균 910건이며, 심사결과 인용률은 평균 37.7%임

○ 2016년 처리건수는 860건으로 최근 5년 평균대비 5.5% 감소하였고, 심사결과 인용률은 36.2%임

2. 소청사건의 제기 현황

○ (징계처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 범죄 등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강화되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품위손상과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사정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12년 826건→'13년 785건→'14년 689건→'15년 719건→'16년 685건

○ (불이익 처분) 공무원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져 직위해제, 전보 등 징계 외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제기도 꾸준한 상황

※ '12년 191건→'13년 182건→'14년 142건→'15년 157건→'16년 175건

❒ 소청심사 통계

1.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심 사 결 과			
			인 용			기각 · 각하 등 불인용
			소 계	취소	변 경 (무효포함)	
2012	940	1,017	387	24	363	630
2013	835	967	376	45	331	591
2014	864	831	304	21	283	527
2015	881	876	340	35	305	536
2016	885	860	311	40	271	549
평균 (분포 %)	881	910 (100)	344 (37.7)	33 (3.6)	311 (34.1)	567 (62.3)

2. 비위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품위 손상	업무상 과실 · 태만	금품 수수	감독 태만	기 타 비 위	기 타 불이익 처분	징계 부가금
2012	1,017	371	222	157	41	35	109	82
2013	967	411	199	118	39	18	111	71
2014	831	360	202	89	31	7	79	63
2015	876	384	190	104	19	22	82	75
2016	860	344	213	80	21	27	88	87
평균 (분포 %)	910 (100)	374 (41.1)	205 (22.5)	109 (12.0)	30 (3.3)	22 (2.4)	94 (10.3)	76 (8.4)

※ 2010. 3. 22.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3. 계급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3급 이상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경감 · 경위)	7급 (경사)	8급 (경장)	9급 (순경)	기능직 · 기타
2012	1,017	13	29	64	389	351	97	44	30
2013	967	8	26	63	372	332	79	46	41
2014	831	22	31	42	377	229	78	42	10
2015	876	25	51	82	396	192	98	27	5
2016	860	29	39	87	377	176	82	63	7
평균 (분포%)	910 (100)	19 (2.1)	35 (3.8)	68 (7.5)	382 (42.0)	256 (28.1)	87 (9.6)	44 (4.8)	19 (2.1)

4. 공무원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경 찰 공무원	교 정 공무원	세 무 공무원	기타 일반 행정공무원
2012	1,017	791	19	32	175
2013	967	735	26	29	177
2014	831	633	24	11	163
2015	876	596	31	32	217
2016	860	545	16	21	278
평 균 (분포%)	910 (100)	660 (72.5)	23 (2.5)	25 (2.8)	202 (22.2)

5. 처분종류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별	계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	징계 부가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2	1,017	84	133	43	130	187	249	109	82
2013	967	66	118	43	121	195	242	111	71
2014	831	75	118	17	110	143	226	79	63
2015	876	49	105	40	126	158	241	82	75
2016	860	54	94	53	138	158	188	88	87
평균 (분포%)	910 (100)	66 (7.2)	114 (12.5)	39 (4.3)	125 (13.7)	168 (18.5)	229 (25.2)	94 (10.3)	75 (8.3)

※ 2009. 4. 1. 국가공무원 강등제도 시행

※ 2010. 3. 22. 경찰공무원 강등제도 시행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1. 소청결정사례집

접수년도	처리건수	사례집 게재건수	사례집	발간년도	비 고
1963	146	102	제1집	1964	1964년도
1964	211	149	제2집	1965	처리건수 중
1965	275	151	제3집	1966	39건은
1966	447	221	제4집	1967	제1집에
1967	378	256	제5집	1968	수록
1968	396	212	제6집	1969	
1969	464	162	제7집	1970	
1970	623	242	제8집	1971	
1971	472	169	제9집	1972	
1972	788	188	제10집	1973	1973년도와
1973	523	89	제11집	1975	1974년도
1974	352	79	제11집	1975	처리사건은
1975	562	173	제12집	1976	1975년도에
1976	935	186	제13집	1977	병합 발행
1977	725	175	제14집	1978	
1978	446	214	제15집	1979	
1979	407	188	제16집	1980	
1980	614	202	제17집	1981	
1981	356	156	제18집	1982	
1982	441	122	제19집	1983	
1983	414	128	제20집	1984	
1984	371	117	제21집	1985	
1985	340	105	제22집	1986	
1986	314	100	제23집	1987	
1987	254	115	제24집	1988	
1988	169	110	제25집	1989	
1989	786	106	제26집	1990	
1990	1,143	84	제27집	1991	
1991	425	80	제28집	1992	
1992	408	95	제29집	1993	
1993	663	90	제30집	1994	
1994	1,162	84	제31집	1995	
1995	799	83	제32집	1996	

접수년도	처리건수	사례집 게재건수	사례집	발간년도	비 고
1996	988	80	제33집	1997	
1997	1,158	75	제34집	1998	
1998	1,186	93	제35집	1999	
1999	1,251	76	제36집	2000	
2000	631	80	제37집	2001	
2001	498	80	제38집	2002	
2002	519	78	제39집	2003	
2003	1,146	74	제40집	2004	
2004	923	121	제41집	2006	
2005	694	118	제42집	2006	
2006	505	127	제43집	2007	
2007	364	127	제44집	2008	
2008	648	118	제45집	2009	
2009	752	107	제46집	2010	
2010	952	90	제47집	2011	
2011	946	90	제48집	2012	
2012	1,017	90	제49집	2013	
2013	967	90	제50집	2014	
2014	831	90	제51집	2015	
2015	876	90	제52집	2016	
2016	860	90	제53집	2017	

2. 결정요지집

○ 제1권(1963~1982)

- 1963~1982년도 사이에 처리된 사건 중 주요사례

○ 제2권(1983~1986)

- 유형별 결정례의 발췌
- 참고하고자 하는 결정문의 색인

3. 기타

○ 소청사무편람

- 소청 및 고충에 관한 규정 등
- 관계법령
- 우리 위원회 행정회의의 결정 사항

○ 공무원 인사소청제도 결정 사항(1984년)

○ 소청 및 고충사무처리 요령(1986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1993년)

○ 소청관계법령(추록 가제식)(1998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1999년)

○ 1998~1999 소청사건 중심 행정소송 결과 분석(2000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03년)

○ 소청관련 법령집(2003년)

○ 소청심사 실태분석(2003년)

○ 선진국 소청심사제도 정책연수 보고서(2004년)

○ 소청심사 참고사례 정리(2005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진행요령(2005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06년)

○ 소청관련 법령집(2006년)

○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소청심사제도 정책연수 보고서(2006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07년)

○ 소청관련 법령집(2008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10년)

○ 소청관련 법령집(2010년)

○ 소청심사 50년(2013년)

○ 소청관련 법령집(2013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14년)

○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2016년)

○ 소청관련 법령집(2017년)

❒ 역대 소청심사위원장

○ 1대 신두영 1963.06.20.~1966.12.29.
○ 2대 조병일 1967.01.18.~1972.06.19.
○ 3대 동홍욱 1972.06.20.~1974.04.19.
○ 4대 서재원 1974.04.30.~1978.04.29.
○ 5대 김창식 1978.05.01.~1979.12.14.
○ 6대 김형준 1979.12.26.~1980.06.08.
○ 7대 문영구 1980.09.24.~1986.09.23.
○ 8대 최동섭 1986.09.24.~1987.12.21.
○ 9대 정문화 1987.12.22.~1988.12.12.
○ 10대 황병인 1988.12.13.~1990.10.10.
○ 11대 유기열 1990.10.11.~1991.02.20.
○ 12대 우근민 1991.03.20.~1991.08.01.
○ 13대 박해준 1991.08.03.~1993.03.03.
○ 14대 윤창수 1993.03.04.~1996.03.03.
○ 15대 하희대 1996.03.04.~1998.03.11.
○ 16대 양종석 1998.03.12.~1999.05.25.
○ 17대 나승포 1999.05.26.~2000.01.27.
○ 18대 문동후 2000.01.28.~2000.11.25.
○ 19대 권형신 2001.01.30.~2002.07.19.
○ 20대 김중양 2002.07.19.~2003.06.03.
○ 21대 김완기 2003.06.04.~2005.01.21.
○ 22대 이성열 2005.01.28.~2006.04.06.
○ 23대 정택현 2006.04.07.~2008.03.07.

○ 24대 강병규 2008.03.08.~2009.01.19.

○ 25대 최민호 2009.01.20.~2011.05.17.

○ 26대 박찬우 2011.05.18.~2013.03.13.

○ 27대 김상인 2013.04.18.~2016.04.17.

○ 28대 김승호 2016.04.18. ~ 현재

이 사례집에 수록된 사건의 심사·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원 장	김 상 인	(2013. 04. 18. ~ 2016. 04.17.)
	김 승 호	(2016. 04. 18. ~ 현재)
위 원	감 종 훈	(2013. 01. 16. ~ 2016. 04.17.)
	오 동 호	(2015. 10. 20. ~ 2017. 07.16.)
	홍 성 삼	(2015. 08. 24. ~ 2017. 10.22.)
	조 명 우	(2015. 08. 31. ~ 현재)
	황 서 종	(2016. 06. 20. ~ 현재)
비상임위원	황 병 돈	(2014. 11. 18. ~ 2016.05. 15.)
	태 지 영	(2013. 10. 04. ~ 2016.12. 22.)
	윤 우 일	(2013. 05. 20. ~ 현재)
	김 재 중	(2016. 05. 16. ~ 현재)
	유 재 풍	(2016. 05. 16. ~ 현재)
	안 미 영	(2016. 12. 23. ~ 현재)

〈도움을 주신 분들〉

행정과장 이강희, 김대경, 김정은, 손서영, 최원경, 김은진, 유가영, 김경철, 엄현경, 김영숙, 장윤영, 김창희, 임경리, 박경숙, 심정은, 김인영, 전설희, 최경화, 이승은, 김민정, 민옥산, 송효정, 권창욱, 홍준표, 박찬인, 한상욱, 김원영, 김영빈

소청결정사례집(제53집)

발 행 일 2017년 11월

발 행 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TEL 044) 201 - 8647, 8648

FAX 044) 201 - 8686

홈페이지 : https://sochung.mpm.go.kr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